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우정과 강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인정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정적인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자유무역협정이 각 당사국에 대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국제 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강하는 구성 요소이고, 밀접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지역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고 증진할 것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나.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다. 양 당사국의 시장에서 공정 경쟁 증진

라.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기존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각국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의무와 약속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제1.5조
영역적 적용

1. 중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 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그리고

2.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제2절
정의

제1.6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국의 경우, 해관총서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지는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2]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모든 단체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2] 한국은 이 협정상 자유화 품목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유화 품목**이란 기준 관세율이 0인 세번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자국 양허표에 따른 관세철폐 이행기간 후에 무관세인 세번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공통 규정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

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동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이는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관세를 다음에서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것까지 인상하는 것

1)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과학연구, 교육 또는 의학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언론매체 또는 텔

레비전에 사용되는 장비, 그리고 영화촬영 목적에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장비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처음에 정하여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개월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되도록 허용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그 상품이 파손되었다는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납득할만 할 증거를 제시하면, 그 상품을 재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제2.7조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5절
비관세조치[1]

제2.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하여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1조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과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서 각각 다루며, 따라서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제2.15조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한 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 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2]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2.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한다.

제2.11조
국영무역기업

1.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규율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12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그와 같은 모든 조치의 공표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2.13조
작업반 설치

1. 제2.16조제3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국은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게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제출한다. 작업반의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14조
관세율할당 운영

1. 부속서 2-가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2.15조
검사기관 지정

각각의 법률 체제의 규정과 요건을 감안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검사기관 지정을 통하여 검사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장려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6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필요한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0퍼센트가 유지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3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0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중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0.1위안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20-A, 20-B, PR-1 및 PR-13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2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20-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PR-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PR-13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종가세 130퍼센트로 인하하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퍼센트가 유지된다.

중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기준관세율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중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2.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5-A, PR-8, PR-15, PR-35 및 PR-5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15-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PR-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2퍼센트가 유지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PR-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PR-3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65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유형 "PR-5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중국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중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어떠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번호	HSK 2012	품목	연간 물량 (메트릭톤)
1	0301999020	복어(활어)	140
2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3,200
3	0302899040	아귀(신선한 것/냉장한 것)	17
4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한 것)	270
5	0303899060	아귀(냉동한 것)	1,900
6	0307511000	낙지(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6,100
7	0307591020	낙지(기타)	19,400
8	0307714000	바지락(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15,800
9	0307791030	바지락(냉동한 것)	330
10	0307793020	바지락(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90
11	0713329000	팥(기타)	3,000
12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5,000
13	1108191000	그 밖의 전분(고구마로 만든 것)	5,000
14	1201903000	대두(콩나물용)*	3,000
15	1201909000	대두(기타)*	7,000
16	1207400000	참깨	24,000
17	1605542091	조미오징어	980
18	1605542099	오징어(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1,300
19	1605592090	소라(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7

* 주: HSK 1201903000 및 1201909000에 대한 관세율할당은 식용대두(IP)로 한정된다.
(1)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2) IP 대두는 벌크로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20	1605639000	해파리(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4
21	2308009000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기타)	38,000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3.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한국 양허표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0
0101219000	기타	8	0
0101291000	경주말	8	0
0101299000	기타	8	20
0101301000	번식용	8	0
0101309000	기타	8	20
0101900000	기타	8	0
0102211000	젖소	89.1	0
0102212000	육우	89.1	0
0102219000	기타	89.1	0
0102291000	젖소	40	E
0102292000	육우	40	E
0102299000	기타	0	0
0102311000	젖소	89.1	0
0102312000	육우	89.1	0
0102319000	기타	89.1	0
0102391000	젖소	40	E
0102392000	육우	40	E
0102399000	기타	0	0
0102901010	젖소	89.1	0
0102901020	육우	89.1	0
0102901090	기타	89.1	0
0102909010	젖소	40	E
0102909020	육우	40	E
010290909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	18	0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E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E
0104101000	번식용	0	0
0104109000	기타	8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104201000	젖산양	8	20
0104209000	기타	8	20
0105111000	번식용	9	0
0105119000	기타	9	E
0105120000	칠면조	9	20
0105131000	번식용	0	0
0105139000	기타	18	E
0105140000	거위	9	10
0105150000	기니아새	9	10
0105941000	번식용	9	0
0105949000	기타	9	E
0105991010	번식용	0	0
0105991090	기타	18	E
0105992000	칠면조	9	20
0105999000	기타	9	10
0106110000	영장류	8	5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5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5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5
0106141000	번식용	0	0
0106149000	기타	8	20
0106191000	개	8	20
0106193000	사슴	8	20
0106194000	곰	8	10
0106195010	번식용	0	0
0106195090	기타	8	5
0106196010	번식용	0	0
0106196090	기타	8	5
0106199000	기타	8	15
0106201000	뱀	8	5
0106202000	자라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106203000	거북	8	5
0106209000	기타	8	5
0106310000	맹금류	8	10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10
0106330000	타조,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8	10
0106390000	기타	8	15
0106411000	꿀벌	8	E
0106419000	기타	8	E
0106490000	기타	8	E
0106901000	양서류	8	10
0106903010	갯지렁이	8	20
0106903020	실지렁이	8	5
0106903090	기타	8	15
0106909000	기타	8	1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1201000	갈비	40	E
0201209000	기타	40	E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E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2201000	갈비	40	E
0202209000	기타	40	E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E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3191000	삼겹살	22.5	E
0203199000	기타	22.5	E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E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203291000	삼겹살	25	E
0203299000	기타	25	E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E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E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2.5	E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E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7	20
0205002000	냉동한 것	27	20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210000	혀	18	E
0206220000	간	18	E
0206291000	꼬리	18	E
0206292000	족	18	E
0206299000	기타	18	E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410000	간	18	E
0206491000	족	18	E
0206499000	기타	18	E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18	E
0207119000	기타	18	E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20	E
0207129000	기타	2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207131010	다리	18	E
0207131020	가슴	18	E
0207131030	날개	18	E
0207131090	기타	18	E
0207132010	간	22.5	E
0207132090	기타	27	E
0207141010	다리	20	E
0207141020	가슴	20	E
0207141030	날개	20	E
0207141090	기타	20	E
0207142010	간	22.5	E
0207142090	기타	27	E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261000	절단육	18	20
0207262010	간	22.5	20
0207262090	기타	27	20
0207271000	절단육	18	20
0207272010	간	22.5	20
0207272090	기타	27	20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7441000	절단육	18	E
0207442010	간	22.5	E
0207442090	기타	27	E
0207451000	절단육	18	E
0207452010	간	22.5	E
0207452090	기타	27	E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207541000	절단육	18	20
0207542010	간	22.5	20
0207542090	기타	27	20
0207551000	절단육	18	20
0207552010	간	22.5	20
0207552090	기타	27	20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0
0207603100	절단육	18	20
0207603210	간	22.5	20
0207603290	기타	27	20
0207604100	절단육	18	20
0207604210	간	22.5	20
0207604290	기타	27	20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E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15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15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15
0208500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18	15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15
0208901000	사슴의 것	27	E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15
0208909090	기타	18	15
0209100000	돼지의 것	3	0
0209900000	기타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E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E
0210190000	기타	25	E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E
0210209000	기타	27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5
02109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5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5
0210930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E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E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1090	기타	22.5	E
0210999010	면양 또는 산양의 것	22.5	E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9090	기타	22.5	20
0301111000	비단잉어	10	5
0301119000	기타	10	20
0301190000	기타	10	20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10	5
03019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5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29000	기타	27% 또는 1,879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0	E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5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5
0301992000	방어	10	10
0301994010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301995000	붕장어	10	5
0301996000	갯장어	10	5
0301997000	먹장어	10	5
0301998000	넙치류	10	E
0301999010	능성어	10	5
0301999020	복어	10	TRQ
0301999030	틸라피아	10	5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5
0301999051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9059	기타	28	E
0301999060	숭어	10	20
0301999070	미꾸라지	10	TRQ
0301999080	메기	10	2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아그라무스(Agrammus)종]	10	20
0301999092	붕어	10	20
0301999093	연어	10	5
0301999094	초어	10	5
0301999095	민어	28	E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는 제외한다]	10	5
0301999099	기타	10	20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03021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20
030213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20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20
0302190000	기타	20	15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20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2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20	20
03022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15
0302290000	기타	20	15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15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20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20	15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15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20	15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15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15
0302390000	기타	20	15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시(Clupea pallasii)]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	20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20	15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20	E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20	E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	15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15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PR-10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20	15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20	15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20	15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0	20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20	15
0302590000	기타	20	15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15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20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20	20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2790000	기타	20	15
0302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15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20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15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20	20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	20
0302891000	방어	20	15
0302892000	갈치	20	E
0302893000	붕장어	20	20
0302894000	갯장어	20	20
0302895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20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20
0302899010	삼치	20	20
0302899020	복어	20	E
0302899030	병어	20	20
0302899040	아귀	20	TRQ
0302899090	기타	20	20
0302901000	간	20	15
0302902000	어란(魚卵)	20	15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10	5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5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5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3190000	기타	10	5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5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5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0	5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10	5
0303290000	기타	10	20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5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5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10	20
03033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5
0303390000	기타	10	E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0	2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20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10	2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TRQ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5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5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5
0303490000	기타	10	5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시(Clupea pallasii)]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10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E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0	E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5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20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E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5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5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5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5	E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5
0303691000	새꼬리민태	10	5
0303699000	기타	25	20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20
0303821000	가오리	10	10
0303822000	홍어	10	E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5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0	10
0303891000	은대구	10	5
0303892000	갈치	10	E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3893090	기타	10	E
0303894000	붕장어	10	5
0303895000	조기	10	E
0303896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8	E
0303897000	삼치	10	20
0303898000	복어	10	PR-1
0303899010	보리멸	10	5
0303899020	홍살치	10	5
0303899030	달고기	10	5
0303899040	임연수어	10	5
0303899050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10	E
0303899060	아귀	10	TRQ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5
0303899080	밀크피쉬	10	5
0303899091	민어	43	E
0303899092	까나리	10	20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10	5
0303899099	기타	10	20
0303901000	간	10	5
0303902010	명란	10	10
0303902090	기타	10	10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15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20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15
0304390000	기타	20	15
0304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20
0304431000	가자미	20	20
0304439000	기타	20	15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15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15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15
0304491000	붕장어	20	15
0304492000	참다랑어	20	20
0304499000	기타	20	15
0304511000	연육	20	15
0304519000	기타	20	20
0304521000	연육	20	20
0304529000	기타	20	20
0304531000	연육	20	15
0304539000	기타	20	15
0304541000	연육	20	15
0304549000	기타	20	15
0304551000	연육	20	15
0304559000	기타	20	15
0304591010	연육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4591090	기타	20	15
0304592010	연육	20	15
0304592090	기타	20	15
0304593010	연육	20	15
0304593090	기타	20	20
0304599010	연육	20	20
0304599090	기타	20	15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20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10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5
0304690000	기타	10	5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10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5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5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5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E
0304790000	기타	10	20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5
0304831000	가자미	10	E
0304839000	기타	10	E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20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5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5
0304871000	참다랑어	10	5
0304879000	기타	10	20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0	E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5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5
0304894000	쥐치의 것	10	20
0304899000	기타	10	20
0304911000	냉동 연육	10	5
0304919000	기타	10	10
0304921000	냉동 연육	10	5
0304929000	기타	10	10
0304931000	냉동 연육	10	20
0304939000	기타	10	5
0304941000	냉동 연육	10	5
0304949000	기타	10	5
0304951000	냉동 연육	10	5
0304959000	기타	10	5
0304991000	냉동 연육	1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4999000	기타	10	20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305201000	간	20	15
0305202000	건조 어란(魚卵)	20	20
0305203000	훈제 어란(魚卵)	20	15
0305204010	명태의 것	20	15
0305204020	조기의 것	20	15
0305204030	청어의 것	20	20
0305204090	기타	20	15
0305311000	건조한 것	20	20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5321000	건조한 것	20	20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5391000	건조한 것	20	15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15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15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20	15
0305491000	멸치	20	20
0305492000	명태	20	20
0305499000	기타	20	15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E
0305592000	멸치	20	E
0305593000	명태(북어)	20	E
0305594000	조기(굴비)	20	20
0305595000	복어	20	15
0305596000	갯장어	20	20
0305597000	까나리	20	15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15
0305599000	기타	20	20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15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15
0305631000	멸치젓	20	20
0305639000	기타	20	20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691000	연어	20	15
0305692000	송어	20	15
0305693000	갈치	20	15
0305694000	정어리	20	15
0305695000	고등어	20	E
0305696000	조기	20	20
0305697000	전갱이	20	E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15
0305699000	기타	20	15
0305711000	훈제한 것	20	15
0305712000	건조한 것	20	15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20	E
0305729000	기타	20	15
0305790000	기타	20	15
0306111000	훈제한 것	20	15
0306119000	기타	20	20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5
0306129000	기타	20	20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5
0306141090	기타	20	20
0306142010	훈제한 것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6142090	기타	20	E
0306143010	훈제한 것	20	20
0306143090	기타	14	PR-1
0306149010	훈제한 것	20	15
0306149090	기타	14	20
0306151000	훈제한 것	20	15
0306159000	기타	20	15
0306161010	훈제한 것	20	15
0306161090	기타	20	20
0306169010	훈제한 것	20	15
0306169090	기타	20	15
0306171010	훈제한 것	20	15
0306171090	기타	20	20
0306179010	훈제한 것	20	15
0306179090	기타	20	20
0306191000	훈제한 것	20	15
0306199000	기타	20	20
0306211000	훈제한 것	20	15
0306219000	기타	20	15
03062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62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5
0306229000	기타	20	15
0306241010	꽃게	20	E
0306241020	대게	20	E
0306241090	기타	20	20
0306242000	건조한 것	20	15
03062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624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624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5
0306244090	기타	20	15
030625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6252000	건조한 것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625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6254000	훈제한 것	20	15
030626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6262000	건조한 것	20	20
030626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8% 또는 256원/kg, 양자 중 고액(율)	20
0306264000	훈제한 것	20	15
030627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6272000	건조한 것	20	20
030627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8% 또는 2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306274000	훈제한 것	20	15
030629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6292000	건조한 것	20	15
0306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6294000	훈제한 것	20	15
0307111010	종패용	0	0
0307111090	기타	5	5
0307119000	기타	20	20
0307191000	냉동한 것	20	PR-10
0307192000	건조한 것	20	2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PR-10
0307194000	훈제한 것	20	20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20
0307291000	냉동한 것	20	20
0307292000	건조한 것	20	15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7294000	훈제한 것	20	15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20
0307391000	냉동한 것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7392000	건조한 것	20	20
0307393000	훈제한 것	20	20
0307399000	기타	20	20
0307411000	갑오징어	10	5
0307412000	오징어	10	E
0307491010	갑오징어	10	10
0307491020	오징어	22	E
03074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0	E
0307493000	건조한 것	10	E
0307494010	갑오징어	20	15
0307494020	오징어	20	20
0307511000	낙지	20	TRQ
0307512000	주꾸미	20	20
0307519000	기타	20	20
0307591010	문어	20	E
0307591020	낙지	20	TRQ
0307591030	주꾸미	20	20
0307591090	기타	20	20
0307592000	건조한 것	20	20
0307593000	훈제한 것	20	20
0307599000	기타	20	E
0307601000	훈제한 것	20	15
0307609000	기타	20	15
0307711010	치패(稚貝)	20	20
0307711090	기타	20	20
0307712010	종패용	0	0
0307712090	기타	20	20
0307713000	새조개	20	15
0307714000	바지락	20	TRQ
0307719000	기타	20	20
0307791010	새조개	20	20
0307791020	개량조개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7791030	바지락	20	TRQ
0307791040	피조개	20	20
0307791090	기타	20	20
0307792010	개량조개	20	15
0307792020	바지락	20	15
0307792090	기타	20	15
0307793010	개량조개	20	15
0307793020	바지락	20	TRQ
0307793090	기타	20	15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5
0307794090	기타	20	15
03078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20
0307891000	냉동한 것	20	E
0307892000	건조한 것	20	20
03078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20
0307894000	훈제한 것	20	20
0307911000	소라	20	E
0307912010	종패용	0	0
0307912090	기타	20	15
0307913000	개아지살	20	E
0307914000	재첩	20	20
0307919000	기타	20	20
0307991100	개아지살	20	E
0307991200	소라	20	E
0307991900	기타	20	20
0307992100	개아지살	20	E
0307992900	기타	20	15
0307993100	소라	20	E
0307993900	기타	20	20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307994900	기타	20	15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8191000	냉동한 것	20	15
0308192000	건조한 것	20	20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8194000	훈제한 것	20	15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8291000	냉동한 것	20	15
0308292000	건조한 것	20	15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8294000	훈제한 것	20	15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5
0308302000	냉동한 것	20	15
0308303000	건조한 것	20	15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20
0308305000	훈제한 것	20	15
0308901011	종묘(種苗)	0	0
0308901019	기타	20	20
0308901090	기타	20	20
0308902010	우렁쉥이(멍게)	20	20
0308902090	기타	20	15
0308903010	우렁쉥이(멍게)	20	15
0308903090	기타	20	15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20
0308905000	훈제한 것	20	15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	E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E
0401401000	냉동크림	36	E
0401409000	기타	36	E
0401501000	냉동크림	36	E
0401509000	기타	36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E
0402101090	기타	176	E
0402109000	기타	176	E
0402211000	전지분유	176	E
0402219000	기타	176	E
0402290000	기타	176	E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E
0402919000	기타	89	E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E
0402999000	기타	89	E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E
0403102000	냉동한 것	36	E
0403109000	기타	36	E
0403901000	버터밀크	89	E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E
0403903000	케피어(kephir)	36	E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E
0404101011	사료용	49.5	20
0404101019	기타	49.5	E
0404101091	사료용	49.5	20
0404101099	기타	49.5	E
0404102111	사료용	49.5	20
0404102119	기타	49.5	E
0404102121	사료용	49.5	20
0404102129	기타	49.5	E
0404102131	사료용	49.5	20
0404102139	기타	49.5	E
0404102191	사료용	49.5	20
0404102199	기타	49.5	E
0404102910	사료용	49.5	20
0404102990	기타	49.5	E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	E
0405100000	버터	89	E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20
0405900000	기타	89	E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E
0406101020	크림 치즈	36	E
0406101090	기타	36	E
0406102000	커드(curd)	36	E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E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E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E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E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E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E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E
0406909000	기타	36	E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190000	기타	27	E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290000	기타	27	E
0407900000	기타	27	E
0408110000	건조한 것	27	E
0408190000	기타	27	E
0408910000	건조한 것	27	E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41.6	E
0408999000	기타	27	E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864/kg, 양자 중 고액(율)	
0410001000	거북알	8	10
0410002000	칼새둥지	8	5
0410003000	로열젤리	8	E
0410009000	기타	8	1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3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E
0504001090	기타	27	20
0504002000	방광	27	20
0504003000	위	27	E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3	10
0505901000	깃털 가루	5	5
0505909000	기타	5	5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10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뼛가루	25.6	15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5
0507102000	서각	8	5
0507109000	기타	8	5
0507901110	전지(全枝)	20	E
0507901190	기타	20	E
0507901200	녹각	20	E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507902030	천산갑(穿山甲)	8	5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5
0507902090	기타	8	5
0508001000	산호	8	5
0508002010	진주패각	8	2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2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2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5
0508002050	트로커스(Trocus) 패각	8	5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5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8	5
0508002090	기타	8	20
0508009000	기타	8	5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8	5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8	5
0510003000	사향	8	5
0510004000	우황	8	5
0510005000	오령지	8	5
0510009010	췌장	8	5
0510009020	담즙	8	5
0510009030	합개(蛤蚧)	8	5
0510009090	기타	8	5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8	20
0511911090	기타	8	5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5
0511919000	기타	8	20
0511991000	동물의 피	8	5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511993010	소의 것	18	0
0511993020	돼지의 것	18	0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5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5
0511999010	잠종(蠶種)	18	15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1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8	5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10
0511999090	기타	8	10
0601101000	튤립의 것	8	20
0601102000	백합의 것	4	2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8	2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2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E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2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2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20
0601109000	기타	8	15
0601201000	튤립의 것	8	20
0601202000	백합의 것	8	2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8	2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2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E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15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2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2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20
060120909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8	5
0602109000	기타	8	20
0602201000	사과나무	18	15
0602202000	배나무	18	1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15
0602204000	포도나무	8	5
0602205000	감나무	8	5
0602206000	귤나무	18	20
0602207010	밤나무	8	20
0602207020	호두나무	8	20
0602207030	잣나무	8	20
0602209000	기타	8	5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1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E
0602901010	난초	8	E
0602901020	카네이션	8	E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E
0602901040	안개초	8	E
0602901050	국화	8	E
0602901060	선인장류	8	E
0602901090	기타	8	E
0602902011	분재용	8	10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2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20
0602909010	목단	8	20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15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20
0602909090	기타	8	E
0603110000	장미	25	E
0603120000	카네이션	25	E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E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E
0603139000	기타	25	E
0603140000	국화	25	E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25	E
0603191000	튤립	25	E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E
0603194000	안개초	25	E
0603199000	기타	25	E
0603900000	기타	25	E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10
0604202010	은행잎	8	20
0604202090	기타	8	15
0604209000	기타	8	20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20
0604909000	기타	8	20
0701100000	종자용	304	E
0701900000	기타	304	E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703102000	쪽파	27	E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901000	리크(leek)	27	E
0703909000	기타	27	E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E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E
0704901000	양배추	27	E
0704902000	배추	27	E
0704909000	기타	27	E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E
0705190000	기타	45	E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20
0705290000	기타	8	20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 /kg, 양자 중 고액(율)	E
0706102000	순무	27	E
0706901000	무	30	E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20
0706903000	더덕	27	E
0706904000	도라지	27	20
0706909000	기타	27	E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E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E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7	E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E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E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20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	E
0709519000	기타	30	E
0709591000	송이버섯	30	E
070959200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593000	영지버섯	30	E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E
0709594090	기타	30	E
0709595000	팽이버섯	30	E
0709596000	송로(松露)	27	20
0709599000	기타	30	20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E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15
0709920000	올리브	27	20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7	E
0709991000	고사리	30	E
0709992000	고비	27	E
0709999000	기타	27	E
0710100000	감자	27	E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20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7	E
0710290000	기타	27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710300000	시금치류	27	E
0710400000	스위트콘	30	20
0710801000	양파	27	E
0710802000	마늘	27	E
0710803000	죽순	27	E
0710804000	당근	27	E
0710805000	고사리	30	E
0710806000	송이버섯	27	PR-10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E
0710809000	기타	27	E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E
0711200000	올리브	27	15
0711400000	오이류	30	E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E
0711591000	송로(松露)	27	20
0711599000	기타	30	20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3000	죽순	27	20
0711904000	당근	30	E
0711905010	고사리	30	E
0711905020	고비	27	E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5099	기타	27	E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20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20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5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2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5
0712391010	송이버섯	30	E
071239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 /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E
0712391050	팽이버섯	30	20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20
0712392000	송로(松露)	27	20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 원/kg, 양자 중 고액(율)	PR-10
0712902020	무	30	E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50	호박	30	E
0712902060	양배추	30	E
0712902070	토란줄기	30	20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E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E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PR-130
0712902093	감자	27	E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95	더덕	30	E
0712902099	기타	30	E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E
0713101000	종자용	27	20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2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15
0713311000	종자용	607.5	E
0713319000	기타	607.5	E
0713321000	종자용	420.8	E
0713329000	기타	420.8	TRQ
0713331000	종자용	27	20
0713339000	기타	27	E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15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15
0713390000	기타	27	15
0713400000	렌즈콩	27	15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27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15
0713900000	기타	27	1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PR-130
0714102010	칩	887.4	PR-130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PR-130
0714102090	기타	887.4	PR-130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PR-130
0714104000	냉동한 것	45	20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E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E
0714204000	냉동한 것	45	E
0714209000	기타	385	E
0714301000	냉동한 것	45	E
0714309000	기타	385	PR-130
0714401000	냉동한 것	45	20
0714409000	기타	385	PR-130
0714501000	냉동한 것	45	20
0714509000	기타	385	PR-130
0714901010	냉동한 것	45	20
0714901090	기타	18	20
0714909010	냉동한 것	45	20
0714909090	기타	385	E
0801110000	말린 것	30	10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10
0801190000	기타	30	10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2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E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E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5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0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0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30	15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30	15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9000	기타	3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15
0803900000	기타	30	15
0804100000	대추야자	30	15
0804200000	무화과	30	E
0804300000	파인애플	30	15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20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15
0804502000	망고(mango)	30	15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15
0805100000	오렌지	50	E
0805201000	감귤	144	E
0805209000	기타	144	E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30	E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 및 시트러스 리머늄)	30	15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15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20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E
0806200000	건조한 것	21	20
0807110000	수박	45	E
0807190000	기타	45	E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15
0808100000	사과	45	E
0808300000	배	45	E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45	10
0809100000	살구	45	E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15
0809290000	기타	24	E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E
0809401000	자두	45	E
0809402000	슬로(sloe)	45	15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45	E
0810300000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 (gooseberry)	45	E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 (Vaccinium)속의 과실	45	E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E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15
0810701000	단감	45	E
0810709000	기타	50	E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	E
0810909000	기타	45	E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E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 (gooseberry)	30	E
0811901000	밤	30	E
0811902000	대추	30	E
0811903000	잣	30	E
0811909000	기타	30	20
0812100000	체리	30	15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E
0812909000	기타	30	E
0813100000	살구	45	15
0813200000	프룬(prune)	18	15
0813300000	사과	45	E
0813401000	감	50	E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3409000	기타	45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20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1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1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1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5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E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E
0903000000	마테(maté)	25	20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5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5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15
0906191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8	15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15
0906201000	계피	8	15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5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5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5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5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0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0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5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5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0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5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5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10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15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15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10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15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15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10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10
0910911000	카레	8	15
0910919000	기타	8	15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8	10
0910999000	기타	8	15
1001110000	종자	3	5
1001190000	기타	3	5
1001911000	메슬린(meslin)	3	5
1001919000	기타	1.8	5
1001991010	메슬린(meslin)	3	5
1001991090	기타	0	0
1001992010	메슬린(meslin)	3	5
1001992090	기타	1.8	5
1001999010	메슬린(meslin)	3	5
1001999090	기타	1.8	5
1002100000	종자	108.7	15
1002900000	기타	3	0
1003101000	맥주보리	513	E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109000	기타	299.7	E
1003901000	맥주보리	513	E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고액(율)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909000	기타	299.7	E
1004100000	종자	554.8	20
1004900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PR-130
1005901000	사료용	328	E
1005902000	팝콘	630	E
1005909000	기타	328	E
1006100000	벼	-	Carved-Out*
1006201000	메현미	-	Carved-Out*
1006202000	찰현미	-	Carved-Out*
1006301000	멥쌀	-	Carved-Out*
1006302000	찹쌀	-	Carved-Out*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	Carved-Out*
1007100000	종자	779.4	20
1007900000	기타	3	0
1008100000	메밀	256.1	E
1008211000	조	18	15
1008219000	기타	3	5
1008291000	조	3	5
1008299000	기타	3	1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0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800.3	E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800.3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800.3	E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E
1101001000	밀가루	3	E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10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20
1102901000	보릿가루	260	E
1102902000	쌀가루	-	Carved-Out*
1102903000	호밀가루	5	10
1102909000	기타	800.3	E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PR-130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E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PR-130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	Carved-Out*
1103199000	기타	800.3	E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PR-130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	Carved-Out*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209000	기타	800.3	E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PR-130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	Carved-Out*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E
1104199000	기타	800.3	E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PR-130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E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E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E
1104299000	기타	800.3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E
1104309000	기타	5	10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304	E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304	E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20
1106201000	칡뿌리의 것	8	20
1106209000	기타	8	20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	15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TRQ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E
1107209000	기타	27	E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E
1108121000	식품용	226	E
1108129000	기타	226	E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E
1108141000	식품용	455	E
1108149000	기타	455	E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TRQ
1108199000	기타	800.3	E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E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15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고액(율)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TRQ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TRQ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E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E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E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E
1203000000	코프라(copra)	3	5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15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2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20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5
1207210000	종자	3	5
1207291000	사료용	2	5
1207299000	기타	3	5
1207300000	피마자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TRQ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3	10
1207700000	멜론 종자	3	5
1207910000	양귀비씨	3	5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 /kg, 양자 중 고	PR-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액(율)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5
1207999000	기타	3	1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종자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3000	고추・단고추와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15
1210201000	홉(hop)	30	15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1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E
1211201190	기타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90	기타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90	기타	754.3	E
1211202110	가루	18	E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E
1211202190	기타	18	E
1211202210	가루	754.3	E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754.3	E
1211209200	종자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0000	코카잎	8	10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10
1211901000	부자(附子)	8	15
1211902000	황련(黃連)	8	15
1211903000	원지(遠志)	8	15
1211904000	패모(貝母)	8	15
1211905000	두충(杜沖)	8	15
1211906000	감초	8	E
1211909010	사인(砂仁)	8	15
1211909020	산조인(酸棗仁)	8	15
1211909030	사군자(使君子)	8	15
1211909040	용안육(龍眼肉)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211909050	산사자(山查子)	8	15
1211909060	연자육(蓮子肉)	8	15
1211909070	박하	8	15
1211909080	초피(椒皮)	8	15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E
1211909092	구기자	8	E
1211909093	오미자	8	E
1211909099	기타	8	20-B
1212211010	건조한 것	20	PR-10
1212211020	냉장한 것	20	15
1212211030	냉동한 것	10	5
1212211090	기타	20	E
1212212010	건조한 것	20	PR-10
1212212020	염장한 것	20	E
1212212030	냉장한 것	20	15
1212212040	냉동한 것	45	20
1212212090	기타	20	20
1212213010	건조한 것	20	E
1212213020	냉장한 것	20	15
1212213030	냉동한 것	45	20
1212213090	기타	20	15
1212214010	신선한 것	20	15
1212214020	냉장한 것	20	15
1212214030	냉동한 것	45	20
1212214090	기타	20	20
1212215010	염장한 것	20	E
1212215020	냉장한 것	20	15
1212215030	냉동한 것	45	20
1212215090	기타	20	PR-10
1212216010	냉동한 것	45	15
1212216090	기타	20	20
1212217011	냉동한 것	4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212217019	기타	20	15
1212217021	냉동한 것	45	15
1212217029	기타	20	15
1212217031	냉동한 것	45	15
1212217039	기타	20	15
1212218011	냉동한 것	45	15
1212218019	기타	20	15
1212218021	냉동한 것	45	15
1212218029	기타	20	20
1212218031	냉동한 것	45	15
1212218039	기타	20	20
1212219011	냉동한 것	45	15
1212219019	기타	20	15
1212219091	냉동한 것	45	15
1212219099	기타	20	20
1212291010	냉동한 것	10	5
1212291090	기타	20	20
1212292010	냉동한 것	45	20
1212292090	기타	20	E
1212293010	냉동한 것	45	20
1212293090	기타	20	20
1212294010	냉동한 것	45	20
1212294090	기타	20	20
1212295010	냉동한 것	45	20
1212295090	기타	20	E
1212296010	냉동한 것	45	15
1212296090	기타	20	15
1212297011	냉동한 것	45	15
1212297019	기타	20	15
1212297021	냉동한 것	45	15
1212297029	기타	20	15
1212297031	냉동한 것	4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212297039	기타	20	15
1212298011	냉동한 것	45	15
1212298019	기타	20	15
1212298021	냉동한 것	45	15
1212298029	기타	20	15
1212298031	냉동한 것	45	15
1212298039	기타	20	20
1212299011	냉동한 것	45	15
1212299019	기타	20	15
1212299091	냉동한 것	45	15
1212299099	기타	20	20
1212910000	사탕무	3	5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15
1212930000	사탕수수	3	5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8	15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8	15
1212993000	꽃가루	8	2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核)	8	15
1212999000	기타	8	2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15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5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E
1214909011	사료용	1	0
1214909019	기타	18	20
1214909090	기타	100.5	E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10
1301902010	쉘락(shellac)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301902090	기타	3	5
1301909000	기타	3	10
1302110000	아편	8	10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E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15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E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E
1302191190	기타	20	E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E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	E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8	10
1302193000	생칠(生漆)	8	2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1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1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15
1302199099	기타	8	20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20
1302311000	실 한천	8	20
1302312000	가루 한천	8	20
1302319000	기타	8	5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15
1302390000	기타	8	20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20
1401102000	청환죽(青丸竹)	8	20
1401109000	기타	8	20
1401201000	쪼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8	10
1401209000	기타	8	10
1401901000	칡줄기껍질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401909000	기타	8	1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5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0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5
1404902020	삼지닥나무(edgeworthia papyriferu) 껍질	3	0
1404902090	기타	3	5
1404903010	떡갈잎	5	5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5
1404903090	기타	5	5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5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및 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5
1404906020	아몬드 헐(almond hull)	3	5
1404906090	기타	3	5
1404909000	기타	3	5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109000	기타	3	0
15012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209000	기타	3	0
1501900000	기타	3	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0
1502101090	기타	2	0
1502109000	기타	3	0
15029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0
1502901090	기타	2	0
1502909000	기타	3	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0
1503009000	기타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5
1504109000	기타	3	5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20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5
1504309000	기타	3	5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0
1505009000	기타	3	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0
1506009000	기타	3	0
1507101000	식품용	5	E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5
1507109000	기타	5	5
1507901010	식품용	5	E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5
1507901090	기타	5	5
1507909000	기타	5	5
1508100000	조유(粗油)	27	20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20
1508909000	기타	27	20
1509100000	버진(virgin)	5	5
1509900000	기타	5	5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5
1511100000	조유(粗油)	3	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0
1511909000	기타	2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12000	잇꽃유	5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512191020	잇꽃유	5	5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99020	잇꽃유	5	5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5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	5
1512299000	기타	5	5
1513110000	조유(粗油)	3	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10
1513199000	기타	3	0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5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5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15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5
1513299000	기타	8	5
1514110000	조유(粗油)	5	E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E
1514199000	기타	5	5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5
1514912000	겨자유	5	5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5
1514991020	겨자유	5	5
1514999000	기타	5	5
1515110000	조유(粗油)	5	5
1515190000	기타	5	5
1515210000	조유(粗油)	5	5
1515290000	기타	5	5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90	기타	5	10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10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5
1516109000	기타	8	10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20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E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E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1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E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10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10
1516202090	기타	8	10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15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10
1517902000	쇼트닝	8	15
1517909000	기타	8	1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10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10
1518009010	사료용	5	5
1518009090	기타	8	10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8	1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15
1521102000	팜왁스	8	10
1521109000	기타	8	15
1521901000	경납(鯨蠟)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521902000	밀랍(蜜蠟)	8	20
1521909000	기타	8	15
1522001010	천연의 것	8	10
1522001090	기타	8	10
1522009000	기타	8	15
1601001000	소시지	18	E
1601009000	기타	30	15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E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20
1602209000	기타	30	2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20
1602319000	기타	30	20
1602321010	삼계탕	30	E
1602321090	기타	30	E
1602329000	기타	30	E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399000	기타	30	E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19000	기타	27	E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29000	기타	27	E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99000	기타	27	E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E
1602509000	기타	72	E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909000	기타	30	E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20
1603002000	육즙	30	20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20
1603004000	어류의 즙	30	20
1603009000	기타	3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4119000	기타	20	20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4129000	기타	20	15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4139000	기타	20	15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15
1604141012	삶은 것	20	15
1604141019	기타	20	15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15
1604141022	삶은 것	20	20
1604141029	기타	20	15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20
1604141032	삶은 것	20	20
1604141039	기타	20	15
1604149000	기타	20	15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4159000	기타	20	E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4169000	기타	20	20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4179000	기타	20	E
1604191010	꽁치	20	E
1604191020	전갱이	20	20
1604191090	기타	20	20
1604199010	쥐치포	20	20
1604199090	기타	20	20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20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20	15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15
1604204010	게맛의 것	20	15
1604204090	기타	2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604209000	기타	20	20
1604310000	캐비아	20	15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20	2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20
1605101099	기타	20	20
1605109000	기타	20	15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20	20
1605219000	기타	20	20
1605290000	기타	20	20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309000	기타	20	20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409000	기타	20	20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519000	기타	20	E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29000	기타	20	20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539000	기타	20	20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541090	기타	20	20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TRQ
1605542099	기타	20	TRQ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559000	기타	20	E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561090	기타	20	20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62090	기타	20	15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605569090	기타	20	20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5579000	기타	20	20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89000	기타	20	20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91090	기타	20	20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92090	기타	20	TRQ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599090	기타	20	20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619000	기타	20	15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629000	기타	20	15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639000	기타	20	TRQ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1605699000	기타	20	20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5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5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0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E
1701990000	기타	30	E
1702111000	유당(乳糖)	49.5	E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E
1702191000	유당(乳糖)	49.5	E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E
1702201000	단풍당	8	10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702301000	포도당	8	E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E
1702401000	포도당	8	E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E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E
1702601000	과당	8	E
1702602000	과당시럽	8	E
1702901000	인조꿀	243	E
1702902000	캐러멜당	8	E
1702903000	맥아당	8	E
1702909000	기타	8	PR-10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109000	기타	3	5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909000	기타	3	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5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5
1704902010	드롭스(drops)	8	10
1704902020	캐러멜	8	5
1704902090	기타	8	10
1704909000	기타	8	10
1801001000	생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5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5
1802009000	기타	8	5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1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5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fat) 및 유(oil)]	5	5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5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806209090	기타	8	5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19000	기타	8	5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29000	기타	8	5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10
1806902111	조제 분유의 것	36	20
1806902119	기타	40	E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199	기타	8	5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	Carved-Out*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30	E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의 것	36	E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	Carved-Out*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의 것	5.4	5
1806903091	낟알 모양의 쌀	8	15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	15
1806909090	기타	8	15
1901101010	조제 분유	36	E
1901101090	기타	40	E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901109090	기타	8	5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Carved-Out*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8	15
1901209000	기타	-	Carved-Out*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20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36	E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6	E
1901909010	오트밀	8	1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Carved-Out*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8	15
1901909099	기타	-	Carved-Out*
1902111000	스파게티	5	5
1902112000	마카로니	5	5
1902119000	기타	5	5
1902191000	국수	5	10
1902192000	당면	28% 또는 222원/kg, 양자 중 고액(율)	PR-10
1902193000	냉면	5	10
1902199000	기타	5	1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0
1902301010	라면	5	5
1902301090	기타	5	5
1902309000	기타	5	5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5	5
1903001000	타피오카	8	20
1903009000	기타	8	20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1904102000	콘 칩	5.4	10
1904103000	튀긴 쌀	5.4	10
1904109000	기타	5.4	10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의 것	45	20
1904209000	기타	5.4	10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15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E
1904901090	기타	8	E
1904909000	기타	8	15
1905100000	귀리빵	8	5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1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5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5
1905901010	빵	8	5
1905901020	건빵	8	5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5	10
1905901050	쌀과자	8	15
1905901090	기타	8	10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5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15
1905909090	기타	8	10
2001100000	오이류	30	E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15
2001909010	쪽파	30	E
2001909020	토마토	30	E
2001909030	꽃양배추	30	20
2001909040	스위트콘	30	15
2001909050	염교(rakkyo)	30	20
2001909060	마늘	30	E
2001909070	양파	3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001909090	기타	30	E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2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2909000	기타	8	2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20
2003109000	기타	20	20
2003901000	표고버섯	20	E
2003902000	송이버섯	20	E
2003903000	송로(松露)	20	15
2003909000	기타	20	20
2004100000	감자	18	E
2004901000	스위트콘	30	15
2004909000	기타	30	E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20
2005109000	기타	20	2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E
2005209000	기타	20	E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20
2005511000	녹두	20	20
2005512000	팥	20	PR-10
2005519000	기타	20	20
2005591000	녹두	20	20
2005592000	팥	20	E
2005599000	기타	20	2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20
2005700000	올리브	20	1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15
2005910000	죽순	20	20
2005991000	김치	20	PR-1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005999000	기타	20	PR-10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E
2006002000	파인애플	30	15
2006003000	생강	30	E
2006004000	연 뿌리	30	20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20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20	20
2006006090	기타	20	20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20
2006008000	올리브	20	1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15
2006009020	죽순	20	E
2006009030	그 밖의 채소의 것	20	20
2006009090	기타	30	20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20
2007911000	잼・과실젤리과 마멀레이드(marmalade)	30	E
2007919000	기타	30	E
2007991000	잼・과실젤리과 마멀레이드(marmalade)	30	20-A
2007999000	기타	30	E
2008111000	피넛 버터	50	20
2008119000	기타	63.9	PR-10
2008191000	밤	50	E
2008192000	코코넛	45	15
2008199000	기타	45	20
2008200000	파인애플	45	15
2008301000	유자	45	E
2008309000	기타	45	E
2008400000	배	45	E
2008500000	살구	45	20
2008600000	체리	45	20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008709000	기타	45	E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E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15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20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E
2008971090	기타	45	E
2008972000	과실 샐러드	45	E
2008979000	기타	45	E
2008991000	포도	45	E
2008992000	사과	45	E
2008993000	팝콘	45	15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20
2008999000	기타	45	20-A
2009110000	냉동한 것	54	E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4	E
2009190000	기타	54	E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20
2009290000	기타	30	20
2009311000	레몬주스	50	15
2009312000	라임주스	50	15
2009319000	기타	54	E
2009391000	레몬주스	50	15
2009392000	라임주스	50	15
2009399000	기타	54	E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15
2009490000	기타	50	15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E
2009690000	기타	45	E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E
2009790000	기타	45	E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20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E
2009891020	딸기주스	50	E
2009891090	기타	50	E
2009892000	채소 주스	30	E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90	기타	50	E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E
2009909000	기타	50	E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20
2101119000	기타	8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15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15
2101129090	기타	8	20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E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20
2101209019	기타	40	20
2101209090	기타	40	E
2101301000	보리의 것	8	20
2101309000	기타	8	20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102103000	제빵효모	8	10
2102104000	배양효모	8	5
2102109000	기타	8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15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5
2103100000	간장	8	E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2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	20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8	15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15
2103901010	된장	8	E
2103901020	춘장	8	20
2103901030	고추장	45	E
2103901090	기타	45	E
2103909010	마요네스	8	10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20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PR-1
2103909040	메주	13% 또는 52원/kg, 양자 중 고액(율)	E
2103909090	기타	45	PR-1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20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15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18	20
2104109000	기타	18	20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15
2105001090	기타	8	15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15
2105009090	기타	8	15
2106101000	두부	8	20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10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1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5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15
2106901090	기타	8	15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2106903011	인삼차	8	20
2106903019	기타	8	20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2106904010	김	8	PR-10
2106904090	기타	8	5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15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	20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8	20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	2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1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10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10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2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10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106909091	로열젤리와 벌꿀조제품	8	E
2106909099	기타	8	10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5
2201901000	얼음과 눈	8	5
2201909000	기타	8	5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5
2202109000	기타	8	5
2202901000	인삼음료	8	20
2202902000	과실주스 음료	9	10
2202903000	식혜	8	5
2202909000	기타	8	10
2203000000	맥주	30	20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1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10
2204212000	흰 포도주	15	10
2204219000	기타	15	1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10
2204292000	흰 포도주	15	10
2204299000	기타	15	1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E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0
2205900000	기타	15	10
2206001010	사과주	15	15
2206001020	배술	15	15
2206001090	기타	15	5
2206002010	청주	15	10
2206002020	약주	15	10
2206002030	탁주	15	10
2206002090	기타	15	15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10
2206009090	기타	1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20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E
2207109090	기타	30	2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15
2208201000	꼬냑	15	10
2208209000	기타	15	10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10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10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10
2208309000	기타	20	20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10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10
2208600000	보드카	20	10
2208701000	인삼주	20	E
2208702000	오가피주	20	20
2208709000	기타	20	15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10
2208904000	소주	30	20
2208906000	고량주	30	20
2208907000	데낄라	20	10
2208909000	기타	30	20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5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9	20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5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5	5
2301209000	기타	5	5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5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302409000	기타	5	5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5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10
2303301000	사료용	3	0
2303309000	기타	5	5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5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5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5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원/kg, 양자 중 고액(율)	20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5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10
2306909000	기타	5	5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5	5
2308001000	도토리	5	2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5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10
2308009000	기타	46.4	TRQ
2309101000	개사료	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15
2309901010	양돈용	4.2	15
2309901020	양계용	4.2	15
2309901030	어류용	5	15
2309901040	축우용	4.2	15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20
2309901099	기타	5	15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20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20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5
2309902099	기타	50.6	20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1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5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5
2309903090	기타	5	5
2309909000	기타	50.6	20
2401101000	황색종(種)	20	15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15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15
2401109000	기타	20	15
2401201000	황색종	20	20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15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20
2401209000	기타	20	15
2401301000	잎의 주맥(主脈)	20	2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20	15
2401309000	기타	20	15
2402101000	시가(cigar)	40	15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15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15
2402201000	필터담배	40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402209000	기타	40	20
2402900000	기타	40	15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15
2403191000	파이프 담배	40	15
2403199000	기타	40	15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15
2403919000	기타	40	15
2403991000	씹는 담배	40	15
2403992000	코 담배	40	15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40	15
2403999000	기타	40	15
2501001010	암염(岩鹽)	1	0
2501001020	천일염	1	20
2501009010	식염	8	2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20
2501009090	기타	8	2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5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5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2	0
2505901010	점토사	3	5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5
2505901090	기타	3	5
2505909000	기타	3	5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이고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5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1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06209000	기타	3	10
250700101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3	10
2507001090	기타	3	1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3	5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3	5
2507002090	기타	3	10
2507009000	기타	3	1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1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10
2508401000	산성백토	3	5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10
2508409000	기타	3	1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5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5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3	5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1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1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5
2509000000	초크	3	5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1	5
2510109000	기타	1	5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5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5
2510209000	기타	3	5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1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5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10
2513109000	기타	3	5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5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5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5
2513201090	기타	3	5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1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5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5
2513202090	기타	3	1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10
2514009000	기타	3	10
2515111000	대리석	3	1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5
2515121000	대리석	3	5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5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3	5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10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1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10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1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10
2516909000	기타	3	10
2517101000	자갈	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517102000	쇄석(碎石)	3	5
2517109000	기타	3	10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5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5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1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1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10
2517499000	기타	3	10
2518100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10
2518200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5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1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10
2519901000	용융(溶融) 또는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1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10
2519909000	기타	3	10
2520101000	석고	5	1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1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5
2520209000	기타	5	10
2521001000	석회석	3	10
2521009000	기타	3	1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1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5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1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0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2523290000	기타	5	0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0
2523909000	기타	5	0
2524100000	청(靑)석면	5	5
2524901000	갈(褐)석면	5	5
2524902000	백(白)석면	5	5
2524909000	기타	5	5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3	10
2525200000	운모 가루	3	1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5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5
2526109000	기타	3	5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10
252800100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5
2528002000	붕산칼슘	3	5
2528003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	5
2528004000	천연 붕산	3	10
2528009000	기타	3	5
2529100000	장석(長石)	3	10
2529211000	가루	2	10
2529219000	기타	2	10
2529221000	가루	2	10
2529229000	기타	2	5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5
2529302000	하석(霞石)	2	5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2	5
2530101000	질석(蛭石)	3	1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1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5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5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5
2530904000	주사(朱沙)	3	5
2530905000	납석(蠟石)	3	5
2530906000	불석(沸石)	3	1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5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10
2530909010	도석(陶石)	3	5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1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5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1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5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10
2530909099	기타	3	10
2601111000	적(赤)철광	0	0
2601112000	자(磁)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赤)철광	0	0
2601122000	자(磁)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0
2614002000	예추석(anatase)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1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5
2619001090	기타	2	5
2619002000	드로스(dross)	2	5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10
2619009000	기타	2	5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620190000	기타	2	5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5
2620290000	기타	2	5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5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5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5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5
2620990000	기타	2	1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10
2621900000	기타	2	1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0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10
2701202000	조개탄(ovoid)	1	10
2701209000	기타	1	1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5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5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5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5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10
2704001090	기타	3	1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5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5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10
2706002000	갈탄 타르나 토탄 타르	5	5
2706009000	기타	5	5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pitch)	5	15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15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	0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	0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	0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	0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	0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	0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	0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	0
2709001090	기타	3	0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0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0
2710124000	나프타	0	0
2710125000	엔・지・엘(NGL)	0	0
2710129000	기타	5	1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5
2710191090	기타	5	10
2710192010	등유	3	15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15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5
2710192090	기타	5	5
2710193000	경유	3	15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	10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3	5
2710194030	벙커시유	3	10
2710194090	기타	5	5
2710195010	조유(粗油)	7	5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5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5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5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5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15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5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5
2710197230	기어오일	7	5
2710197240	터빈오일	7	5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5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5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5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	5
2710197420	절삭유	7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10197430	세척유	7	5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5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5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5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5
2710197540	열매체유	7	5
2710197900	기타	7	5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5
2710198090	기타	8	5
2710199000	기타	8	5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0
2710201040	나프타	0	0
2710201050	엔・지・엘(NGL)	0	0
2710201090	기타	5	0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0
2710209190	기타	5	0
2710209210	등유	5	0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0
27102092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0
2710209290	기타	5	0
2710209300	경유	5	0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	0
2710209420	중유(벙커비유)	5	0
2710209430	벙커시유	5	0
2710209490	기타	5	0
2710209510	조유(粗油)	7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0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0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0
2710209723	기어오일	7	0
2710209724	터빈오일	7	0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0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7	0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0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0
2710209741	방청유	7	0
2710209742	절삭유	7	0
2710209743	세척유	7	0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0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0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0
2710209753	열처리유	7	0
2710209754	열매체유	7	0
2710209790	기타	7	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90	기타	8	0
27102099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 및 벙커시유의 것	3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5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0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 및 벙커시유의 것	3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5
2711110000	천연가스	3	15
2711120000	프로판	3	15
2711130000	부탄	3	15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10
2711210000	천연가스	3	15
2711290000	기타	5	0
2712101000	바셀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12109000	기타	8	5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5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5
2712901090	기타	8	5
2712909010	몬탄왁스	8	5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5
2712909090	기타	8	10
271311000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5	5
2713120000	하소(煆燒)한 것	5	1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青)	5	5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青質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5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cut-back)	5	0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瀝青)·피치(pitch) 또는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10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0
2715009000	기타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5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03009019	기타	5.5	5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1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	10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1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5
2805301000	세륨그룹	5.5	5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5
2805400000	수은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10
2807001090	기타	5.5	1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9201090	기타	5.5	5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1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5
2811119000	기타	5.5	1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5
281119909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5
2811229010	실리카겔	5.5	5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5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5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15110000	고체	5.5	0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E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E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5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15
2818309000	기타	5.5	2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3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5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1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구리	5.5	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5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1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5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5
2827200000	염화칼슘	5.5	5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5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구리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5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5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술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술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5	15
2833229000	기타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5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5	15
2833292090	기타	5.5	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5	15
2833293090	기타	5.5	5
2833299000	기타	5.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5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5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5
2835101090	기타	5.5	1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5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5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5
2836400000	탄산칼륨	5.5	E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5	15
2836991039	기타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안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안화구리	5.5	0
2837191030	시안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5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안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안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5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5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0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5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5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0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1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5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5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10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6.5	5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5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겹염이나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15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5
2849909090	기타	5.5	5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5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1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8.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00호의 것	5.5	0
2852102000	소호 제2918.11호, 제2931.00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또는 제3822.00.2091호의 것	6.5	5
2852103000	소호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또는 제3822.00.2092호의 것	6.5	0
2852104000	소호 제3502.90호 또는 제3504.00호의 것	8	0
2852105000	소호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또는 제3822.00.2093호의 것	0	0
2852106000	소호 제3822.00.1099호 또는 제3822.00.2099호의 것	8	0
2852901000	소호 제2830.90호, 제2835.39호, 제2842.10.9000호, 제2848.00호, 제2849.90호 또는 제2850.00호의 것	5.5	0
2852902000	소호 제2842.10.1000호, 제2934.99.2000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호, 제3824.90.2100호, 제3824.90.2200호 또는 제3824.90.2490호부터 제3824.90.9090호까지의 것	6.5	0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15
2852904000	소호 제3502.90호 또는 제3504.00호의 것	8	15
2853001000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amalgam)	5.5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004090	기타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5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5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5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5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5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1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5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5.5	10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5	1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0
29037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0
29037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5.5	0
2903771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03772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773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0
290377401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5.5	0
290377402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5.5	0
290377500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0
2903776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5.5	0
2903776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5.5	0
2903777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0
2903777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0
2903777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0
2903777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0
2903777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5.5	0
2903777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0
2903777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0
2903779000	기타	5.5	5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0
29037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0
290379112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0
2903791290	기타	5.5	5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799000	기타	5.5	5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0
2903890000	기타	5.5	10
29039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919000	기타	5.5	5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2903991000	염화벤질	5.5	5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992090	기타	5.5	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999000	기타	5.5	5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5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5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5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5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905122090	기타	5.5	0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10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10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롤・로디놀 및 네롤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10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5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20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E
2905450000	글리세롤	8	10
2905490000	기타	5.5	1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10
2906110000	멘톨	5.5	1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5
2906191000	보르네올	5.5	1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1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5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1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0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0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5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10
2909199000	기타	5.5	5
2909201000	시네올	5.5	0
2909209000	기타	5.5	5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5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2909499000	기타	5.5	10
2909501000	오이게놀	5.5	5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5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1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5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5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1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E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틀알	5.5	1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1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1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1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1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5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1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1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5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0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4199000	기타	5.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5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5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1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5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5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E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5
2915291000	초산칼슘	5.5	5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E
2915320000	초산비닐	5.5	5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1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1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1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1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5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5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5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5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1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1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1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5
2915702090	기타	5.5	1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1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10
2915909090	기타	5.5	10
2916111000	아크릴산	6.5	10
2916119000	기타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5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15
2916129000	기타	6.5	5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0
2916139000	기타	6.5	1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10
2916149000	기타	6.5	1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6.5	0
2916190000	기타	6.5	1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10
2916311000	벤조산	6.5	1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1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5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5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1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1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6399090	기타	6.5	10
2917111000	옥살산	6.5	1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1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5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 디노닐	6.5	5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5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E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5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5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5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5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40000	시트르산	6.5	1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5
2918151090	기타	6.5	1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61000	글루콘산	6.5	5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1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5
2918191090	기타	6.5	1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5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10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5
2918212090	기타	6.5	5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5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5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1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1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1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5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0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1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5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5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909090	기타	6.5	5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5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1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E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헥실아민	6.5	5
2921309000	기타	6.5	5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5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5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5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5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5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5
2921519090	기타	6.5	5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5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2199000	기타	6.5	5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5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5
2922411000	리신	6.5	5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5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10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10
2922492000	알라닌	6.5	10
2922493000	류우신	6.5	5
2922494000	바린	6.5	1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10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5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2499000	기타	6.5	10
2922501000	세린	6.5	1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1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10
2923101000	콜린	6.5	1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5
2923201000	레시틴	6.5	5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900000	기타	6.5	10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5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5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1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219000	기타	6.5	1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10
2924291090	기타	6.5	5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1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299099	기타	6.5	10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5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5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5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1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5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5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5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1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5
2929901000	이소시안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10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10
2930202090	기타	6.5	1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5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902099	기타	6.5	1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5
2930903020	티오페놀	6.5	5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	6.5	5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5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0909030	시스테인	6.5	10
2930909040	시스틴	6.5	10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1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10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및 테트라에칠납	6.5	0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6.5	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1099	기타	6.5	1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902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1902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5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2919	기타	6.5	5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903090	기타	6.5	0
2931904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20	메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40	에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90	기타	6.5	5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9099	기타	6.5	1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5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5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1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10
2932201010	쿠마린	5	0
2932201020	메틸쿠마린	5	0
2932201030	에틸쿠마린	5	0
2932209010	노나락톤	5	0
2932209020	운데카락톤	5	0
2932209030	부티로락톤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2209040	산토닌	5	0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209099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5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1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5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5
2933119030	설피린	6.5	5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5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5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5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5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5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10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5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299090	기타	6.5	10
2933311000	피리딘	6.5	1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10
2933321000	피페리딘	6.5	1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5
29333300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5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5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399090	기타	6.5	10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5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1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6.5	1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5
2933591910	피리미딘	6.5	1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10
2933592010	피페라진	6.5	5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5
2933592090	기타	6.5	10
2933599000	기타	6.5	10
2933610000	멜라민	6.5	5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5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0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1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10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999090	기타	6.5	15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5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6.5	10
2934991000	모르포린	6.5	5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1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10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999090	기타	6.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0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0
2935007000	술파메톡신	6.5	0
2935008010	술파민	6.5	0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0
2935008030	술파디이아진	6.5	0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0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0
2935008090	기타	6.5	10
293500902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10
2936210000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6.5	10
29362200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6.5	10
29362300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6.5	1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10
29362500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6.5	10
29362600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6.5	5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1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5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5
2936279000	기타	6.5	10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10
2936289000	기타	6.5	10
2936291010	비타민 B9	6.5	5
2936291090	기타	6.5	10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6.5	5
2936293000	비타민 H와 그 유도체	6.5	5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6.5	10
2936299000	기타	6.5	1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5
2936909000	기타	6.5	5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5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나 제2918.9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0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0
2937902990	기타	0	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0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8909000	기타	6.5	10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90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에크코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10
2940001090	기타	6.5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1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5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5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0
2941109090	기타	6.5	10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1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1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5
2941309000	기타	6.5	1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10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10
2941509000	기타	6.5	1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10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0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10
2942001000	케텐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1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불린(globulin)	0	0
300210300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09030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또는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109040	소호 제2937.90.9000호의 것	0	0
3002109050	소호 제3002.90.3020호의 것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2903020	리신(ricin)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7000	제2933.29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908000	제3002.10.1000호, 제3002.10.20호 또는 제3002.10.3000호의 것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8	0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1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0
3003401000	항암제	8	5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0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	5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0
3003909600	로열젤리 제제	8	0
3003909900	기타	8	1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1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4399000	기타	8	0
3004401000	항암제	8	0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크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10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	0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0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	0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	0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	1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4909300	녹용제제	8	0
3004909400	인삼제제	8	0
3004909500	로얄제리 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10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15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6922032	리신(ricin)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것	8	0
3006924000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guano)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0
3102109000	기타	6.5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5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0
3103903000	그 밖의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5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15
310520000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15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15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15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15
3105590000	기타	6.5	15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15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15
3105909000	기타	6.5	15
3201100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5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30	수마크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6.5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6.5	0
3203001920	백단향(白檀香)	6.5	0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6.5	0
3203002020	커미즈(kermes)	6.5	0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0
3204119000	기타	8	15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 및 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6.5	5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3204901090	기타	6.5	0
3204909000	기타	6.5	5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5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10
3206190000	기타	6.5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6.5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0
320810200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0
32082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0
3208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2091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0
3209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arnish)	6.5	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6.5	0
3210002030	역청질·피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6.5	0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6.5	0
3210003090	기타	6.5	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물감	6.5	0
3213102000	수성 물감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물감	6.5	0
3213902000	수성 물감	6.5	0
3213909000	기타	6.5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6.5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	6.5	0
3215190000	기타	6.5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	6.5	0
3215904020	수성	6.5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	6.5	0
3215906020	수성	6.5	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5
3301130000	레몬유	5	5
3301190000	기타	5	5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5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5
3301291000	바닐라유	5	5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5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5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5
3301299000	기타	5	5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10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10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10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10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20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15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20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20	E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E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E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10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15
3301904800	기타	8	20
3302101000	식품공업용	5	1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15
3302102019	기타	8	5
3302102090	기타	5	10
3302900000	기타	6.5	0
3303001000	향수	6.5	10
3303002000	화장수	6.5	10
3304101000	립스틱	6.5	10
3304109000	기타	6.5	10
3304201000	아이섀도	6.5	10
3304209000	기타	6.5	10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5
3304309000	기타	6.5	5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6.5	10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1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10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1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304999000	기타	6.5	10
3305100000	샴푸	5	5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10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10
3305901000	헤어린스	5	5
3305902000	헤어크림	5	5
3305909000	기타	5	10
3306100000	치약	6.5	0
3306201011	70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5
3306201019	기타	8	1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1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10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6.5	5
3307109000	기타	6.5	1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1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1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0
3307490000	기타	6.5	0
3307901000	탈모제	6.5	0
3307902000	향낭	6.5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0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10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0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펠트(felt)와 부직포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0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10
3402110000	음이온성	8	5
3402120000	양이온성	8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5
3402190000	기타	8	0
3402201000	조제 세제	5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6.5	0
3402209000	기타	6.5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0
3402902000	조제 세제	5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999000	기타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0
3404902000	조제 왁스	6.5	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1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1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5
3501109000	기타	20	10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5
3501901190	기타	20	10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10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10
3502110000	건조한 것	8	E
3502190000	기타	8	E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2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502909000	기타	8	20
3503001010	젤라틴	8	5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5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5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10
3504001010	펩톤(peptone)	8	5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5
3504002010	케라틴	8	5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5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10
3504002090	기타	8	1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5
3505101000	덱스트린	8	E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20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20
3505104010	식품용	385.7	E
3505104090	기타	385.7	E
3505105010	식품용	385.7	E
3505105090	기타	385.7	E
3505109010	식품용	385.7	E
3505109090	기타	385.7	E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2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20
3505209000	기타	201.2	20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9000	기타	6.5	0
350691000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6.5	0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506999000	기타	6.5	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0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펩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틱효소	6.5	0
3507908000	시토크롬 시(C) 산화효소	6.5	0
3507909000	기타	6.5	10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0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5
3604909000	기타	6.5	0
3605001000	황린(黃燐) 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액화가스 연료		
3606901010	메타 연료	6.5	0
3606901020	헥사민	6.5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3606902010	라이터 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 돌	6.5	0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	6.5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30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309910	천문용	6.5	0
370130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3	0
3701309999	기타	6.5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19910	천문용	6.5	0
370191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1999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199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99910	천문용	6.5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99990	기타	6.5	0
3702100000	엑스선용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2311110	네거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거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거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19090	기타	6.5	0
3702321110	네거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3702321210	네거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거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거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거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거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239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99090	기타	6.5	0
3702411010	네거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19090	기타	6.5	0
3702421010	네거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5
37024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29090	기타	6.5	0
3702431010	네거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3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3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39090	기타	6.5	0
3702441010	네거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4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거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25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29090	기타	6.5	0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6.5	0
3702541010	네거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거티브	6.5	0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5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5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59090	기타	6.5	0
3702561010	네거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6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6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69090	기타	6.5	0
3702961010	네가티브	6.5	0
3702961020	포지티브	6.5	0
370296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296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6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69090	기타	6.5	0
3702971010	네가티브	6.5	0
3702971020	포지티브	6.5	0
370297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7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7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79090	기타	6.5	0
3702981010	네가티브	6.5	0
3702981020	포지티브	6.5	0
370298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8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8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89090	기타	6.5	0
3703101010	엑스선용	6.5	0
3703101020	심전계용	6.5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1040	기록용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10	엑스선용	6.5	0
3703109020	심전계용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9040	기록용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	6.5	0
3703202000	심전계용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204000	기록용	6.5	0
3703209000	기타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3901000	엑스선용	6.5	0
3703902000	심전계용	6.5	0
37039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904000	기록용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10	뉴스용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 및 직물	6.5	0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0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	0	0
3705909020	천문용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	0	0
37059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195원/m 또는 6.5%	0
3706102000	뉴스용	4원/m 또는 6.5%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0
3706105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0
3706105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0
3706106010	네거티브	1,560원/m 또는 6.5%	0
3706106020	포지티브	260원/m 또는 6.5%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9원/m 또는 6.5%	0
3706902000	뉴스용	5원/m 또는 6.5%	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0
3706905010	네거티브	25원/m 또는 6.5%	0
3706905020	포지티브	8원/m 또는 6.5%	0
3706906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0
3706906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2910	엑스선용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3910	엑스선용	6.5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0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0
3801109000	기타	6.5	1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5
3801900000	기타	6.5	5
3802100000	활성탄	6.5	5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3802901090	기타	6.5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rosin)	6.5	10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5
3806902000	런검(gum)	6.5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5
3807001000	목(木)타르・목(木)타르유와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6.5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10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15
3808509000	기타	6.5	15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15
3808919000	기타	6.5	1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10
3808931000	제초제	6.5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15
3808940000	소독제	6.5	0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붙임·땜질이나 용접용의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5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5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5
381220000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5
381230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5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0
3815199000	기타	6.5	5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5
3815909000	기타	6.5	5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1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5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5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나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5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15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101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109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201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209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9	기타	8	15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및 제3706.90.6020호의 것	182원/m 또는 6.5%	0
3822003059	제3706.10.2000호 및 제3706.90.2000호의 것	4원/m 또는 6.5%	0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및 제3706.90.4000호의 것	26원/m 또는 6.5%	0
3822003061	제3706.10.3020호 및 제3706.90.3020호의 것	468원/m 또는 6.5%	0
3822003062	제3706.10.3030호 및 제3706.90.3030호의 것	78원/m 또는 6.5%	0
3822003063	제3706.10.5010호 및 제3706.90.6010호의 것	1,092원/m 또는 6.5%	0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1,560원/m 또는 6.5%	0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260원/m 또는 6.5%	0
3822003066	제3706.90.1000호 및 제3706.90.5020호의 것	8원/m 또는 6.5%	0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25원/m 또는 6.5%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1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10
3824400000	시멘트용・ 모르타르용이나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E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10
3824790000	기타	6.5	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조제품이나 세라믹솔리드 저항 조제품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49024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4902490	기타	6.5	15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에스-2-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이나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이나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9	기타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이나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30	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기타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0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5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0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0
3824907500	조제 탄산칼슘	6.5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09030	추잉껌 베이스	6.5	0
382490905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824909061	니코틴을 함유한 것	6.5	0
3824909069	기타	6.5	0
3824909090	기타	6.5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과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0
3901109000	기타	6.5	0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0
3903110000	발포성	6.5	10
3903190000	기타	6.5	1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3903909000	기타	6.5	5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15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1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5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1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0
3905990000	기타	6.5	1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1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15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07309000	기타	6.5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1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5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5
3908900000	기타	6.5	0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	6.5	10
3909400000	페놀수지	6.5	5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5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10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5
3910009090	기타	6.5	0
3911101000	석유수지	8	0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6.5	5
3911902000	폴리술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5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10
3912319000	기타	6.5	1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12399000	기타	6.5	1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1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3914009000	기타	6.5	5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과 박(箔) 상태의 것	6.5	5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와 호스 상태의 것	6.5	5
3915109000	기타	6.5	5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5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5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15909000	기타	6.5	5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16909000	기타	6.5	5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5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5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17299000	기타	6.5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39000	기타	6.5	5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7399000	기타	6.5	5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5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18109000	기타	6.5	5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5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5
3919900000	기타	6.5	5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15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5
3920490000	기타	6.5	5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6.5	5
3920590000	기타	6.5	5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5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5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5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5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1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5
3920799000	기타	6.5	5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5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5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5
3920991000	항공기용	6.5	5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5
3920999090	기타	6.5	5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5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5
3921191090	기타	6.5	5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5
3921192090	기타	6.5	5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6.5	5
3921193090	기타	6.5	5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5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5
3921194090	기타	6.5	5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5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1195090	기타	6.5	5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5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5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5
3921199090	기타	6.5	5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5
3921904010	경질의 것	6.5	5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6.5	5
3921905090	기타	6.5	5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5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5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5
3921906090	기타	6.5	5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5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1907090	기타	6.5	5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5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5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5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5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5
3921909090	기타	6.5	15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22102000	세면대	6.5	5
3922103000	설거지통	6.5	5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5
3922901000	비데	6.5	5
3922909000	기타	6.5	5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15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15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15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15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5
3923900000	기타	6.5	15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5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5
3924902000	탁상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5
3924909000	기타	6.5	5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5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5	5
3925900000	기타	6.5	1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와 앨범	6.5	0
3926109000	기타	6.5	1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과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10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10
3926902000	부채와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과 자루(살과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5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5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5
3926909000	기타	6.5	15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4001211000	알 · 에스 · 에스 1엑스	0	0
4001212000	알 · 에스 · 에스 1호	0	0
4001213000	알 · 에스 · 에스 2호	0	0
4001214000	알 · 에스 · 에스 3호	0	0
4001215000	알 · 에스 · 에스 4호	0	0
4001216000	알 · 에스 · 에스 5호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0
4002201000	라텍스	8	0
4002209000	기타	8	0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0
4002590000	기타	8	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1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10
4005101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8	10
4005109000	기타	8	5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8	1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5
4005999000	기타	8	1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과 와셔	8	10
4006905000	고무실	8	0
4006909000	기타	8	5
4007001000	고무실	5	5
4007002000	고무끈	8	5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5
4008119000	기타	8	1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5
4008199000	기타	8	5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5
4008219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10
4008299000	기타	8	1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1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5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1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1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1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1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1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1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1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10
4010199000	기타	8	1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5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둘레가 15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4010390000	기타	8	1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5	15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5	15
4011109000	기타	5	15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15
4011201090	기타	5	15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15
4011202090	기타	5	15
4011209000	기타	5	15
4011300000	항공기용	5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5	0
4011500000	자전거용	5	0
40116100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15
401162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15
401163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15
4011690000	기타	5	15
40119200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15
401193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15
401194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15
4011990000	기타	5	15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5
401212000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8	0
4012130000	항공기용	5	0
4012190000	기타	8	5
4012201000	항공기용	5	5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용을 포함한다]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8	5
4012209090	기타	8	5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1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10
4012909090	기타	8	5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310200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8	0
4013200000	자전거용	8	0
4013901000	항공기용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이나 모터스쿠터용	8	0
4013909020	산업용이나 농경용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젖꼭지	8	5
4014909000	기타	8	10
4015110000	외과용	8	0
4015190000	기타	8	15
4015901000	잠수복	8	5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10
4015909000	기타	8	1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10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8	10
4016920000	지우개	8	5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1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10
4016952000	베개	8	10
4016953000	쿠션	8	10
4016959000	기타	8	10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15
4016992000	고무밴드	8	10
4016993000	병마개	8	10
4016999000	기타	8	15
4017001000	경질고무	8	1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1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19	기타	0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29	기타	0	0
4101501090	기타	0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901011	송아지의 원피	0	0
4101901019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0
4101901099	기타	0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201010	뱀의 원피	0	0
4103201020	도마뱀의 원피	0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0
4103201090	기타	0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0
4103901090	기타	0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3	0
4103902090	기타	3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5
4104190000	기타	3	5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5
4104490000	기타	3	5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5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5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5
4107190000	기타	5	1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10
4107990000	기타	5	10
4112000000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1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5	5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5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0
4113900000	기타	5	5
411410000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5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5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5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0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5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8	0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90	기타	8	10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1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10
4202121090	기타	8	1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15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199000	기타	8	1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90	기타	8	20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10
4202221090	기타	8	1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1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299000	기타	8	1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90	기타	8	10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1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1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10
4202321090	기타	8	1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1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90	기타	8	10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1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10
4202921090	기타	8	1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15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202999000	기타	8	10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5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5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5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1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1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catgut)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0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0
4301805000	토끼의 것	3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0
4301809000	기타	3	0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0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5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1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1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1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1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16	1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1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1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1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1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10
4303102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1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10
4303900000	기타	16	10
4304001000	인조모피	8	1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10
4401100000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2	10
4401210000	침엽수류	2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0
4401229000	기타	2	10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2	0
4401390000	기타	2	0
4402101000	성형 목탄	2	5
4402109000	기타	2	5
4402901000	성형 목탄	2	5
4402909000	기타	2	5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02000	활엽수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0	0
4403202020	헴록(Hemlock)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0	0
4403492010	티크(Teak)	0	0
4403492020	케루잉(Keruing)	0	0
4403492030	카풀(Kapur)	0	0
4403492040	제루통(Jelutong)	0	0
4403492090	기타	0	0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팰리(Sapelli)·시뽀(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와 이로코(Iroko)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와 아조베(Azobé)	0	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Malas)	0	0
4403999012	타운(Taun)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5	10
4404109000	기타	5	10
4404202000	목재의 봉	5	10
4404209000	기타	5	10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10
4406100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5	10
4406900000	기타	5	10
4407101000	삼나무	5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07102000	미송	5	20
4407103000	적송	5	PR-20
4407104000	전나무	5	PR-20
4407105000	낙엽송	5	15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20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E
4407109000	기타	5	E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15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와 발사(Balsa)	5	1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15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5	15
4407270000	사팰리(Sapelli)	5	10
4407280000	이로코(Iroko)	5	10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과 켐파스(Kempas)	5	15
4407292000	티크(Teak)	5	10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뽀(Sipo)·아까주다 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와 아조베(Azobé)	5	10
4407299000	기타	5	20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PR-20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10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20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10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E
4407991010	자단(rosewood)	5	10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07991040	호두나무	5	20
4407991090	기타	5	15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10
4407993010	사시나무	5	10
4407993020	포플러	5	10
4407993040	느릅나무	5	15
4407993050	자작나무	5	15
4407993060	피나무	5	15
4407994000	오동나무	5	15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20
4407999090	기타	5	E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0
4408109100	합판 제조용	3	0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10
4408109920	미송	5	10
4408109930	적송	5	10
4408109940	전나무	5	10
4408109950	낙엽송	5	10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10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10
4408109990	기타	5	10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0
4408319011	합판 제조용	3	0
4408319012	무늬목	3	10
4408319019	기타	5	10
4408319021	합판 제조용	3	0
4408319022	무늬목	3	10
4408319029	기타	5	10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사한 적층 목재용		
4408399011	합판 제조용	3	0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10
4408399021	합판 제조용	3	10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10
4408399031	합판 제조용	3	0
4408399032	무늬목	3	5
4408399039	기타	5	10
4408399041	합판 제조용	3	0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10
4408399051	합판 제조용	3	0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10
4408399091	합판 제조용	3	0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10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0
4408909150	합판 제조용	3	0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Rosewood)	5	10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10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10
4408909194	호두나무	5	10
4408909195	참나무	5	10
4408909199	기타	5	10
4408909210	합판 제조용	3	0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08909370	합판 제조용	3	0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10
4408909392	포플러	5	10
4408909393	단풍나무	5	10
4408909394	느릅나무	5	10
4408909395	자작나무	5	10
4408909396	피나무	5	10
4408909410	합판 제조용	3	10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10
4408909912	합판 제조용	3	0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baboen)	5	10
4408909919	기타	5	10
4408909991	합판 제조용	3	0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10
4409100000	침엽수류	8	E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15
4409290000	기타	8	E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20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20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20
4410119000	기타	8	20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4410129000	기타	8	15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441019109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20
4410199090	기타	8	20
4410900000	기타	8	20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5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1129000	기타	8	15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5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1139000	기타	8	PR-20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5
4411142010	마루판	8	PR-20
4411142090	기타	8	E
4411149000	기타	8	PR-20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PR-20
4411922010	마루판	8	E
4411922090	기타	8	15
4411929000	기타	8	E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E
4411932010	마루판	8	PR-20
4411932090	기타	8	15
4411939000	기타	8	15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5
4411949000	기타	8	E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5
4412102000	마루판	8	PR-20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5
441210909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1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1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E
441231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1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1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2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2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2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2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E
441232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2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2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9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91090	기타	10	E
4412399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5
4412399090	기타	10	PR-20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8	E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8	E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8	15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PR-20
4412991019	기타	8	15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20
4412991029	기타	8	15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PR-20
4412991039	기타	8	15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1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한정한다]		
4412991042	마루판(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5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
4412991049	기타	8	15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2090	기타	8	15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20
4412993090	기타	8	15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PR-20
4412999119	기타	8	15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20
4412999199	기타	8	15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PR-20
4412999219	기타	8	15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PR-20
4412999299	기타	8	15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2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20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8	20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 및그 밖	8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8	20
4418100000	창・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15
4418200000	문・문틀과 문지방	8	15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15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15
4418600000	기둥과 들보	8	15
441871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19000	기타	8	15
441872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29000	기타	8	15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99000	기타	8	15
4418901000	셀룰러우드패널	8	15
4418909000	기타	8	20
4419001000	대접(공기)	8	15
4419002010	대나무로 만든 것	8	15
4419002090	기타	8	15
4419009000	기타	8	15
4420101000	작은 조각상	8	15
4420109000	기타	8	15
442090100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5
4420902010	담배상자	8	15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5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5
4420902090	기타	8	15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5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5
4420909090	기타	8	15
4421100000	옷걸이	8	15
4421901010	보빈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421901090	기타	8	15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와 신발용의 나무 못	8	15
4421903000	이쑤시개	8	15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5
442190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과 자루(살과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5
4421909000	기타	8	15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5
4501900000	기타	8	15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15
4503100000	마개	8	15
4503900000	기타	8	15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15
4504900000	기타	8	15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5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5
4602112000	쟁반·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	15
4602119000	기타	8	15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15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0269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9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401000	자루(sack)용	0	0
4808409000	기타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2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이나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0
4811901010	괘선·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린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나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와 다이알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나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또는 5,276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	0
5002001020	20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30	25.56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40	28.89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0
5002009000	기타	8	0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	0
5003001200	풀솜	2	0
5003001300	비수	2	0
5003001400	생피저	2	0
5003001900	기타	2	0
5003009100	페니	2	0
5003009200	견노일(부렛)	2	0
50030099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0
5005001000	견수방사	4	0
5005002000	견방사	4	0
5005003000	견방주사	4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8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5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5
5007202030	크렙 데신(crepe de chine)	13	5
5007202090	기타	13	5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51040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 (garnetted stock)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105291000	순모울톱	0	0
5105292000	혼방울톱	0	0
5105293000	조사	0	0
5105299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PR-30
5106109000	기타	8	PR-3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PR-3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PR-3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PR-10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PR-30
5106209000	기타	8	PR-30
5107101000	순모의 것	8	E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E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15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15
5109101000	양모사	8	15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15
5109901000	양모사	8	15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15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PR-3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PR-1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PR-1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PR-10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E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E
5111900000	기타	13	E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E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E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E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E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E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E
5112900000	기타	13	E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15
5201001000	실면(實綿)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E
5204190000	기타	8	E
5204200000	소매용	8	10
5205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119000	기타	8	10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5205121090	기타	8	E
5205129000	기타	8	E
5205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139000	기타	8	E
5205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149000	기타	8	E
5205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159000	기타	8	E
5205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219000	기타	8	10
5205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29000	기타	8	E
5205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39000	기타	8	E
5205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49000	기타	8	E
52052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69000	기타	8	E
52052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79000	기타	8	E
52052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289000	기타	8	E
5205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319000	기타	8	10
52053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2	10
5205321090	기타	8	10
5205329000	기타	8	15
5205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205339000	기타	8	15
5205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349000	기타	8	15
5205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359000	기타	8	15
5205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5419000	기타	8	10
5205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5429000	기타	8	15
5205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5439000	기타	8	15
5205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5449000	기타	8	15
52054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5469000	기타	8	15
52054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479000	기타	8	E
52054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5489000	기타	8	E
5206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6119000	기타	8	10
52061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6129000	기타	8	E
5206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139000	기타	8	E
5206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149000	기타	8	E
5206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159000	기타	8	E
5206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19000	기타	8	0
5206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206229000	기타	8	E
5206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6239000	기타	8	E
5206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6249000	기타	8	E
52062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E
5206259000	기타	8	E
5206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319000	기타	8	10
52063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329000	기타	8	15
5206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339000	기타	8	15
5206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349000	기타	8	15
5206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359000	기타	8	15
5206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0
5206419000	기타	8	10
5206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6429000	기타	8	15
5206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6439000	기타	8	15
5206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6449000	기타	8	15
52064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6459000	기타	8	15
52071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	10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로 한정한다)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52081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1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52082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1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PR-1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5
52083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PR-10
5208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52085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208599000	기타	10	PR-1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15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2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09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420000	데님(denim)	10	E
5209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5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5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101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199000	기타	10	1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102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299000	기타	10	5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10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04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499000	기타	10	10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10
5211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PR-1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1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1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1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1420000	데님(denim)	10	E
5211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5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1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5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5
5212120000	표백한 것	10	1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1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PR-1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1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212230000	염색한 것	10	5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PR-3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0
5301290000	기타	2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2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5001010	생 것	2	0
5305001090	기타	2	0
5305002010	생 것	2	0
5305002090	기타	2	0
5305003010	생 것	2	0
5305003090	기타	2	0
5305009010	생 것	2	0
530500909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1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10
5306201000	순아마사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10
5307101000	황마사	8	10
5307109000	기타	8	10
5307201000	황마사	8	10
5307209000	기타	8	1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10
5308200000	대마사	8	10
5308901000	라미(ramie)사	8	10
5308909000	기타	8	1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10
5401109000	기타	8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1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15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15
5402191012	어망사	8	15
5402191019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10
5402191022	어망사	8	10
5402191029	기타	8	10
5402191090	기타	8	15
5402199000	기타	8	1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8	PR-30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	E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	10
5402311090	기타	8	E
5402319000	기타	8	E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	1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15
5402339000	기타	8	E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5
5402440000	탄성사	8	E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	E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	15
5402451090	기타	8	E
5402459000	기타	8	E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E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10
5402479000	기타	8	E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10
5402499000	기타	8	1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5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1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1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1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19000	기타	1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29000	기타	1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10
5403411000	텍스처드사	1	0
5403419000	기타	1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0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1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1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E
5407420000	염색한 것	8	E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1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E
5407520000	염색한 것	8	E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10
5407540000	날염한 것	8	5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E
5407612000	염색한 것	8	E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
5407614000	날염한 것	8	5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E
5407692000	염색한 것	8	E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
5407694000	날염한 것	8	5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1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1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5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5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1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5
5407829000	기타	8	5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5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1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1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5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E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408220000	염색한 것	8	E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E
5408320000	염색한 것	8	E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
5408340000	날염한 것	8	5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1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5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7.5	0
5502002010	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10
5502002020	44,000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19000	기타	8	1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15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10
5503209090	기타	8	15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1090	기타	8	5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1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0
5504109000	기타	1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2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5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E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E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E
5508109000	기타	8	E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E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E
5508209000	기타	8	E
5509111000	강력사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09119000	기타	8	10
5509121000	강력사	8	10
5509129000	기타	8	10
5509211000	강력사	8	10
5509219000	기타	8	15
5509221000	강력사	8	10
5509229000	기타	8	1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15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5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15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5
5509410000	단사	8	1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10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15
550952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10
550953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8	15
5509590000	기타	8	15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15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5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15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5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15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5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10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1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10
5509919000	기타	8	1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10
5509929000	기타	8	10
5509990000	기타	8	1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15
5510119000	기타	8	15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15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15
5510129000	기타	8	15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15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15
5510209000	기타	8	15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15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15
5510309000	기타	8	15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15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15
5510909000	기타	8	15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5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15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1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1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5
5512999000	기타	10	1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1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1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1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1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10
5513239000	기타	10	1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1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1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5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1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1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10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1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5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1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1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1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1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5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1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5515119000	기타	10	15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5515129000	기타	10	E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515139000	기타	10	1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515199000	기타	10	1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15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1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5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5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5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1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1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1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1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5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1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1290000	기타	8	1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10
5601309000	기타	8	1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1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1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8	5
5602219000	기타	8	E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10
5602900000	기타	8	1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10
5603119000	기타	8	1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10
5603129000	기타	8	E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10
5603139000	기타	8	15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10
5603149000	기타	8	10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	10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	8	E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	8	E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8	1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5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1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0
5606009000	기타	8	1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1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1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10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1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10
5608119000	기타	10	1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10
5608199000	기타	10	1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5
5608909000	기타	10	5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5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10
5609009000	기타	8	5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5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1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E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1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0
57032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15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1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E
5801101000	파일(pile)직물	13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1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1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5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5801272000	절단된 것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5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1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1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801372000	절단된 것	13	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1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0
5802190000	기타	8	5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5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5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5
5804109000	기타	13	5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5
5804299000	기타	13	1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8	5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1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1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물(볼덕)		
5807101000	레이블(label)	8	10
5807109000	기타	8	5
5807901000	레이블(label)	8	10
5807909000	기타	8	5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1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8	5
5808909000	기타	8	5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5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8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15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15
5902900000	기타	8	1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15
5903900000	기타	10	15
5904100000	리놀륨	8	0
5904900000	기타	8	5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10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0
5906990000	기타	8	5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5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0
5907009000	기타	8	5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E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8	0
5911109000	기타	8	5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E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	5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	1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10
5911900000	기타	8	1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0
6001109000	기타	1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1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5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1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5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5
6002900000	기타	10	5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1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5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15
6004900000	기타	10	5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5220000	염색한 것	10	5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240000	날염한 것	10	5
6005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E
6005320000	염색한 것	10	E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340000	날염한 것	10	5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5420000	염색한 것	10	5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440000	날염한 것	10	5
6005900000	기타	10	1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006220000	염색한 것	10	15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1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1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E
6006320000	염색한 것	10	E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1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1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E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6440000	날염한 것	10	5
6006900000	기타	10	1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5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5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4199000	기타	13	1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04499000	기타	13	1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E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105909000	기타	13	1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E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6909000	기타	13	10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5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7999000	기타	13	1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8199000	기타	13	1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08999000	기타	13	10
6109101000	티셔츠	13	15
6109109000	기타	13	10
6109901010	티셔츠	13	10
6109901090	기타	13	10
6109902010	티셔츠	13	10
6109902090	기타	13	10
6109903010	티셔츠	13	20
6109903090	기타	13	15
6109909010	티셔츠	13	15
6109909090	기타	13	15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2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3	10
6110190000	기타	13	1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2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10909000	기타	13	10
6111201000	의류	8	10
6111202000	부속품	8	10
6111301000	의류	8	10
6111302000	부속품	8	10
6111901000	의류	8	10
6111902000	부속품	8	1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209000	기타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	10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	10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	1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14909000	기타	13	1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1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5309000	기타	13	1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15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15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10
6116929000	기타	8	1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15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1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117109000	기타	13	10
6117801000	넥타이류	13	10
6117809000	기타	13	10
6117900000	부분품	13	1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PR-1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PR-1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5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E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203299000	기타	13	1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E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E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E
6203429000	기타	13	E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E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5
6204199000	기타	13	1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5
6204299000	기타	13	10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5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4399000	기타	13	1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5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4499000	기타	13	10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E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4599000	기타	13	E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E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PR-10
6204629000	기타	13	PR-1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PR-1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4699000	기타	13	PR-10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E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5909000	기타	13	1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1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E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E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199000	기타	13	1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5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7999000	기타	13	10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5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8199000	기타	13	1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5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1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08999000	기타	13	10
6209201000	의류	8	10
6209202000	부속품	8	10
6209301000	의류	8	10
6209302000	부속품	8	1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10
6209901090	기타	8	10
6209902000	부속품	8	10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5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1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119000	기타	13	1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129000	기타	13	5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209000	기타	13	1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10
6211329000	기타	13	1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11399000	기타	13	1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5
6211429000	기타	13	1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10
6211499000	기타	13	1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2109000	기타	13	1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212209000	기타	13	1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212900000	기타	13	1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5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5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1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1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1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1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1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1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1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10
621600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10
6216009000	기타	8	10
6217100000	부속품	13	15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1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1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1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1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1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2109000	기타	13	1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5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1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한정한다)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5
6303199000	기타	13	5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5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5
6304190000	기타	13	1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5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1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1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10
6305100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8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5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15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10
6305390000	기타	8	1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300000	돛	13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0
6306909000	기타	13	10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10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10	1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1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0
6307909000	기타	10	10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와 스노보드부츠	13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402190000	기타	13	1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1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10
640299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13	10
6402999000	기타	13	E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와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1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10
6403911000	드레스화	13	10
6403912000	등산화	13	1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1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13	5
6403919000	기타	13	10
6403991000	드레스화	13	10
6403992000	등산화	13	1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13	10
6403999000	기타	13	E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	13	PR-3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와 유사한 것		
6404191000	실내화	13	10
6404199000	기타	13	E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PR-3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10
6406202000	뒷굽	8	0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8	0
6406909020	힐 쿠션	8	0
6406909030	각반	8	0
6406909040	레깅스	8	0
640690909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5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505001000	헤어네트	8	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505009021	운동모	8	10
6505009022	베레모	8	0
6505009029	기타	8	10
6505009090	기타	8	10
6506100000	안전모자	8	1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6506999000	기타	8	10
65070000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과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1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15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8	0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5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5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1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1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8	0
6702909000	기타	8	10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1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1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5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680100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1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과 가루	8	10
6802211000	대리석	8	10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1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5
6802230000	화강암	8	10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10
6802299000	기타	8	10
6802911000	대리석	8	1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1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1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10
6802930000	화강암	8	E
6802990000	그 밖의 돌	8	15
6803001000	벼루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803009000	기타	8	15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5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15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8	5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5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5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15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E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vermiculite)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E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0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15
6809190000	기타	8	5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5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신주	8	0
6810994000	철도 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91000	관・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9000	기타	8	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과 모자류	8	0
6812802000	종이・표지용 판지와 펠트(felt)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 인팅(jointing)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과 모자류	8	0
6812920000	종이・표지용 판지와 펠트(felt)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인팅(jointing)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15
6901001000	벽돌	8	5
6901002000	블록	8	5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5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15
690220000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5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6902909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8	5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5
6903102090	기타	8	5
6903103000	반응그릇	8	5
6903104000	머플	8	5
6903105000	노즐	8	5
6903106000	플러그(plug)	8	5
6903107000	관(管)	8	5
6903108000	막대(bar, rod)	8	5
6903109000	기타	8	5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8	5
6903202000	도가니	8	5
6903203000	반응그릇	8	5
6903204000	머플	8	5
6903205000	노즐	8	5
6903206000	플러그(plug)	8	5
6903207000	관(管)	8	5
6903208000	막대(bar, rod)	8	5
6903209000	기타	8	5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8	5
6903909020	도가니	8	5
6903909030	반응그릇	8	5
6903909040	머플	8	5
6903909050	노즐	8	5
6903909060	플러그(plug)	8	5
6903909070	관(管)	8	5
6903909080	막대(bar, rod)	8	5
6903909090	기타	8	1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과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과 홈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E
6907109000	기타	8	E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E
6907909000	기타	8	E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E
6908109000	기타	8	E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E
6908909000	기타	8	E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5
6909190000	기타	8	5
6909900000	기타	8	0
6910101000	세면대	8	E
6910102000	목욕통	8	5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E
6910104000	소변기	8	15
6910109000	기타	8	15
6910900000	기타	8	15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15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15
6911109000	기타	8	15
6911901000	가정용품	8	5
6911902000	화장용품	8	5
6911909000	기타	8	15
691200101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15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15
691200109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6912002000	가정용품	8	5
6912003000	화장용품	8	15
6912009000	기타	8	15
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과 흉상	8	5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5
6913109090	기타	8	15
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과 흉상	8	5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5
6913909090	기타	8	15
6914101000	화분	8	15
6914109000	기타	8	15
6914901000	화분	8	E
6914909000	기타	8	E
7001001000	괴(塊)	5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0
7002100000	구(球)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5
7002390000	기타	8	5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5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5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하고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5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15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15
7005291099	기타	8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15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15
7005292099	기타	8	15
7005293010	맑은 유리	8	15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15
7005293090	기타	8	15
7005294010	맑은 유리	8	E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005294090	기타	8	E
7005295010	맑은 유리	8	E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5090	기타	8	15
7005296010	맑은 유리	8	E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6090	기타	8	15
7005297010	맑은 유리	8	15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15
7005297090	기타	8	0
7005298010	맑은 유리	8	E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8090	기타	8	0
7005299010	맑은 유리	8	0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9090	기타	8	0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PR-30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211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5
7007212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91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5
7007292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 초과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15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0
7010100000	앰플	8	0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	8	0
7011201000	천연색용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5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5
7013280000	기타	8	5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5
7013370000	기타	8	5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5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5
7013490000	기타	8	5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5
7013990000	기타	8	5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5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5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5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bead)	8	0
7018102000	모조 진주	8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 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1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
7019120000	로빙(roving)	8	5
7019190000	기타	8	10
7019310000	매트(mat)	8	15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8	5
7019390000	기타	8	1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8	5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7019590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8	15
7019909000	기타	8	1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1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1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1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5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0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玉髓)	5	0
7103999040	수정	5	5
7103999090	기타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5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한 것	5	1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가루	3	1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1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6922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7002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가루	3	0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과 알갱이	3	1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5
7108131090	기타	3	5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813902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3	10
7108139090	기타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108200000	화폐용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5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10
7110190000	기타	3	5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10
7110290000	기타	3	5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5
7110390000	기타	3	5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5
7110490000	기타	3	1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5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5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10
7112919000	기타	3	1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5
7112929000	기타	3	1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5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의 것	6.5	10
7112999000	기타	3	1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9000	기타	8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5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0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114112000	화장실용	8	0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14000	끽연용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	8	0
7114192000	화장실용	8	0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94000	끽연용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	8	0
7114202000	화장실용	8	0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204000	끽연용	8	0
7114209000	기타	8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1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5
7116201000	공업용	8	0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0
7116209090	기타	8	5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10
7117192000	팔찌	8	0
7117193000	귀걸이	8	10
7117194000	브로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10
7117900000	기타	8	1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	0	0
7201102000	제강용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15
7202190000	기타	5	15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5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5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15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0
7202490000	기타	2	5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5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한정한다)		
7202999000	기타	3	5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4100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7205101000	숏(shot)	5	0
7205102000	그릿(grit)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3	5
7205290000	기타	3	0
7206100000	잉곳(ingot)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bloom)	0	0
7207112000	빌릿(billet)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bloom)	0	0
7207202000	빌릿(billet)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있는 것은 제외한다)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	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U)형강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0
7216210000	엘(L)형강	0	0
7216220000	티(T)형강	0	0
7216310000	유(U)형강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L)형강	0	0
7216402000	티(T)형강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ingot)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bloom)	0	0
7218992000	빌릿(billet)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300000	그 밖의 봉	0	0
7222400000	형강(形鋼)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7224101000	잉곳(ingot)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bloom)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24902000	빌릿(billet)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5309099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5409099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6919000	기타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미만의 것	0	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이상의 것	0	0
722790909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7228300000	그 밖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0	0
7228400000	그 밖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0	0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609000	기타	0	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701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228709000	기타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U)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U)형강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0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E
7303001090	기타	8	E
7303002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E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하고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빙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빙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901000	이중권(double wall)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10
7307190000	기타	8	10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15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1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10
7307290000	기타	8	15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15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10
7307930000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8	1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8	10
7307999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0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 또는 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하고 10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銑)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7316001000	닻	8	0
7316002000	부분품	8	5
731700101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 또는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5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1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5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1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0
7318152000	볼트(bolt)	8	5
7318153000	볼트(bolt)와 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5
7318159000	기타	8	10
7318160000	너트(nut)	8	10
7318190000	기타	8	1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15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15
7318230000	리벳(rivet)	8	5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10
7318290000	기타	8	15
7319401000	안전핀	8	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4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7319901020	수편침	8	5
7319901090	기타	8	0
7319909000	기타	8	1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10
732010200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15
7320109000	기타	8	10
7320201000	자동차용	8	15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1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15
7320204000	가구용	8	5
732020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1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PR-3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PR-30
7321900000	부분품	8	E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5
7322191000	방열기	8	5
7322192000	부분품	8	5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1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0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0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0
7326909000	기타	8	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15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10
7403130000	빌릿(billet)	5	10
7403191000	슬래브	5	10
7403192000	잉곳(ingot)	5	10
7403199000	기타	5	1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1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1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1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10
7403299000	기타	5	1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10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10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8	1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1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8	1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8	1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8	1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8	10
7407299000	기타	8	1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5
7408190000	기타	8	1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8	1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8	1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8	1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8	10
7408299000	기타	8	1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15
7409119000	기타	8	15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15
7409199000	기타	8	15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10
7409219000	기타	8	15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15
7409299000	기타	8	15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10
7409319000	기타	8	E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10
7409399000	기타	8	15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15
7409401090	기타	8	15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10
7409402090	기타	8	15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15
7409909000	기타	8	E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1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10
7410219000	기타	8	1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10
7410229000	기타	8	1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15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8	1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8	1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8	1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8	10
7411299000	기타	8	1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1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1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15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 또는 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1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10
7415290000	기타	8	1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10
7415390000	기타	8	1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090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8	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0
7418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의 것(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5
7418109099	기타	8	5
7418201000	위생용품	8	10
7418202000	부분품	8	10
7419101000	체인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419102000	부분품	8	1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8	10
7419991090	기타	8	1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10
7419999000	기타	8	15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15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15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E
7502109000	기타	3	15
7502200000	니켈 합금	3	15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504001000	가루	5	1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1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15
75061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3	10
7506102000	박(箔)	5	10
75062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5	10
7506202000	박(箔)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5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1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8	1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1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1	10
7601202000	빌릿(billet)	3	10
7601209000	기타	1	1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15
7603201000	가루	8	15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15
7604101000	봉	8	1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10
7604102090	기타	8	1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10
7604291000	봉	8	1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1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0
7605190000	기타	8	15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0
7605290000	기타	8	1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6119000	기타	8	2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PR-3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6919000	기타	8	15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15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7119000	기타	8	PR-1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5
7607199000	기타	8	PR-1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720900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15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15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1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15
7610901000	구조물	8	15
7610908000	기타	8	15
7610909000	부분품	8	15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1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10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	10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	10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	10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10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1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10
7614900000	기타	8	1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1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10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8	15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10
7615109090	부분품	8	10
7615201000	위생용품	8	10
7615202000	부분품	8	10
7616100000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8	10
7616991000	보빈(bobbin)	8	1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1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10
7616999090	기타	8	15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15
7801109000	기타	3	15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15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15
7801992090	기타	3	15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804111000	시트(sheet) 및 스트립	8	10
7804112000	박(箔)	8	10
7804190000	기타	8	10
7804201000	가루	8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봉	8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8	0
7806003030	선(線)	8	10
7806004010	관(管)	8	0
7806004020	관(管) 연결구류	8	10
7806009000	기타	8	1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15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15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15
7901202000	아연-구리 합금	3	15
7901209000	기타	3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10
7903901000	가루	8	1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1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0
7904003000	선(線)	8	10
79050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10
7905002000	박(箔)	8	0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管)	8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1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10
7907009090	기타	8	1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1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10
8003001090	기타	8	1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2090	기타	8	1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10
8007002000	판・쉬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007003010	박(箔)	8	0
8007003021	가루	8	1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0
8007009000	기타	8	15
8101100000	가루	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5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10
8101969000	기타	8	1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1991010	봉	8	1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0
810199103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10
8101991040	박(箔)	8	0
8101999000	기타	8	15
8102100000	가루	3	10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봉	8	1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0
8102953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10
8102954000	박(箔)	8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15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2990000	기타	8	10
8103201000	괴(塊)	3	0
8103202000	가루	3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3900000	기타	8	15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15
8104190000	기타	3	15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8	5
8104302000	가루	8	10
8104901000	봉	8	0
8104909000	기타	8	10
8105201000	코발트의 괴(塊)	3	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중간생산물		
8105203000	가루	2	1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5900000	기타	3	10
8106001010	비스무트의 괴(塊)	3	1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6001030	가루	3	10
8106009000	기타	3	10
8107201000	카드뮴의 괴(塊)	3	10
8107202000	가루	3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7900000	기타	3	10
8108201000	괴(塊)	2	10
8108202000	가루	3	1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10
8108902000	관	8	10
8108909000	기타	8	15
8109201000	괴(塊)	3	0
8109202000	가루	3	5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1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15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0900000	기타	3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	10
8112120000	괴(塊), 가루	3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塊), 가루	3	1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290000	기타	3	10
8112510000	괴(塊), 가루	3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10
8112922000	바나듐	3	10
8112923000	갈륨	3	1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1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1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1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1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10
8201100000	가래와 삽	8	5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 및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15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양손용 전지가위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草切機)	8	0
8201903000	제재(製材)용 쐐기	8	0
8201904000	포크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	8	0
8202102000	금속용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15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15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15
8202392090	기타	8	15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0
8202999000	기타	8	0
8203101000	톱날용	8	0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10
8203202000	집게	8	5
8203203000	핀셋	8	5
8203204000	못뽑기	8	5
8203209000	기타	8	5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15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203403000	천공펀치	8	10
8203409000	기타	8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1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1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5
8205101000	드릴링용	8	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5103000	태핑용(tapping)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1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1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E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0
8205592000	땜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8	0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1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0
8205701000	바이스(vice)	8	0
8205702000	클램프(clamp)	8	10
8205709000	기타	8	0
8205901000	모루	8	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8	0
8205909010	이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0
8205909090	기타	8	0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15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10
8207199000	부분품	8	10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0
8207202000	압출용	8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8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8	5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15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8	10
8207501090	기타	8	1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5
8207509000	기타	8	10
8207601000	리머(reamer)	8	10
8207602000	랩(lap)	8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0
8207609000	기타	8	0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15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0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0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15
8207909000	기타	8	15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5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208900000	기타	8	1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15
8209001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15
8209001090	기타	8	15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15
8209002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9002090	기타	8	15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	1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	5
8210003000	비터(beater) 및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	10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 및 실러	8	1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5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1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1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8	1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5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10
8213002090	기타	8	5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5
8213009000	기타	8	10
8214101000	연필깎이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이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5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5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1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302200000	카스터(castor)	8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15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5
8302499000	기타	8	1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1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1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8308101000	훅(hook)	8	0
8308102000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8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0
8308901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308902000	버클(buckle)과 버클(buckle)걸쇠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땜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체(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15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1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1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1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1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5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9000	기타	8	1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8	10
8404102000	과열기	8	1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	10
8404104000	가스회수기	8	0
8404109000	기타	8	5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8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8	0
8404909000	기타	8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1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5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5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10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5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10
8405909000	기타	8	10
8406103000	출력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하고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하고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10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15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8	1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07290000	기타	8	5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5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5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1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0
8407909000	기타	8	15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5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하고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	15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2,000시시 이하인 것	8	15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하고 4,000시시 이하인 것	8	15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하고 10,000시시 이하인 것	8	5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	5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15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4	10
8408909029	기타	8	10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8	15
8408909090	기타	8	1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10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8	1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용	8	5
8409919000	기타	8	5
8409991000	철도차량용	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	8	15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5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하고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10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10
8409999010	발전용	8	0
8409999090	기타	8	1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0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5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5
8411111000	항공기용	3	10
8411119010	선박용	8	0
8411119090	기타	8	5
8411121000	항공기용	3	10
8411129010	선박용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	3	10
8411219010	선박용	8	0
8411219090	기타	8	5
8411221000	항공기용	3	10
8411229010	선박용	8	0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	3	10
8411819010	선박용	8	0
8411819090	기타	8	10
8411821000	항공기용	3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1829010	선박용	8	0
8411829090	기타	8	15
8411911000	항공기용	3	10
8411919000	기타	8	10
8411991000	항공기용	3	10
8411999000	기타	8	10
84121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5	5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10
8412219000	기타	8	10
8412290000	기타	8	1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PR-30
8412390000	기타	8	10
8412800000	기타	8	1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5	5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10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1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	5
8413301000	항공기용	8	1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8	15
8413303000	선박용	8	10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10
8413309000	기타	8	1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5
8413509010	플런저 펌프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3509020	피스톤 펌프	8	10
8413509030	다이아프램 펌프	8	10
8413509090	기타	8	1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5
8413609010	기어 펌프	8	0
8413609020	베인 펌프	8	10
8413609030	스크루 펌프	8	10
8413609090	기타	8	1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5
8413709010	터빈 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15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15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10
8413913000	왕복 펌프의 것	8	0
8413914000	원심 펌프의 것	8	5
8413915000	로터리 펌프의 것	8	0
8413919000	기타	8	5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	8	1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1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PR-3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1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PR-10
8414511000	항공기용	8	15
841451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4591000	항공기용	8	15
8414599000	기타	8	E
8414601000	항공기용	8	15
8414609000	기타	8	1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5
8414809110	항공기용	8	15
8414809190	기타	8	1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	1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	1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	10
8414809900	기타	8	15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1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1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10
8414909090	기타	8	10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10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1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5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1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1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5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하고 1,500리터 미만인 것	8	5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0
8416202000	기체연료용	8	0
8416209000	기타	8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5
8416909000	기타	8	10
8417101010	철광석용	8	10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	8	0
8417102090	기타	8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5
8417801010	시멘트용	8	0
8417801020	유리용	8	10
8417801030	도자기용	8	0
8417801090	기타	8	0
8417802000	이화학용	8	0
8417809000	기타	8	0
8417900000	부분품	8	10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10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하고 400리터 이하인 것	8	10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15
8418109000	기타	8	10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	10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	10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	1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10
8418299000	기타	8	1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501000	쇼케이스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8509000	기타	8	10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5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1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1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1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0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	8	0
8419320000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0
8419501000	항공기용	8	15
8419509000	기타	8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8	5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8	5
8419899030	증발기	8	0
8419899040	응축기	8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5
8419899060	고온항온기 또는 저온항온기	8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19899090	기타	8	5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4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5
8420101000	제지용	8	0
8420102000	직물용	8	0
8420103000	가죽용	8	0
842010400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8	0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5
8420990000	기타	8	5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이화학용	8	0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1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5
8421199000	기타	8	10
8421211000	가정형	8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8	5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8	1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5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8	15
8421232000	항공기용	8	10
8421239000	기타	8	10
8421291000	낙농용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	8	0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21294000	항공기용	8	15
8421299000	기타	8	10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8	15
8421312000	항공기용	8	10
8421319000	기타	8	10
8421391000	가정형	8	10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8	1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8	0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399030	항공기용	8	15
8421399090	기타	8	1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10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8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8	10
8421999020	정수기 교체용 필터	8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999090	기타	8	10
8422110000	가정형	8	10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1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5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5
8422309000	기타	8	5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1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5
8422409090	기타	8	1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10
8422909000	기타	8	1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8	1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 또는 피드웨이어(feed weigher)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10
842382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1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10
8423899000	기타	8	10
8423901010	정확도 등급을 가진 분동	8	5
8423901090	기타	8	5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1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10
8424202010	로보트형	8	10
8424202090	기타	8	0
8424209000	기타	8	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81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10
8424812000	그 밖의 방제기	8	10
8424819000	기타	8	1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899000	기타	8	1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1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909090	기타	8	1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0
842699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	10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	10
8427109000	기타	8	15
8427201010	적재중량이 3톤 이하인 것	8	10
8427201020	적재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것	8	15
8427209000	기타	8	10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8	15
8427909000	기타	8	15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	0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와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29511010	로우더	0	0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	0
8429511090	기타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shovel)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	10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植付機)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 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 살포기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 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5
8435103000	과실주스 제조용 균질기	8	5
8435109000	기타	8	0
8435900000	부분품	8	1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5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0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5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기계	8	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용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1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8	5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5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5
8438509000	기타	8	5
843860000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8	1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10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빠데(press-pate)기	8	5
8439105000	비터(beater)	8	0
8439109000	기타	8	1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5
8439202000	초지기	8	5
8439209000	기타	8	1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5
8439990000	기타	8	1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5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10
8440109000	기타	8	1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5
8440909000	기타	8	5
8441100000	절단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41201000	종이백 또는 봉지 제조용 기계	8	1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5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0
8441801000	종이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5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와 장치	8	5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5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	0
8442309000	기타	8	1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5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5
8442409000	기타	8	1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	5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	5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1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8	5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륨 등의 또는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그 밖의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1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또는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1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소호 제8443.3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5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25090	기타	8	1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91090	기타	8	1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로 한정한다)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5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	8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8	0
8443399000	기타	8	1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및 지철용의 기계	8	5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5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10
8443991000	소호 제8443.31.10호이나 제8443.32.10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소호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또는 제8443.39.1090호의 것	8	10
8443999000	기타	8	10
8444001000	방사(紡絲)기	5	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5	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5	0
8444004000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0
8445191000	혼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0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용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0
8445302000	방적사용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5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0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5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1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8447201010	수(手)편직기(반자동 횡(横)편직기는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 횡(横)편직기	8	5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5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dobby)기	8	5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5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나 크릴(creel)	8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48199090	기타	8	0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빔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0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5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0
8448590000	기타	8	0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0
8449009000	부분품	8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1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 기계(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450190000	기타	8	10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5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8	0
8451502000	절단기	8	0
8451509000	기타	8	0
8451801000	열처리기	8	15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기 또는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10
8451909000	기타	8	5
8452101010	직진형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0
8452101030	프리암식	8	0
8452101090	기타	8	0
8452102000	수동식	8	0
8452211000	신발 제조용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	8	0
8452213000	가죽이나 그 밖의 후물용	8	0
8452214000	모피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제조용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	8	0
8452293000	가죽이나 그 밖의 후물용	8	0
8452294000	모피용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8	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0
8453102000	유피기계	8	0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 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 수선기계	8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5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E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8	10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10
8454901000	전로의 것	8	5
8454909000	기타	8	1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8	1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1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10
8455309000	기타	8	1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10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56109000	기타	8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1000	워터제트 절단기	8	5
8456909000	기타	8	5
8457101000	수직형	8	0
8457102000	수평형	8	0
8457103000	문형	8	0
8457109000	기타	8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990000	기타	8	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0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390000	기타	8	0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0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590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0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	8	5
8460190000	기타	8	10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1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0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0390000	기타	8	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0
8460900000	기타	8	10
846120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0
846140109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	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0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0
84622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49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하고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하고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하고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하고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하고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하고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63300000	선 가공기	8	0
8463900000	기타	8	0
8464100000	톱기계	8	5
8464201000	광학유리용 또는 안경유리용	8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1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5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5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5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10
8465919000	기타	8	1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5
8465959000	기타	8	1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10
8465999000	기타	8	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15
8466201000	항공기용	8	0
8466209000	기타	8	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8	0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8	10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66930000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8	10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	5
8467111000	착암기	8	5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10
8467113000	그라인더	8	1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10
8467115000	드릴	8	10
8467119000	기타	8	10
8467191000	착암기	8	5
8467199000	기타	8	10
8467210000	각종 드릴	8	E
8467220000	톱	8	15
8467290000	기타	8	E
8467810000	체인톱	8	10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또는 제8479.10호의 것	0	0
8467891020	소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또는 제 8479.89.9091호의 것	8	5
8467891090	기타	8	10
8467899000	기타	8	1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1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10
8467990000	기타	8	1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10
8468209000	기타	8	1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10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5
8469002000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소호 제8472.90.9000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단위 미만인 것	0	0
8470212000	17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5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5
8472302000	소인기	8	5
8472309000	기타	8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및 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8472902000	등사용 및 인쇄용 자동제판기	8	5
8472903000	표권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5
8472909000	기타	8	1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 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 접속 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0
847330909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5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5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75909000	기타	8	5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5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나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0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5
8478100000	기계	8	5
8478900000	부분품	8	1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8	5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1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10
8479501000	소호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또는 제8479.89.9091호의 것	8	0
8479502000	소호 제8479.89.9080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1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8	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0
8479790000	기타	8	5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0
847981209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10
8479823000	균질기	8	10
8479824000	교반기	8	0
8479829000	기타	8	1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479891090	기타	8	1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	10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	1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또는 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8	5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1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5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0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8	10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8	10
8479899099	기타	8	10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 부분품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8	10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의 것	8	10
8479902000	소호 제8479.89.9080호의 것	8	5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4000	소호 제8479.7호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5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	10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	10
847990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8	10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 기기의 것	8	1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	5
8479909090	기타	8	1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1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1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10
8481300000	체크(논리턴) 밸브	8	10
8481400000	안전밸브	8	1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1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5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0
8481801090	기타	8	10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8	10
8481809000	기타	8	10
8481901000	액튜에이터	8	15
8481909000	기타	8	PR-30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15
8482109000	기타	8	15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15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1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10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기타[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10
8482910000	볼・니들 및 롤러	8	E
8482990000	기타	8	E
8483101000	항공기용	3	10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8	10
8483109090	기타	8	10
8483201000	항공기용	3	15
8483209000	기타	8	10
8483301000	항공기용	3	15
8483309000	기타	8	1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10
8483401090	기타	3	10
8483409010	기어	8	10
8483409020	기어박스	8	10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	8	10
8483409049	기타	8	10
8483409090	기타	8	10
8483501000	항공기용	8	10
8483509000	기타	8	10
8483601000	항공기용	3	1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5	10
8483609000	기타	8	15
8483901000	항공기용	3	15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5	15
8483909000	기타	8	10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84109000	기타	8	1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10
8484900000	기타	8	1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5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8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86206090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8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8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8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	15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	15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	15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5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86303043	그 밖의 건식 식각기	8	15
8486303049	기타	8	15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	15
8486304090	기타	8	15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15
8486305019	기타	8	15
8486305020	도포 및 현상기	8	15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5	15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5	15
8486305049	기타	8	15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8	15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8	15
8486305059	기타	8	15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펜서	8	15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	15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	15
8486306090	기타	8	15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15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	8	15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보트	8	15
8486309090	기타	8	15
8486401010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8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8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와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8486403090	기타	0	0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0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1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또는 제8486.10.5030호의 것	0	0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제8486.10.4029호 또는 제8486.10.9000호의 것	8	0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0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120호, 제8486.20.8410호, 제8486.20.842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0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또는 제8486.20.9600호의 것		
8486902020	소호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8490호, 제8486.20.9390호 또는 제8486.20.9900호의 것	8	0
8486903010	소호 제8486.30.1000호 또는 제8486.30.2000호의 것	0	0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2호, 제8486.30.3043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602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또는 제8486.30.9090호의 것	8	0
8486903030	제8486.30.5011호, 제8486.30.5019호, 제8486.30.5020호, 제8486.30.5041호, 제8486.30.5042호, 제8486.30.5049호, 제8486.30.5051호, 제8486.30.5052호, 제8486.30.505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30호 또는 제8486.30.6090호의 것	8	0
8486904010	소호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2094호, 제8486.40.2095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90호, 제8486.40.4011호, 제8486.40.4012호 또는 제8486.40.4020호의 것	0	0
8486904020	소호 제8486.40.1040호,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61호, 제8486.40.2062호, 제8486.40.2063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3호, 제8486.40.2099호 또는 제8486.40.9000호의 것	8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10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8	10
8487909010	오일 실링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487909090	기타	8	1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15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1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10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하고 10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하고 75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	15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311090	기타	8	1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1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1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15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15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15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15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15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하고 75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하고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15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15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10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하고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15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15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하고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15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15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5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15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15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231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15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15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5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5	10
850300209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10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하고 20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하고 60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1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1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10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15
8504329010	용량이1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15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0킬로볼트암페어 이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하인 것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5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15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15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10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15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1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15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15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1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1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1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15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기기의 것		
8504501090	기타	8	1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1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8	1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1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10
8505119000	기타	8	15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10
8505199000	기타	8	15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 및 브레이크	8	5
8505901000	전자석	8	1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1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10
8505909000	부분품	8	1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1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10
8506109000	기타	8	5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1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0
8506809000	기타	8	10
8506900000	부분품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15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20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8	1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10
8508110000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10
8508191000	가정용의 것	8	10
8508199000	기타	8	1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10
8508701000	제8508.11.0000호 또는 제8508.19.1000호의 것	8	0
8508702000	제8508.19.9000호 또는 제8508.60.0000호의 것	8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1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8511101000	항공기용	3	10
851110900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1201000	항공기용	3	10
8511209000	기타	8	10
8511301000	항공기용	3	10
8511309000	기타	8	15
8511401000	항공기용	3	10
8511409000	기타	8	15
8511501000	항공기용	3	10
8511509000	기타	8	15
8511801000	항공기용	3	10
8511809000	기타	8	10
8511901000	항공기용	3	10
8511909000	기타	8	10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8	1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	15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	1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15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8	15
8512900000	부분품	8	15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10
8513102000	손전등	8	10
8513109000	기타	8	10
8513900000	부분품	8	10
8514101000	실험실용	8	5
8514102000	금속공업용	8	5
8514103000	식품공업용	8	10
8514109000	기타	8	10
8514201000	실험실용	8	5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10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10
8514209000	기타	8	5
8514300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409000	기타	8	1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909000	기타	8	1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10
8515190000	기타	8	0
8515211010	로보트형	8	5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보트형	8	0
8515212090	기타	8	0
8515213010	로보트형	8	5
8515213090	기타	8	10
8515219010	로보트형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보트형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보트형	8	0
8515319090	기타	8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0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8	5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5
8515809000	기타	8	10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	10
8515909000	기타	8	1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1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1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0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10
8516900000	부분품	8	15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0
8517691211	휴대용 무선호출기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8517701022	케이스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제8517.70.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7704090	기타	8	5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1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15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00	기타	8	15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15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18.1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210	자동차용	8	0
8519812220	휴대용(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1981229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19812310	자동차용	8	0
8519812320	휴대용	8	0
8519812390	기타	8	0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4111	자동차용	8	0
8519814112	휴대용	8	0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	8	0
8519814220	휴대용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	8	0
8519815020	디스크형	8	0
8519815030	카세트형	8	0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	8	0
8519891090	기타	8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1101000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1901000	디스크형	8	10
8521909000	기타	8	1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하고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29	기타	8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0% 또는 34원/분(표준속도)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3292239	기타	8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999	기타	8	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1019	기타	0	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0
8523491031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1039	기타	8	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9019	기타	0	0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499092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9099	기타	8	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1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8	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8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80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8	0
8525502000	텔레비전용	8	5
8525509000	기타	8	5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	8	0
8525801020	모니터용	8	0
8525801090	기타	8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6109000	기타	8	0
8526911010	항공기용	8	0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	8	0
8526913020	자동차용	8	0
8526913090	기타	8	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	8	0
8526919020	자동차용	8	10
8526919090	기타	8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	1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	8	0
8527132000	디스크형	8	0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8527190000	기타	8	0
8527211000	카세트형	8	15
8527212000	디스크형	8	15
852721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219000	기타	8	0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	8	0
8527911020	디스크형	8	0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84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528591090	기타	8	10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8528592090	기타	8	10
85286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0000	기타	8	15
8528711010	천연색	8	0
8528711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	0
8528712090	기타	8	10
8528719010	천연색	8	10
8528719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1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1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1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1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10
8528729000	기타	8	1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미만인 것	8	1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8	1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10
8528739000	기타	8	1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8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용	8	1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8	1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및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1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8	1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8	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8	0
8529909649	기타	8	1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8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또는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8528.51호·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0
8530101010	지상장치용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530900000	부분품	8	1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	0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8531201090	기타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	0
8531801090	기타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8	10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고정식	0	0
8532902000	가변식	0	0
8532909000	기타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1000	칩형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1000	칩형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그 밖의 것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및 축전기 등]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15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15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15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15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15
8535901000	커넥터	8	15
8535902000	터미널	8	15
8535909000	기타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36101000	관형	8	15
8536109000	기타	8	1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15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	10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	10
8536490000	기타	8	15
8536501000	회전형	8	1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8	10
8536503000	마이크로형	8	1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15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15
8536610000	램프홀더	8	15
8536691000	동축케이블 및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15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5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15
8537101000	배전반	8	15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15
8537109000	기타	8	20
8537201000	배전반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37202000	자동제어반	8	15
8537209000	기타	8	15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15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1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1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1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8	10
8538909000	기타	8	10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1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10
8539221000	백열램프	8	1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10
8539223000	빔 램프	8	1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8	10
8539229000	기타	8	10
8539290000	기타	8	1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15
8539321000	수은램프	8	1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1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10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	10
8539399000	기타	8	10
8539410000	아크램프	8	1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15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1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1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10
8539909000	기타	8	10
8540110000	천연색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40120000	단색	8	15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	15
8540209000	기타	8	15
8540401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5
8540402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8	15
8540601000	천연색	8	15
8540609000	기타	8	15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15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15
8540799000	기타	8	15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15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15
8540892000	방전관	8	15
8540893000	디지트론	8	15
8540899000	기타	8	15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15
8540912000	전자총	8	15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15
8540919000	기타	8	15
8540990000	기타	8	15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0
8541303000	다이액(diac)	0	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포토다이오드・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42901090	기타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2090	기타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3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0
854330000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1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8	5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미용기기	8	5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	15
8543704090	기타	8	15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15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10
8544119000	기타	8	10
8544190000	기타	8	1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1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1090	기타	8	1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2090	기타	8	10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9090	기타	8	10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하고 1,000볼트 이하인 것	8	5
8544491090	기타	8	10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하고 1,000볼트 이하인 것	8	10
8544492090	기타	8	15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하고 1,000볼트 이하인 것	8	15
8544499090	기타	8	15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15
8544601090	기타	8	15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15
8544602090	기타	8	15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10
8544603090	기타	8	1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爐)용	5	10
8545190000	기타	5	10
8545200000	브러시	8	10
8545901000	탄소봉	8	10
8545909000	기타	8	15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	5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	5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초과하고 1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1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킬로볼트 초과하고 1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1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킬로볼트 초과하고 3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1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1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15
8546909000	기타	8	15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1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10
8547900000	기타	8	10
8548101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15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또는 제7204.49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7503.00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7902.00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0	0
8548106010	소호 제8107.30호의 것	3	15
8548106020	소호 제8111.00호의 것	3	15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또는 제8506.80호의 것	8	15
8548109000	기타	8	15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15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E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E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E
8603102000	화차	5	E
8603901000	객차	5	E
8603902000	화차	5	2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604001000	공작차(workshop)	5	15
8604002000	기중기차(crane)	5	15
8604003000	검사차	5	15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15
8604009000	기타	5	15
8605001010	침대차	5	15
8605001090	기타	5	15
8605002000	수하물차	5	15
8605003000	우편차	5	15
8605004000	병원차	5	15
8605009000	기타	5	15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용 또는 냉동용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15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15
8607191000	차축	5	10
8607192000	차륜	5	10
8607193000	윤축(輪軸)	5	5
8607199000	기타	5	1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5
8607290000	기타	5	5
8607301000	훅	5	10
8607302000	연결장치	5	10
8607303000	완충장치	5	5
8607309000	기타	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607910000	기관차용	5	10
8607990000	기타	5	10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 기기	8	5
8608009000	부분품	8	1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	5
8701201000	신차	8	E
8701202000	중고차	8	1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E
8701901020	중고차	8	10
8701909110	50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10
8702101010	신차	10	E
8702101020	중고차	10	10
8702102010	신차	10	E
8702102020	중고차	10	10
8702103010	신차	10	E
8702103020	중고차	10	10
8702901010	신차	10	10
8702901020	중고차	10	10
8702902010	신차	10	10
8702902020	중고차	10	10
8702903010	신차	10	10
8702903020	중고차	10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10
8703102000	골프용차	8	10
8703109000	기타	8	10
8703217000	신차	8	E
8703218000	중고차	8	10
8703227000	신차	8	E
8703228000	중고차	8	10
8703231010	신차	8	E
8703231020	중고차	8	10
8703239010	신차	8	E
8703239020	중고차	8	10
8703241010	신차	8	E
8703241020	중고차	8	10
8703249010	신차	8	E
8703249020	중고차	8	10
8703317000	신차	8	10
8703318000	중고차	8	10
8703321010	신차	8	E
8703321020	중고차	8	10
8703329010	신차	8	E
8703329020	중고차	8	10
8703337000	신차	8	E
8703338000	중고차	8	10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E
8703909000	기타	8	1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E
8704211020	중고차	10	10
87042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E
8704219020	탱크차	10	10
8704219090	기타	10	10
8704221011	신차	10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04221012	중고차	10	10
8704221091	신차	10	E
8704221092	중고차	10	10
87042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10
8704229020	탱크차	10	10
8704229090	기타	10	10
8704231010	신차	10	E
8704231020	중고차	10	10
8704239010	냉동 및 냉장차	10	10
8704239020	탱크차	10	10
8704239090	기타	10	10
8704311010	신차	10	10
8704311020	중고차	10	10
87043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10
8704319020	탱크차	10	10
8704319090	기타	10	10
8704321010	신차	10	10
8704321020	중고차	10	10
87043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10
8704329020	탱크차	10	10
8704329090	기타	10	10
8704901010	신차	10	10
8704901020	중고차	10	10
8704909010	냉동 및 냉장차	10	10
8704909020	탱크차	10	10
8704909090	기타	10	10
8705101000	신축붐식	8	10
8705102000	앵글식	8	10
8705109000	기타	8	1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10
8705300000	소방차	8	1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E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10
8705901090	기타	8	10
8705909010	구난차	8	1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1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1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1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1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10
8705909070	제설차	8	10
8705909090	기타	8	10
87060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	E
8706001090	기타	8	10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	E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	10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	E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	E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	10
87079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	10
8707901090	기타	8	10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	10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	10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	1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20
8708210000	안전벨트	8	10
8708290000	기타	8	1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1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1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15
8708309000	기타	8	15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	15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밖의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15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8	2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15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2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8	15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15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	PR-30
8708951000	에어백	8	15
8708959000	기타	8	15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	10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	10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	10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	10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	10
8708999000	기타	8	15
8709110000	전기식	8	10
8709190000	기타	8	10
8709900000	부분품	8	10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15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1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15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1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15
8711302000	사이드카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15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15
8712001000	경기용	8	10
8712009010	화물운반용	8	1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01000	안장	8	10
8714109000	기타	8	1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15
8714912000	포크	8	15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8	15
8714921000	휠 림	8	15
8714922000	스포크	8	15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15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8	15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	8	15
8714942000	그 밖의 브레이크	8	15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15
8714950000	안장	8	1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714961000	페달	8	15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15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15
8714990000	기타	8	15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1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15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15
8716390000	기타	8	15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15
8716801000	손수레	8	15
8716802000	우마차	8	15
8716803000	썰매	8	15
8716809000	기타	8	15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10
8716909000	기타	8	1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1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0
8803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ochute)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0	0
880510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1090	기타	5	10
880510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2090	기타	5	10
8805109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9090	기타	5	10
880521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11090	기타	5	10
880521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805212090	기타	5	10
880529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91090	기타	5	10
880529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92090	기타	5	1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8901200000	탱커(tanker)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1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5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5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5
8903999000	기타	8	10
8904001000	예인선	5	1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10
8904009000	기타	5	10
8905100000	준설선	5	10
8905201000	시추대	5	10
8905202000	작업대	5	10
8905209000	기타	5	10
8905901000	조명선	5	10
8905902000	소방선	5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8905903000	기중기선	5	10
8905904000	발전선	5	1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10
8905906000	공작선	5	1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艀船渠)	5	10
8905909000	기타	5	1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5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8907902000	탱크	5	5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5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5
8907905000	부표	5	5
8907906000	수로부표	5	5
8907909000	기타	5	1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1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1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1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8	15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0
9001401000	시력 교정용	8	10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10
9001509000	기타	8	10
9001901000	프리즘	8	0
9001902000	반사경	8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02111000	사진기용	8	10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	8	10
9002119020	영사기용	8	5
9002119090	기타	8	10
9002191000	현미경용	8	5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8	5
9002199000	기타	8	10
9002201000	사진기용	8	5
9002209000	기타	8	10
9002901000	사진기용	8	1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1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1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1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1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1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10
9005100000	쌍안경	8	10
9005801000	단안경	8	5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5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5
9005802030	자오의・적도의・천정의와 경위의	8	5
9005802090	기타	8	5
9005809000	기타	8	5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5
900610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8	5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5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5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5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1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5
9006409000	기타	8	5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5
9006519000	기타	8	5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5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5
9006529090	기타	8	5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5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5
900653902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5
9006539090	기타	8	5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5
900659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5
9006599090	기타	8	5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5
9006699000	기타	8	10
9006910000	카메라용	8	10
9006990000	기타	8	10
9007100000	촬영기	8	5
9007201000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5
900720901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5
9007209020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	8	10
9007910000	촬영기용	8	5
9007920000	영사기용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8	5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8	5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8	5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5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8	5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0109090	기타	8	1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9010901010	소호 제9010.50.1000호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9000	기타	8	1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8	5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5
9011209000	기타	8	5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5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5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5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1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5
9011809000	기타	8	10
9011901000	소호 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8	1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12101090	기타	8	5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8	5
9012901000	소호 제9012.10.1010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8	0
9013100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8	5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8	10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	8	1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8	10
9013801140	모니터용	8	10
9013801190	기타	8	10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	8	1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8	10-A
9013801990	기타	8	10-A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5
9013803000	도어아이	8	5
9013809000	기타	8	10
9013901000	소호 제9013.80.1120호, 제9013.80.1920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10
9014101010	항공기용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8	1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8	5
9014901000	항공기용	8	10
9014909000	기타	8	5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5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태코미터(tacheometers)]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1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5
9015801000	토지 측량용	8	1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8	5
9015803000	해양 측량용	8	5
9015804000	수리 계측용	8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8	5
9015809000	기타	8	5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6001000	직시식	8	0
9016002000	전자식	8	10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 또는 부속품	8	5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5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5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8	0
9017309000	기타	8	10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	1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809090	기타	8	1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1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1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1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10
9018191000	뇌파계	8	5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5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8	1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10
9018198000	기타	8	1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8	10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10
9018321000	주사침	8	0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10
9018391000	수혈세트 또는 수액세트	8	10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10
9018398000	기타	8	1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0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10
9018498000	기타	8	1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	5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10
9018909010	그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8	10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1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5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5
9018909060	수의과용 기기	8	10
9018909080	기타	8	1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1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1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블・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10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5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0
9022141090	기타	8	10
9022142000	수의과용	8	0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	8	10
9022192000	공업용	8	0
9022199000	기타	8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8	5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5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5
9022211090	기타	8	5
9022212000	수의과용	8	5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	8	10
9022292000	공업용	8	0
9022299000	기타	8	10
9022300000	엑스선관	8	1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1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5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1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 또는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1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10
9025191000	온도계	8	1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5
9025192090	기타	8	10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5
9025809000	기타	8	10
9025901100	온도센서	8	10
9025901200	습도센서	8	10
9025901900	그 밖의 센서	8	10
9025909000	기타	8	1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26201120	금속형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9026901200	유량 또는 유속센서	0	0
9026901300	압력센서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0	0
9026901900	그 밖의 센서	0	0
9026909000	기타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8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	0	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8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8	0
9027909110	가스센서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27909121	분진센서	0	0
9027909122	매연센서	8	1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9027909190	기타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의 것	8	10
90279099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	8	0
9028101090	기타	8	5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	8	0
9028201090	기타	8	5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5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8	10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8	1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5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8	5
9029109000	기타	8	10
9029201010	시계식	8	10
9029201090	기타	8	5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5
9029901100	속도센서	8	10
9029901200	회전센서	8	5
9029901900	그 밖의 센서	8	10
9029909000	기타	8	5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30201090	기타	8	1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5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5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1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99000	기타	8	1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030890000	기타	8	10
9030901100	전자기센서	8	10
9030901200	방사선센서	8	10
9030901900	그 밖의 센서	8	10
9030909010	소호 제9030.82호의 것(소호 제9030.90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30909090	기타	8	1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1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5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1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 또는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	0
9031494090	기타	8	5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0	0
9031499090	기타	8	1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1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8	5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0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8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흠 또는 균열 등 측정기	8	5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1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0
9031809099	기타	8	10
90319011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119	기타의 것	0	0
9031901190	기타	8	15
903190129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292	그 밖의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901299	기타	8	15
90319019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919	기타의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031901990	기타	8	15
90319090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9019	기타의 것	0	0
9031909090	기타	8	10
9032101010	냉장고용	8	5
9032101020	항공기용	5	10
9032101090	기타	8	10
9032102000	고정식	8	1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8	5
9032811010	항공기용	5	0
9032811090	기타	8	5
9032812010	항공기용	5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10
9032819010	항공기용	5	0
9032819090	기타	8	5
9032891010	항공기용	5	0
9032891090	기타	8	10
9032892010	항공기용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	5	0
9032893090	기타	8	10
9032899010	항공기용	5	10
9032899090	기타	8	10
9032901000	항공기용	5	10
9032909000	기타	8	10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5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1990000	기타	8	0
9102111000	맹인용	8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1901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1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02129010	맹인용	8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10
9102199010	맹인용	8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99090	기타	8	10
9102211000	맹인용	8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맹인용	8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99000	기타	8	10
9102911000	스톱워치	8	5
9102912000	맹인용	8	0
910291901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02919090	기타	8	5
9102991000	스톱워치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102992000	맹인용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	8	10
9104002000	항공기용	8	0
9104004000	선박용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00000	전기구동식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11011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2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29000	기타	8	5
911019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9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5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0
9114900000	기타	8	10
9201101000	자동식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5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	8	1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조(banjo)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5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5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5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10
9207103000	피아노	8	1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1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8	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8	0
9208909000	기타	8	5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1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8	5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0
9301109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8	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20909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10
9401302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10
9401909000	기타	8	15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10
9403409000	기타	8	5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1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10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1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10
9404900000	기타	8	15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1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10
9405109000	기타	8	1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1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10
9405209000	기타	8	1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10
9405309000	기타	8	10
9405401000	방폭형	8	10
9405402000	투광형	8	1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10
9405409000	기타	8	15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1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1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1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10
9405609000	기타	8	10
9405911000	샹들리에용	8	10
9405919000	기타	8	10
9405921000	샹들리에용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405929000	기타	8	10
9405991000	샹들리에용	8	10
9405999000	기타	8	10
9406001000	나무로 만든 것	8	E
940600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2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5
940600909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직물로 만든 것	8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소호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직물로 만든 것	8	1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직물로 만든 것	8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1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9	기타	8	5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5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10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15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504509000	기타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10
9505900000	기타	8	5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0
9506190000	기타	8	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15
9506320000	골프공	8	1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10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0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9506409000	기타	8	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1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1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핸드볼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용	8	0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1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10
9506990000	기타	8	1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9507300000	낚시 릴	8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1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로 만든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5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 및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10
9603290000	기타	8	1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1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8	1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10
960400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8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1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5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5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1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01000	만년필	8	0
9608309000	기타	8	5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5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5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	8	0
9609903090	기타	8	5
9609909000	기타	8	5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5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1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1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0
9619001090	기타	0	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10
9619003010	소호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또는 제6210.50호의 것	13	10
9619003020	제6113호, 소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또는 제6208.99호의 것	13	5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5
9619009000	기타	6.5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 세율(%) (MFN 2012)	양허유형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彫像)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 carved out이란 이 협정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중국 양허표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1012100	번식용	0	0
01012900	기타	10	10
01013010	번식용	0	0
01013090	기타	10	10
01019000	기타	10	10
01022100	번식용	0	0
01022900	기타	10	10
01023100	번식용	0	0
01023900	기타	10	10
01029010	번식용	0	0
01029090	기타	10	10
01031000	번식용	0	0
01039110	중량이 1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0	10
01039120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상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0	10
010392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0	10
01041010	번식용	0	0
01041090	기타	10	10
01042010	번식용	0	0
01042090	기타	10	10
01051110	번식용	0	0
01051190	기타	10	10
01051210	번식용	0	0
01051290	기타	10	10
01051310	번식용	0	0
01051390	기타	10	10
01051410	번식용	0	0
01051490	기타	10	10
01051510	번식용	0	0
01051590	기타	10	10
01059410	번식용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1059490	기타	10	10
01059910	번식용	0	0
01059991	오리	10	10
01059992	거위	10	10
01059993	기니아새	10	10
01059994	칠면조	10	10
01061110	번식용	0	0
01061190	기타	10	10
01061211	번식용	10	5
01061219	기타	10	10
01061221	번식용	0	0
01061229	기타	10	10
01061310	번식용	0	0
01061390	기타	10	10
01061410	번식용	0	0
01061490	기타	10	10
01061910	번식용	0	0
01061990	기타	10	10
01062011	양식용 악어	0	0
01062019	기타	0	0
01062020	식용	10	10
01062090	기타	10	10
01063110	번식용	0	0
01063190	기타	10	10
01063210	번식용	0	0
01063290	기타	10	10
01063310	번식용	0	0
01063390	기타	10	10
01063910	번식용	0	0
01063921	어린 비둘기	10	10
01063923	물오리	10	10
01063929	기타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1063990	기타	10	10
01064110	번식용	0	0
01064190	기타	10	5
01064910	번식용	0	0
01064990	기타	10	5
01069011	올챙이와 어린 개구리	0	0
01069019	기타	0	0
01069090	기타	10	10
0201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15
02012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2	15
02013000	뼈 없는 것	12	15
0202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20
02022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2	15
02023000	뼈 없는 것	12	15
02031110	새끼 돼지	20	15
02031190	기타	20	15
02031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31900	기타	20	15
02032110	새끼 돼지	12	10
02032190	기타	12	10
02032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02032900	기타	12	10
02041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204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3	20
020422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5	10
02042300	뼈 없는 것	15	10
02043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2044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3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20442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2	10
02044300	뼈 없는 것	15	10
02045000	산양의 고기	20	15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한 것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61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02062100	혀	12	10
02062200	간	12	10
02062900	기타	12	10
02063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64100	간	20	15
02064900	기타	12	10
02068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69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2071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1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1.3 위안	15
02071311	뼈 있는 것	20	15
02071319	기타	20	15
02071321	닭 날개	20	15
02071329	기타	20	15
02071411	뼈 있는 것	킬로그램당 0.6 위안	10
02071419	기타	킬로그램당 0.7 위안	10
02071421	닭 날개	킬로그램당 0.8 위안	10
02071422	닭 발	킬로그램당 0.5 위안	10
02071429	기타	킬로그램당 0.5 위안	10
020724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25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2072600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2700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02074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4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43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44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45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0
02075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5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53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54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55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2076000	기니아새의 것	20	15
02081010	토끼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하고 머리는 제외한다)	20	15
02081020	토끼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하고 머리는 제외한다)	20	15
02081090	기타	20	15
02083000	영장류의 것	23	10
02084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3	10
02085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3	10
02086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23	10
02089010	어린 비둘기	20	15
02089090	기타	23	20
02091000	돼지의 것	20	15
02099000	기타	20	15
02101110	넓적다리살 및 어깨살(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20
02101190	기타	25	20
021012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5	20
02101900	기타	25	20
02102000	쇠고기	2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2109100	영장류의 것	25	10
021092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5	10
021093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5	10
02109900	기타	25	20
03011100	민물의 것	17.5	15
03011900	기타	17.5	15
03019110	치어	0	0
03019190	기타	10.5	10
03019210	치어	0	0
03019290	기타	10	10
03019310	치어	0	0
03019390	기타	10.5	10
03019410	치어	0	0
03019491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5	10
03019492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5	10
03019510	치어	0	0
03019590	기타	10.5	10
03019911	퍼치(perch)의 것	0	0
03019912	철갑상어의 것	0	0
03019919	기타	0	0
03019991	틸라피아(Tilapia)	10.5	10
03019992	복어	10.5	10
03019993	그 밖의 잉어	10.5	10
03019999	기타	10.5	10
03021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213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10
0302141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10	10
03021420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10
03021900	기타	12	10
030221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2	10
03022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2	10
03022300	서대[솔레아(Solea)종]	12	10
030224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	12	10
03022900	기타	12	10
03023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2	10
03023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2	10
030233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12	10
03023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2	10
0302351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2	10
0302352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2	10
030236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2	10
03023900	기타	12	10
03024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2	10
030242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12	10
030243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Sprattus sprattus)]		
03024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2	10
030245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2	10
030246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2	10
030247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2	10
0302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2	10
03025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2	10
03025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2	10
030254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2	10
03025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2	10
030256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2	10
03025900	기타	12	10
03027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2	10
030272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2	10
030273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2	10
030274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12	10
03027900	기타	12	10
030281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2	10
030282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12	10
030283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2	10
030284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2	10
030285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28910	갈치(Trichiurus)	12	10
03028920	부세(Pseudosciaena)	12	10
03028930	병어(Pampus)	12	10
03028940	복어	12	10
03028990	기타	12	10
03029000	간과 어란(魚卵)	12	10
030311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10	10
030312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10
030313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10
030314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 (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12	10
03031900	기타	10	10
030323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10
030324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5
030325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0	5
030326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12	10
03032900	기타	10	5
03033110	검정가자미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33190	기타	10	10
03033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2	10
03033300	서대[솔레아(Solea)종]	12	10
030334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	10	10
03033900	기타	10	10
03034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2	10
03034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2	10
030343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12	20
03034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2	10
0303451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2	10
0303452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2	10
030346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2	10
03034900	기타	12	10
03035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10
030353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2	10
03035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10
030355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0	5
030356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5
030357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10
030363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10
030364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2	10
030365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2	10
030366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367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10
030368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5
03036900	기타	10	5
030381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2	10
030382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10	5
030383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10
030384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2	10
03038910	갈치(Trichiurus)	10	10
03038920	부세(Pseudosciaena)	10	10
03038930	병어(Pampus)	10	10
03038990	기타	10	15
03039000	간과 어란(魚卵)	10	10
03043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2	10
030432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2	10
03043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2	10
03043900	기타	12	10
030441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2	10
030442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2	10
03044300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030444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12	10
030445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2	10
030446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2	10
03044900	기타	12	10
03045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12	10
03045200	연어과	12	10
030453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12	10
030454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2	10
030455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2	10
03045900	기타	12	10
03046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10
03046211	얼룩메기[익탈루러스 푼크타투스(Ictalurus punctatus)]	10	10
03046219	기타	10	10
03046290	기타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46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10
03046900	기타	10	10
03047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10
03047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10
03047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10
030474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10
03047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10
03047900	기타	10	10
030481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10
030482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10
03048300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10	10
030484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10
030485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10
030486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10
03048700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48900	기타	10	10
03049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10
03049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10
030493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10	10
030494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10
030495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10	10
03049900	기타	10	10
0305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03052000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03053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Channa)종]		
030532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10	10
03053900	기타	10	10
03054110	대서양 연어	14	10
03054120	태평양 연어와 다뉴브 연어	14	10
030542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6	15
030543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4	10
03054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14	10
03054900	기타	14	10
0305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6	15
03055910	실고기와 해마	2	0
03055990	기타	16	15
03056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6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562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6	15
03056300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16	15
03056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16	15
03056910	갈치(Trichiurus)	16	15
03056920	부세(Pseudosciaena)	16	15
03056930	병어(Pampus)	16	15
03056990	기타	16	15
03057100	상어 지느러미	15	E
03057200	어류의 머리・꼬리 및 위	16	15
03057900	기타	16	15
03061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10	10
030612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10	10
03061410	꽃게	10	10
03061490	기타	10	15
030615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16	15
03061611	껍데기가 없는 것	8	5
03061612	기타[노르뎀 판달러스(Pandalus)]	5	0
03061619	기타	5	0
03061621	껍데기가 없는 것	8	5
03061629	기타	5	0
03061711	껍데기가 없는 것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61719	기타	5	0
03061721	껍데기가 없는 것	8	5
03061729	기타	5	0
03061911	껍데기가 없는 것	16	15
03061919	기타	16	15
03061990	기타	16	15
03062110	양식용	0	0
03062190	기타	15	10
03062210	양식용	0	0
03062290	기타	15	10
03062410	양식용	0	0
03062491	민물게(살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10
03062492	꽃게	14	10
03062499	기타	14	10
03062510	양식용	0	0
03062590	기타	14	10
03062610	양식용	0	0
03062620	새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3062690	기타	12	10
03062710	양식용	0	0
03062720	새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3062790	기타	12	10
03062910	양식용	0	0
03062990	기타	14	10
03071110	양식용	0	0
03071190	기타	14	10
03071900	기타	14	10
03072110	양식용	0	0
03072190	기타	14	10
03072900	기타	14	10
03073110	양식용	0	0
03073190	기타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73900	기타	14	10
03074110	양식용	0	0
03074190	기타	12	10
03074900	기타	12	20
030751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17	15
03075900	기타	17	15
03076010	양식용	0	0
03076090	기타	14	10
03077110	양식용	0	0
03077191	클램(clam)	14	10
03077199	기타	14	10
03077910	클램(clam)	10	10
03077990	기타	10	15
03078110	양식용	0	0
03078190	기타	14	10
03078900	기타	10	10
03079110	양식용	0	0
03079190	기타	14	10
03079900	기타	10	20
03081110	양식용	0	0
03081190	기타	14	10
03081900	기타	10	10
03082110	양식용	0	0
03082190	기타	14	10
03082900	기타	10	15
03083011	양식용	0	0
03083019	기타	14	10
03083090	기타	10	15
03089011	양식용	0	0
03089012	갯지렁이	14	10
03089019	기타	14	10
03089090	기타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401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15	E
0401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15	E
04014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10 이하인 것	15	E
04015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15	E
0402100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10	E
040221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0	E
04022900	기타	10	E
040291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0	E
04029900	기타	10	E
04031000	요구르트	10	E
04039000	기타	20	E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15
04049000	기타	20	15
04051000	버터	10	15
04052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10	15
04059000	기타	10	15
0406100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12	15
04062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12	15
04063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12	15
04064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15	15
04069000	그 밖의 치즈	12	15
04071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04071900	기타	0	0
04072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4072900	기타	20	15
04079010	염지란(소금에 절인 알)	20	15
04079020	라임으로 보존처리한 달걀	20	15
04079090	기타	20	15
04081100	건조한 것	20	15
04081900	기타	20	15
04089100	건조한 것	20	15
04089900	기타	20	15
04090000	천연꿀	15	15
04100010	칼새둥지	25	10
04100041	순수 로열젤리	15	10
04100042	순수 로열젤리(가루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4100043	화분(Bee pollen)	20	15
04100049	기타	20	15
04100090	기타	20	15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	15	10
05021010	강모	20	15
05021020	털	20	15
05021030	웨이스트(Waste)	20	15
05029011	염소털	20	15
05029012	족제비 꼬리털	20	15
05029019	기타	20	15
05029020	웨이스트(Waste)	20	15
05040011	돼지 케이싱(casing)(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5040012	면양 케이싱(casing)(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5040013	염소 케이싱(casing)(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5040014	돼지 팻엔드(fat-ends)(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05040019	기타	18	15
05040021	차가운, 냉동한 모래주머니(gizzard)	킬로그램당 1.3 위안	15
05040029	기타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5040090	기타	20	15
05051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10	10
05059010	깃털이나 깃털의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10	10
05059090	기타	10	10
05061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05069011	소와 면양의 것	12	10
05069019	기타	12	10
05069090	기타	12	10
0507100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10	10
05079010	영양각과 이들의 가루나 웨이스트(waste)	3	0
05079020	녹용과 이들의 가루	11	10
05079090	기타	10	10
05080010	가루와 웨이스트(waste)	12	10
05080090	기타	12	10
05100010	위석	3	0
0510002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 및 시빗(civet)	7	0
05100030	사향	7	0
05100040	캔대리디즈(cantharides)	7	0
05100090	기타	6	0
05111000	소의 정액	0	0
05119111	수정된 어란	12	5
05119119	기타	12	10
05119190	기타	12	10
05119910	동물의 정액(소의 정액은 제외한다)	0	0
05119920	동물의 배아	0	0
05119930	누에의 알	0	0
05119940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층상으로 하였는지,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05119990	기타	12	10
06011010	번홍화(番紅花) 구경(球莖)	4	0
06011021	종자	0	0
06011029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6011091	종자	0	0
06011099	기타	5	0
0601200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15	10
06021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0	0
06022010	모종	0	0
06022090	기타	10	10
06023010	모종	0	0
06023090	기타	15	10
06024010	모종	0	0
06024090	기타	15	10
06029010	버섯의 종균	0	0
06029091	모종	0	0
06029092	난초	10	10
06029093	국화	10	10
06029094	백합	10	10
06029095	카네이션	10	10
06029099	기타	10	10
06031100	장미	10	10
06031200	카네이션	10	10
06031300	난초	10	10
06031400	국화	10	10
06031500	백합[릴리움(Lilium)종]	10	10
06031900	기타	10	10
06039000	기타	23	20
06042010	이끼와 지의(地衣)	23	10
06042090	기타	10	10
06049010	이끼와 지의(地衣)	23	10
06049090	기타	10	10
07011000	종자용	13	10
07019000	기타	13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07031010	양파	13	10
07031020	쪽파	13	10
07032010	마늘구근	13	10
07032020	마늘 줄기•마늘 모종	13	10
07032090	기타	13	10
07039010	리크(leek)	13	10
07039020	부추(scallion)	13	10
07039090	기타	13	10
07041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10	10
07042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13	10
07049010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13	10
07049020	녹색꽃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13	10
07049090	기타	13	10
07051100	결구(結球) 상추	10	10
07051900	기타	10	10
070521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13	10
07052900	기타	13	10
07061000	당근과 순무	13	10
07069000	기타	13	10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07081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13	10
07082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13	10
07089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13	10
07092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13	10
07093000	가지(에그플랜트)	13	10
07094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10	10
070951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13	10
07095910	송이	13	10
07095920	표고버섯	13	10
07095930	팽이버섯	13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7095940	풀버섯	13	10
07095950	구마버섯[트리콜로마 몽골리컴 이마이(Tricholoma mongolicum Imai)]	13	10
07095960	송로(松露)	13	10
07095990	기타	13	10
07096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3	10
07097000	시금치류	13	10
070991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13	10
07099200	올리브	13	10
070993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13	10
07099910	죽순	13	10
07099990	기타	13	10
07101000	감자	13	10
071021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13	10
07102210	팥	13	10
07102290	기타	13	10
07102900	기타	13	10
07103000	시금치류	13	10
07104000	스위트콘	10	10
07108010	송이	13	10
07108020	마늘 줄기・마늘 모종	13	10
07108030	마늘구근	13	10
07108040	그물버섯[포르치니(porcini)]	13	10
07108090	기타	13	10
07109000	채소류의 혼합물	10	10
07112000	올리브	13	10
07114000	오이류	13	10
07115112	양송이버섯	13	10
07115119	기타	13	10
07115190	기타	13	10
07115911	송이	13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7115919	기타	13	10
07115990	기타	13	10
07119031	죽순	13	10
07119034	마늘	13	10
07119039	기타	13	10
07119090	기타	13	10
07122000	양파	13	10
071231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13	10
071232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13	10
071233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13	10
07123910	표고버섯	13	10
07123920	팽이버섯	13	10
07123930	풀버섯	13	10
07123940	구마버섯[트리콜로마 몽골리컴 이마이(Tricholoma mongolicum Imai)]	13	10
07123950	그물버섯[포르치니(porcini)]	13	10
07123990	기타	13	10
07129010	죽순	13	10
07129020	고비속 양치류	13	10
07129030	원추리 꽃	13	10
07129040	야생 고사리	13	10
07129050	마늘	13	10
07129060	단고추(Capsicum annuum Var. grossum)	13	10
07129091	겨자무	13	10
07129099	기타	13	10
07131010	종자	0	0
07131090	기타	5	0
07132010	종자	0	0
07132090	기타	7	0
07133110	종자	0	0
07133190	기타	3	0
07133210	종자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7133290	기타	3	0
07133310	종자	0	0
07133390	기타	7.5	0
071334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7	0
071335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7	0
07133900	기타	7	0
07134010	종자	0	0
07134090	기타	7	0
07135010	종자	0	0
07135090	기타	7	0
07136010	종자	0	0
07136090	기타	7	0
07139010	종자	0	0
07139090	기타	7	0
07141010	신선한 것	10	5
07141020	건조한 것	5	0
07141030	냉장한 것이나 냉동한 것	10	10
07142011	재배용의 것	0	0
07142019	기타	13	10
07142020	건조한 것	13	10
07142030	냉장한 것이나 냉동한 것	13	10
0714300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13	10
0714400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13	10
0714500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13	10
07149010	마름	13	10
07149021	재배용의 것	0	0
07149029	기타	13	10
07149090	기타	13	10
08011100	말린 것	12	5
080112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12	5
08011910	모종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8011990	기타	12	5
0801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0	5
08012200	껍데기를 벗긴 것	10	5
0801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0	10
08013200	껍데기를 벗긴 것	10	10
08021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4	10
08021200	껍데기를 벗긴 것	10	10
0802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20
08022200	껍데기를 벗긴 것	10	10
0802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20
08023200	껍데기를 벗긴 것	20	15
08024110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25	E
08024190	기타	25	20
08024210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25	20
08024290	기타	25	20
08025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0	10
08025200	껍데기를 벗긴 것	10	10
08026110	재배용의 것	0	0
08026190	기타	24	10
08026200	껍데기를 벗긴 것	24	10
08027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24	20
08028000	빈랑자(areca nut)	10	10
08029020	은행	25	20
08029030	잣(껍데기를 벗긴 것에 한정한다)	25	20
08029090	기타	24	20
08031000	플랜틴(plantain)	10	10
08039000	기타	10	10
08041000	대추야자	15	10
08042000	무화과	30	20
08043000	파인애플	12	10
08044000	아보카도(avocado)	25	20
08045010	구아바(guava)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8045020	망고(mango)	15	10
08045030	망고스틴(mangosteen)	15	10
08051000	오렌지	11	10
08052010	차이아오-칸(Chiao-Kan)	12	10
08052020	라티폴리아(Latifolia) 감귤류	12	10
08052090	기타	12	10
08054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12	10
08055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및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11	10
08059000	기타	30	20
08061000	신선한 것	13	10
08062000	건조한 것	10	10
08071100	수박	25	20
08071910	하미(Hami) 멜론	12	10
08071920	칸탈루프(Cantaloupe) 멜론과 갈리아(Galia) 멜론	12	10
08071990	기타	12	10
08072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25	10
08081000	사과	10	10
08083010	야(Ya) 배, 허쉬(Hsueh) 배	12	10
08083020	시앙(Xiang) 배	12	10
08083090	기타	10	10
08084000	마르멜로(quince)	16	15
08091000	살구	25	20
080921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10	10
08092900	기타	10	10
08093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0	10
08094000	자두와 슬로(sloe)	10	10
08101000	초본류 딸기	14	10
08102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25	20
08103000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2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8104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30	20
08105000	키위프루트(kiwifruit)	20	15
08106000	두리안(durian)	20	10
08107000	감	20	15
08109010	여지	30	20
08109030	용안	12	10
08109040	람부탄(Rambutan)	20	10
08109050	반려지	20	10
08109060	카람볼라(Carambola)	20	15
08109070	리엔우(wax apple)	20	10
08109080	용과	20	10
08109090	기타	20	15
08111000	초본류 딸기	30	20
08112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즈베리(gooseberry)	30	20
08119010	밤(껍데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20
08119090	기타	30	20
08121000	체리	30	20
08129000	기타	25	20
08131000	살구	25	20
08132000	프룬(prune)	25	20
08133000	사과	25	20
08134010	용안과 용안 과육(pulp)	20	10
08134020	감	25	20
08134030	붉은 대추	25	20
08134040	보존처리된 리치(litchi)	25	10
08134090	기타	25	20
08135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18	15
081400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	2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한다)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5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5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5	10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15	10
0901901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10	10
0901902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30	20
09021010	맛과 향을 첨가한 것	15	10
09021090	기타	15	10
09022010	맛과 향을 첨가한 것	15	10
09022090	기타	15	10
09023010	우롱차	15	10
09023020	보이차	15	10
09023090	기타	15	10
09024010	우롱차	15	10
09024020	보이차	15	10
09024090	기타	15	10
09030000	마테(maté)	10	10
0904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0	15
0904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0	15
090421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0	15
0904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0	15
0905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5	10
0905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5	10
090611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5	0
09061900	기타	5	0
0906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5	10
0907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3	0
0907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0
0908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9082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83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3	0
09083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0
09092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5	10
0909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5	10
09093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5	10
09093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5	10
09096110	스타 아니스(Star aniseed)	20	15
09096190	기타	15	10
09096210	스타 아니스(Star aniseed)	20	15
09096290	기타	15	10
0910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5	10
0910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5	10
09102000	사프란(saffron)	2	0
09103000	심황[강황(薑黃)]	15	10
09109100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09109900	기타	15	10
10011100	종자	65	E
10011900	기타	65	E
10019100	종자	65	E
10019900	기타	65	E
10021000	종자	0	0
10029000	기타	3	0
10031000	종자	0	0
10039000	기타	3	0
10041000	종자	0	0
10049000	기타	2	0
10051000	종자	20	E
10059000	기타	65	E
10061011	장립종	65	E
10061019	기타	6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0061091	장립종	65	E
10061099	기타	65	E
10062010	장립종	65	E
10062090	기타	65	E
10063010	장립종	65	E
10063090	기타	65	E
10064010	장립종	65	E
10064090	기타	65	E
10071000	종자	0	0
10079000	기타	2	0
10081000	메밀	2	0
10082100	종자	2	0
10082900	기타	2	0
10083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2	0
10084010	종자	0	0
10084090	기타	3	0
10085010	종자	0	0
10085090	기타	3	0
10086010	종자	0	0
10086090	기타	3	0
10089010	종자	0	0
10089090	기타	3	0
110100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65	E
11022000	옥수수가루	40	E
11029011	장립종으로 만든 것	40	E
11029019	기타	40	E
11029090	기타	5	0
11031100	밀로 만든 것	65	E
11031300	옥수수로 만든 것	65	E
11031910	귀리로 만든 것	5	0
11031921	장립종으로 만든 것	10	E
11031929	기타	10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1031990	기타	5	0
11032010	밀로 만든 것	65	E
1103209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0	15
11041200	귀리로 만든 것	20	15
11041910	보리로 만든 것	20	15
11041990	기타	20	15
11042200	귀리로 만든 것	20	15
11042300	옥수수로 만든 것	65	E
11042910	보리로 만든 것	65	E
11042990	기타	20	15
1104300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11051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15	10
11052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15	10
11061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11062000	사고(sago)나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11063000	제 8 류 물품의 것	20	15
11071000	볶지 않은 것	10	10
11072000	볶은 것	10	10
11081100	밀로 만든 것	20	15
11081200	옥수수로 만든 것	20	15
11081300	감자로 만든 것	15	10
110814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10	10
11081900	그 밖의 전분	20	15
11082000	이눌린(inulin)	20	10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18	15
12011000	종자	0	0
12019010	노랑 대두	3	0
12019020	검은 대두	3	0
12019030	녹색 대두	3	0
12019090	기타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2023000	종자	0	0
12024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5	10
120242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12030000	코프라(copra)	15	10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12051010	종자	0	0
12051090	기타	9	5
12059010	종자	0	0
12059090	기타	9	5
12060010	종자	0	0
12060090	기타	15	10
12071010	종자	0	0
12071090	기타	10	10
12072100	종자	0	0
12072900	기타	15	10
12073010	종자	0	0
12073090	기타	15	10
12074010	재배용의 것	0	0
12074090	기타	10	10
12075010	재배용의 것	0	0
12075090	기타	15	10
12076010	종자	0	0
12076090	기타	20	15
12077010	종자	0	0
12077091	검은 것	20	15
12077092	붉은 것	20	15
12077099	기타	30	20
12079100	양귀비씨	20	15
12079910	종자	0	0
12079991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20	15
12079999	기타	10	10
12081000	대두로 만든 것	9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2089000	기타	15	10
12091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120923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	라이그래스(rye grass) [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종자	0	0
12092910	비트 종자(사탕무 종자는 제외한다)	0	0
12092990	기타	0	0
12093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00	채소 종자	0	0
12099900	기타	0	0
12101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20	15
12102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10	10
12112010	아메리칸 인삼	7.5	0
12112020	산삼(아메리칸 인삼을 제외한다)	20	15
12112091	신선한 것	20	15
12112099	기타	20	E
12113000	코카잎	9	5
12114000	양귀비줄기	9	5
12119011	당귀	6	0
12119012	히말라야삼	6	0
12119013	만삼 뿌리	6	0
12119014	황연	6	0
12119015	국화	6	0
12119016	동충하초	6	0
12119017	절패모	6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2119018	리조마 리구스티시(Rhizoma ligustici)	6	0
12119019	반하	6	0
12119021	작약	6	0
12119022	천마	6	0
12119023	황기	6	0
12119024	대황	6	0
12119025	백출	6	0
12119026	선지황	6	0
12119027	괴화	6	0
12119028	두충	6	0
12119029	복령	6	0
12119031	구기자	6	0
12119032	반대해	6	0
12119033	침향	3	0
12119034	당잔대	6	0
12119035	사우던우드(Southernwood)	6	0
12119036	감초	6	0
12119037	황금	6	0
12119039	기타	6	0
12119050	주로 향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5
12119091	데리스(Derris)의 뿌리와 제충국(除蟲菊)	3	0
12119099	기타	9	5
12122110	다시마	20	15
12122120	블랙모스(Blackmoss)	20	15
12122131	건조한 것	15	10
12122132	신선한 것	15	10
12122139	기타	15	10
12122141	건조한 것	15	10
12122142	신선한 것	15	10
12122149	기타	15	10
12122161	건조한 것	15	10
12122169	기타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2122171	건조한 것	15	10
12122179	기타	15	10
12122190	기타	15	10
12122900	기타	15	5
12129100	사탕무	20	15
121292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20	15
12129300	사탕수수	20	10
12129400	치커리(chicory) 뿌리	20	15
12129911	쓴 살구의 핵(核)	20	15
12129912	단 살구의 핵(核)	20	15
12129919	기타	20	15
12129993	호박 종자	20	15
12129994	연 종자(연자육)	20	15
12129999	기타	30	E
12130010	곡물의 짚(조제하지 않은 것)	12	10
12130090	기타	12	10
1214100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5	0
12149000	기타	9	5
13012000	아라비아 검	15	10
13019010	트래거캔스 검	15	10
13019020	유향(乳香), 몰약과 기린혈(麒麟血)	3	0
13019030	아위	3	0
13019040	송진	15	10
13019090	기타	15	10
13021100	아편	0	0
13021200	감초로 만든 것	6	0
13021300	홉(hop)으로 만든 것	10	10
13021910	생칠	20	15
13021920	아자디라크틴(Azadirachtin)	3	0
13021930	제충국(除蟲菊)의 것 또는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 것	3	0
13021940	은행나무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3021990	기타	20	15
13022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20	15
13023100	한천	10	10
130232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13023911	카라기닌(Carrageenan)	15	10
13023912	알긴(Algin)	15	10
13023919	기타	15	10
13023990	기타	15	10
14011000	대나무	10	10
14012000	등나무	10	10
14019010	곡물의 짚(밀짚은 제외한다)	10	10
14019020	갈대	10	10
14019031	골풀과	10	10
14019039	기타	10	10
14019090	기타	10	10
14042000	면(綿) 린터(linter)	4	0
14049010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5	0
14049090	기타	15	10
15011000	라드(lard)	10	10
15012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10	10
15019000	기타	10	10
15021000	탤로우(tallow)	8	5
15029000	기타	8	5
150300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0	10
1504100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2	10
15042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12	10
1504300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4.4	10
150500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lanolin)을 포함한다]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0	15
1507100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9	E
15079000	기타	9	E
15081000	조유(粗油)	10	E
15089000	기타	10	E
15091000	버진(virgin)	10	10
15099000	기타	10	10
151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0	10
15111000	조유(粗油)	9	E
15119010	팜 올레인(palm olein)	9	E
1511902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8	E
15119090	기타	9	E
15121100	조유(粗油)	9	E
15121900	기타	9	E
151221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0	E
15122900	기타	10	E
15131100	조유(粗油)	9	5
15131900	기타	9	5
15132100	조유(粗油)	9	5
15132900	기타	9	5
15141100	조유(粗油)	9	E
15141900	기타	9	E
15149110	유채유	9	E
15149190	겨자유	9	E
15149900	기타	9	E
15151100	조유(粗油)	15	10
15151900	기타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5152100	조유(粗油)	10	E
15152900	기타	10	E
15153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0	10
15155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2	10
15159010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20	15
15159020	멀구슬기름과 그 분획물	20	15
15159030	동유(桐油)와 그 분획물	20	15
15159090	기타	20	E
1516100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0
1516200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5	E
15171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30	E
15179010	쇼트닝	25	E
15179090	기타	25	E
151800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인 것·산화한 것·탈수한 것·황화한 것·취입한 것,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한 것 또는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0	20
152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20	15
15211000	식물성 납(蠟)	20	15
15219010	밀랍	20	15
15219090	기타	20	15
1522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20	15
16010010	천연 껍질로 싸인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10
16010020	그 밖의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10
1601003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기본 재료로 한 식품조제품	15	10
16021000	균질화한 조제품	15	10
1602200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6023100	칠면조로 만든 것	15	10
160232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16023291	닭가슴 필렛(filet)	15	10
16023292	닭다리 고기	15	10
16023299	기타	15	10
16023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16023991	오리로 만든 것	15	10
16023999	기타	15	10
16024100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5	10
16024200	어깨살과 그 절단육	15	10
16024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16024990	기타	15	10
16025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2	10
16025090	기타	12	10
1602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16029090	기타	15	10
16030000	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3	20
16041110	대서양 연어	12	10
16041190	기타	12	10
16041200	청어	12	10
16041300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 및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	5	0
16041400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5	0
16041500	고등어	12	10
16041600	멸치	12	10
16041700	뱀장어	12	10
16041920	틸라피아(Tilapia)	12	10
16041931	얼룩메기[익타루러스 푼크타투스(Ictalurus punctatus)]	12	10
16041939	기타	12	10
16041990	기타	12	10
16042011	상어 지느러미	12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6042019	기타	12	10
16042091	상어 지느러미	12	E
16042099	기타	12	10
16043100	캐비아	12	10
16043200	캐비아 대용물	12	10
16051000	게	5	0
1605210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5	0
16052900	기타	5	0
16053000	바닷가재	5	0
16054011	껍데기를 벗긴 것	5	0
16054019	기타	5	0
16054090	기타	5	0
16055100	굴	5	0
160552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5	0
16055300	홍합	5	0
16055400	갑오징어와 오징어	5	0
16055500	문어	5	0
16055610	클램(clam)	5	0
16055620	새조개와 피조개	5	0
16055700	전복	5	0
160558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0
16055900	기타	5	0
16056100	해삼	5	0
16056200	성게	5	0
16056300	해파리	15	10
16056900	기타	5	0
17011200	사탕무당	50	E
170113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50	E
17011400	그 밖의 사탕수수당	50	E
170191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0	E
17019910	알갱이 형태의 설탕	50	E
17019920	정선제당(精選製糖)	50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7019990	기타	50	E
17021100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10	10
17021900	기타	10	10
1702200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30	20
17023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E
17024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E
17025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30	E
1702600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17029000	기타[전화당(轉化糖)을 포함한다]	30	E
17031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8	5
17039000	기타	8	5
17041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2	E
17049000	기타	10	20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8	5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0	10
18031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10	10
18032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10	10
18040000	코코아 버터[지(fat) 및 유(oil)]	22	20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5	10
18061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1806200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00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8	15
18063200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0	15
18069000	기타	8	15
1901100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5	E
1901200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5	20
19019000	기타	10	15
19021100	새의 알을 넣은 것	15	10
19021900	기타	15	15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15
19023010	쌀면(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19023020	콩면(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19023030	인스탄트 면류	15	20
19023090	기타	15	15
19024000	쿠스쿠스(couscous)	25	20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1904100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5	20
1904200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30	20
19043000	불거 밀(bulgur wheat)	30	20
19049000	기타	30	20
19051000	귀리빵	20	15
19052000	생강과자(gingerbread)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15	15
19053200	와플과 웨이퍼	15	15
19054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20	15
19059000	기타	20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11000	오이류	25	20
20019010	마늘	25	20
20019090	기타	25	20
200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15
20021090	기타	25	20
20029011	토마토 페이스트(paste)(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중량이 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20029019	토마토 페이스트(paste)(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중량이 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10
20029090	기타	18	15
20031011	복령(茯苓)	25	10
20031019	기타	25	10
20031090	기타	25	10
2003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39090	기타	25	10
20041000	감자	13	10
20049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5	10
20051000	균질화한 채소	25	10
20052000	감자	15	10
20054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5	10
20055111	팥 페이스트(paste)	25	10
20055119	기타	25	20
20055191	팥 페이스트(paste)	25	10
20055199	기타	25	20
20055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55990	기타	25	10
20056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56090	기타	25	10
20057000	올리브	10	10
20058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0	10
20059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59190	기타	2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59910	마름(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59920	누에콩(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10
20059940	자차이(榨菜)	25	10
20059950	고사리(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10
20059960	염교(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10
2005999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20
20059999	기타	25	20
20060010	보존처리된 대추	30	20
20060020	보존처리된 올리브	30	20
20060090	기타	30	20
20071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20
20079100	감귤류의 과실	30	20
20079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5	0
20079990	기타	5	0
20081110	땅콩 핵(核)(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20
20081120	볶은 땅콩	30	20
20081130	땅콩 버터	30	20
20081190	기타	30	20
20081910	호두의 과육(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20081920	그 밖의 견과류(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20081991	밤 종자	10	10
20081992	참깨	10	10
20081999	기타	10	10
2008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20082090	기타	15	10
20083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20083090	기타	20	20
20084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20084090	기타	20	15
20085000	살구	20	15
20086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5
20086090	기타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87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10
20087090	기타	20	15
20088000	초본류 딸기	15	10
20089100	팜 하트(palm heart)	5	0
200893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15	10
20089700	혼합물	10	10
20089910	리치(Lychee) 통조림	20	15
20089920	용안 통조림	15	10
20089931	조미김	15	20
20089932	다시마	15	10
20089933	염장된 미역	15	10
20089939	기타	15	10
20089990	기타	15	10
20091100	냉동한 것	7.5	5
200912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20
20091900	기타	30	20
20092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15	10
20092900	기타	15	10
20093110	레몬 주스	18	15
20093190	기타	18	15
20093910	레몬 주스	18	15
20093990	기타	18	15
20094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10	10
20094900	기타	10	10
20095000	토마토주스	30	20
200961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	15
20096900	기타	20	15
20097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	15
20097900	기타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981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	15
20098912	망고주스	20	15
20098913	패션프루트 주스	20	15
20098914	구아바 주스	20	15
20098919	기타	20	15
20098920	채소 주스	20	15
20099010	과실주스의 것	20	15
20099090	기타	20	15
21011100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17	15
21011200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0	20
2101200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및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	E
21013000	볶은 치커리(chicory)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32	20
21021000	활성 효모	25	20
21022000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25	20
21023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5	20
21031000	간장	28	20
2103200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15	10
21033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15	10
21039010	구어메이(Gourmet) 가루	21	20
21039020	방향성 비터스(bitters)[알코올이 전체의 44.2%~49.2%인 것, 스필레(spiles)와 다양한 재료가 전체 중량의 1.5%~6%인 것과 당이 전체의 4~10%인 것]	21	20
21039090	기타	21	20
21041000	수프와 브로드(broth) 및 수프와 브로드(broth)용 조제품	15	10
21042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2	20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	19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다)		
2106100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10	10
21069010	음료의 베이스	35	20
21069020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20	15
21069030	로열젤리[강장성 에센스(essences)로 만들어 진것]	3	0
21069040	코코넛 주스	10	10
21069090	기타	20	PR-8
22011010	광천수	20	20
22011020	탄산수	20	15
22019010	천연수	10	10
22019090	기타	10	10
22021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0	20
22029000	기타	35	20
22030000	맥주	0	0
22041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4	10
220421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4	10
22042900	기타	20	15
22043000	그 밖의 포도즙	30	20
22051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5	20
22059000	기타	65	20
22060010	황주	40	20
22060090	기타	40	20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20
22072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30	20
2208200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0	10
22083000	위스키류	10	10
22084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10	10
22085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2086000	보드카	10	10
2208700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10	10
22089010	데낄라와 메즈칼(Mezcal)	10	10
22089020	백주	10	10
22089090	기타	10	20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0	15
23011011	소와 면양의 것	2	0
23011019	기타	2	0
23011020	수지박	5	0
23011090	기타	5	0
23012010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동물 사료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0
23012090	기타	5	0
23021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0
23023000	밀에서 나온 것	3	0
2302400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5	0
23025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0
23031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5	0
23032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0
23033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5	0
23040010	오일 케이크	5	0
23040090	기타	5	0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0
23061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5	0
23062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0
23063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0
230641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5	0
23064900	기타	5	0
23065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5	0
23066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3069000	기타	5	0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5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230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10
23091090	기타	15	10
23099010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조제품	5	0
23099090	기타	6.5	10
24011010	황색종(種)	10	E
24011090	기타	10	E
24012010	황색종(種)	10	E
24012090	기타	10	E
24013000	담배 부산물	10	E
24021000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E
2402200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E
24029000	기타	25	E
2403110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57	E
24031900	기타	57	E
24039100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57	E
24039900	기타	57	E
25010011	식염	0	0
25010019	기타	0	0
25010020	순염화나트륨	3	0
25010030	바닷물	0	0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3	0
25041010	플레이크(flake) 모양	3	0
25041091	구형 흑연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5041099	기타	3	0
25049000	기타	3	0
25051000	규사	3	5
25059000	기타	3	0
25061000	석영	3	0
25062000	규암	3	0
25070010	고령토	3	0
25070090	기타	3	0
25081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0
25083000	내화(耐火)점토	3	0
25084000	그 밖의 점토	3	0
2508500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硅線石)	3	0
25086000	멀라이트(mullite)	3	0
25087000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0
25090000	초크	3	0
25101010	인회석	3	0
25101090	기타	3	0
25102010	인회석	3	0
25102090	기타	3	0
25111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0
25112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0
25120010	키절구어(kieselguhr)	3	0
25120090	기타	3	0
25131000	부석	3	0
2513200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3	0
2514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15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0
251512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5152000	에코신(ecaussine) 및 그 밖의 석비(碑石)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3	0
2516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0
251612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0
25162000	사암	3	0
25169000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3	0
2517100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0
25172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173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0
251741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0
25174900	기타	3	0
25181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0
25182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0
25183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0
25191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3	0
25199020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30	광연소 마그네시아	3	0
25199091	산화 마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
25199099	기타	3	0
25201000	석고, 무수(無水)석고	5	0
25202010	치과용	5	5
25202090	기타	5	10
252100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5	0
25221000	생석회(生石灰)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5222000	소석회(消石灰)	5	0
25223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5	5
25231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8	5
252321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0
25232900	기타	8	5
25233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6	0
2523900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8	5
25241000	청(靑)석면	5	5
25249010	롱스테이플(long staple)의 것	5	5
25249090	기타	5	5
25251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5	0
25252000	운모 가루	5	0
25253000	운모 웨이스트(waste)	5	5
25261010	천연 동석(凍石)	3	0
25261020	활석	3	0
25262010	천연 동석(凍石)	3	0
25262020	활석	3	5
2528001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280090	기타	5	0
25291000	장석(長石)	3	0
252921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3	0
252922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3	0
2529300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5	5
25301010	녹니석(綠泥石)	5	5
25301020	질석(蛭石), 팽창되지 않은 진주암	5	0
25302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	광물성 의료용 물질	3	0
25309020	희토류 금속광	0	0
25309091	규회석(硅灰石)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5309099	기타	3	0
26011110	입상이 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26011120	입상이 0.8 밀리미터 이상이고 6.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26011190	기타	0	0
26011200	응결시킨 것	0	0
26012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1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31000	배소(焙燒)한 것	0	0
26139000	기타	0	0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1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10	수화된 탄탈륨/니오븀 물질 또는 탄탈륨/니오븀 광물의 농축물질	0	0
26159090	기타	0	0
26161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00	기타	0	0
26171010	가공하지 않은 안티모니(antimony)[광물성 생산품인 안티모니(Antimony) 정광(精鑛)]	0	0
26171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6179010	주사(朱沙)	3	0
26179090	기타	0	0
26180010	주로 망간을 함유한 것	4	0
26180090	기타	4	0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0
262011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0
26201900	기타	4	0
262021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4	0
26202900	기타	4	0
26203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0
26204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0
26206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	0
262091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	0
26209910	주로 텅스텐을 함유하는 것	4	0
26209990	기타	4	0
26211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E
26219000	기타	4	0
27011100	무연탄	3	0
27011210	코크스용 탄	3	0
27011290	기타	6	0
27011900	그 밖의 석탄	5	0
2701200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5	0
27021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3	0
27022000	응결시킨 갈탄	3	0
2703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704001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	5	0
27040090	기타	5	0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6	0
27071000	벤조올	6	15
27072000	톨루올	6	5
27073000	크실롤	6	15
27074000	나프탈렌	7	15
27075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7	15
270791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7	10
27079910	페놀	7	5
27079990	기타	7	15
27081000	피치(pitch)	7	5
27082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6	10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0	0
27101210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5	15
27101220	나프타	6	15
27101230	고무 용제, 도료 용제, 추출 용제	6	15
27101291	노닌(Nonene)	9	15
27101299	기타	9	15
27101911	항공 등유	9	0
27101912	램프 등유	9	15
27101919	기타	6	0
27101921	경디젤유	6	15
27101922	5 호부터 7 호까지의 연료유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7101929	기타	6	15
27101991	윤활 그리스	6	15
27101992	윤활유	6	15
27101993	윤활유용 기유(基油)	6	15
27101994	액화 파라핀과 중(重) 액화 파라핀	6	0
27101999	기타	6	20
271020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6	15
271091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6	E
27109900	기타	6	5
27111100	천연가스	0	0
27111200	프로판	5	5
271113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11	10
27111390	기타	5	10
27111400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5	15
271119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10	10
27111990	기타	3	5
27112100	천연가스	0	0
27112900	기타	6	5
27121000	석유젤리	8	5
27122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27129010	마이크로크리스털린 석유 왁스	8	10
27129090	기타	8	10
27131110	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미만인 것	3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7131190	기타	3	15
27131210	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8 미만인 것	3	15
27131290	기타	3	15
27132000	석유역청(瀝靑)	8	15
27139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그 밖의 잔재물	6	5
27141000	역청질 혈암(瀝靑質頁巖)이나 유모 혈암(油母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6	5
27149010	천연 역청(瀝靑) 및 아스팔트	8	15
27149020	유화 역청(瀝靑) 및 아스팔트	0	0
27149090	기타	3	0
271500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 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8	10
27160000	전기에너지	0	0
28011000	염소	5.5	5
28012000	요드	5.5	5
28013010	플루오르	5.5	5
28013020	브롬	5.5	0
280200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또는 콜로이드황	5.5	5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5.5	15
28041000	수소	5.5	10
28042100	아르곤	5.5	5
28042900	기타	5.5	5
28043000	질소	5.5	5
28044000	산소	5.5	5
28045000	붕소, 텔루르	5.5	0
28046117	지름이 30 센티미터 이상인 것	4	0
28046119	기타	4	E
28046120	전자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프(doped) 처리된 그 밖의 모노크리스탈(monocrystals)(실린더 또는 봉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046190	기타	4	15
28046900	기타	4	5
28047010	황린(백린)	5.5	5
28047090	기타	5.5	10
28048000	비소	5.5	5
28049010	전자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프(doped) 처리된 크리스탈(Crystals)(실린더 또는 봉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28049090	기타	5.5	0
28051100	나트륨	5.5	0
28051200	칼슘	5.5	0
28051900	기타	5.5	0
28053011	네오디뮴(Neodymium)	5.5	0
28053012	디스프로슘(Dysprosium)	5.5	0
28053013	테르븀(Terbium)	5.5	0
28053014	란탄늄(Lanthanum)	5.5	0
28053015	세륨(Cerium)	5.5	0
28053016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5.5	0
28053017	이트륨(Yttrium)	5.5	0
28053019	기타	5.5	0
28053021	배터리 등급의 것	5.5	0
28053029	기타	5.5	0
28054000	수은	5.5	5
28061000	염화수소(염산)	5.5	5
28062000	클로로황산	5.5	5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5.5	5
28080000	질산, 황질산	5.5	5
28091000	오산화인	1	0
28092011	인산(식용 등급의 것으로 한정한다)	1	0
28092019	기타	1	10
28092090	기타	5.5	5
28100010	붕소의 산화물	5.5	5
28100020	붕산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111100	플루오르화수소산	5.5	5
28111910	시안화수소산	5.5	5
28111990	기타	5.5	10
28112100	이산화탄소	5.5	5
28112200	이산화규소	5.5	5
28112900	기타	5.5	5
28121010	술폭시드(Sulphoxide) 염화물	5.5	0
28121020	인화물(燐化物) 옥시클로라이드(oxychloride)[일염화 포스포릴, 인 옥시트라이클로라이드(oxytrichloride)]	5.5	5
28121030	카보닐(Carbonyl) 디클로라이드(dichloride)[포스겐(phosgene)]	5.5	5
28121041	일염화 황	5.5	5
28121042	이염화 황	5.5	5
2812104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Phosphorus trichloride)	5.5	5
2812104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Arsenic trichloride)	5.5	5
28121045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Phosphorus pentachloride)	5.5	5
28121049	기타	5.5	5
28121090	기타	5.5	5
28129011	삼플루오르질소	5.5	15
28129019	기타	5.5	5
28129090	기타	5.5	10
28131000	이황화탄소	5.5	5
28139000	기타	5.5	5
28141000	무수(無水)암모니아	5.5	5
28142000	암모니아수	5.5	0
28151100	고체	10	10
281512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10
28152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5
2815300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5.5	5
2816100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5.5	10
28164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28170010	산화아연	5.5	5
28170090	과산화아연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181010	브라운 커런덤(Brown corundum)	5.5	10
28181090	기타	5.5	5
28182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8	5
28183000	수산화알루미늄	5.5	5
28191000	삼산화크로뮴	5.5	10
28199000	기타	5.5	5
28201000	이산화망간	5.5	5
28209000	기타	5.5	5
28211000	산화철과 수산화철	5.5	15
28212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10
28220010	사산화 코발트	5.5	0
28220090	기타	5.5	5
28230000	산화티타늄	5.5	5
28241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5
2824901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5
28249090	기타	5.5	5
2825101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Hydrazine hydrate)	5.5	10
28251020	히드록실아민(Hydroxyamine) 황	5.5	10
28251090	기타	5.5	5
28252010	수산화리튬	5.5	5
28252090	기타	5.5	5
28253010	오산화 이바나듐	5.5	10
28253090	기타	5.5	5
2825400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5.5	5
2825500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5.5	5
2825600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5.5	5
2825700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5.5	5
28258000	산화안티모니	5.5	5
28259011	텅스텐산	5.5	5
28259012	텅스텐산화물	5.5	5
28259019	기타	5.5	5
28259021	삼산화비스무트산염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259029	기타	5.5	5
28259031	산화 주석	5.5	5
28259039	기타	5.5	5
28259090	기타	5.5	5
28261210	알루미늄 무수(無水) 플루오르화물	5.5	5
28261290	기타	5.5	5
28261910	암모늄의 것	5.5	5
28261920	나트륨의 것	5.5	5
28261990	기타	5.5	5
28263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5	5
28269010	플루오르화규산염	5.5	10
28269090	기타	5.5	15
28271010	비료용의 것	4	0
28271090	기타	5.5	5
28272000	염화칼슘	5.5	5
28273100	마그네슘 염화물	5.5	10
28273200	알루미늄 염화물	5.5	5
28273500	니켈 염화물	5.5	5
28273910	염화리튬	5.5	5
28273920	염화바륨	5.5	5
28273930	염화코발트	5.5	5
28273990	기타	5.5	5
28274100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5.5	5
28274910	산화지르코늄과 수산화지르코늄	5.5	5
28274990	기타	5.5	5
28275100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5.5	5
28275900	기타	5.5	10
2827600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5.5	5
28281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12	10
28289000	기타	5.5	5
28291100	염소산나트륨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291910	염소산칼륨	5.5	5
28291990	기타	5.5	5
28299000	기타	5.5	5
28301010	황화나트륨	5.5	5
28301090	기타	5.5	5
28309020	황화안티모니	5.5	5
28309030	황화코발트	5.5	10
28309090	기타	5.5	5
28311010	아이티온산염	5.5	5
28311020	술폭실산염	5.5	5
28319000	기타	5.5	5
28321000	아황산나트륨	5.5	5
28322000	그 밖의 아황산염	5.5	5
28323000	티오황산염	5.5	5
283311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00	기타	5.5	5
28332100	황산마그네슘	5.5	5
28332200	황산알루미늄	5.5	5
28332400	황산니켈	5.5	5
28332500	황산구리	5.5	5
28332700	황산바륨	5.5	10
28332910	황산제일철	5.5	5
28332920	크로뮴(chromium)의 것	5.5	5
28332930	아연의 것	5.5	10
28332990	기타	5.5	5
28333010	칼륨 황산 알루미늄	5.5	10
28333090	기타	5.5	10
2833400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5.5	10
28341000	아질산염	5.5	5
28342110	비료용의 것	4	0
28342190	기타	5.5	5
28342910	질산 코발트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342990	기타	5.5	5
2835100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5.5	5
28352200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5.5	10
28352400	인산칼륨	5.5	5
28352510	사료용	5.5	5
28352520	식용	5.5	5
28352590	기타	5.5	5
283526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10
28352910	트리쇼듐(trisodium)의 것	5.5	5
28352990	기타	5.5	10
28353110	식용	5.5	5
28353190	기타	5.5	10
28353911	식용	5.5	5
28353919	기타	5.5	10
28353990	기타	5.5	5
28362000	탄산이나트륨	5.5	5
28363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10
28364000	탄산칼륨	5.5	5
28365000	탄산칼슘	5.5	5
28366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	탄산리튬	5.5	5
283692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	탄산마그네슘	5.5	10
28369930	탄산 코발트	5.5	0
2836994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5
28369950	탄산 지르코늄	5.5	5
28369990	기타	5.5	5
28371110	시안화나트륨	5.5	15
28371120	산화시안화나트륨	5.5	5
28371910	시안화칼륨	5.5	5
28371990	기타	5.5	15
28372000	시안착염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391100	메타규산나트륨	5.5	10
28391910	규산나트륨	5.5	10
28391990	기타	5.5	10
28399000	기타	5.5	5
28401100	무수물(無水物)	5.5	0
28401900	기타	5.5	0
28402000	그 밖의 붕산염	5.5	10
28403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5	5
28413000	중크롬산나트륨	5.5	5
28415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5.5	5
28416100	과망간산칼륨	5.5	5
28416910	리튬 망간산염	5.5	5
28416990	기타	5.5	5
28417010	몰리브덴산암모늄	5.5	0
28417090	기타	5.5	5
28418010	암모늄 파라텅스텐(Ammonium paratungstate)	5.5	5
28418020	텅스텐산나트륨	5.5	5
28418030	칼슘 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5	5
28418040	암모늄 메타텅스텐산염	5.5	5
28418090	기타	5.5	0
28419000	기타	5.5	10
2842100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5.5	5
28429011	나트륨 설포시안산염	5.5	5
28429019	기타	5.5	5
28429020	카드뮴 텔루라이드(Cadmium telluride)	5.5	5
28429030	리튬 니켈 코발트 산화 망간	5.5	5
28429040	리튬 인산철	5.5	10
28429090	기타	5.5	5
28431000	콜로이드 귀금속	5.5	5
28432100	질산은	5.5	5
28432900	기타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433000	금 화합물	5.5	5
28439000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5.5	5
2844100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5
2844200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5
2844300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5
28444010	라듐과 그 염	4	0
28444020	코발트와 그 염	4	0
28444090	기타	5.5	5
28445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5.5	5
28451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5.5	5
28459000	기타	5.5	5
28461010	산화 세륨	5.5	0
28461020	수산화 세륨	5.5	0
28461030	탄산세륨	5.5	0
28461090	기타	5.5	0
28469011	산화이트륨	5.5	0
28469012	산화란타늄	5.5	0
28469013	산화네오디뮴	5.5	0
28469014	산화유로퓸	5.5	0
28469015	산화디스프로슘	5.5	0
28469016	산화테르븀	5.5	0
28469017	산화프라세오디뮴	5.5	0
28469019	기타	5.5	0
28469021	염화테르븀	5.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469022	염화디스프로슘	5.5	0
28469023	염화란타늄	5.5	0
28469024	염화네오디뮴	5.5	0
28469025	염화프라세오디뮴	5.5	0
28469026	염화이트륨	5.5	0
28469028	염화 희토류 혼합물	5.5	0
28469029	기타	5.5	0
28469031	플루오르화 테르븀	5.5	0
28469032	플루오르화디스프로슘	5.5	0
28469033	플루오르화란타늄	5.5	0
28469034	플루오르화네오디뮴	5.5	0
28469035	플루오르화프라세오디늄	5.5	0
28469036	플루오르화이트륨	5.5	0
28469039	기타	5.5	0
28469041	탄산란타늄	5.5	0
28469042	탄산테르븀	5.5	0
28469043	탄산디스프로슘	5.5	0
28469044	탄산네오디뮴	5.5	0
28469045	탄산프라세오디뮴	5.5	0
28469046	탄산이트륨	5.5	0
28469048	탄산화 희토류 혼합물	5.5	0
28469049	기타	5.5	0
28469091	란타늄	5.5	0
28469092	네오디뮴	5.5	0
28469093	테르븀	5.5	0
28469094	디스프로슘	5.5	0
28469095	프라세오디뮴	5.5	0
28469096	이트륨	5.5	0
28469099	기타	5.5	0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5	15
28480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5.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491000	탄화칼슘	5.5	5
28492000	탄화규소	5.5	10
28499010	붕소	5.5	5
28499020	텅스텐	5.5	5
28499090	기타	5.5	5
28500011	질화망간	5.5	5
28500019	기타	5.5	5
28500090	기타	5.5	15
28521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5.5	5
28529000	기타	5.5	5
28530010	증류수(식용에 적합한 것)	5.5	5
28530020	클로로시아노겐(Chlorocyanogen),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cyanogen chloride)	5.5	5
28530030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 수산화물	6.5	5
28530090	기타	5.5	5
2901100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2	0
29012100	에틸렌	2	10
29012200	프로펜(프로필렌)	2	10
29012310	1-부텐	2	10
29012320	2-부텐	2	0
29012330	2-메틸프로펜	2	0
29012410	1,3-부타디엔	2	10
29012420	이소프렌	2	15
29012910	이소펜틴(Isopentene)	2	0
29012920	아세틸렌	2	0
29012990	기타	2	10
29021100	시클로헥산	2	0
29021910	피넨(Pinene)	2	0
29021920	4-알킬-4′-알킬-바이사이클로헥산	2	0
29021990	기타	2	0
29022000	벤젠	2	15
29023000	톨루엔	2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24100	오르토-크실렌	2	10
29024200	메타-크실렌	2	0
29024300	파라-크실렌	2	E
29024400	혼합크실렌이성체	2	0
29025000	스티렌	2	20
29026000	에틸벤젠	2	10
29027000	큐멘	2	0
29029010	테트라하이드로나프탈렌[테트랄린(tetralin)]	2	0
29029020	나프탈렌	2	15
29029030	도데싸이르벤젠	2	E
29029040	4-(4'- 알킬싸이클로헥실) 사이클로헥실 에틸렌	2	0
29029090	기타	2	0
29031100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5.5	5
290312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8	15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10	10
29031400	사염화탄소	8	5
29031500	1, 2-이염화에탄(ISO)(이염화에틸렌)	5.5	5
2903191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 형태)	8	5
29031990	기타	5.5	10
290321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	삼염화에틸렌	8	15
290323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5
29032910	3-클로로-1-프로펜	5.5	5
29032990	기타	5.5	5
29033100	이브롬화에틸렌(ISO)	5.5	5
29033910	1,1,3,3,3-펜타풀로(Pentafluro)-2-트라이플루로메틸-1-프로펜 (퍼플루오로이소부티렌, 이소부틸렌 옥타플루오라이드)	5.5	5
29033990	기타	5.5	5
290371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5
290372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5
290373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5.5	5
290374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375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5
290376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5.5	5
2903771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5
29037720	그 밖의 메탄·에탄과 프로판(불소와 염소 유도체만으로 퍼할로겐화 한 것)	5.5	5
29037790	기타	5.5	10
290378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5
29037910	그 밖의 메탄·에탄과 프로판(불소와 염소 유도체만으로 퍼할로겐화 한 것)	5.5	5
29037990	기타	5.5	5
290381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5
290382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5
29038900	기타	5.5	5
29039110	오(o)-디클로로벤젠	5.5	10
29039190	기타	5.5	5
290392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5
29039910	피(p)-클로로톨루엔	5.5	5
29039920	3,4-디클로로트리플루오라이드 톨루엔	5.5	5
29039930	4 -(4- 알킬 페닐) - 1-(4- 알킬 페닐) - 2-플루오로벤젠	5.5	5
29039990	기타	5.5	5
2904100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5.5	5
29042010	니트로벤젠	5.5	5
29042020	니트로톨루엔과 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29042030	디니트로톨루엔과 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29042040	트리니트로톨루엔	5.5	5
29042090	기타	5.5	5
29049011	오(o)-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29049012	엠(m)-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29049013	피(p)-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49020	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5
2904903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니트로클로로포름)	5.5	5
29049090	기타	5.5	5
29051100	메탄올(메틸알코올)	5.5	E
2905121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15
2905122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5.5	15
290513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5	15
29051410	이소(iso)-부틸 알코올	5.5	15
29051420	섹(sec)-부틸 알코올	5.5	15
29051430	털트(tert)-부틸 알코올	5.5	15
29051610	엔(n)-옥틸 알코올	5.5	E
29051690	기타	5.5	E
290517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7	15
29051910	3,3-디메틸-2-부탄올(피나코릴 알코올)	5.5	5
29051990	기타	5.5	5
29052210	게라니올, 네롤(cis-3, 7-디메틸-2, 6-옥타디엔-1-올)	5.5	5
29052220	시트로넬롤(3, 7-디메틸-6-옥텐-1-올)	5.5	5
29052230	리날로올	5.5	5
29052290	기타	5.5	5
29052900	기타	5.5	5
290531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5	E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10
29053910	2, 5-디메틸 헥산디올	4	0
29053990	기타	5.5	E
290541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5
29054200	펜타에리트리톨	5.5	10
29054300	만니톨	8	5
290544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14	10
29054500	글리세롤	14	10
29054910	자일리톨	5.5	5
29054990	기타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55100	에스클로비놀(INN)	5.5	5
29055900	기타	5.5	10
29061100	멘톨	5	5
290612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5
29061310	스테롤	5.5	10
29061320	이노시톨	5.5	5
29061910	테르피네올	5.5	5
29061990	기타	5.5	5
29062100	벤질알코올	5	5
29062910	2-페닐 에탄올	5.5	5
29062990	기타	5.5	10
29071110	페놀	5.5	E
29071190	기타	5.5	E
29071211	엠(m)-크레졸	5.5	5
29071212	오(o)-크레졸	5.5	5
29071219	기타	5.5	10
29071290	기타	5.5	5
29071310	노닐페놀	5.5	E
29071390	기타	5.5	15
29071510	2-나프톨[베타(β)-나프톨]	5.5	5
29071590	기타	5.5	5
29071910	오(o)-2 차-부틸 페놀, 오(o)-이소프로필 페놀	4	0
29071990	기타	5.5	5
29072100	엠(m)-디히드록시벤젠 (레소르시놀)과 그 염	5.5	10
29072210	히드로퀴논	5.5	5
29072290	기타	5.5	5
29072300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5.5	E
29072910	오(o)-디히드록시벤젠(카테콜, 프로카테콜)	4	E
29072990	기타	5.5	15
29081100	펜타클로로페놀(ISO)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81910	피(p)-클로로페놀	4	0
29081990	기타	5.5	5
290891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5
290892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5
29089910	피(p)-니트로 페놀, 피(p)-니트로 페놀레이트 나트륨	5.5	5
29089990	기타	5.5	10
29091100	디에틸에테르	5.5	5
29091910	메틸에테르	5.5	15
29091990	기타	5.5	15
29092081	1,8-유칼립톨(Eucalyptol)	5.5	5
29092089	기타	5.5	5
29092090	기타	5.5	5
29093010	1-알콕시-4-(4-비닐사이클로헥실)-2,3-디플루오로 벤젠	5.5	5
29093090	기타	5.5	5
290941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43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15
29094910	엠(m)-페녹시 벤즈알코올	4	0
29094990	기타	5.5	15
2909500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15
2909600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15
29101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5	15
29102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15
29103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10
29104000	디엘드린(ISO, INN)	5.5	5
29109000	기타	5.5	5
29110000	아세탈과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5.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상관없다) 및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211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5
291212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5
29121900	기타	5.5	15
29122100	벤즈알데히드	5.5	5
29122910	릴리알[피(p)-터샤리(tert)-부틸-알파(α)-매틸-옥쏘신(oxocinn) 아말데히드(amaldehyde))	5.5	5
29122990	기타	5.5	5
291241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5
291242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5
29124910	알데히드-알코올	5.5	5
29124990	기타	5.5	5
29125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5	15
29126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15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5.5	5
29141100	아세톤	5.5	E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5.5	E
29141300	4-메틸-2-펜탄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15
29141900	기타	5.5	15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5.5	15
29142300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5.5	5
29142910	장뇌	5.5	5
29142990	기타	5.5	10
29143100	프로피오페논(페닐프로판-2-온)	5.5	5
29143910	아세토페논	4	0
29143990	기타	5.5	5
2914400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5.5	5
29145011	라스베리 케톤	5.5	5
29145019	기타	5.5	5
29145020	2-하이드록시-4-멕토시벤조페논	5.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45090	기타	5.5	10
29146100	안트라퀴논	5.5	10
29146900	기타	5.5	10
29147000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10
29151100	포름산	5.5	10
29151200	포름산의 염	5.5	10
29151300	포름산의 에스테르	5.5	5
29152111	식용	5.5	0
29152119	기타	5.5	0
29152190	기타	5.5	5
29152400	무수(無水)초산	5.5	5
29152910	초산나트륨	5.5	5
29152990	기타	5.5	10
29153100	초산에틸	5.5	5
29153200	초산비닐	5.5	0
29153300	초산노르말부틸	5.5	15
29153600	초산디노셉(ISO)	5.5	5
29153900	기타	5.5	15
29154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5
29155010	프로피온산	5.5	5
29155090	기타	5.5	15
29156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10
29157010	스테아르산	7	5
29157090	기타	5.5	15
29159000	기타	5.5	5
29161100	아크릴산과 그 염	6.5	15
29161210	메타크릴레이트	6.5	15
29161220	아크릴산에틸	6.5	15
29161230	부틸 아크릴레이트	6.5	E
29161240	이소옥틸 아크릴레이트	6.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61290	기타	6.5	E
29161300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5	0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5	0
29161500	올레산·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5	15
29161600	비나파크릴(ISO)	6.5	5
29161900	기타	6.5	5
29162010	디브롬크리산테미카시드(Dibromochrysanthemicacid), 디브이(DV) 크리산테미모노(chrysanthemimono) 카복시레이트	4	0
29162090	기타	6.5	5
29163100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10
29163200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5	10
291634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6.5	5
29163910	엠(m)-메틸벤조익(Methylbenzoic)산	6.5	5
29163920	브루펜(Brufen)(이부프로펜)	6.5	5
29163990	기타	6.5	5
29171110	옥살산	6.5	10
29171120	코발트 수산염	9	5
29171190	기타	6.5	10
29171200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E
2917131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15
29171390	기타	6.5	5
29171400	무수말레산	6.5	10
29171900	기타	6.5	5
29172010	테트라히드로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	4	15
29172090	기타	6.5	15
29173200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5	E
291733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0
2917341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10
29173490	기타	6.5	0
29173500	무수프탈산	6.5	E
29173611	순수 테레프탈산	6.5	E
29173619	기타	6.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73690	기타	6.5	E
291737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15
29173910	이소프탈산	6.5	E
29173990	기타	6.5	15
29181100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10
29181200	타르타르산	6.5	5
29181300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5
29181400	시트르산	6.5	10
29181500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5
29181600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818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5
2918191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에이(a)-하이드록시아세트산, 벤질산]	6.5	5
29181990	기타	6.5	5
29182110	살리실 산과 살리실산나트륨	6.5	10
29182190	기타	6.5	5
29182210	아세틸살리실산	6	5
29182290	기타	6.5	5
291823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6.5	5
29182900	기타	6.5	15
29183000	알데히드나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6.5	5
291891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89900	기타	6.5	5
29191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5
29199000	기타	6.5	5
29201100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6.5	5
29201900	기타	6.5	5
29209011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5
29209012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09013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5
29209014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5
29209019	기타	6.5	5
29209090	기타	6.5	5
29211100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 및 이들의 염	6.5	5
29211910	디-엔(n)-프로필아민	4	0
29211920	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30	엔(N),엔(N)-비스(2-클로로에틸) 에틸아민	6.5	5
29211940	엔(N),엔(N)-비스(2-클로로에틸) 메틸아민	6.5	5
29211950	트리(Tri)-(2-클로로에틸) 아민	6.5	5
29211960	엔(N),엔(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2-염화 및 수소화된 염	6.5	5
29211990	기타	6.5	5
29212110	에틸렌디아민	6.5	15
29212190	기타	6.5	10
29212210	나일론-66 염	6.5	5
29212290	기타	6.5	10
29212900	기타	6.5	10
2921300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5	5
29214110	아닐린	6.5	5
29214190	기타	6.5	5
29214200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6.5	10
29214300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5	15
29214400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10
2921450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5	5
292146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5
29214910	피(p)-이소프로필-아닐린	4	0
29214920	다이메틸아닐린	6.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14930	2, 6-메틸 에틸 아닐린	4	0
29214940	2, 6-디에틸아닐린	6.5	5
29214990	기타	6.5	5
29215110	오르토-페닐렌디아민	4	0
29215190	기타	6.5	5
29215900	기타	6.5	10
29221110	락토파민(Ractopamine), 락토파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Ractopamine Hydrochloride)	6.5	15
29221190	기타	6.5	E
29221200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5	E
29221310	트리에탄올아민	6.5	15
2922132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5
292214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 및 그 염	6.5	5
29221910	에틸아미노 부탄올(에탐부톨)	6.5	5
29221921	엔(N), 엔(N)-다이메틸아미노에탄올과 동위의 수소화된 염들	6.5	5
29221922	엔(N), 엔(N)-디에틸아미노에탄올과 동위의 수소화된 염들	6.5	5
29221929	기타	6.5	5
2922193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5
2922194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5
29221950	루메판트린(Lumefantrine)	6.5	5
29221990	기타	6.5	5
29222100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6.5	10
29222910	아니시딘, 디아니시딘,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6.5	10
29222990	기타	6.5	5
292231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6.5	5
29223910	4-메틸-메스케치논(methcathinone)	6.5	5
29223990	기타	6.5	5
29224110	리신	5	15
29224190	기타	6	5
29224210	글루탐산	10	10
29224220	글루탐산 나트륨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24290	기타	6.5	5
29224310	안트라닐산	6.5	5
29224390	기타	6.5	5
292244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5
29224910	아미노산	6.5	15
29224991	프로카인	6	5
29224999	기타	6.5	5
29225010	p-히드록스-페닐글리신 및 p-히드록실-페닐-글리신-칼륨-염	6.5	5
29225090	기타	6.5	10
29231000	콜린과 그 염	6.5	5
2923200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10
29239000	기타	6.5	5
292411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5
292412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5	5
29241910	엔(N),엔(N)-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90	기타	6.5	15
29242100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5	5
292423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5
29242400	에치나메이트(INN)	6.5	5
29242910	페나세틴	6	5
29242920	피(P)-아세트아미노페놀(파라세탄올)	6	5
29242930	아스파테임(Aspartame)	6.5	5
29242990	기타	6.5	5
29251100	사카린과 그 염	9	10
29251200	구루테치미드(INN)	6.5	5
29251900	기타	6.5	5
292521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5
29252900	기타	6.5	5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6.5	E
29262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10
29263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29269010	피(p)-클로로벤질 시안화물	4	0
29269020	엠(m)-프탈로니트릴(Phthalonitrile)	6.5	5
29269090	기타	6.5	5
292700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6.5	5
29280000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6.5	10
2929101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15
29291020	오(o)-자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ylene diisocyanate)	6.5	5
2929103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E
2929104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6.5	10
29291090	기타	6.5	5
29299010	사이클라민산나트륨	9	5
2929902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5
2929903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5
29299040	아세페이트	6.5	5
29299090	기타	6.5	15
2930200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6.5	5
29303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5	5
29304000	메티오닌	6.5	5
2930500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5	5
29309010	시스틴	6.5	5
2930902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5
29309090	기타	6.5	5
29311000	테트라메칠납 및 테트라에칠납	6.5	5
29312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6.5	5
29319000	기타	6.5	5
29321100	테트라히드로푸란	6	0
293212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21300	푸르푸릴 알코올 및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	5
29321900	기타	6.5	5
29322010	쿠마린・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6.5	5
29322090	기타 라톤	6.5	5
29329100	이소사프롤	6.5	5
293292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5
29329300	피페로날	6.5	5
29329400	사프롤	6.5	5
293295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5
29329910	푸란 페놀(Furan phenol)	4	15
29329920	비펜데이트(Bifendate)	6.5	5
29329930	아르테메테르(Artemether)	6.5	5
29329990	기타	6.5	5
29331100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5	5
29331920	아날긴(Analgin)	6	5
29331990	기타	6.5	5
29332100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5	5
29332900	기타	6.5	10
29333100	피리딘과 그 염	6	0
29333210	헥사히드로피리딘[피페리딘(piperidine)]	4	0
29333220	이소니아지듐(Isoniazidum)	6.5	5
293333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6.5	15
29333910	벤질 산-3-퀴누클리디네이트	6.5	5
29333920	퀴누클리딘-3-올	6.5	5
29333990	기타	6.5	5
293341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34910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6.5	5
29334990	기타	6.5	5
293352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5
293353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6.5	5
293354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6.5	5
293355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과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6.5	5
29335910	시토신(Cytosine)	6.5	5
29335990	기타	6.5	5
29336100	멜라민	6.5	5
29336910	염화시아눌	6	5
29336921	디클로이소시아누르레이트(Dichloroisooyanurate) 산	6.5	5
29336922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누레이트(Trichloroisocyanurate) 산	6.5	5
29336929	기타	6.5	5
29336990	기타	6.5	10
293371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9	E
293372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9	5
29337900	그 밖의 락탐	9	5
293391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6.5	5
29339900	기타	6.5	5
2934100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	6.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4200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10
2934300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29349100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6.5	5
29349910	설톤(Sultones)과 술탐(sultams)	6.5	5
29349920	푸라졸리돈(Furazolidone)	6	5
29349930	핵산과 이들의 염	6.5	5
29349940	네비라핀(Nevirapine), 에파비렌즈(Efavirenz), 리토나비르(Ritonavir)와 이들의 염	6.5	5
29349950	클라볼란트(Clavulante)와 이들의 염	6.5	5
29349960	7-페니락세타미도(Phenylacetamido)-3-[클로로메틸(chloromethyl)]-3-세펨(cephem)-4-)카르복시(carboxylic) 산(acid) 피(p)-메톡시벤질(methoxybenzyl) 에스테르、7-아미노세펄로스포리아닉(aminocephalosporianic) 산、7-아미노디아섹토시세파노닉(aminodeacetoxycefanoic) 산	6	5
29349990	기타	6.5	5
29350010	술파디아진(Sulphadiazine)	6.5	5
29350020	설파디미딘(Sulfadimidine)	6.5	5
29350030	술파메톡사졸(Sulfamethoxazole)	6.5	5
29350090	기타	6.5	5
29362100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4	0
29362200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4	0
29362300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4	5
293624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62500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4	0
29362600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4	0
29362700	비타민 C 와 그 유도체	4	0
29362800	비타민 E 와 그 유도체	4	0
29362900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	0
2936900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0
29371100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0
29371210	재조합 인간 인슐린과 그 염	4	0
29371290	기타	4	0
29371900	기타	4	0
29372100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0
29372210	덱사메사손	4	0
29372290	기타	4	0
293723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0
29372900	기타	4	0
2937500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5
29379000	기타	4	0
2938100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6.5	5
29389010	지도부딘(Zidovudine), 라미부딘(Lamivudine), 스타부딘(Stavudine), 디다노신(Didanosine)과 이들의 염	6.5	5
29389090	기타	6.5	5
29391100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과 테바인, 이들의 염	4	0
29391900	기타	4	0
29392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393000	카페인과 그 염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94100	에페드린과 그 염	4	0
29394200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0
29394300	d-노르슈도에페드린과 염	4	0
293944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0
29394900	기타	4	0
293951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0
29395900	기타	4	0
29396100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0
293962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0
29396300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0
29396900	기타	4	0
29399110	코카인과 그 염	4	0
29399190	기타	4	0
29399910	니코틴과 그 염	4	0
29399920	스트리크닌과 그 염	4	0
29399990	기타	4	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10
29411011	암피실린(Ampicillin)	6	5
29411012	암피실린 트리하이드레이트(Ampicillin trihydrate)	6	5
29411019	기타	6	5
29411091	아목시실린(Amoxycillin)	4	0
29411092	아목시실린 트리하이드레이트(Amoxycillin trihydrate)	4	0
29411093	6-아미노페니실린 산	4	0
29411094	페니실린 브이(V)	4	0
29411095	술포벤질페니실린	4	0
29411096	클록사실린(Cloxacillin)	4	0
29411099	기타	4	0
2941200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3011	테트라사이클린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413012	테트라사이클린의 염	4	0
29413020	테트라사이클린 유도체와 그 염	4	0
29414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500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9010	젠타마이신(Gentamyci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9020	카나마이신(Kanamyci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9030	리팜피신(RFP), 이들의 염	4	0
29419040	링코마이신(Lincomyci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0
29419052	세팔렉신과 그 염	6	5
29419053	세파존린과 그 염	6	5
29419054	세프라딘과 그 염	6	5
29419055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과 그 염	6	5
29419056	세포페라존(Cefoperazone)과 그 염	6	5
29419057	세포탁심(Cefotaxime)과 그 염	6	5
29419058	세파클로르(Cefaclor)와 그 염	6	5
29419059	기타	6	10
29419060	마데카마이신(Midecamyci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	5
29419070	아세틸스피라마이신(Acetyl-spiramycin)과 그 유도체,이들의 염	4	0
29419090	기타	6	5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6.5	5
3001200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3	0
30019010	헤파린과 그 염	3	0
30019090	기타	3	0
3002100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30022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	0
3002300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	0
30029010	색시톡신(saxitoxin)	3	0
30029020	리시톡신(Ricitoxin)	3	0
30029030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0029040	유전학 소재와 유전자 변형 유기체	3	0
30029090	기타	3	0
30031011	암피실린(Ampicillin)	6	5
30031012	아목시실린(Amoxycillin)	6	5
30031013	페니실린 브이(V)	6	5
30031019	기타	6	5
30031090	기타	6	5
30032011	세포탁심(Cefotaxime)	6	5
30032012	세프타지딤(Ceftazidime)	6	5
30032013	세폭시틴(Cefoxitin)	6	5
30032014	세프테졸(Ceftezole)	6	5
30032015	세파클로르(Cefaclor)	6	5
30032016	세프록심(Cefuroxime)	6	5
30032017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6	5
30032018	세포페라존(Cefoperazone)	6	5
30032019	기타	6	5
30032090	기타	6	5
3003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5	5
30033900	기타	6	5
30034010	키닌제제나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	5	5
30034090	기타	5	5
30039010	설파제를 함유한 것	6	5
30039020	아르테미시닌과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5	5
30039090	기타	5	5
30041011	암피실린(Ampicillin)	6	5
30041012	아목시실린(Amoxycillin)	6	5
30041013	페니실린 브이(V)	6	5
30041019	기타	6	5
30041090	기타	6	5
30042011	세포탁심(Cefotaxime)	6	5
30042012	세프타지딤(Ceftazidime)	6	5
30042013	세폭시틴(Cefoxitin)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0042014	세프테졸(Ceftezole)	6	5
30042015	세파클로르(Cefaclor)	6	5
30042016	세프록심(Cefuroxime)	6	5
30042017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6	5
30042018	세포페라존(Cefoperazone)	6	5
30042019	기타	6	10
30042090	기타	6	5
30043110	재조합 인간 인슐린을 함유한 것	5	5
30043190	기타	5	5
30043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5	5
30043900	기타	5	5
30044010	키닌제제나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	5	5
30044090	기타	5	5
3004500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	5
30049010	설파제를 함유한 것	6	5
30049020	비페닐 디카르브시브트(biphenyl dicarbxybte)	4	0
30049051	약용 주류나 포도주	3	0
30049052	피엔 즈 황(Pien Tzu Huang)	3	0
30049053	베이 야오(Bai Yao)	3	0
30049054	에센셜(Essential) 밤(balm)	3	0
30049055	언공(Angong) 니우황(niuhuang) 완(wan)	3	0
30049059	기타	3	0
30049060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s)과 그들의 염을 함유한 것	4	0
30049090	기타	4	0
30051010	반창고	5	5
30051090	기타	5	5
30059010	탈지 면, 거즈, 붕대	5	5
30059090	기타	5	5
3006100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 (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0062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3	0
30063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0
3006400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5	10
30065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5	5
30066010	호르몬을 기본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조제품	0	0
30066090	기타	0	0
30067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5
300691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10	10
30069200	폐(廢)의료용품	5	5
31010011	구아노(Guano)	3	0
31010019	기타	6.5	5
31010090	기타	4	15
31021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E
31022100	황산암모늄	4	0
31022900	기타	4	0
31023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0
31024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0
31025000	질산나트륨	4	0
31026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0
3102800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0
31029010	칼슘 사이아나미드(Calcium cyanamide)	4	0
31029090	기타	4	0
31031010	중과인산석회	4	0
31031090	기타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1039000	기타	4	0
31042010	분해적으로 순수한 것	3	0
31042090	기타	3	0
31043000	황산칼륨	3	15
31049010	카널라이트, 칼리 암염 및 기타 천연의 천연 칼륨 염류	3	0
31049090	기타	3	0
31051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0
31052000	질소·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0	E
31053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50	E
31054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0
310551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0
31055900	기타	4	0
31056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0
31059000	기타	4	0
32011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5	5
32012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5
32019010	그 밖의 유연용 추출물(extracts)	6.5	5
32019090	기타	6.5	5
32021000	합성 유기유연제	6.5	5
32029000	기타	6.5	5
32030011	천연 인디고(indigo)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30019	기타	6.5	5
32030020	동물성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41100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41200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매염(媒染), 염료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3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414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510	합성 인디고(indigo)[환원 인디고(reductive indigo)]	6.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2041590	기타	6.5	10
320416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7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911	검은 유황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10
32041919	기타	6.5	10
32041990	기타	6.5	0
32042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6.5	0
32049010	생물적 착색(stains)과 염료 지시(indicators)	6.5	5
32049090	기타	6.5	5
320500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6.5	15
32061110	티탄백	6.5	0
32061190	기타	6.5	5
32061900	기타	10	10
32062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5
32064100	군청(群青)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5
32064210	리도폰(lithopone)	6.5	5
32064290	기타	6.5	10
32064900	기타	6.5	10
32065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10
32071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10
3207200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15
3207300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5
32074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3208100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20
32082010	아크릴 폴리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20
32082020	비닐 폴리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0
32089010	폴리우레탄 폴리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0
32089090	기타	10	20
3209100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2099010	에폭시 레진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	20
32099020	플루오로레진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0
32099090	기타	10	20
32100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와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10	5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10	15
32121000	스탬프용 박(箔)	15	10
32129000	기타	10	10
32131000	세트인 것	10	10
32139000	기타	10	10
32141010	반도체 디바이스를 위한 인캡슐레이션 재료	9	E
32141090	기타	9	5
32149000	기타	9	15
32151100	흑색	6.5	5
32151900	기타	6.5	10
32159010	필기용이나 제도용 잉크	6.5	5
32159090	기타	10	5
33011200	오렌지유	20	15
33011300	레몬유	20	15
33011910	라임유	20	15
33011990	기타	20	15
330124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20	15
330125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15	10
33012910	장뇌로 만든 것	20	15
33012920	시트로넬라로 만든 것	15	10
33012930	아니스 열매로 만든 것	20	15
33012940	계수나무로 만든 것	20	15
33012950	쿠베바로 만든 것	20	15
33012960	유칼립투스로 만든 것	20	15
33012991	제라늄으로 만든 것	20	15
33012999	기타	1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3013010	붓꽃(irises)의 발삼(Balsam)	20	15
33013090	기타	20	15
33019010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20	15
33019020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20	15
33019090	기타	20	15
33021010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33021090	기타	15	10
33029000	기타	10	10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10	E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	E
33042000	눈화장용 제품류	10	E
330430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5	E
33049100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E
33049900	기타	6.5	PR-20
33051000	샴푸	6.5	PR-35
33052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15	E
33053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15	E
33059000	기타	10	PR-35
33061010	치약	10	10
33061090	기타	10	10
3306200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10	10
33069000	기타	10	10
33071000	면도용 제품류	10	E
33072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10	E
3307300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0	PR-35
330741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10	10
33074900	기타	10	10
33079000	기타	9	PR-3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4011100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10	10
34011910	세탁비누	10	E
34011990	기타	15	10
34012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15	10
34013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10
34021100	음이온성	6.5	PR-35
34021200	양이온성	6.5	PR-35
34021300	비이온성	6.5	15
34021900	기타	6.5	PR-35
34022010	분말형태에 있는 합성세제	10	PR-35
34022090	기타	10	PR-35
34029000	기타	9	5
34031100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10	10
34031900	기타	10	5
34039100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10	5
34039900	기타	10	5
34042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10	E
34049000	기타	10	5
34051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10	10
34052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10	10
34053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10	10
34054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10	10
34059000	기타	10	5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10
3407001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종류의 조제품	6.5	10
34070020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6.5	5
34070090	기타	10	10
35011000	카세인(casein)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5019000	기타	10	10
35021100	건조한 것	10	10
35021900	기타	10	10
35022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10	10
35029000	기타	10	10
35030010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12	10
35030090	기타	12	10
35040010	펩톤(peptone)	3	0
35040090	기타	8	5
3505100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12	10
35052000	글루(glue)	20	15
3506100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35069110	폴리아미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5
35069120	에폭시 레진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	20
35069190	기타	10	10
35069900	기타	10	20
35071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	5
35079010	기본(Basic) 프로테이나제	6	10
35079020	기본(Basic) 리파제	6	10
35079090	기타	6	5
36010000	화약	9	5
36020010	암모날 질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9	5
36020090	기타	9	5
360300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9	5
36041000	불꽃제품	6	5
36049000	기타	6	5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6	5
36061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나 액화가스연료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6069011	특정한 모양으로 자른 것(즉시 사용을 위한 것)	9	5
36069019	기타	9	5
36069090	기타	9	5
37011000	엑스선용	20	PR-20
37012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5	10
37013021	레이저 사진식자(phototypesetting) 필름	제곱미터당 3.7 위안	10
37013022	피복 감광판	제곱미터당 8.1 위안	10
37013024	씨티피(CTP) 플레이트	제곱미터당 8.1 위안	10
37013025	플렉소그래픽(flexographic) 플레이트	제곱미터당 15 위안	10
37013029	기타	제곱미터당 15 위안	5
37013090	기타	20	15
37019100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22	E
37019920	인쇄제판용	10	10
37019990	기타	25	E
37021000	엑스선용	10	15
37023110	즉석 인쇄 필름	5	5
37023190	기타	제곱미터당 67 위안	E
37023210	즉석 인쇄 필름	5	5
37023220	인쇄제판용	제곱미터당 4.5 위안	10
37023290	기타	제곱미터당 21 위안	20
37023920	인쇄제판용	제곱미터당 12 위안	10
37023990	기타	제곱미터당 24 위안	20
37024100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제곱미터당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7.1 위안	
37024221	넓은 방식(防蝕)한 사진 플레이트(인쇄 처리 회로용으로 한정한다)	제곱미터당 0.6 위안	E
37024229	기타	제곱미터당 1.6 위안	10
37024292	레드(Red)나 적외선(infra-red) 레이저 필름	제곱미터당 2.4 위안	10
37024299	기타	제곱미터당 7 위안	10
37024321	레이저 사진식자(phototypesetting) 필름	제곱미터당 1.8 위안	10
37024329	기타	제곱미터당 3.7 위안	10
37024390	기타	제곱미터당 17 위안	15
37024421	레이저 사진식자(phototypesetting) 필름	제곱미터당 2.0 위안	10
37024422	좁은 방식(防蝕)한 사진 플레이트(인쇄 처리 회로용으로 한정한다)	제곱미터당 0.9 위안	E
37024429	기타	제곱미터당 2.9 위안	10
37024490	기타	제곱미터당 27 위안	15
37025200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곱미터당 95 위안	E
370253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제곱미터당 128 위안	E
37025410	폭이 35 밀리미터이고 길이가 2 미터 이하인 것	제곱미터당 22 위안	15
37025490	기타	제곱미터당 24 위안	15
37025520	영화용 필름	제곱미터당 9 위안	E
37025590	기타	제곱미터당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7 위안	
37025620	영화용 필름	제곱미터당 13 위안	20
37025690	기타	제곱미터당 74 위안	E
37029600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제곱미터당 21 위안	15
37029700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초과인 것	제곱미터당 9 위안	15
37029800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곱미터당 10 위안	10
37031010	사진용 감광지와 판지	18	15
37031090	기타	18	15
37032010	사진용 감광지와 판지	35	E
37032090	기타	18	15
37039010	사진용 감광지와 판지	35	E
37039090	기타	18	15
37040010	영화용 필름	6.5	5
37040090	기타	18	10
37051000	오프셋 복사용	18	10
37059010	환등 슬라이드(교육용에 한정한다)	0	0
37059021	인쇄된 책과 신문용	0	0
37059029	기타	4	0
37059090	기타	18	10
37061010	교육용	0	0
37061090	기타	5	15
37069010	교육용	0	0
37069090	기타	4	0
37071000	감광유제	8	15
37079010	사진용 필름과 사진 개발용	16	15
37079020	사진 복사 장치용	10	10
37079090	기타	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8011000	인조흑연	6.5	10
38012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15
38013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5
38019000	기타	6.5	5
38021010	나무로 된 것	6.5	5
38021090	기타	6.5	5
38029000	기타	10	10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5
380400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6.5	10
3805100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6.5	5
38059010	파인유(pine oil)	6.5	5
38059090	기타	6.5	5
38061010	로진(rosin)	10	10
38061020	수지산	10	10
38062010	로진(rosin)·수지산의 염	6.5	5
38062090	기타	6.5	5
38063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5
38069000	기타	6.5	5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085010	소매용	9	5
38085090	기타	5	5
38089111	모기향	10	5
38089119	기타	10	10
38089190	기타	6	5
38089210	소매용	9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8089290	기타	6	5
38089311	소매용	9	5
38089319	기타	5	5
38089391	소매용	9	5
38089399	기타	6	5
38089400	소독제	9	5
38089910	소매용	9	5
38089990	기타	9	5
38091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	10
380991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5
380992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10
380993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5
38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6.5	15
38109000	기타	6.5	15
381111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5
38111900	기타	6.5	5
38112100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6.5	5
38112900	기타	6.5	10
38119000	기타	6.5	5
38121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6	15
3812200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15
38123010	고무 산화 방지제	6	15
38123090	기타	6.5	5
38130010	조제품 및 장전물(소화기용으로 한정한다)	6.5	10
38130020	장전된 소화탄	10	10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나 바니시(vanish) 제거제	10	20
3815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10
38151200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6.5	10
38151900	기타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8159000	기타	6.5	5
381600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5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6.5	15
38180011	지름이 15.24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38180019	기타	0	0
38180090	기타	0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10	10
3821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식물・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	5
38220010	뒷편을 보강한 것	4	5
38220090	기타	5	5
38231100	스테아린산	16	15
38231200	올레인산	16	15
38231300	톨유(tall oil) 지방산	16	15
38231900	기타	16	15
3823700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13	15
38241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10
38243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244010	고효율 감수재	6.5	15
38244090	기타	6.5	5
38245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5
38246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10
38247100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5
382472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82473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4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2475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5
382476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7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800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5
38247900	기타	6.5	5
382481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5
382482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5
382483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5
38249010	퓨젤유	6.5	10
38249020	잉크제거제·등사판원지 수정제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38249030	수성(水性) 가스의 발열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 따위의 재료	6.5	5
38249091	활석(滑石) 혼합물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초과인것	6.5	5
38249092	산화 마그네슘 혼합물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초과인 것	6.5	5
38249099	기타	6.5	15
38251000	생활폐기물	6.5	5
38252000	하수 찌꺼기	6.5	5
38253000	감염성 폐기물	6.5	5
382541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5
38254900	기타	6.5	5
38255000	금속세정액·유압액 및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6.5	5
382561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56900	기타	6.5	5
38259000	기타	6.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826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15
39011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6.5	PR-8
39012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PR-8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PR-8
39019010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6.5	15
39019020	선형성저밀도폴리에틸렌	6.5	E
39019090	기타	6.5	PR-35
39021000	폴리프로필렌	6.5	E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6.5	E
39023010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6.5	15
39023090	기타	6.5	PR-8
39029000	기타	6.5	E
39031100	발포성	6.5	PR-8
39031910	변형된 것	6.5	20
39031990	기타	6.5	20
39032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12	PR-20
39033010	변형된 것	6.5	20
39033090	기타	6.5	20
39039000	기타	6.5	15
39041010	페이스트(paste) 폴리(염화비닐)	6.5	20
39041090	기타	6.5	PR-35
390421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20
39042200	가소화한 것	6.5	20
39043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9	15
39044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12	15
39045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5
390461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10	10
39046900	기타	6.5	5
39049000	기타	10	15
39051200	물에 분산된 것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051900	기타	10	15
39052100	물에 분산된 것	10	15
39052900	기타	10	15
39053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4	10
39059100	공중합체(共重合體)	10	15
39059900	기타	10	15
39061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PR-8
39069010	폴리아크릴아미드	6.5	PR-8
39069090	기타	6.5	10
39071010	폴리옥시메틸렌 [피오엠(POM)]	6.5	15
39071090	기타	6.5	5
39072010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6.5	0
39072090	기타	6.5	15
39073000	에폭시수지	6.5	15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6.5	15
39075000	알키드수지	10	10
39076011	고 점도의 것	6.5	20
39076019	기타	6.5	20
39076090	기타	6.5	15
39077000	폴리(락트산)	6.5	5
39079100	불포화의 것	6.5	10
3907991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15
39079990	기타	6.5	0
39081011	폴리아미드로-6, 6 으로 만든 것	6.5	E
39081012	폴리아미드로 -6 으로 만든 것	6.5	E
39081019	기타	6.5	E
39081090	기타	6.5	E
39089000	기타	10	E
3909100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1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6.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093090	기타	6.5	0
39094000	페놀수지	6.5	10
39095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6.5	10
39111000	석유수지・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6.5	15
39119000	기타	6.5	5
391211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10
39121200	가소화한 것	6.5	5
39122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5
391231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6.5	5
39123900	기타	6.5	5
39129000	기타	6.5	5
39131000	알긴산, 그 염과 에스테르	10	10
39139000	기타	6.5	5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6.5	5
3915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15
39152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15
39153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15
39159010	피디에틸렌(pdyethylene) 글리콜 테베프타레이트(tevephthalate)의 것	6.5	15
39159090	기타	6.5	15
3916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10
39162010	형재(形材)	10	10
39162090	기타	10	10
3916901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10
39169090	기타	10	10
3917100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10	10
391721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10
391722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1723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10
39172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10
39173100	연질(軟質)의 관·파이프와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 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5
39173200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9173300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9173900	기타	6.5	15
39174000	연결구류	10	5
39181010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10	10
39181090	기타	10	E
39189010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10	10
39189090	기타	10	10
39191010	아크릴 레이신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5
39191091	캠슐화제 반사 필름	6.5	5
39191099	기타	6.5	E
39199010	캠슐화제 반사 필름	6.5	15
39199090	기타	6.5	15
39201010	배터리 격리막(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5	10
39201090	기타	6.5	15
39202010	배터리 격리막(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5	E
39202090	기타	6.5	10
392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10
392043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10
39204900	기타	6.5	15
392051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6.5	10
39205900	기타	6.5	15
392061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15
392062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15
392063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10	10
392069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10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2071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10
392073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5
39207900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10	10
392091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15
392092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5
392093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5
392094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10	10
392099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6.5	15
39209990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6.5	10
392111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10	10
39211210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9	15
39211290	기타	6.5	5
39211310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9	15
39211390	기타	6.5	10
392114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10	10
39211910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9	15
39211990	기타	6.5	15
39219020	유리섬유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판・시트(sheet)	6.5	5
39219030	판・시트(sheet)・코일(coil)[인조 폴리이소부틸렌 (polyisobutylene)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5	10
39219090	기타	6.5	15
3922100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 및 세면대	10	10
39222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10	10
39229000	기타	10	10
39231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20
392321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10	5
39232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15
39233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15
39234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15
39235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10
39239000	기타	10	20
39241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249000	기타	10	10
39251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39252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10
39253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10	10
39259000	기타	10	10
3926100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10	10
39262011	폴리(염화비닐)	10	10
39262019	기타	10	10
39262090	기타	10	10
39263000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10	15
39264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10	10
39269010	기계나 기구용의 것	10	10
39269090	기타	10	10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15
400121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20	15
400122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0	E
40012900	기타	20	E
4001300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20	15
40021110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7.5	15
40021190	기타	7.5	15
40021911	에스비알(SBR)(조작되지 않은 것)	7.5	15
40021912	에스비알(SBR)[유입(oil-filled)된 것]	7.5	15
40021913	에스비알(SBR)(열 가소된 것)	7.5	15
40021914	에스비알(SBR)(전기 유입과 열 가소된 것)	7.5	15
40021919	기타	7.5	15
40021990	기타	7.5	15
40022010	일차제품(primary form)	7.5	15
40022090	기타	7.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0023110	일차제품(primary form)	6	15
40023190	기타	7.5	15
40023910	일차제품(primary form)	7.5	15
40023990	기타	7.5	15
40024100	라텍스	7.5	5
40024910	일차제품(primary form)	7.5	E
40024990	기타	7.5	15
40025100	라텍스	7.5	15
40025910	일차제품(primary form)	7.5	15
40025990	기타	7.5	15
40026010	일차제품(primary form)	3	15
40026090	기타	5	15
40027010	일차제품(primary form)	7.5	15
40027090	기타	7.5	15
4002800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7.5	15
40029100	라텍스	7.5	15
40029911	일차제품(primary form)	7.5	15
40029919	기타	7.5	15
40029990	기타	4	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15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8	5
4005100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8	15
4005200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15
400591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5
40059900	기타	8	15
40061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5
40069010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	8	10
40069020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제품	14	10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10
400811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0081900	기타	8	5
400821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5
40082900	기타	8	5
40091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10.5	10
40091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0	10
40092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10.5	10
40092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0	10
40093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10.5	20
40093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0	10
40094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10.5	10
40094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0	10
401011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10	10
401012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10	10
40101900	기타	10	10
401031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5
401032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5
401033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
401034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5
401035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10
401036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10
40103900	기타	8	5
4011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을 포함한다]		
401120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10	15
40113000	항공기용	1	0
40114000	모터사이클용	15	15
40115000	자전거용	20	15
401161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17.5	10
401162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17.5	10
401163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7.5	10
40116900	기타	17.5	10
401192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25	20
401193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25	20
401194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25	20
40119900	기타	25	20
401211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20	15
40121200	버스용이나 화물자동차용	20	15
40121300	항공기용	20	15
40121900	기타	20	15
40122010	승용자동차용・버스용이나 화물차용	25	20
40122090	기타	25	20
40129010	항공기용	3	0
40129020	승용자동차용・버스용이나 화물차용	22	20
40129090	기타	22	20
4013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15	15
40132000	자전거용	15	10
40139010	항공기용	3	0
40139090	기타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0141000	콘돔	0	0
40149000	기타	17.5	10
40151100	외과용	8	5
40151900	기타	18	10
40159010	내과용	8	5
40159090	기타	15	10
40161010	기계나 기구용의 것	8	15
40161090	기타	15	10
40169100	바닥깔개와 매트	18	10
40169200	지우개	18	10
40169310	기계나 기구용의 것	8	5
40169390	기타	15	5
401694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8	10
40169500	그 밖의 팽창성 제품	18	10
40169910	기계나 기구용의 것	8	15
40169990	기타	10	10
40170010	경질 고무[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	10
40170020	경질 고무 제품	15	10
41012011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8	5
41012019	기타	5	0
410120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0
41015011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8.4	5
41015019	기타	5	0
410150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0
41019011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8.4	5
41019019	기타	5	0
410190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0
41021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7	0
41022110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14	10
41022190	기타	9	5
41022910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1022990	기타	7	0
41032000	파충류의 원피	9	5
41033000	돼지의 원피	9	5
41039011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14	10
41039019	기타	9	5
41039021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것	14	10
41039029	기타	9	5
41039090	기타	9	5
41041111	웨트-블루(Wet-blue)	7	5
41041119	기타	8	5
410411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5
41041911	웨트-블루(Wet-blue)	6	5
41041919	기타	7	5
41041920	마속(馬屬)동물의 것	7	5
41044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	5	5
41044910	기계 벨트 재료용	5	5
41044990	기타	7	15
41051010	웨트-블루(Wet-blue)	14	10
41051090	기타	10	10
41053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8	10
410621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14	10
41062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4	10
41063110	웨트-블루(Wet-blue)	14	10
41063190	기타	14	10
41063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4	10
41064000	파충류의 원피	14	10
410691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14	10
41069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4	10
41071110	소의 것	8	15
410711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5
41071210	소의 것	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1071220	마속(馬屬)동물의 것	5	5
41071910	기계 벨팅(belting)	5	10
41071990	기타	7	5
41079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10
410792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15
41079910	기계 벨트 재료용	5	5
41079990	기타	7	15
41120000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8	15
41131000	산양의 가죽	14	10
41132000	돼지의 가죽	14	10
41133000	파충류의 가죽	14	10
41139000	기타	14	10
4114100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14	10
41142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10	20
41151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4	10
4115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14	10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20	15
42021110	트렁크와 슈트케이스	15	10
42021190	기타	10	10
42021210	트렁크와 슈트케이스	20	15
42021290	기타	2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2021900	기타	20	15
42022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0	10
42022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10
42022900	기타	20	15
42023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0	10
42023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0	10
42023900	기타	20	15
42029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0	10
42029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10
42029900	기타	20	15
42031000	의류	10	5
42032100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20	15
42032910	작업용 장갑	20	15
42032990	기타	20	15
42033010	벨트	10	10
42033020	띠	10	10
42034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20	15
42050010	좌석의 커버	12	E
42050020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	8	10
42050090	기타	12	15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20	15
43011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43013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16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0	15
43018010	토끼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0	15
43018090	기타	20	15
43019010	족제비 꼬리	20	15
43019090	기타	20	15
43021100	밍크의 것	12	10
43021910	회색의 다람쥐・담비・그 밖의 족제비・여우・수달・마멋(marmot)과 링스(lynx)의 것	10	10
43021920	토끼의 것	10	10
430219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티베트 어린 양을 포함한다)이나 몽고의 것]	20	15
43021990	기타	10	10
43022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43023010	회색의 다람쥐・담비・그 밖의 족제비・여우・수달・마멋(marmot)과 링스(lynx)의 것	20	15
43023090	기타	20	15
43031010	의류	23	20
43031020	의류 부속품	18	10
43039000	기타	18	10
43040010	인조 모피	18	10
43040020	인조 모피 제품	18	10
44011000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44012100	침엽수류	0	0
44012200	활엽수류	0	0
44013100	목재 펠릿(pellet)	0	0
44013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021000	대나무로 만든 것	10.5	10
44029000	기타	10.5	10
44031000	페인트・착색・크레오소트(creosote) 또는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0	0
44032010	한국의 소나무와 몽골리안(Mongolian) 구주 소나무	0	0
44032020	스트로부스소나무(가문비나무 와 전나무)	0	0
4403203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040	낙엽송	0	0
44032090	기타	0	0
44034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10	티크(Teak)	0	0
44034920	오꾸메(Okoume)[아유쿠메드(Aukoumed)]	0	0
44034930	딥테로카르푸스속 종 케루잉	0	0
44034940	카푸르(Kapur)(용뇌수 종)	0	0
44034950	인트시아(Intsia) 종 [멩가리스(Mengaris)]	0	0
44034960	쿰파시아 종[멩가리스 또는 켐파스(Mengaris or Kempas)]	0	0
44034970	아니소프터(Anisopter) 종	0	0
44034990	기타	0	0
440391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것	0	0
440392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44039910	난(nan)뮤(mu)[피오에베(Phoebe)]	0	0
44039920	녹나무	0	0
44039930	자단으로 만든 것	0	0
44039940	키리(kiri)(오동나무)	0	0
44039950	물푸레나무	0	0
44039960	북미의 견재(체리나무・호두나무 및 단풍나무를 포함한다)	0	0
44039980	그 밖의 열거되지 않은 온대성 활엽수류	0	0
44039990	기타	0	0
44041000	침엽수류	8	5
44042000	활엽수류	8	5
440500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061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0	0
44069000	기타	0	0
44071010	한국의 소나무와 몽골리안(Mongolian) 구주 소나무	0	0
44071020	스트로부스소나무(가문비나무와 전나무)	0	0
4407103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71040	더글러스퍼(Douglas fir)	0	0
44071090	기타	0	0
440721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0	0
440722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0	0
440725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726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0	0
44072700	사팰리(Sapelli)	0	0
44072800	이로코(Iroko)	0	0
44072910	티크(Teak)	0	0
44072920	아까주(Acajou)	0	0
44072930	메르반(Merban)	0	0
44072990	기타	0	0
440791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것	0	0
440792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440793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0	0
440794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0	0
440795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0	0
44079910	녹나무・녹나무 목재[nanmu(楠木)] 또는 자단(紫檀)	0	0
44079920	오동나무	0	0
44079930	북미의 견재(호두나무를 포함한다)	0	0
44079980	그 밖의 온대성 활엽수류	0	0
44079990	기타	0	0
44081011	래미네이트를 입힌 합판의 것	8	15
44081019	기타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081020	합판용 시트(sheets)	4	0
44081090	기타	4	0
44083111	래미네이트를 입힌 합판	10	15
44083119	기타	4	0
44083120	합판용 시트(sheets)	4	0
44083190	기타	4	0
44083911	래미네이트를 입힌 합판	10	15
44083919	기타	4	0
44083920	합판용 시트(sheets)	4	0
44083990	기타	4	0
44089011	래미네이트를 입힌 합판	4	15
44089012	그 밖의 온대성 활엽수류	3	0
44089013	대나무로 만든 것	4	15
44089019	기타	3	5
44089021	그 밖의 온대성 활엽수류	3	0
44089029	기타	3	0
44089091	그 밖의 온대성 활엽수류	3	0
44089099	기타	3	0
44091010	마루판 스트립(strips)	7.5	10
44091090	기타	7.5	5
44092110	마루판 스트립(strips)	4	0
44092190	기타	4	0
44092910	마루판 스트립(strips)	4	0
44092990	기타	4	0
441011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	E
44101200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4	E
44101900	기타	4	E
44109011	볏집과 밀집의 파티클 보드	7.5	E
44109019	기타	7.5	E
44109090	기타	7.5	E
4411121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4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111219	기타	7.5	5
44111221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의 것	4	15
44111229	기타	4	15
4411129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7.5	15
44111299	기타	4	15
4411131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4	E
44111319	기타	7.5	E
44111321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의 것	4	E
44111329	기타	4	E
4411139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7.5	E
44111399	기타	4	15
4411141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4	15
44111419	기타	7.5	15
44111421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의 것	4	15
44111429	기타	4	15
4411149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7.5	15
44111499	기타	4	15
4411921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4	15
44119290	기타	7.5	15
441193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의 것	4	E
44119390	기타	4	E
44119410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하고 0.5 그램 이하인 것	7.5	15
44119421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7.5	15
44119429	기타	4	15
44121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2	15
44121019	기타	4	15
4412102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5
44121091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121092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5
44121099	기타	4	0
441231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2	15
441232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온대성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15
44123290	기타	4	15
44123900	기타	4	0
441294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	10	15
44129491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15
44129492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5
44129499	기타	4	0
441299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	10	15
44129991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15
44129992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5
44129999	기타	4	0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	10
441400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것	20	E
44140090	기타	20	E
44151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7.5	10
441520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것	7.5	E
44152090	기타	7.5	E
441600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것	16	E
44160090	기타	16	E
441700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것	16	E
44170090	기타	16	E
4418101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것	4	E
44181090	기타	4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4182000	문과 문틀 및 문지방	4	0
44184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	0
44185000	지붕을 이는 판자	7.5	5
44186000	기둥과 들보	4	0
44187100	모자이크 마루용	4	0
44187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0
44187290	기타	4	0
44187910	대나무로 만든 것	4	0
44187990	기타	4	0
44189010	대나무로 만든 것	4	0
44189090	기타	4	0
44190031	목재로 만든 것	0	0
44190032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4190091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4190099	기타	0	0
44201011	나무 조각	0	0
44201012	대나무 조각	0	0
44201020	나무로된 부채	0	0
44201090	기타	0	0
4420901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0	0
44209090	기타	0	0
44211000	옷걸이	0	0
44219010	스풀・콥・보빈・릴과 이와 유사한 것	0	0
44219021	목재로 만든 것	0	0
44219022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4219090	기타	0	0
45011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45019010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0	0
45019020	부순 코르크(cork)・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나 잘게 부순 코르크(cork)	0	0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5031000	마개	8	5
45039000	기타	10.5	10
45041000	블록·판·시트(sheet)나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4	10
45049000	기타	0	0
46012100	대나무로 만든 것	9	5
46012200	등나무로 만든 것	9	5
46012911	골풀로 만든 것	9	5
46012919	기타	9	5
46012921	발(갈대로 만든 것)	9	5
46012929	기타	9	5
46012990	기타	9	5
460192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5
46019290	기타	9	5
460193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5
46019390	기타	9	5
46019411	플레이트(plait)	10	10
46019419	기타	10	10
4601949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5
46019499	기타	9	5
460199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5
46019990	기타	9	10
46021100	대나무로 만든 것	9	5
46021200	등나무로 만든 것	9	5
46021910	잔디나 짚으로 만든 것	9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6021920	옥수수 껍데기로 만든 것	9	5
46021930	고리버들로 만든 것	9	5
46021990	기타	9	5
46029000	기타	9	5
47010000	기계목재펄프	0	0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47031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1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2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2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1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1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0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69100	기계펄프	0	0
47069200	화학펄프	0	0
470693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47071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0	0
47072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73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47079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4801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
48021010	쉬안(Xuan) 종이	7.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8021090	기타	7.5	E
48022010	사진용 원지(原紙)	7.5	E
48022090	기타	7.5	E
48024000	벽지용 원지(原紙)	7.5	E
48025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7.5	E
48025500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5	E
48025600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E
48025700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5	E
480258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E
48026110	신문용지	7.5	E
48026190	기타	5	E
48026200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E
48026910	신문용지	7.5	E
48026990	기타	5	E
48030000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또는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7.5	E
48041100	표백하지 않은 것	5	E
48041900	기타	5	E
48042100	표백하지 않은 것	5	E
48042900	기타	5	E
48043100	표백하지 않은 것	2	E
48043900	기타	2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8044100	표백하지 않은 것	2	E
48044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5	E
48044900	기타	2	E
48045100	표백하지 않은 것	2	E
48045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5	E
48045900	기타	2	E
480511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7.5	E
480512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7.5	E
48051900	기타	7.5	E
48052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7.5	E
480525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7.5	E
48053000	아황산포장지	7.5	E
48054000	여과지와 판지	7.5	E
48055000	펠트지와 판지	7.5	E
48059110	전해질 축전기용 종이	7.5	E
48059190	기타	7.5	E
48059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7.5	E
48059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7.5	E
48061000	황산지	7.5	E
48062000	내지지(耐脂紙)	7.5	E
48063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7.5	E
48064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7.5	E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7.5	E
48081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7.5	E
4808400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7.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8089000	기타	7.5	E
48092000	셀프복사지	7.5	E
48099000	기타	7.5	E
48101300	롤 모양인 것	5	E
48101400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E
48101900	기타	5	E
481022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5	E
48102900	기타	5	E
481031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48103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48103900	기타	5	E
48109200	여러 겹의 것	5	E
48109900	기타	7.5	E
48111000	타르・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7.5	E
48114100	셀프접착지	7.5	E
48114900	기타	7.5	E
48115110	천연색 사진용으로 플라스틱으로 양면을 도포한 천연색 사진용지	7.5	E
48115190	기타	7.5	E
48115910	절연지와 판지	7.5	E
48115991	알루미늄으로 처리한 것	7.5	E
48115999	기타	7.5	E
48116010	절연지와 판지	7.5	E
48116090	기타	7.5	E
48119000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7.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7.5	E
48131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7.5	E
48132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7.5	E
48139000	기타	7.5	E
4814200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올록볼록한(embossed)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5	E
48149000	기타	7.5	E
48162000	셀프복사지	7.5	E
48169010	열전사지	7.5	E
48169090	기타	7.5	E
48171000	봉투	7.5	E
48172000	봉함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7.5	E
48173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5	E
48181000	화장지	7.5	E
48182000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월	7.5	E
48183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7.5	E
48185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7.5	5
48189000	기타	7.5	E
48191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48192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5	E
48193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7.5	5
48194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7.5	E
4819500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7.5	E
48196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5	E
48201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7.5	E
48202000	연습장	7.5	E
48203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 및 서류철 표지	7.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8204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7.5	10
48205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7.5	E
48209000	기타	7.5	E
48211000	인쇄한 것	7.5	E
48219000	기타	7.5	E
48221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7.5	E
48229000	기타	7.5	E
48232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7.5	E
48234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와 다이알	7.5	E
48236100	대나무로 만든 것	7.5	5
48236900	기타	7.5	10
48237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7.5	E
48239010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7.5	15
48239020	조스(joss) 지와 이와 유사한 것	7.5	5
48239030	종이 부채	7.5	5
48239090	기타	7.5	E
4901100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49019100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0
49019900	기타	0	0
4902100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0
49029000	기타	0	0
49030000	아동용 그림책 또는 습화책	0	0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51000	지구의	0	0
49059100	책자로 된 것	0	0
49059900	기타	0	0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와 카본복사한 것	0	0
49070010	우표	7.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9070020	은행권	0	0
49070030	유가 증권	0	0
49070090	기타	7.5	15
4908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7.5	15
49089000	기타	7.5	15
4909001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7.5	15
49090090	기타	7.5	15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7.5	15
49111010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	0	0
49111090	기타	7.5	15
49119100	서화·디자인 및 사진	7.5	15
49119910	종이로 된 것	7.5	15
49119990	기타	7.5	15
50010010	누에 나방 고치(뽕나무 먹인 누에고치)	6	0
50010090	기타	6	0
50020011	공장에서 뽑은 것(기계사)	9	5
50020012	집에서 뽑은 것	9	5
50020013	옥(Doupion)	9	5
50020019	기타	9	5
50020020	들누에고치	9	5
50020090	기타	9	5
50030011	찌꺼기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블레이즈(blaze)·생피저와 프리곤(knub from reeling)	9	5
50030012	가닛스톡(garnetted stock)	9	5
50030019	기타	9	5
50030091	실크(silk) 탑(tops)	9	5
50030099	기타	9	5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6	0
50050010	견방주사	6	0
50050090	기타	6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0060000	견사와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6	0
50071010	표백하지 않은 것[세탁하지 않거나 세탁한것(unscoured or scoured)]이나 표백한 것	10	5
50071090	기타	10	5
50072011	표백하지 않은 것[세탁하지 않거나 세탁한것(unscoured or scoured)]이나 표백한 것	10	5
50072019	기타	10	15
50072021	표백하지 않은 것[세탁하지 않거나 세탁한것(unscoured or scoured)]이나 표백한 것	10	5
50072029	기타	10	5
50072031	표백하지 않은 것[세탁하지 않거나 세탁한것(unscoured or scoured)]이나 표백한 것	10	5
50072039	기타	10	5
50072090	기타	10	5
50079010	표백하지 않은 것[세탁하지 않거나 세탁한것(unscoured or scoured)]이나 표백한 것	10	5
50079090	기타	10	5
51011100	깎은 양모	38	E
51011900	기타	38	E
51012100	깎은 양모	38	E
51012900	기타	38	E
51013000	탄화처리한 것	38	E
51021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9	5
51021910	토끼의 것	9	5
51021920	그 밖의 산양의 것	9	5
51021930	낙타의 것	9	5
51021990	기타	9	5
51022000	동물의 거친 털	9	5
51031010	양모의 것	38	E
51031090	기타	9	5
51032010	양모의 것	13.5	10
51032090	기타	9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1033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9	5
51040010	양모의 것	15	10
51040090	기타	5	0
51051000	카드(card)한 양모	38	E
510521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38	E
51052900	기타	38	E
51053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5	0
51053910	토끼의 것	5	0
51053921	털을 제거한 산양 모	5	0
51053929	기타	5	0
51053990	기타	5	0
51054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106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5106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	0
5107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5107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	0
510810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5	0
51081019	기타	5	0
51081090	기타	5	0
510820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5	0
51082019	기타	5	0
51082090	기타	5	0
510910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6	0
51091019	기타	6	0
51091090	기타	6	0
510990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6	0
51099019	기타	6	0
51099090	기타	6	0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6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11111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10	5
51111119	기타	10	5
51111190	기타	10	5
511119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10	5
51111919	기타	10	5
51111990	기타	10	5
51112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1113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1119000	기타	10	5
5112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10	5
51121900	기타	10	5
51122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1123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1129000	기타	10	5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E
52021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10	10
520291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10	5
52029900	기타	10	10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E
520411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52041900	기타	5	0
52042000	소매용	5	0
52051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5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5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	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205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PR-30
5205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52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5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5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0
5205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0
52052600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15
52052700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15
52052800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	15
52053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5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5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5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5205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54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5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PR-30
5205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5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0546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15
52054700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15
52054800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	15
52061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6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6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6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5206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62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6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6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6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52062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63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5206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6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6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5206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64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06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15
5206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15
5206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15
52064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15
52071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6	0
52079000	기타	6	0
52081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1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1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10
520819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5
52082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2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2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2	5
520829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5
52083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3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3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83900	그 밖의 직물	10	5
52084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084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4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84900	그 밖의 직물	10	5
52085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5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20
5208591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85990	기타	10	5
52091100	평직물(平織物)	10	20
52091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1900	그 밖의 직물	10	5
52092100	평직물(平織物)	12	5
52092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2	5
52092900	그 밖의 직물	12	5
52093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3900	그 밖의 직물	10	5
52094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4200	데님(denim)	10	5
520943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4900	그 밖의 직물	10	15
52095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095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095900	그 밖의 직물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101100	평직물(平織物)	12	5
5210191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2	5
52101990	기타	12	5
52102100	평직물(平織物)	14	10
5210291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4	10
52102990	기타	14	10
52103100	평직물(平織物)	10	20
5210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3900	그 밖의 직물	10	15
52104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0491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4990	기타	10	5
52105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0591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05990	기타	10	5
52111100	평직물(平織物)	12	15
52111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2	5
52111900	그 밖의 직물	12	5
52112000	표백한 것	14	10
52113100	평직물(平織物)	10	PR-15
5211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13900	그 밖의 직물	10	15
52114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14200	데님(denim)	10	5
521143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114900	그 밖의 직물	10	15
52115100	평직물(平織物)	10	5
52115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
52115900	그 밖의 직물	10	5
52121100	표백하지 않은 것	12	5
52121200	표백한 것	14	10
52121300	염색한 것	10	5
521214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2121500	날염한 것	10	5
52122100	표백하지 않은 것	12	5
52122200	표백한 것	14	10
52122300	염색한 것	10	5
521224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2122500	날염한 것	10	5
53011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6	0
530121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6	0
53012900	기타	6	0
5301300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6	0
53021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6	0
53029000	기타	6	0
5303100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3039000	기타	5	0
53050011	생것	5	0
53050012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	5	0
53050013	토우(tow) 및 웨이스트(waste)	5	0
53050019	기타	5	0
53050020	아바카	3	0
53050091	사이잘(sisal)마와 그 밖의 직물[아가베(agave)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53050092	코코넛 섬유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3050099	기타	5	0
53061000	단사	6	0
5306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0	5
53071000	단사	6	0
5307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6	0
53081000	코이어(coir)사	6	0
53082000	대마사	6	0
53089011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사)	6	0
53089012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컬러드(coloured) 사]	6	0
53089013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사)	6	0
53089014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컬러드(coloured) 사]	6	0
53089091	종이실(paper yarn)	6	0
53089099	기타	6	0
53091110	표백하지 않은 것	10	5
53091120	표백한 것	10	5
53091900	기타	10	5
53092110	표백하지 않은 것	10	5
53092120	표백한 것	10	5
53092900	기타	10	5
531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5
53109000	기타	10	5
53110012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표백하지 않은 직물에 한정한다)	10	5
53110013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그 밖의 직물에 한정한다)	12	5
53110014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표백하지 않은 직물에 한정한다)	10	5
53110015	라미(rami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그 밖의 직물에 한정한다)	12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3110020	종이실(paper yarn)의 것	10	5
53110030	대마의 것	10	5
53110090	기타	10	5
54011010	소매용은 제외한 것	5	15
54011020	소매용	5	0
54012010	소매용은 제외한 것	5	0
54012020	소매용	5	0
54021110	폴리이소피탈로이(polyisophthaloyl)메타페닐렌 (metaphenylene) 디아민(diamine)의 것	5	15
54021120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poly-p-phenylene terephthalamide)의 것	5	15
54021190	기타	5	15
54021910	나일론-6 의 것	5	E
54021920	나일론-6,6 의 것	5	E
54021990	기타	5	15
5402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54023111	나일론-6 의 것	5	E
54023112	나일론-6,6 의 것	5	E
54023113	아라미드의 것	5	E
54023119	기타	5	15
54023190	기타	5	15
54023211	나일론-6 의 것	5	E
54023212	나일론-6,6 의 것	5	E
54023213	아라미드의 것	5	15
54023219	기타	5	E
54023290	기타	5	PR-35
54023310	탄성 필라멘트	5	0
54023390	기타	5	10
5402340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10
54023900	기타	5	10
54024410	폴리우레탄의 것	5	E
540244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4024510	나일론-6 의 것	5	PR-35
54024520	나일론-6,6 의 것	5	PR-35
54024530	아라미드의 것	5	15
54024590	기타	5	PR-35
540246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40247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	PR-35
540248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24910	폴리에틸렌의 것[파괴강도(breaking strengths)가 22cN/dtex 이상인 것, 초기 탄성률(initial modulus)이 750 cN/dtex 이상인 것]	5	E
54024990	기타	5	E
54025110	나일론-6 의 것	5	E
54025120	나일론-6,6 의 것	5	E
54025130	아라미드의 것	5	15
54025190	기타	5	15
54025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10
5402591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4025920	폴리에틸렌의 것[파괴강도(breaking strengths)가 22cN/dtex 이상인 것, 초기 탄성률(initial modulus)이 750 cN/dtex 이상인 것]	5	0
54025990	기타	5	0
54026110	나일론-6 의 것	5	15
54026120	나일론-6,6 의 것	5	15
54026130	아라미드의 것	5	15
54026190	기타	5	5
54026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5
5402691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15
54026920	폴리우레탄의 것	5	E
54026990	기타	5	10
54031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33110	대나무로 만든 것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4033190	기타	5	0
54033210	대나무로 만든 것	5	0
54033290	기타	5	0
54033310	셀룰로이스(cellulose) 아세트초산염의 것	5	0
54033390	기타	5	0
54033900	기타	5	0
540341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	0
540342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0
54034900	기타	5	0
54041100	탄성사	5	15
540412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41900	기타	5	10
54049000	기타	5	10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60010	합성필라멘트사	5	0
540600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5	0
540710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5
54071020	폴리에스테르의 것	10	5
54072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10	20
54073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10	5
5407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4074200	염색한 것	10	20
54074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4074400	날염한 것	10	20
54075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4075200	염색한 것	10	20
54075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4075400	날염한 것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4076100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10	20
54076900	기타	10	20
54077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4077200	염색한 것	10	20
54077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20
54077400	날염한 것	10	5
54078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4078200	염색한 것	10	20
54078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4078400	날염한 것	10	5
5407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20
54079200	염색한 것	10	20
54079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4079400	날염한 것	10	5
5408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10	5
540821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실로 된 것	12	5
54082120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실로 된 것	12	20
54082190	기타	12	5
540822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실로 된 것	10	5
54082220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실로 된 것	10	5
54082290	기타	10	5
540823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실로 된 것	10	5
54082320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실로 된 것	10	5
54082390	기타	10	5
54082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실로 된 것	10	5
54082420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실로 된 것	10	5
54082490	기타	10	5
5408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54083200	염색한 것	10	15
54083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4083400	날염한 것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0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0
550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10
5501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15
5501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5019000	기타	5	10
55020010	셀룰로이스(cellulose) 아세트초산염 필라멘트 토우(tow)	3	0
55020090	기타	5	15
55031110	폴리이소피탈로이(polyisophthaloyl)메타페닐렌 (metaphenylene) 디아민(diamine)의 것	5	E
55031120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poly-p-phenylene terephthalamide)의 것	5	E
55031190	기타	5	E
55031900	기타	5	10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15
5503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10
5503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10
55039010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의 것	5	10
55039090	기타	5	0
55041010	대나무로 만든 것	5	0
55041021	내연제	5	10
55041029	기타	5	10
55041090	기타	5	10
55049000	기타	5	0
55051000	합성섬유의 것	5	10
5505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5	10
55061011	폴리이소피탈로이(polyisophthaloyl)메타페닐렌 (metaphenylene) 디아민(diamine)의 것	5	E
55061012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poly-p-phenylene terephthalamide)의 것	5	E
55061019	기타	5	15
55061090	기타	5	5
5506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06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10
55069010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의 것	5	15
55069090	기타	5	15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508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082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091100	단사	5	0
55091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092100	단사	5	0
55092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093100	단사	5	0
55093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094100	단사	5	0
55094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10
55095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10
55095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0
550953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5900	기타	5	0
55096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0
55096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6900	기타	5	0
55099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5
55099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9900	기타	5	0
55101100	단사	5	15
55101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15
5510200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510300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109000	그 밖의 실	5	10
5511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55112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	0
55113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121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5	10
55121900	기타	10	20
5512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3	10
55122900	기타	10	5
5512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8	10
55129900	기타	10	15
55131110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31120	표백한 것	15	10
55131210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31220	표백한 것	18	10
55131310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31320	표백한 것	18	10
55131900	그 밖의 직물	18	10
5513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323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32390	기타	10	10
55132900	그 밖의 직물	10	5
55133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339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3392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33990	그 밖의 직물	10	5
5513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349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13492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34990	기타	10	5
55141110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41120	표백한 것	18	10
55141210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41220	표백한 것	18	10
55141911	표백하지 않은 것	16	10
55141912	표백한 것	18	10
55141990	기타	16	10
5514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42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42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42900	그 밖의 직물	10	5
551430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4302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4303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43090	그 밖의 직물	10	5
5514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
55144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
55144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
55144900	그 밖의 직물	10	5
55151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10	5
55151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
551513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5
55151900	기타	10	5
55152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
55152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2	5
55152900	기타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159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
55159900	기타	10	5
55161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5
55161200	염색한 것	10	5
55161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61400	날염한 것	10	5
5516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5
55162200	염색한 것	10	15
55162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62400	날염한 것	10	5
5516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5
55163200	염색한 것	10	5
55163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63400	날염한 것	10	5
5516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5
55164200	염색한 것	12	5
55164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64400	날염한 것	10	5
5516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5
55169200	염색한 것	10	15
55169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
55169400	날염한 것	10	5
56012100	면으로 만든 것	10	5
56012210	담배 필터 팁	12	E
56012290	기타	12	15
56012900	기타	10	5
56013000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 및 밀네프(mill nep)	10	5
5602100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10	5
56022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60229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0	5
56029000	기타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60311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5
56031190	기타	10	10
560312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15
56031290	기타	10	5
560313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5
56031390	기타	10	5
560314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15
56031490	기타	10	5
560391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10
56039190	기타	10	10
560392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10
56039290	기타	10	5
560393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10
56039390	기타	10	5
5603941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	5
56039490	기타	10	15
56041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56049000	기타	5	10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606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	0
56072100	포장용 끈	5	0
56072900	기타	5	0
56074100	포장용 끈	5	0
56074900	기타	5	0
56075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6079010	아바카(마닐라마)나 그 밖의 경질(잎) 섬유	5	0
56079090	기타	5	0
56081100	제품으로 된 어망	10	5
56081900	기타	12	5
56089000	기타	10	5
560900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701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5701901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10
57019020	견으로 만든 것	14	10
57019090	기타	14	10
57021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4	10
57022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14	10
5702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702320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10
57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702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702420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5
570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7025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5702502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10
57025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7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5702920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10
57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7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57032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20
57033000	그 밖의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5
5703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7041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7049000	기타	10	5
57050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57050020	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5
57050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5801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80121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2	5
580122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0	5
580123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0	10
58012600	셔닐(chenille)직물	10	5
58012710	경파일직물(에핑글)(절단되지 않은 것)	10	5
58012720	경파일직물(에핑글)(절단한 것)	10	5
580131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0	15
580132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0	5
580133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0	5
58013600	셔닐(chenille)직물	10	5
58013710	경파일직물(에핑글)(절단되지 않은 것)	10	5
58013720	경파일직물(에핑글)(절단한 것)	10	5
58019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019090	기타	10	5
58021100	표백하지 않은 것	12	5
58021900	기타	10	5
58022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2	5
580220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	5
58022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4	10
58022090	기타	12	5
58023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0230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8023030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0	5
580230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8023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03001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0300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8030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8030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041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04102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04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	20
5804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042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804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04292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042990	기타	10	5
58043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0	5
58050010	바늘가공된 타피스트리	12	5
58050090	기타	12	5
58061010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0	5
5806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062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806310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06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806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0639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8063990	기타	10	5
58064010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0	5
58064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071000	직조한 것	10	5
58079000	기타	10	5
58081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10	5
58089000	기타	10	5
58090010	면과 결합된 것	10	5
58090020	인조섬유와 결합된 것	10	5
58090090	기타	10	5
58101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810910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10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5
5810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8110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581100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58110030	면으로 만든 것	10	5
581100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	20
58110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
59011010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0	10
590110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9011090	기타	10	5
59019010	회화용 켄버스	10	5
59019091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0	5
59019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59019099	기타	10	5
59021010	나일론-6 의 것	10	PR-35
59021020	나일론-6,6 의 것	10	PR-35
59021090	기타	10	10
59022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10	20
59029000	기타	10	5
59031010	절연포나 절연 테이프	10	5
59031020	인공 피혁	10	20
59031090	기타	10	20
59032010	절연포나 절연 테이프	10	5
59032020	인공 피혁	10	20
59032090	기타	10	20
59039010	절연포나 절연 테이프	10	5
59039020	인공 피혁	10	15
59039090	기타	10	20
59041000	리놀륨	14	10
59049000	기타	14	10
5905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9061010	절연 테이프	10	5
59061090	기타	10	5
590691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0	5
59069910	절연포나 절연 테이프	10	5
59069990	기타	10	5
59070010	절연포나 절연 테이프	10	5
59070020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10	5
59070090	기타	10	20
590800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10	5
5909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그 밖의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5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5
59111010	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	8	5
59111090	기타	8	5
59112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5
59113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5
59113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5
59114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5
59119000	기타	8	E
60011000	롱파일(long pile) 편물	10	15
6001210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1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
6001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	5
60019100	면으로 만든 것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001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20
6001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	5
6002401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240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600240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5
600240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5
60024090	기타	10	5
6002901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290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600290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15
600290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5
60029090	기타	10	5
60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
6003200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3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5
60034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5
60039000	기타	10	5
6004101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410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600410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20
600410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15
60041090	기타	10	5
60049010	면으로 만든 것	10	5
600490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5
600490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20
600490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5
60049090	기타	10	5
6005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52200	염색한 것	10	5
60052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2400	날염한 것	10	5
6005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0053200	염색한 것	10	20
60053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3400	날염한 것	10	5
6005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54200	염색한 것	10	5
60054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54400	날염한 것	10	5
6005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	5
60059090	기타	12	5
6006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	5
6006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5
60062200	염색한 것	10	5
60062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62400	날염한 것	10	5
6006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63200	염색한 것	10	20
60063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20
60063400	날염한 것	10	20
6006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
60064200	염색한 것	10	15
60064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5
60064400	날염한 것	10	5
60069000	기타	12	5
610120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101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1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5	20
61019090	기타	17.5	10
6102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5	20
610220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102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2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15
6103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103102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5	20
6103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32200	면으로 만든 것	20	15
61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5	20
61032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5	20
61032990	기타	25	20
61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033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10
6103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034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3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3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5	20
61041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6104192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1041990	기타	17.5	10
610422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1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5	20
61042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61042990	기타	15	10
61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043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10
6104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044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444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4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10452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45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1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046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51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61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06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71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71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7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71990	기타	14	10
61072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7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72990	기타	14	10
6107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799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79990	기타	14	10
61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8191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8192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81990	기타	14	10
61082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8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8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82990	기타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1083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8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8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83990	기타	14	10
6108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108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1091000	면으로 만든 것	14	5
61099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099090	기타	14	10
61101100	양모로 만든 것	14	5
611012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4	10
61101910	그 밖의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4	10
61101920	토끼의 것	14	10
61101990	기타	14	10
611020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5
61109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1109090	기타	14	10
611120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11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111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61119090	기타	14	10
611211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12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1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12201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122090	기타	19	10
61123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1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1124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1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11300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6	10
61142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114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114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1149090	기타	16	10
61151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6	10
61152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1152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1152910	면으로 된 것	14	10
61152990	기타	14	10
6115300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10
611594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611595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1596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115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116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14	10
6116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611692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1169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116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1171011	캐시미어로 만든 것	14	10
61171019	기타	14	10
61171020	양모로 만든 것	14	10
61171090	기타	14	10
61178010	넥타이류	14	10
61178090	기타	14	10
61179000	부분품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01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112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6	10
62011290	기타	16	10
620113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7.5	10
62011390	기타	17.5	10
6201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1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192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6	10
62019290	기타	16	10
620193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7.5	10
62019390	기타	17.5	10
6201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2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212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6	10
62021290	기타	16	10
620213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9	10
62021390	기타	19	10
620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292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6	10
62029290	기타	16	10
62029310	속을 깃털이나 솜털로 채운 것	17.5	10
62029390	기타	17.5	10
62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3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6203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03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7.5	10
62031990	기타	17.5	10
620322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2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03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7.5	10
620329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032990	기타	17.5	10
62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33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5
6203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033990	기타	16	10
62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34210	아라비아의 바지	16	10
62034290	기타	16	10
62034310	아라비아의 바지	17.5	10
62034390	기타	17.5	10
62034910	아라비아의 바지	16	10
62034990	기타	16	10
6204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620412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2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04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7.5	10
62041990	기타	17.5	10
62042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7.5	10
62042200	면으로 만든 것	17.5	10
62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	15
6204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0	15
62042990	기타	14	10
62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43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5
6204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043990	기타	16	10
62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442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5
620444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044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044990	기타	16	10
62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620452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45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45990	기타	14	10
62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46200	면으로 만든 것	16	5
62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52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05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59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0590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59090	기타	16	10
6206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06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063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06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71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7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719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71990	기타	14	10
62072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7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72990	기타	14	10
6207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79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799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079990	기타	14	10
62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8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8192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81990	기타	14	10
62082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8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8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82990	기타	14	10
6208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89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089990	기타	14	10
620920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209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209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4	10
62099090	기타	14	10
621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101020	면피나 인피로 만든 것	16	10
6210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5	10
6210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02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2103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210400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16	10
6210500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16	10
62111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16	10
62111200	여성용이나 소녀용	16	10
6211201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2112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9	10
62113210	아라비아 로브스(robes)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113220	운동복	16	10
62113290	기타	16	10
62113310	아라비아 로브스(robes)	17.5	10
62113320	운동복	18	10
62113390	기타	17.5	10
6211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1139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10
62113990	기타	16	10
62114210	운동복	16	10
62114290	기타	16	10
62114310	운동복	17.5	10
62114390	기타	17.5	10
62114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10
62114990	기타	16	10
621210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2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220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22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230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23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290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29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32010	자수한 것	14	10
62132090	기타	14	10
62139020	자수한 것	14	10
62139090	기타	14	10
6214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142010	양모로 만든 것	14	10
62142020	캐시미어로 만든 것	14	10
62142090	기타	14	10
6214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44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214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5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21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21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2160000	장갑류	14	10
62171010	스타킹, 양말과 소켓(sockettes)	14	10
62171020	기모노 벨트	14	10
62171090	기타	14	10
62179000	부분품	14	15
63011000	전기모포	16	10
6301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6	10
63013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6	10
63014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7.5	10
63019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6	10
6302101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21090	기타	14	10
63022110	베드시트(Bed sheets)	14	10
63022190	기타	14	10
63022210	베드시트(Bed sheets)	16	10
63022290	기타	16	10
63022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3022920	인피섬유로 만든 것	14	10
63022990	기타	14	10
63023110	자수한 것	14	10
63023191	베드시트(Bed sheets)	14	10
63023192	타월천 침대보	14	10
63023199	기타	14	10
63023210	자수한 것	16	10
63023290	기타	16	10
63023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3023921	자수한 것	14	10
63023929	기타	14	10
63023991	자수한 것	14	10
63023999	기타	14	10
63024010	수세공한 것	14	10
63024090	기타	14	10
63025110	자수한 것	14	10
63025190	기타	14	10
63025310	자수한 것	14	10
63025390	기타	16	10
63025911	자수한 것	14	10
63025919	기타	14	10
63025990	기타	14	10
63026010	목욕 수건	14	10
63026090	기타	14	10
6302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2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29910	아마로 만든 것	14	10
63029990	기타	14	10
63031210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6	10
63031220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것	16	10
63031931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4	10
63031932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것	14	10
63031991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4	10
63031992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것	14	10
6303910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39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3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3041121	수세공한 것	14	10
63041129	기타	14	10
63041131	수세공한 것	14	10
63041139	기타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3041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3041921	자수한 것	14	10
63041929	기타	14	10
63041931	자수한 것	16	10
63041939	기타	16	10
63041991	자수한 것	14	10
63041999	기타	14	10
63049121	수세공한 것	14	10
63049129	기타	14	10
63049131	수세공한 것	14	10
63049139	기타	14	10
63049210	자수한 것	14	10
63049290	기타	14	10
63049310	자수한 것	16	10
63049390	기타	16	10
630499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4	10
63049921	자수한 것	14	10
63049929	기타	14	10
63049990	기타	14	10
63051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10	5
63052000	면으로 만든 것	16	10
630532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30533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63053900	기타	16	10
63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10
6306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61910	인피섬유로 만든 것	14	10
6306192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61990	기타	14	10
63062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306291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62990	기타	14	10
6306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63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4	10
6306401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640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64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4	10
63069010	면으로 만든 것	14	10
63069020	인피섬유로 만든 것	14	10
63069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10
63069090	기타	14	10
63071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4	10
63072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14	10
63079000	기타	14	15
6308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4	10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14	10
63101000	선별한 것	14	10
63109000	기타	14	10
64011010	갑피(甲皮)를 고무로 만든 것	24	20
64011090	갑피(甲皮)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	20
64019210	갑피(甲皮)를 고무로 만든 것	24	20
64019290	갑피(甲皮)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	20
64019900	기타	24	20
640212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0	10
64021900	기타	24	20
64022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24	20
64029100	발목을 덮는 것	24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4029910	갑피(甲皮)를 고무로 만든 것	24	20
64029921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4	20
64029929	기타	24	20
640312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24	20
64031900	기타	15	10
64032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4	20
64034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4	20
64035111	24 센티미터 미만의 것	10	10
64035119	기타	10	10
64035191	24 센티미터 미만의 것	10	10
64035199	기타	10	10
64035900	기타	10	10
64039111	24 센티미터 미만의 것	10	10
64039119	기타	10	10
64039191	24 센티미터 미만의 것	10	10
64039199	기타	10	10
64039900	기타	10	10
640411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24	20
64041900	기타	24	20
64042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4	20
64051010	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24	20
64051090	바깥 바닥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24	20
64052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2	20
64059010	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5	10
64059090	바깥 바닥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406100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15	20
64062010	고무로 만든 것	15	10
64062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5	10
64069010	목재로 만든 것	15	10
640690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20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22	20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않은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15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15
65050010	헤어네트(hair-net)	10	10
6505002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20	15
65050091	펠트 모자[제 6501 호의 물품의 햇바디(hat bodies), 후드(hoods)나 플래토우(plateaux)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2	20
65050099	기타	20	10
65061000	안전모자	10	10
650691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10
65069910	가죽으로 만든 것	10	10
65069920	모피로 만든 것	10	10
65069990	기타	24	20
6507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24	20
66011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4	10
660191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0	10
66019900	기타	10	10
660200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6032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4	10
66039000	기타	14	10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20	15
6702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15
67029010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것	20	15
67029020	견이나 견방사로 만든 것	24	20
67029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4	20
67029090	기타	20	15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20	10
67041100	전체가발	25	20
67041900	기타	25	20
6704200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15	10
67049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25	20
6801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12	10
68021010	대리석	24	20
68021090	기타	20	15
68022110	대리석	10	10
68022120	트래버틴(travertine)	24	20
68022190	기타	24	20
68022300	화강암	10	10
6802291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24	20
68022990	기타	15	10
68029110	카빙(Carvings)	24	20
68029190	기타	10	10
68029210	카빙(Carvings)	24	20
68029290	기타	10	10
68029311	묘석	24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8029319	기타	24	20
68029390	기타	10	10
68029910	카빙(Carvings)	24	20
68029990	기타	24	20
68030010	슬레이트(slate)로 만든 것	20	15
68030090	기타	20	15
68041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5
68042100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68042210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	5
68042290	기타	8	5
68042310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	5
68042390	기타	8	10
68043010	기름 숫돌	8	5
68043090	기타	8	10
68051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15
68052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10
68053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10
6806100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10.5	10
68062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0.5	10
68069000	기타	10	15
68071000	롤 모양인 것	12	10
68079000	기타	12	10
6808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10.5	10
680911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28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8091900	기타	25	20
68099000	그 밖의 제품	25	20
68101100	건축용 블록과 벽돌	10.5	10
68101910	인조석재로 만든 것	10.5	10
68101990	기타	10.5	10
68109110	강화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의 관・파이프・막대(rod)・플레이트(plates)・ 파일(piles)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5	10
68109190	기타	10.5	10
68109910	콘크리트 철도 침목	8	5
68109990	기타	10.5	10
6811401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5	5
6811402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10.5	10
6811403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5
68114090	그 밖의 제품	8.4	10
681181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5	5
681182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10.5	10
6811891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5
68118990	그 밖의 제품	8.4	5
68128000	청석면의 것	10.5	10
681291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10.5	10
68129200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10.5	10
681293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10.5	10
68129900	기타	10	10
6813201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10	10
68132090	기타	12	10
681381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10	10
68138900	기타	12	10
6814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5	10
68149000	기타	10.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6815100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15	E
68152000	이탄(泥炭)제품	15	10
681591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15	10
68159920	탄소 섬유	17.5	E
68159931	탄소 섬유 직물	17.5	E
68159932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prepreg)	17.5	E
68159939	기타	17.5	E
68159990	기타	17.5	10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6902100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5
69022000	알루미나(Al2O3)·실리카(SiO2)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5
69029000	기타	8	10
6903100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10
6903200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5
69039000	기타	8	5
69041000	건축용 벽돌	15	10
69049000	기타	24.5	20
69051000	기와(지붕타일)	24.5	20
69059000	기타	24.5	20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15	10
69071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4.5	20
69079000	기타	12	10
69081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69089000	기타	12	10
69091100	자기제의 것	8	5
690912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5
69091900	기타	8	5
69099000	기타	21	20
69101000	자기제의 것	10	10
69109000	기타	10	10
69111010	식탁용품	12	10
69111020	주방용품	15	10
69119000	기타	24.5	20
69120010	식탁용품	15	10
69120090	기타	15	10
69131000	자기제의 것	15	10
69139000	기타	15	10
69141000	자기제의 것	24.5	20
69149000	기타	10	15
70010000	깨진 유리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12	10
70021000	구(球)	12	10
70022010	드로잉(drawing) 광섬유용 프리펌드(Prefomed) 봉(bars)	6	5
70022090	기타	12	10
70023110	광섬유 사용용 웨이브가이드(Waveguide) 쿼츠(quartz) 관	5	5
70023190	기타	14	10
70023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12	10
70023900	기타	12	10
700312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0031900	기타	17.5	10
70032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15	10
70033000	프로파일(profile)	15	10
700420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17.5	10
70049000	그 밖의 유리	17.5	20
7005100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700521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15	10
70052900	기타	15	10
70053000	망입(網入) 유리	17.5	10
700600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15	15
70071110	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2	0
70071190	기타	10	15
70071900	기타	14	10
70072110	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2	0
70072190	기타	20	20
70072900	기타	14	10
70080010	실드(Sealed)나 진공 절연 유리	14	10
70080090	기타	14	10
70091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20
70099100	틀이 붙지 않은 것	21	20
70099200	틀이 붙은 것	12	10
70101000	앰플	14	10
70102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14	10
70109010	1 리터를 초과하는 것	14	10
70109020	0.33 리터를 초과하고 1 리터이하인 것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0109030	0.15 리터를 초과하고 0.33 리터이하인 것	14	10
70109090	0.15 리터이하인 것	14	10
70111000	전등용	21	20
70112010	유리로 만든 외피(키네스코프와 이들의 부분품용으로 한정한다)	10	10
70112090	기타	10	E
70119010	전자관 및 벨브(velves)용(음극선관용은 제외한다)	8	5
70119090	기타	21	20
70131000	유리 도자제의 것	24.5	20
701322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24.5	20
70132800	기타	8	5
701333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24.5	20
70133700	기타	8	5
70134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24.5	20
70134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10	10
70134900	기타	10	10
70139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10	10
70139900	기타	10	10
70140010	광학소자의 블랭크(Blanks)(광학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10	5
70140090	기타	17.5	10
70151010	블랭크(Blanks)(감광안경용으로 한정한다)	21	15
70151090	기타	17.5	10
70159010	시계용 유리	17.5	10
70159020	블랭크(Blanks)(평면감광안경용으로 한정한다)	18	10
70159090	기타	12	10
70161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22	20
7016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24	20
70169090	기타	18	10
70171000	석영유리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0172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5
70179000	기타	8	10
7018100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10	5
7018200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20	15
70189000	기타	20	15
701911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70191200	로빙(roving)	12	E
70191900	기타	10	10
70193100	매트(mat)	5	5
70193200	얇은 시트(sheet)(보일)	14	10
70193900	기타	10.5	10
70194000	로빙(roving) 직물	12	10
701951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12	10
701952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E
70195900	기타	12	PR-35
70199010	글라스 울(Glass wool)과 이들의 제품	7	15
701990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50 그램 미만인 것	7	15
70199029	기타	7	15
70199090	기타	7	15
70200011	전도성 유리	10.5	E
70200012	유리 엄브렐라(umbrella)(절연체용으로 한정한다)	10.5	10
70200019	기타	10.5	5
70200091	유리 이너(inners)(보온병이나 그 밖의 진공용기용으로 한정한다)	21	15
70200099	기타	15	10
71011011	타히티 진주	21	15
71011019	기타	21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1011091	타히티 진주	21	15
71011099	기타	21	15
71012110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	21	15
71012190	기타	21	15
71012210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	21	20
71012290	기타	21	20
71021000	선별하지 않은 것	3	0
71022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1022900	기타	0	0
71023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023900	기타	8	5
71031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5
71039100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8	5
71039910	경옥(硬玉)	8	5
71039990	기타	8	10
71041000	압전기용 석영	6	E
71042010	다이아몬드	0	0
71042090	기타	0	0
71049011	다이아몬드	6	5
71049012	사파이어	6	5
71049019	기타	6	10
71049091	다이아몬드	8	5
71049099	기타	8	5
71051010	천연의 것	0	0
71051020	합성한 것	0	0
71059000	기타	0	0
71061011	평균 직경이 3 미크론 미만인 것	0	0
71061019	기타	0	0
71061021	평균 직경이 10 미크론 미만인 것	0	0
71061029	기타	0	0
71069110	순도가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710691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1069210	순도가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71069290	기타	0	0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5	10
71081100	가루	0	0
71081200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0	0
71081300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0
71082000	화폐용	0	0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5	10
7110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1910	판 및 시트(sheet)	0	0
71101990	기타	3	0
71102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2910	판 및 시트(sheet)	0	0
71102990	기타	3	0
71103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3910	판 및 시트(sheet)	0	0
71103990	기타	3	0
71104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4910	판 및 시트(sheet)	0	0
71104990	기타	3	0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23010	은이나 은 화합물의 것	8	5
71123090	기타	6	5
71129110	금이나 금 화합물의 것	0	0
71129120	금이나 금 화합물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5
71129210	백금의 것	0	0
71129220	백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0
71129910	은이나 은 화합물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	5
71129920	그 밖의 귀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1129990	기타	0	0
71131110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이나 세트(set)	20	15
71131190	기타	20	15
71131911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	20	15
71131919	기타	20	10
71131921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	35	E
71131929	기타	35	E
71131991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이나 세트(set)	35	E
71131999	기타	35	E
71132010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이나 세트(set)	35	E
71132090	기타	35	E
711411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5	E
711419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5	E
7114200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35	E
71151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59010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3	0
71159090	기타	35	E
7116100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35	E
7116200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35	E
711711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35	E
71171900	기타	17	10
71179000	기타	35	PR-35
71181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00	기타	0	0
72011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0
72012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01500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1	0
72021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2	0
72021900	기타	2	0
720221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2	0
72022900	기타	2	0
72023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2	0
72024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2	0
72024900	기타	2	0
72025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0
72026000	페로니켈(ferro-nickel)	2	0
72027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2	0
7202801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	2	0
72028020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2	0
720291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2	0
72029210	바나듐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5 를 초과하는 것	9	5
72029290	기타	9	5
720293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2	0
72029911	영구 자기 띠-캐스팅(casting) 플래이크(flake)	2	0
72029912	자분(磁粉)	2	0
72029919	기타	2	0
72029991	희토류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2	0
72029999	기타	2	0
72031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2	0
72039000	기타	2	0
72041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0
72042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	기타	0	0
72043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0
720441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	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2044900	기타	0	0
72045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72051000	알갱이	2	0
72052100	합금강의 것	2	0
72052900	기타	2	10
72061000	잉곳(ingot)	2	0
72069000	기타	2	0
72071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72071200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2	0
72071900	기타	2	15
72072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2	0
7208100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10
720825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0826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355 파스칼 초과인 것	5	E
72082690	기타	5	E
72082710	두께가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15
72082790	기타	5	E
720836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10
720837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10
720838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355 파스칼 초과인 것	5	10
72083890	기타	5	10
72083910	두께가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3	10
72083990	기타	3	10
72084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6	10
72085110	두께가 50 밀리미터 초과인 것	6	15
72085120	두께가 20 밀리미터 초과하고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15
72085190	기타	6	10
72085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0853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355 파스칼 초과인 것	6	10
72085390	기타	6	10
72085410	두께가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5
72085490	기타	6	15
72089000	기타	6	E
720915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355 파스칼 초과인 것	6	10
72091590	기타	6	10
720916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275 파스칼 초과인 것	6	10
72091690	기타	6	PR-30
72091710	항복 강도가 1 제곱밀리미터당 275 파스칼 초과인 것	3	15
72091790	기타	3	10
72091810	두께가 0.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PR-30
72091890	기타	6	PR-30
720925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10
720926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E
720927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PR-30
720928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E
72099000	기타	6	10
721011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721012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02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5
72103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E
72104100	물결 모양의 것	8	5
72104900	기타	4	E
72105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0
721061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E
72106900	기타	8	E
7210700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15
72109000	기타	8	15
721113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	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72111400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10
72111900	기타	6	15
721123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6	15
72112900	기타	6	15
72119000	기타	6	10
7212100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10
72122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5
7212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0
7212400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15
72125000	그 밖의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5
72126000	클래드(clad)한 것	8	10
72131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3	5
72132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3	15
72139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10
72139900	기타	5	15
72141000	단조(鍛造)한 것	7	10
72142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또는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	0
72143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7	10
7214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3	0
72149900	기타	3	5
72151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	10
72155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	15
72159000	기타	3	5
72161010	에이치(H)형강	3	0
72161020	아이(I)형강	3	0
72161090	기타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162100	엘(L)형강	6	10
72162200	티(T)형강	6	5
72163100	유(U)형강	6	10
72163210	높이가 200 밀리미터 초과인 것	6	10
72163290	기타	6	10
72163311	높이가 800 밀리미터 초과인 것	6	5
72163319	기타	6	15
72163390	기타	6	10
72164010	엘(L)형강	3	0
72164020	티(T)형강	3	0
72165010	제트(Z)형강	6	5
72165020	버블(Bulb)평강	3	0
72165090	기타	3	5
72166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3	0
72166900	기타	3	5
72169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3	0
72169900	기타	3	0
72171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E
72172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0
7217301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PR-20
72173090	기타	8	15
72179000	기타	8	10
7218100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2	5
7218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2	5
72189900	기타	2	5
72191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5
7219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10
72191312	페로크로뮴망간강(Ferro-chromium-manganese steel)의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인 것	4	5
72191319	기타	4	10
72191322	페로크로뮴망간강(Ferro-chromium-manganese steel)의 망간	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인 것		
72191329	기타	4	10
72191412	페로크로뮴망간강(Ferro-chromium-manganese steel)의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인 것	4	0
72191419	기타	4	5
72191422	페로크로뮴망간강(Ferro-chromium-manganese steel)의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인 것	4	0
72191429	기타	4	5
72192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15
72192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20
72192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5
7219241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5
7219242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20
7219243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5
72193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721932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72193310	테로크로뮴망간강(Terro-chromium manganese steel)의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인 것	10	10
72193390	기타	10	15
721934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20
721935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20
72199000	기타	10	10
72201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7220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72202020	두께가 0.3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5
72202030	두께가 0.35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5
7220204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72209000	기타	10	10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PR-20
72221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10	PR-10
72221900	기타	10	PR-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222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E
72223000	그 밖의 봉	10	PR-10
72224000	형강(形鋼)	10	E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10	E
7224100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2	0
72249010	가공되지 않은 캐스팅(casting) 단조(forging) 소재[각 피스(piece) 중량이 10 톤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72249090	기타	2	0
7225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3	PR-30
72251900	기타	6	E
7225300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E
7225400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5
7225500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E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	10
72259200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	15
72259910	고속도강의 것	3	5
72259990	기타	7	10
7226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3	E
72261900	기타	3	E
72262000	고속도강의 것	3	10
722691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3	10
722692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3	15
7226991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	10
72269920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	10
72269990	기타	7	10
72271000	고속도강의 것	3	0
7227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6	15
72279000	기타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281000	고속도강의 봉	3	10
72282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6	10
7228300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10
7228400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10
72285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10
72286000	그 밖의 봉	3	10
72287010	크롤러(crawler) 트레드(tread)의 형(形)	6	5
72287090	기타	6	10
72288000	중공(中空)드릴봉	7	5
7229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7	15
72299010	고속도강의 것	3	10
72299090	기타	7	E
73011000	널말뚝(sheet piling)	7	10
73012000	형강(形鋼)	7	10
73021000	레일(rail)	6	10
73023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5
73024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7	10
73029010	침목(크로스타이)	6	5
73029090	기타	7	5
73030010	원형 단면의관(管)(내부 지름이 5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73030090	기타	4	5
73041110	바깥 지름이 215.9 밀리미터 이상이고 406.4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10
73041120	바깥 지름이 114.3 밀리미터 초과하고 215.9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10
73041130	바깥 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10
73041190	기타	5	5
73041910	바깥 지름이 215.9 밀리미터 이상이고 406.4 밀리미터 이하인	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것		
73041920	바깥 지름이 114.3 밀리미터 초과하고 215.9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10
73041930	바깥 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10
73041990	기타	5	5
73042210	바깥 지름이 168.3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0
73042290	기타	4	0
73042310	바깥 지름이 168.3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0
73042390	기타	4	0
730424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0
73042900	기타	4	0
730431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4	0
73043120	지질 케이싱과 드릴 파이프	8	5
73043190	기타	4	5
730439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4	0
73043920	지질 케이싱과 드릴 파이프	5	5
73043990	기타	4	10
730441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10	10
73044190	기타	10	20
730449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10	10
73044990	기타	10	10
730451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4	0
73045120	지질 케이싱과 드릴 파이프	4	0
73045190	기타	4	0
73045910	보일러 관과 파이프	4	0
73045920	지질 케이싱과 드릴 파이프	4	0
73045990	기타	4	5
73049000	기타	4	5
7305110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7	15
730512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3	5
73051900	기타	7	5
73052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7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3053100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6	15
73053900	기타	6	15
73059000	기타	6	5
73061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	10
73061900	기타	7	15
73062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	0
73062900	기타	3	0
73063011	벽 두께가 0.7 밀리미터 이하인 것	3	5
73063019	기타	3	15
73063090	기타	3	15
73064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	E
73065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	15
73066100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3	5
73066900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3	15
73069000	기타	6	E
730711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5	5
73071900	기타	8	5
73072100	플랜지(flange)	8.4	5
73072200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8.4	5
730723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4	5
73072900	기타	8.4	E
73079100	플랜지(flange)	7	15
73079200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5
730793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	5
73079900	기타	4	5
73081000	다리와 교량	8	5
73082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4	10
73083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10
73084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 또는 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4	5
73089000	기타	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309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5	10
73101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10.5	20
731021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17.5	10
73102900	기타	17.5	10
73110010	소매 포장용	17.5	10
73110090	기타	8	15
73121000	연선(stranded wire)・로프 및 케이블	4	5
73129000	기타	4	5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	5
731412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731414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73141900	기타	7	5
73142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	5
731431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	5
73143900	기타	7	10
731441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5
731442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8	10
73144900	기타	8	5
73145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8	5
73151110	자전거용	12	10
73151120	모터싸이클용	12	15
73151190	기타	12	10
73151200	그 밖의 체인	12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3151900	부분품	12	10
73152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12	10
73158100	스터드링크(stud-link)	12	10
731582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73158900	기타	12	10
73159000	그 밖의 부분품	10	10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10	10
731700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10	10
731811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10	E
731812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10	10
731813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10	E
731814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10	E
73181510	인장강도가 80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8	15
73181590	기타	8	15
73181600	너트(nut)	8	E
73181900	기타	5	5
731821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10	E
73182200	그 밖의 와셔(washer)	10	E
73182300	리벳(rivet)	10	E
731824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10	20
73182900	기타	10	E
73194010	안전핀	10	10
73194090	그 밖의 핀	10	10
73199000	기타	10	E
7320101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6	5
73201020	모터차량용	10	20
73201090	기타	10	E
7320201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6	5
73202090	기타	10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320901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6	5
73209090	기타	12	E
732111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5	10
73211210	등유 요리 스토브	21	20
73211290	기타	21	20
732119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21	20
732181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23	20
73218200	액체연료용	21	20
732189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21	20
73219000	부분품	12	10
73221100	주철로 만든 것	21	20
73221900	기타	21	20
73229000	기타	20	15
73231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4	10
73239100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20	15
73239200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20	15
732393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12	10
73239410	세면대야	20	15
73239420	캐서롤(Casserole)	20	15
73239490	기타	20	15
73239900	기타	20	15
732410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732421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10
73242900	기타	30	20
7324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5	20
73251010	공업용	7	15
73251090	기타	20	15
732591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5	10
73259910	공업용	10.5	10
73259990	기타	20	15
732611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3261910	공업용	10.5	E
73261990	기타	20	10
73262010	공업용	10	10
73262090	기타	18	10
73269010	공업용	10.5	10
73269090	기타	8	5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2	0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2	0
74031111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35 를 초과하는 것	2	0
74031119	기타	2	0
74031190	음극의 형재	2	0
74031200	와이어바(wire-bar)	2	0
74031300	빌릿(billet)	2	0
74031900	기타	2	0
740321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1	0
740322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1	0
74032900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1	0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0
740610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0
7406102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6	5
7406103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6	10
7406104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6	5
74061090	기타	6	5
740620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0
7406202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6	5
74062090	기타	6	5
74071010	크로늄과 지크로늄 구리로 만든 것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4071090	기타	4	0
74072111	직진도가 미터당 0.5 밀리미터이하인 것	7	E
74072119	기타	7	E
74072190	기타	7	E
74072900	기타	7	0
74081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74081900	기타	4	0
740821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	15
74082210	구리-니켈-아연-납 합금으로 만든 것(납양백)	8	5
74082290	기타	8	5
74082900	기타	7	10
74091110	산소 함유량이 10 피피엠(PPM) 이하인 것	4	5
74091190	기타	4	5
74091900	기타	4	0
74092100	코일 모양	7	15
74092900	기타	7	15
74093100	코일 모양	7	10
74093900	기타	7	0
74094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	0
7409900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	10
741011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0
741012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	0
74101290	기타	7	0
7410211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것	4	0
74102190	기타	4	0
741022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	5
74102290	기타	7	5
74111011	스크류 쓰레드(screw thread) 또는 윙(wing)	4	5
74111019	기타	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4111020	바깥지름이 7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74111090	기타	4	0
74112110	써컴볼루션(Circumvolution)	7	5
74112190	기타	7	15
741122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	5
74112900	기타	7	5
7412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5
7412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	5
74122090	기타	7	5
7413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5	15
7415100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5
741521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10	10
74152900	기타	10	10
74153310	목재용 스크류	8	5
74153390	기타	8	5
74153900	기타	10	10
7418101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8	10
74181020	구리로 만든 요리 장치나 가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	20	15
74181090	기타	18	10
7418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8	10
74191000	체인과 그 부분품	14	10
74199110	공업용	10	5
74199190	기타	20	15
74199920	구리로 만든 스프링	10	10
74199930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7	5
74199940	구리선으로 만든 그릴 및 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4199950	구리로 만든 요리 장치나 가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	20	15
74199991	공업용	10	5
74199999	기타	20	20
75011000	니켈의 매트(mat)	3	0
75012010	습식제련공정으로 얻어지는 니켈중간생산물	3	0
75012090	기타	3	0
75021010	구리와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75021090	기타	3	0
75022000	니켈 합금	3	5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75040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0
75040020	니켈합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0
7505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6	10
7505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10
75052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6	5
75052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5
75061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6	10
75062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5
7507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6	5
7507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10
75072000	관(管) 연결구류	6	5
75081010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6	5
75081080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공업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	5
75081090	기타	6	5
75089010	전기도금용 양극	4	5
75089080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공업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	5
75089090	기타	6	5
7601101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5 이상인 것	5	10
76011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6012000	알루미늄 합금	7	5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76031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6	5
7603200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7	5
76041010	알루미늄 봉	5	5
76041090	기타	5	15
760421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15
76042910	알루미늄 합금 봉	5	15
76042990	기타	5	5
76051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6051900	기타	8	5
76052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6052900	기타	8	5
76061121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재의 것	6	5
76061129	기타	6	15
76061191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재의 것	6	0
76061199	기타	6	10
76061220	두께가 0.28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15
76061230	두께가 0.28 밀리미터 이상 0.35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15
76061251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재의 것	6	10
76061259	기타	6	15
76061290	기타	6	5
760691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6	15
760692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10	15
76071110	두께가 0.007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15
76071120	두께가 0.007 밀리미터 초과하고 0.0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5
76071190	기타	6	0
76071900	기타	6	10
76072000	뒷면을 붙인 것	6	15
7608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15
76082010	바깥지름이 1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15
76082091	벽의 두께가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6082099	기타	8	5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10
76101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25	20
76109000	기타	6	5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10
76121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12	10
76129010	티어탭 엔드(tear tab end)와 그바디	30	E
76129090	기타	12	10
76130010	소매 포장용	12	10
76130090	기타	6	5
76141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6	5
76149000	기타	6	5
7615101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8	10
76151090	기타	15	20
7615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8	10
7616100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10
761691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10	10
76169910	공업용	10	20
76169990	기타	15	10
78011000	정제한 납	3	5
780191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0
78019900	기타	3	5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78041100	시트(sheet)・스트립과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8041900	기타	6	5
7804200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6	5
78060010	납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6	10
78060090	기타	6	5
7901111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5 이상인 것	3	0
79011190	기타	3	0
790112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3	5
79012000	아연 합금	3	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79031000	아연 더스트(dust)	6	10
79039000	기타	6	10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6	15
790500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과 박(箔)	6	5
79070020	아연의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6	5
79070030	셀 패킹 블랭크(cellpacking blank)(아연비스킷)	6	5
79070090	기타	6	5
80011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3	5
80012010	배빗메탈(Babbitt metal)	3	0
80012021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1 미만인 것	3	5
80012029	기타	3	5
80012090	기타	3	5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800300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8	10
80070020	주석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5
80070030	주석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주석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8	5
80070040	주석의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elbow)・슬리브(sleeve)]		
80070090	기타	8	15
81011000	가루	6	5
81019400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19600	선(線)	8	5
8101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19910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5	5
81019990	기타	8	5
81021000	가루	6	5
81029400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29500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8	10
81029600	선(線)	8	5
8102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29900	기타	8	5
81032011	루스(loose)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2.2 그램 미만인 것	6	5
81032019	기타	6	5
81032090	기타	6	5
8103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0
81039011	지름이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5
81039019	기타	8	5
81039090	기타	8	5
810411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6	0
81041900	기타	6	5
8104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5	0
8104300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rning)과 알갱이, 가루	8	5
81049010	가공 마그네슘	8	5
81049020	마그네슘 제품	8.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1052010	코발트 습식제련공정으로 생산된 중간생산물	4	0
81052090	기타	4	0
8105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0
81059000	기타	8	10
81060010	비스무트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3	0
81060090	기타	8	10
81072000	카드뮴의 괴(塊), 가루	3	5
8107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79000	기타	8	5
81082021	티타늄 스폰지(Titanium sponge)	3	0
81082029	기타	3	5
81082030	가루	3	0
8108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89010	봉과 형강(形鋼)	8	10
81089020	선(線)	8	5
81089031	두께가 0.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81089032	두께가 0.8 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8	5
81089040	관(管)	8	10
81089090	기타	8	5
8109200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3	5
8109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99000	기타	8	10
81101010	안티모니의 괴(塊)	3	0
81101020	가루	3	0
811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09000	기타	8	5
81110010	망간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3	0
81110090	기타	8	5
81121200	괴(塊), 가루	3	0
811213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1900	기타	8	5
81122100	괴(塊), 가루	3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1122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2900	기타	3	0
81125100	괴(塊), 가루	3	0
81125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5900	기타	8	5
81129210	게르마늄	3	0
81129220	바나듐	3	0
81129230	인듐	3	0
81129240	니오븀	3	0
81129290	기타	3	0
81129910	게르마늄	3	0
81129920	바나듐	3	0
81129930	인듐	8	5
81129940	니오븀	8	5
81129990	기타	8	5
81130010	알갱이와 가루	8.4	E
81130090	기타	8.4	E
82011000	가래와 삽	8	5
82013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 및 쇠스랑	8	5
82014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5
82015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5
82016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5
82019010	포크	8	5
82019090	기타	8	10
82021000	수동식 톱	8.4	10
82022000	띠톱의 날	8	10
820231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10
820239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5
82023990	기타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2024000	체인톱의 날	8	5
82029110	톱기계용	8	10
82029190	기타	8	5
82029910	톱기계용	8.4	10
82029990	기타	10.5	10
8203100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10.5	10
82032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10.5	10
82033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10.5	10
8203400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10.5	10
82041100	조절할 수 없는 것	10.5	10
82041200	조절할 수 있는 것	10	10
82042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10
8205100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10	10
82052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10	10
82053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10.5	10
82054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10.5	10
82055100	가정용 공구	10.5	10
82055900	기타	10	10
82056000	블로램프(blow lamp)	10	10
8205700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10.5	10
8205900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10.5	10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10.5	10
820713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5
820719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5
82071990	기타	8	10
82072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2072090	기타	8	5
8207300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8	15
8207400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8	E
82075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E
82075090	기타	8	E
82076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E
82076090	기타	8	15
82077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E
82077090	기타	8	E
82078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PR-35
82078090	기타	8	PR-35
82079010	작용하는 부분을 천연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나 입방정질화붕소(立方定窒化硼素)로 만든 것	8	PR-35
82079090	기타	8	PR-35
82081011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15
82081019	기타	8	15
82081090	기타	8	15
82082000	목재 가공용	8	5
82083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10
8208400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5
82089000	기타	8	5
82090010	판	8	10
82090021	입자크기가 0.8 미크론 미만인 것	8	5
82090029	기타	8	5
82090030	팁	8	15
82090090	기타	8	5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211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18	10
821191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18	10
821192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12	10
821193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18	10
82119400	칼날	14	10
821195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12	10
82121000	면도기	12	10
82122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14	10
82129000	그 밖의 부분품	12	10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12	10
8214100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12	10
82142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18	10
82149000	기타	18	10
8215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82152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18	10
82159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18	10
82159900	기타	18	10
83011000	자물쇠	14	10
83012010	중앙제어식 도어 록	10	20
83012090	기타	10	20
83013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14	10
83014000	그 밖의 자물쇠	14	10
83015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14	10
83016000	부분품	12	10
83017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10	15
83021000	경첩	10	5
83022000	카스터(castor)	12	10
83023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3024100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14	10
830242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83024900	기타	12	10
83025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14	10
83026000	자동도어 폐지기	12	10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14	10
8304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10.5	10
83051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10.5	10
83052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10.5	10
83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0.5	10
83061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10
83062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5
83062910	칠보(七寶)세공의 것	8	5
83062990	기타	8	10
83063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8	10
83071000	철강으로 만든 것	8.4	10
83079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4	10
83081000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10.5	20
83082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10.5	10
8308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0.5	20
83091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18	10
83099000	기타	12	10
831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18	10
8311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311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	15
83113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E
83119000	기타	8	5
84011000	원자로	2	0
84012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1	0
8401301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	2	0
8401309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의 부분품	1	0
8401401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관련 조립품	1	0
84014020	원자로 내장품	1	0
84014090	기타	1	0
8402111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900 톤 이상인 발전(發電)용 보일러	3	0
84021190	기타	14	10
840212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5	15
84021900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5	15
84022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16	10
84029000	부분품	2	0
84031010	가정용	10	10
84031090	기타	10	10
84039000	부분품	6	10
84041010	제 8402 호의 보일러용	7	5
84041020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10	10
8404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14	10
84049010	제 8404.1020 호의 부속기기의 것	10	5
84049090	기타	7	0
8405100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4	20
84059000	부분품	8	5
84061000	선박추진용 터빈	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06811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2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하고 35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30	출력이 350 메가와트 초과하는 것	6	5
840682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9000	부분품	2	0
84071010	출력이 29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0
84071020	출력이 298 킬로와트 초과하는 것	2	0
840721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E
84072900	기타	8	E
840731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10	20
840732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10	20
8407330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10	20
8407341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10	20
84073420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 초과하는 것	10	20
84079010	파이어댐프(firedamp) 엔진	12	10
84079090	기타	18	15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5	PR-50
84082010	출력이 132.39 킬로와트(180PS) 이상인 것	9	15
84082090	기타	25	20
84089010	기관차 엔진	6	5
84089091	출력이 14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15
84089092	출력이 14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32.39 킬로와트(180PS) 이하인 것	8.4	15
84089093	출력이 132.39 킬로와트(180PS)를 초과하는 것	5	15
84091000	항공기 엔진용	2	0
84099110	선박추진 엔진의 것	6	PR-35
84099191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장치	5	15
84099199	기타	5	10
84099910	선박추진 엔진의 것	5	15
84099920	기관차 엔진의 것	2	0
84099991	출력이 132.39 킬로와트(180PS) 이상인 엔진의 것	2	10
84099999	기타	8.4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1011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10
841012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10
84101310	동력이 3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임펄스(impulse) 수력터빈과 수차	10	10
84101320	동력이 3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레이디얼(radial) 수력터빈과 수차	10	10
84101330	동력이 20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펌핑(pumping) 수력터빈과 수차	10	10
84101390	기타	10	10
84109010	조정기	6	5
84109090	기타	6	10
84111110	터보팬(turbofan) 엔진	1	0
84111190	기타	1	0
84111210	터보팬(turbofan) 엔진	1	0
84111290	기타	1	0
84112100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0
84112210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0
84112220	출력이 2,238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30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0
84112230	출력이 3,7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0
841181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5	10
841182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3	0
84119100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	0
84119910	터보샤프트(turboshaft) 엔진	5	0
84119990	기타	5	10
84121010	항공기나 우주선의 것	3	0
84121090	기타	10	10
84122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12	20
84122910	액압식 모터	10	20
84122990	기타	14	15
84123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14	5
84123900	기타	14	10
84128000	기타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129010	제 8412.1010 호의 기계용	2	0
84129090	기타	8	15
841311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10	10
84131900	기타	10	20
84132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10
84133021	출력이 132.39 킬로와트(180PS) 이상인 엔진용 연료펌프	3	5
84133029	기타	3	5
84133030	윤활유 펌프	3	5
84133090	기타	3	5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	10
84135010	압축공기식	10	15
84135020	전기식	10	10
84135031	플런저펌프	10	20
84135039	기타	10	15
84135090	기타	10	20
84136021	전기식	10	20
84136022	액압식	10	15
84136029	기타	10	10
84136031	전기식	10	10
84136032	액압식	10	20
84136039	기타	10	20
84136040	스크루펌프	10	20
84136050	레이디얼(radial) 플런저펌프	10	20
84136060	액시얼(axial) 플런저펌프	10	15
84136090	기타	10	15
84137010	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0,000 이상인 것	8	5
84137091	전기식 수중 오일 펌프와 전기식 수중펌프	10	10
84137099	기타	8	5
84138100	펌프	8	5
84138200	액체엘리베이터	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139100	펌프의 것	5	0
841392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6	5
84141000	진공펌프	8	10
84142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5
84143011	냉장고나 냉동고용(모터의 출력이 0.4 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5
84143012	냉장고나 냉동고용(모터의 출력이 0.4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5 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20
84143013	공기조절기용(모터의 출력이 0.4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5 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84143014	공기조절기용(모터의 출력이 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4143015	냉장고나 냉동고용(모터의 출력이 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4143019	기타	10	20
84143090	비(非)동력 구동식	9	15
84144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10
84145110	천장이나 지붕용 팬	20	15
84145120	창용 팬	20	15
84145130	전방 순환 루버팬(repeating front louver fan)	12	10
84145191	테이블용 팬	10	10
84145192	바닥용 팬	10	10
84145193	벽용 팬	10	10
84145199	기타	10	10
84145910	천장이나 지붕용 팬	8	5
84145920	창용 팬	8	5
84145930	원심환풍기	10	5
84145990	기타	8	5
84146010	레인지(range) 후드	10	10
84146090	기타	10	10
84148010	가스터빈용 프리피스톤(free piston)장치	8	5
84148020	이산화탄소 압축기	7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148030	엔진용 과급기	7	15
84148090	기타	7	0
84149011	흡입밸브나 배출밸브의 리프(leaf)	8	5
84149019	기타	8	0
84149020	제 8414.5110 호부터 제 8414.5199 호 또는 제 8414.6000 호의 기계의 것	12	10
84149090	기타	7	0
84151010	일체형	15	10
84151021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 이하인 것	15	10
84151022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를 초과하는 것	15	10
84152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20	20
84158110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 이하인 것	15	10
84158120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를 초과하는 것	20	20
84158210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 이하인 것	15	E
84158220	시간당 냉동력이 4,000 칼로리를 초과하는 것	20	E
841583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10	10
84159010	제 8415.1010 호, 제 8415.1021 호, 제 8415.8110 호 또는 제 8415.8210 호의 기계의 것	10	10
84159090	기타	10	10
8416100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10	10
84162011	천연가스용의 것	10.5	10
84162019	기타	10.5	10
84162090	기타	10.5	10
84163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	5
84169000	부분품	6	5
8417100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10	10
84172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10	10
84178010	코크스 노(爐)	10	10
84178020	방사성 폐기물 소각용 노(爐)	5	5
84178030	시멘트 회전소성로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178040	석회석 분해용 노(爐)	10	10
84178090	기타	10	20
84179010	해면철 회전소성로의 것	7	5
84179020	코크스 노(爐)의 것	7	5
84179090	기타	7	5
84181010	용량이 5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10	20
84181020	용량이 200 리터를 초과하고 500 리터 이하인 것	15	10
8418103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15	E
84182110	용량이 150 리터를 초과하는 것	10	10
84182120	용량이 50 리터를 초과하고 150 리터 이하인 것	10	10
84182130	용량이 50 리터 이하인 것	10	10
84182910	반도체제냉식	30	E
8418292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15	10
84182990	기타	30	E
84183010	냉장온도가 섭씨 영하 40 도이하인 것	9	E
84183021	용량이 5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23	20
84183029	기타	30	E
84184010	냉장온도가 섭씨 영하 40 도이하인 것	9	E
84184021	용량이 5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15	E
84184029	기타	30	E
8418500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4186120	압축식 기기	10	10
84186190	기타	15	10
84186920	냉장식 기기	10	10
84186990	기타	10	10
841891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18	10
84189910	냉장식 기기와 열펌프의 것	10	10
84189991	냉동기구의 것(냉장온도가 섭씨 영하 40 도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5	5
84189992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것(냉장온도가 섭씨 영하 40 도를 초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과하고 용량이 5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189999	기타	10	10
841911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35	20
84191910	태양열 물가열기	35	E
84191990	기타	35	E
84192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4	0
84193100	농산물용	8	10
84193200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9	5
84193910	브리즈 파터리 블랭크 드라이어(Breeze pottery blanks dryers)	9	5
84193990	기타	9	10
84194010	스트리핑(Stripping) 타워	10	10
84194020	정류 타워	10	10
84194090	기타	10	10
84195000	열교환기	10	5
84196011	산소부피가 시간당 15,000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10
84196019	기타	13	10
84196090	기타	10	10
841981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10	10
84198910	하이드로포머(Hydroformer) 용기	0	0
84198990	기타	0	0
84199010	물가열기의 것	0	0
84199090	기타	4	0
84201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8.4	5
84209100	실린더	8	5
84209900	기타	8	5
84211100	크림분리기	8.4	5
84211210	탈수용량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7.5	10
84211290	기타	8	10
84211910	탈수기	10	10
84211920	고액(固液) 분리기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211990	기타	10	10
84212110	가정형	25	20
84212191	선박 평형수(船舶平衡水) 처리장치	5	15
84212199	기타	5	15
842122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12	10
84212300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10	10
84212910	압착식 여과기	5	10
84212990	기타	5	0
84213100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10	20
84213910	가정형	15	PR-35
84213921	정전기식	5	0
84213922	백하우스(Baghoused)식	5	5
84213923	싸이클론(Cyclone)식	5	0
84213929	기타	5	15
84213930	내연기관용 배기가스 여과장치나 정화장치	5	15
84213940	배연탈황(排煙脫黃) 기기	5	0
84213950	배연 탈질산(排煙脫窒酸) 기기	5	0
84213990	기타	5	10
84219110	의류탈수기의 것(탈수용량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19190	기타	0	0
84219910	가정형 여과기나 정화기의 것	10	10
84219990	기타	5	0
84221100	가정형	10	E
84221900	기타	14	10
8422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10	10
84223010	음료나 액체식품용 보틀링(bottling) 또는 캐닝(canning)기계	12	10
84223021	자동 충전용 기계	12	10
84223029	기타	12	10
84223030	그 밖의 포장기계	10	5
84223090	기타	10	5
8422400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229010	접시세척기의 것	10.5	10
84229020	음료나 액체식품용 보틀링(bottling) 또는 캐닝(canning)기계의 것	8.5	10
84229090	기타	8.5	5
84231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10.5	10
84232010	일렉트로닉 벨트(electronic belt) 중량 측정기기	10	10
84232090	기타	10	10
84233010	배급 정량분할 포장저울	10.5	10
84233020	배급 정량분할 선별저울	10.5	10
84233030	프로포레이팅(Proporating) 저울	10.5	10
84233090	기타	10.5	10
84238110	계수 저울	10.5	10
84238120	용수철 저울	10.5	10
84238190	기타	10.5	10
84238210	계량대	10.5	10
84238290	기타	10.5	10
84238910	계량대	10	10
84238920	차량 계중기	10	10
84238930	매달림 저울	10	10
84238990	기타	10	10
8423900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10	10
84241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4	15
8424200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4	5
84243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	10
84248100	농업용이나 원예용	8	5
84248910	가정형	0	0
84248991	선박 캐비닛 와셔(washer)	0	0
84248999	기타	0	0
84249010	제 8424.1000 호의 기기의 것	0	0
84249020	제 8424.8910 호의 기기의 것	0	0
84249090	기타	0	0
84251100	전동식	6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251900	기타	5	10
8425311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4253190	기타	5	15
8425391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4253990	기타	5	15
842541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3	0
84254210	액압식 잭(jack)	3	5
84254290	기타	5	15
84254910	그 밖의 잭(jack)	5	10
84254990	기타	10	10
84261120	교각(橋脚)형 크레인(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8	15
84261190	기타	8	15
842612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6	15
84261910	선박 적하용 크레인	5	15
84261921	그랩 방식 선박 양하용 크레인	5	15
84261929	기타	5	15
84261930	갠트리(gantry) 크레인	10	15
84261941	프레임 적하용 및 양하용 교각형 크레인	10	15
84261942	컨테이너 적하용 및 양하용 교각형 크레인	10	15
84261943	데릭(derrick) 적하용 및 양하용 교각형 크레인	10	20
84261949	기타	10	15
84261990	기타	10	20
84262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10	20
8426300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6	15
84264110	휠이 장착된 크레인	5	15
84264190	기타	5	15
84264910	크롤러(crawler) 크레인	8	15
84264990	기타	13	15
842691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10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269900	기타	6	15
84271010	트랙 얼리웨이 스태커(track alleyway stacker)	9	5
84271020	트랙리스 얼리웨이 스태커(trackless alleyway stacker)	9	15
84271090	기타	9	5
84272010	포크리프트 트럭 크레인	9	5
84272090	기타	9	5
84279000	그 밖의 작업트럭	9	5
8428101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8	10
84281090	기타	6	0
8428200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5	15
842831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5	5
84283200	기타(버켓형)	5	10
84283300	기타(벨트형)	5	15
84283910	체인형	5	15
84283920	롤러형	5	10
84283990	기타	5	0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5	5
84286010	화물 가공삭도(架空索道)	8	5
84286021	단선식 엔드리스(endless)	8	5
84286029	기타	8	5
84286090	기타	8	10
8428901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10	10
84289020	기계식 주차 장비	5	10
84289031	스태킹 및 리클레이밍(Stacking and reclaiming) 머신	5	15
84289039	기타	5	15
84289090	기타	5	15
84291110	출력이 235.36 킬로와트(320PS)를 초과하는 엔진을 갖춘 것	7	5
84291190	기타	7	5
84291910	출력이 235.36 킬로와트(320PS)를 초과하는 엔진을 갖춘 것	7	5
84291990	기타	7	5
84292010	출력이 235.36 킬로와트(320PS)를 초과하는 엔진을 갖춘 것	5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292090	기타	5	5
84293010	용적이 10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셔블(shovel)을 갖춘 것	3	0
84293090	기타	5	5
84294011	바이브레이션(vibration)형(자체중량이 18 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	5
84294019	기타	8	5
84294090	기타	6	5
8429510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5	10
84295211	타이어가 장착된 것	8	PR-10
84295212	트랙이 장착된 것	8	E
84295219	기타	8	PR-35
84295290	기타	8	PR-35
84295900	기타	8	5
84301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10	10
84302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10	10
84303100	자주식(自走式)	10	10
84303900	기타	6	10
84304111	시추 깊이가 6,000 미터 이상인 것	5	5
84304119	기타	5	5
84304121	시추 깊이가 6,000 미터 이상인 것	5	5
84304122	크롤러(crawler) 천공용 기계(시추 깊이가 6,000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84304129	그 밖의 천공용 기계(시추 깊이가 6,000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84304190	기타	5	5
84304900	기타	5	10
84305010	원유 생산을 위한 것	3	0
84305020	광산용 파워 셔블(shovel)	7	5
84305031	기어 휠의 지름이 38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84305039	기타	5	5
84305090	기타	5	15
843061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6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306911	보링 케이싱(boring casing)의 지름이 3 미터를 초과하는 것	6	5
84306919	기타	6	10
84306920	스크래퍼(scraper)	6	5
84306990	기타	6	5
84311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3	5
84312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6	15
843131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에스컬레이터의 것	3	0
84313900	기타	5	15
84314100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6	10
843142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6	5
84314310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기계의 것	4	5
84314320	그 밖의 시추 기계의 것	4	0
84314390	기타	5	10
84314910	광산용 파워 셔블(shovel)용	5	10
84314990	기타	5	15
84321000	플라우(쟁기)	5	10
843221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5	5
84322900	기타	4	0
84323011	곡물 파종기	4	0
84323019	기타	4	10
84323021	감자 파종기	4	0
84323029	기타	4	0
84323031	쌀 이식기	4	5
84323039	기타	4	15
8432400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4	0
84328010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7	15
84328090	기타	4	0
84329000	부분품	4	5
843311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5
84331900	기타	6	5
84332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함한다]		
84333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5	5
84334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5	15
84335100	수확·탈곡 겸용기	8	15
84335200	그 밖의 탈곡기	8	5
843353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	8	10
84335910	사탕수수 수확기	8	5
84335920	채면기(採綿機)	8	5
84335990	기타	8	5
8433600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5	10
84339010	수확·탈곡 겸용기	5	15
84339090	기타	3	0
84341000	착유기	10	10
84342000	낙농기계	6	0
84349000	부분품	5	5
84351000	기계	10	10
84359000	부분품	6	5
8436100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7	15
84362100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5	15
84362900	기타	10	20
84368000	그 밖의 기계	10	10
843691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6	15
84369900	기타	6	10
84371010	곡물용 광학 색선별기(색선별기)	10	10
84371090	기타	10	20
84378000	그 밖의 기계	10	20
84379000	부분품	6	10
8438100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7	15
8438200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383000	설탕 제조용 기계	10	10
84384000	양조용 기계	7	10
84385000	육류나 가금(家禽)류의 조제용 기계	7	10
8438600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10	10
84388000	그 밖의 기계	8.5	5
84389000	부분품	5	5
84391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8.4	10
84392000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 기계	8.4	5
84393000	종이나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8.4	5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6	15
84399900	기타	6	15
84401010	제본용 재봉기	10	10
84401020	제본용 접착기	12	10
84401090	기타	12	10
84409000	부분품	8	5
84411000	절단기	12	10
8441200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12	10
84413010	종이·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컴포지트 캔(composite can) 제조용 기계	13.5	10
84413090	기타	13.5	20
84414000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12	20
84418010	종이·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유연포장 제조용 기계	12	10
84418090	기타	12	10
84419010	절단기의 것	8	10
84419090	기타	8.4	5
84423010	활자주조기	9	5
84423021	CTP 판재 제조용 기계	9	5
84423029	기타	9	15
84423090	기타	9	15
84424000	위의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7	0
84425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	7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린더와 석판석		
844311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10	10
844312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84431311	싱글컬러(single-color) 인쇄기	10	10
84431312	더블컬러(double-color) 인쇄기	10	10
84431313	쿼드러플컬러(quadruple-color) 인쇄기	10	10
84431319	기타	10	10
84431390	기타	10	10
844314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12	E
844315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12	E
84431600	곡면인쇄용 기계	10	E
844317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18	PR-35
84431921	원압(圓壓) 스크린 인쇄기	10	10
84431922	평압(平壓) 스크린 인쇄기	10	15
84431929	기타	10	10
84431980	기타	8	5
84433110	정전감광식	10	E
84433190	기타	0	0
84433211	스타일러스(stylus) 프린터	0	0
84433212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3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4	감열식(感熱式) 프린터	0	0
84433219	기타	0	0
84433221	잉크젯 방식 인쇄기	8	10
84433222	정전기식의 사진형 인쇄기(레이저 방식 인쇄기)	8	15
84433229	기타	8	10
84433290	기타	0	0
84433911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433912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10	E
84433921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22	밀착식	20	5
84433923	감열 복사기	20	5
84433924	열승화형 복사기	20	5
84433931	잉크젯 방식 인쇄기	8	5
84433932	정전기식의 사진형 인쇄기(레이저 방식 인쇄기)	8	5
84433939	기타	8	10
84433990	기타	0	0
84439111	두루마리(roll) 재료 공급장치	12	10
84439119	기타	12	10
84439190	기타	6	10
84439910	디지털인쇄 보조용 기계	12	10
84439921	감열식(感熱式) 프린터 헤드	6	10
84439929	기타	6	PR-50
84439990	기타	0	0
84440010	합성필라멘트 방사기	10	5
84440020	합성스테이플섬유 방사기	10	10
84440030	인조섬유 방사기	10	10
84440040	인조필라멘트 크림핑(crimping)기	10	10
84440050	인조필라멘트 절단기	10	10
84440090	기타	10	10
84451111	타면・카드기(Blowing-carding Machinery)	10	10
84451112	둥치풀기기(Bale Plucker)	10	10
84451113	카드기(carding machine)	10	10
84451119	기타	10	10
84451120	양모형 섬유용	10	10
84451190	기타	10	E
84451210	면 코머(Comber)	10	10
84451220	소모사(梳毛絲) 코머(Comber)	10	10
84451290	기타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451310	연조기	10	10
84451321	면 조방기	10	10
84451322	소모사(梳毛絲) 조방기	10	10
84451329	기타	10	10
84451900	기타	10	E
84452031	로터 방적기	10	10
84452032	제트 스피너(jet spinner)	10	10
84452039	기타	10	10
84452041	면 정방기	10.5	10
84452042	소모사(梳毛絲) 정방기	10	10
84452049	기타	10	10
84452090	기타	10	10
8445300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10	10
84454010	자동 보빈(bobbin) 와인더	10	20
84454090	기타	10	PR-35
84459010	정경기	10	10
84459020	사이징 머신(sizing machine)	10	10
84459090	기타	10	PR-35
84461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10
84462110	양탄자류나 러그(rug) 제조용	12	10
84462190	기타	10	10
84462900	기타	10	10
84463020	래피어(rapier) 직기	8	10
84463030	캐리어(Carrier) 직기	8	5
84463040	워터젯트(water jet) 직기	8	5
84463050	에어젯트(air jet) 직기	8	15
84463090	기타	8	5
844711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844712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84472011	트리코트 경(經) 편직기	8	5
84472012	랏셀 경(經) 편직기	8	10
84472019	기타	8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472020	플랫 웨프트(flat weft) 편직기	8	5
84472030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머신	8	5
84479011	양탄자류나 러그(rug) 제조용	7	5
84479019	기타	8	5
84479020	자수기	8	10
84479090	기타	10	PR-50
84481100	도비(dobby)기와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 또는 조립용 기계	8	10
84481900	기타	8	10
84482020	방사 니플이나 방사 노출	6	10
84482090	기타	6	15
84483100	침포	6	10
84483200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6	15
84483310	와인딩 스핀들(winding spindle)	6	5
84483390	기타	6	10
84483910	오픈 엔드 로터(Open-end rotor)	6	5
84483920	일렉트로닉 얀 클리어러(electronic yarn clearer)	6	5
84483930	에어 트위스팅(air twisting) 장치	6	5
84483940	링 정방기의 콤팩트 세트	6	0
84483990	기타	6	15
844842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6	15
84484910	캐칭 엔드 쓰로잉 셔틀 박스(catching and throwing shuttle box)	6	5
84484920	위사 삽입과 송출 장치	6	10
84484930	셔틀	6	5
84484990	기타	6	15
84485120	편직기용 코바늘과 복합 바늘(28 게이지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10
84485190	기타	6	15
84485900	기타	6	0
84490010	스티치용 기계	8	10
84490020	스펀레이스(spunlace) 장비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490090	기타	8	15
84501110	연속회전 임펠러(impeller)의 것	10	10
84501120	드럼형의 것	10	PR-35
84501190	기타	10	E
845012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4501900	기타	30	E
8450200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0	E
8450901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이하인 기계의 것	5	15
84509090	기타	16	10
84511000	드라이클리닝기	21	15
84512100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5	10
84512900	기타	8	10
8451300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8	10
84514000	세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8.4	5
84515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8	5
84518000	그 밖의 기계	12	20
84519000	부분품	8	10
84521010	다기능식	21	15
84521091	수동식	21	15
84521099	기타	21	15
84522110	플랫심(flatseam)	12	10
84522120	오버로크 머신	12	10
84522130	인터로크 머신	12	10
84522190	기타	12	10
84522900	기타	12	10
84523000	재봉기용 바늘	14	10
84529011	회전식 셔틀	14	10
84529019	기타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529091	회전식 셔틀	14	10
84529092	재봉기용으로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14	10
84529099	기타	14	10
84531000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 또는 가공기계	8.4	10
84532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4	10
84538000	그 밖의 기계	8.4	10
84539000	부분품	8	10
84541000	전로	8.4	5
84542010	청징장치(전로를 제외한다)	8.4	5
84542090	기타	8.4	10
84543010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기	12	10
84543021	잉곳(ingot) 블록	10	10
84543022	잉곳(ingot) 슬래브	12	10
84543029	기타	12	10
84543090	기타	12	20
84549010	청징장치용(전로를 제외한다)	8	10
84549021	결정기	8	5
84549022	진동장치	8	5
84549029	기타	8	10
84549090	기타	8	5
84551010	열간(熱間)압연용 관 압연기	12	10
84551020	냉간(冷間)압연용 관 압연기	12	10
84551030	고정환원 관 압연기	12	10
84551090	기타	12	10
84552110	열간압연용 박판 압연기(薄板壓延機)	15	10
84552120	압연형강 압연기	15	10
84552130	선재 압연기	15	10
84552190	기타	15	10
84552210	박판 압연기(薄板壓延機)	10	10
84552290	기타	15	10
84553000	압연기용 롤	8.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559000	그 밖의 부분품	8	5
8456100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0
84562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10	E
84563010	수치제어식	9.7	E
84563090	기타	10	E
84569010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절단기	0	0
84569020	워터제트 절단기	0	0
84569090	기타	0	0
84571010	수직형	9.7	PR-30
84571020	수평형	9.7	PR-30
84571030	플레이노(Plano)형	9.7	PR-30
84571090	기타	9.7	PR-30
84572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20
84573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E
84581100	수치제어식	9.7	E
84581900	기타	12	20
84589100	수치제어식	5	E
84589900	기타	12	20
84591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15	20
84592100	수치제어식	9.7	E
84592900	기타	15	20
84593100	수치제어식	9.7	E
84593900	기타	10	E
84594010	수치제어식	9.7	E
84594090	기타	15	E
84595100	수치제어식	9.7	E
84595900	기타	15	E
84596110	플레이노 밀링머신(planomilling machine)	5	E
84596190	기타	5	E
84596910	플레이노 밀링머신(planomilling machine)	12	E
84596990	기타	12	PR-8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59700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12	E
84601100	수치제어식	9.7	E
84601900	기타	15	E
84602110	원통연삭기	9.7	E
84602120	내면연삭기	9.7	E
84602190	기타	9.7	E
84602910	원통연삭기	15	E
84602920	내면연삭기	15	E
84602930	롤연삭기	13	E
84602990	기타	13	E
84603100	수치제어식	9.7	E
84603900	기타	15	E
84604010	호닝(honing)	13	E
84604020	래핑(lapping)	13	E
84609010	그라인딩휠머신	15	10
84609020	광택기	15	5
84609090	기타	15	20
8461201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	15	10
84612020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15	10
84613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12	10
84614010	수치제어식	9.7	E
84614090	기타	15	E
84615000	톱기계나 절단기	12	E
84619011	문형(단주형) 평삭기	15	10
84619019	기타	15	10
84619090	기타	12	20
84621010	수치제어식	9.7	PR-30
84621090	기타	12	PR-30
84622110	교정기	9.7	E
84622190	기타	9.7	E
84622910	교정기	10	E
84622990	기타	10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623110	세로방향 전단	7	E
84623120	가로방향 전단	7	E
84623190	기타	7	E
84623910	세로방향 전단	10	E
84623920	가로방향 전단	10	E
84623990	기타	10	E
84624111	CNC 자동공구교환 펀치프레스	9.7	E
84624119	기타	9.7	E
84624190	기타	9.7	E
84624900	기타	10	E
84629110	금속 형강 스퀴징 머신	10	PR-8
84629190	기타	10	PR-8
84629910	기계식 프레스	10	PR-8
84629990	기타	10	PR-8
84631011	인장력이 300 톤 이하인 것	10	20
84631019	기타	10	E
84631020	와이어드로잉머신(wiredrawing machine)	10	E
84631090	기타	10	E
84632000	나사 전조기	15	E
84633000	선 가공기	10	E
84639000	기타	10	E
84641010	디스크(disk) 톱의 것	0	0
84641020	스크롤(scroll) 톱의 것	0	0
84641090	기타	0	0
84642010	유리나 유리제품의 연마기나 광택기	0	0
84642090	기타	0	0
84649011	절단기	0	0
84649012	조각기	0	0
84649019	기타	0	0
84649090	기타	0	0
8465100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659100	톱 기계	10	20
84659200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 또는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10	20
84659300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 또는 광택기	10	20
84659400	굽힘기나 조립기	10	20
84659500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10	20
84659600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10	20
84659900	기타	10	20
84661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7	15
84662000	가공용 홀더	7	10
84663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7	15
84669100	제 8464 호의 기계용	0	0
84669200	제 8465 호의 기계용	6	15
84669310	자동공구교환기(automatic Tool Changer)	0	0
84669390	기타	0	0
846694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6	0
84671100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15
84671900	기타	8	5
84672100	각종 드릴	10	10
84672210	체인톱	10	10
84672290	기타	10	10
84672910	연삭공구(연마기・벨트 샌더・휠 샌더를 포함한다)	10	10
84672920	평삭기	10	10
84672990	기타	10	10
84678100	체인톱	8	5
84678900	기타	8	15
84679110	전동기를 갖춘 것	6	5
84679190	기타	6	5
846792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6	5
84679910	전동기를 갖춘 것	10	10
84679990	기타	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681000	수지식 취관(吹管)	12	10
8468200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12	10
84688000	그 밖의 기기	12	E
84689000	부분품	7	5
84690011	워드프로세싱머신	0	0
84690012	자동타자기	12	E
84690020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12	E
84690030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12	10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0
847021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0
84702900	기타	0	0
84703000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10	상업(market)용 등록단말기	0	0
84705090	기타	0	0
84709000	기타	0	0
84713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10	메인프레임(Mainframe)	0	0
84714120	미니컴퓨터	0	0
84714140	마이크로프로세싱(Microprocessing)	0	0
84714190	기타	0	0
84714910	메인프레임(Mainframe)	0	0
84714920	미니컴퓨터	0	0
84714940	마이크로프로세싱(Microprocessing)	0	0
84714991	분산제어시스템용 프로세싱 머신	0	0
84714999	기타	0	0
84715010	메인프레임(Mainframe)	0	0
84715020	미니컴퓨터	0	0
84715040	마이크로프로세싱(Microprocessing)	0	0
84715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716040	대형컴퓨터・메인프레임 및 미니컴퓨터용 단말기	0	0
84716050	스캐너	0	0
84716060	디지타이저(digitizer)	0	0
84716071	키보드	0	0
84716072	마우스	0	0
84716090	기타	0	0
84717010	리지드(rigid) 디스크 드라이버	0	0
8471702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0	0
84717030	씨디(CD) 드라이버	0	0
84717090	기타	0	0
84718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4719000	기타	0	0
84721000	등사기	14	10
84723010	우편 분류기나 우편밴딩머신	10	10
84723090	기타	14	10
84729010	현금자동처리기	0	0
84729021	천공기	0	0
84729022	지철기	0	0
84729029	기타	0	0
84729030	서류분쇄기	0	0
8472904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14	10
84729090	기타	0	0
8473100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	15
84732100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00	기타	0	0
84733010	제 8471.4110 호, 제 8471.4120 호, 제 8471.4910 호, 제 8471.4920 호, 제 8471.5010 호, 제 8471.5020 호, 제 8471.6090 호, 제 8471.7019 호, 제 8471.7020 호, 제 8471.7030 호 또는 제 8471.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90	기타	0	0
84734010	현금자동처리기의 현금지불기	10.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734090	기타	10.5	10
8473500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41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5	10
84742010	롤러 톱니형	5	10
84742020	엠-피터(em-peter)형	5	15
84742090	기타	5	10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7	10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7	10
84743900	기타	5	10
84748010	롤링성형기	5	10
84748020	몰드 프레스기	5	15
84748090	기타	5	10
84749000	부분품	5	10
84751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10
847521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10	10
84752911	연속열간벤딩로(爐)	10	10
84752912	유리섬유 와인더(광섬유 와인더는 제외한다)	10	10
84752919	기타	10	10
84752990	기타	10	10
84759000	부분품	8	10
847621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14	10
84762900	기타	15	10
847681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14	10
84768900	기타	15	10
84769000	부분품	10	10
84771010	플라스틱 가공용	0	0
84771090	기타	0	0
84772010	플라스틱 펠리타이저(plastic pelletizer)	5	0
84772090	기타	5	0
84773010	압출(押出])식 취입 성형기	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773020	사출(射出)식 취입 성형기	5	5
84773090	기타	5	10
84774010	플라스틱 브리지 다이 성형기	5	0
84774020	플라스틱 캘린더 성형기	5	0
84774090	기타	5	0
847751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5	10
84775900	기타	5	15
84778000	그 밖의 기계	5	0
84779000	부분품	0	0
84781000	기계	5	E
84789000	부분품	10	E
84791021	역청 콘크리트 살포기	8	5
84791022	안정제 살포기	8	5
84791029	기타	8	5
84791090	기타	8	10
84792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10	10
84793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10	10
84794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7	5
84795010	다기능 산업용 로봇	0	0
84795090	기타	0	0
84796000	증발식 에어쿨러	10	10
847971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	0
84797900	기타	0	0
84798110	필라멘트 권선기	9.5	10
84798190	기타	9.5	10
8479820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7	0
84798910	선박용 조향 및 조타장치 또는 자이로 안정장치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798920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	0	0
84798940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번들(bundle) 및 인쇄물 분류기	0	0
84798950	방사성 폐기물용 프레스기	0	0
84798961	자동 플러그인(plugin) 머신	0	0
84798962	자동 코어슬라이스(coreslice) 부착기	0	0
84798969	기타	0	0
84798992	자동화 고층창고	0	0
84798999	기타	0	0
84799010	제 8479.891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99020	제 8479.892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99090	기타	0	0
84801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10	10
84802000	주형 베이스	8	10
84803000	주형 제조용 모형	10	10
84804110	다이캐스팅 몰드	8	15
84804120	분말야금용 압축식 주형	8	15
84804190	기타	8	15
84804900	기타	8	15
84805000	유리 성형용 주형	8.4	15
84806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4	10
84807110	캡슐형 타이어 가황용 주형	0	0
84807190	기타	0	0
84807900	기타	5	0
84811000	감압밸브	5	15
84812010	유압 전송용	5	15
84812020	공기압 전송용	5	15
84813000	체크(논리턴)밸브	5	15
84814000	안전밸브	5	15
84818021	전자기적 작동식의 것	7	15
84818029	기타	7	15
84818031	전자팽창밸브	7	15
84818039	기타	7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818040	그 밖의 밸브	7	0
84818090	기타	5	5
84819010	밸브의 것	8	0
84819090	기타	8	5
84821010	자동중심조정 볼베어링	8	5
84821020	깊은 홈 볼베어링	8	5
84821030	앵귤러 콘택트 볼베어링	8	5
84821040	스러스트 볼베어링	8	5
84821090	기타	8	5
84822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5
84823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5
84824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5
84825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15
84828000	기타[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15
84829100	볼·니들 및 롤러	8	5
84829900	기타	6	0
84831011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6	PR-35
84831019	기타	6	15
84831090	기타	6	15
84832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5
84833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5
84834010	롤러 스크루	8	5
84834020	플라넷(planet) 감속기	8	PR-35
84834090	기타	8	15
8483500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8	10
8483600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	8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9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부분품	8	5
8484100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5
84842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15
84849000	기타	8	15
84861010	단결정실리콘(온도변화를 포함하는 공정에 의한 것)처리용 기계나 기기	0	0
84861020	연마기	0	0
84861030	톱 기계 또는 절단기	0	0
84861040	화학·기계적 광택기	0	0
84861090	기타	0	0
84862010	확산(擴散)·산화(酸化) 또는 어니일링 노(爐), 오븐 및 그 밖의 가열기	0	0
84862021	화학증착공법(CVD) 장치	0	0
84862022	물리증착공법(PVD) 장치	0	0
84862029	기타	0	0
84862031	스텝앤드리피트 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	0	0
84862039	기타	0	0
84862041	건식 플라즈마 식각	0	0
84862049	기타	0	0
84862050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90	기타	0	0
84863010	확산(擴散)·산화(酸化) 또는 어니일링 노(爐), 오븐 및 그 밖의 가열기	0	0
84863021	화학증착공법(CVD) 장치	0	0
84863022	물리증착공법(PVD) 장치	0	0
84863029	기타	0	0
84863031	스텝앤드리피트 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	0	0
84863039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863041	초음파방식의 세척기기	10	E
84863049	기타	0	0
84863090	기타	0	0
84864010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0	0
84864021	플라스틱 케이싱 제조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5	PR-10
84864022	와이어 접착기	8	E
84864029	기타	0	0
84864031	전자집적회로산업에 사용되는 이송전용 자동재료핸들링 로봇	0	0
84864039	기타	5	PR-30
84869010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와 기기의 것(자동재료핸들링기계는 제외한다)	5	5
84869020	와이어 접착기의 것	6	5
84869091	백 플레이트(backing plate)를 갖춘 스퍼터링 타겟 모듈	0	0
84869099	기타	0	0
84871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6	15
84879000	기타	8	10
85011010	완구용	24.5	20
85011091	마이크로모터(하우징의 크기가 20 밀리미터 이상이고 39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	15
85011099	기타	9	15
85012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85013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12	PR-35
85013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10
85013300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5
85013400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2	20
8501400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12	15
85015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5	E
85015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20
850153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2	15
85016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016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	20
850163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	20
8501641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50 메가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20
85016420	출력이 350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665 메가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8	5
85016430	출력이 665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5
85021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10
85021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15
8502131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2 메가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20
85021320	출력이 2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0	20
850220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10	10
85023100	풍력의 것	8	15
85023900	기타	10	15
85024000	회전변환기	10	10
85030010	제 8501.1010 호나 제 8501.1091 호의 모터의 것	12	PR-35
85030020	제 8501.6420 호나 제 8501.6430 호의 발전기의 것	3	0
85030030	제 8502.3100 호의 발전세트의 것	3	0
85030090	기타	8	5
85041010	전자식 안정기	10	10
85041090	기타	10	10
850421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5	10
850422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 메가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6	10
85042311	용량이 10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220 메가볼트암페어 미만인 것	10	15
85042312	용량이 220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30 메가볼트암페어 미만인 것	10	10
85042313	용량이 330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400 메가볼트암페어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미만인 것		
85042321	용량이 400 메가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메가볼트암페어 미만인 것	6	5
85042329	기타	6	5
85043110	상호유도자	5	0
85043190	기타	5	0
85043210	상호유도자	5	15
85043290	기타	5	5
8504330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15
8504340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4	15
85044013	제 8471 호의 기계의 것	0	0
85044014	그 밖의 직류 전압안정 공급장치(출력이 1 킬로와트 미만이고 정확도가 0.0001 보다 나쁜 것으로 한정한다)	7	15
85044015	그 밖의 교류 전압안정 공급장치(출력이 10 킬로와트 미만이고 정확도가 0.001 보다 나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044019	기타	0	0
85044020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10	15
85044030	인버터	10	15
85044091	변환기능을 갖춘 반도체 모듈	10	5
85044099	기타	10	15
85045000	그 밖의 유도자	0	0
85049011	제 8504.2321 호, 제 8504.2329 호의 변압기의 것	5	15
85049019	기타	8	15
85049020	전압안정 공급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것	8	15
85049090	기타	8	15
85051110	희토류금속의 것	7	0
85051190	기타	7	0
85051900	기타	7	10
85052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 및 브레이크	8	15
8505901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5
85059090	기타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061011	단추형	20	20
85061012	원통형	20	20
85061019	기타	20	E
85061090	기타	20	20
85063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14	10
85064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14	10
85065000	리튬으로 만든 것	14	E
85066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14	10
85068000	그 밖의 일차전지와 일차 배터리	14	10
85069010	제 8506.1000 호의 전지의 것	14	E
85069090	기타	10	20
85071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10	20
85072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10	10
85073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10	10
85074000	니켈-철 축전지	12	10
85075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12	10
85076000	리튬이온 축전지	12	PR-20
85078000	그 밖의 축전지	12	10
85079010	연산(鉛酸)축전지의 것	10	10
85079090	기타	8	15
850811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10	10
85081900	기타	0	0
85086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0	0
85087010	제 8508.1100 호의 물품용	12	10
85087090	기타	0	0
85094010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10	20
85094090	기타	10	10
85098010	바닥광택기	30	E
8509802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20	20
85098090	기타	30	E
85099000	부분품	12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101000	면도기	30	E
85102000	이발기	30	E
85103000	모발제거기	20	15
85109000	부분품	24.5	20
85111000	점화플러그	10	10
85112010	기관차・항공기 또는 선박용	5	5
85112090	기타	10	10
85113010	기관차・항공기 또는 선박용	5	5
85113090	기타	8.4	15
85114010	기관차・항공기 또는 선박용	5	10
85114091	출력이 132.39 킬로와트(180HP)이상인 엔진용 시동전동기	8.4	10
85114099	기타	8.4	15
85115010	기관차・항공기 또는 선박용	5	10
85115090	기타	8.4	E
85118000	그 밖의 기기	8.4	10
85119010	제 8511 호의 장치의 것(기관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5	E
85119090	기타	5	10
85121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10.5	10
85122010	자동차용 조명장치	10	20
85122090	기타	10	20
85123011	확성기, 버저	10	15
85123012	도난경보기	10	15
85123019	기타	10	15
85123090	기타	10	E
85124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10	E
85129000	부분품	8	10
85131010	건전지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손전등	15	10
85131090	기타	17.5	10
85139010	제 8513.1010 호의 손전등의 것	14	10
85139090	기타	14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141010	가열·공기조절용 노(爐)	0	0
85141090	기타	0	0
8514200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0	0
85143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85144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10	5
85149010	제강 전기로의 것	8	5
85149090	기타	0	0
851511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10	10
85151900	기타	10	E
85152110	얼라이닝 튜브(aligning tube) 용접기	10	20
85152190	기타	10	20
85152900	기타	10	20
85153110	스파이럴링 튜브(spiralling tube) 용접기	10	10
85153190	기타	10	20
85153900	기타	10	10
85158000	그 밖의 기기	8	5
85159000	부분품	6	5
85161010	전기식의 저장식 물가열기	10	10
85161020	전기식 순간온수장치	10	10
85161090	기타	10	E
8516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35	E
85162910	전기식 토양가열기	10	10
85162920	복사식의 난방기기	10	10
85162931	팬히터	10	10
85162932	액체충전식 가열기	10	10
85162939	기타	10	10
85162990	기타	10	10
85163100	헤어드라이어	10	10
85163200	그 밖의 이용기기	35	20
85163300	손 건조기	35	E
85164000	전기다리미	35	E
85165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166010	전자기식 오븐	15	10
85166030	전기밥솥	15	10
85166040	전기프라이팬	15	10
85166050	전기 로스터 오븐	15	10
85166090	기타	15	10
85167110	드립 커피 메이커	32	E
85167120	스팀 에스프레소 메이커	32	E
85167130	펌프 에스프레소 메이커	32	E
85167190	기타	32	E
85167210	자동 제빵기	32	E
85167220	슬라이스 팝업 토스터(slice pop-up toaster)	32	E
85167290	기타	32	E
85167910	전기가열식 물 디스펜서(dispenser)	32	E
85167990	기타	32	E
85168000	전열용 저항체	10	10
85169010	제 8516.2910 호나 제 8516.8000 호의 기기의 것	8	10
85169090	기타	12	10
851711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210	무선전화기 핸드세트(자동차에 설치된 것을 포함한다)	0	0
85171220	워키토키	0	0
85171290	기타	0	0
85171800	기타	0	0
85176110	이동통신기지국	0	0
85176190	기타	0	0
85176211	공중전화용 교환 시스템, 시외전화나 시외전신용 교환 시스템	0	0
85176212	이동통신 교환 시스템	0	0
85176219	그 밖의 유선전화 교환 시스템	0	0
85176221	광회선단말장치와 펄스부호변조 다중화 장비	0	0
85176222	파장분할 다중전송용 광전송장치	0	0
85176229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176231	통신망 동기화 장치	0	0
85176232	이더넷(ethernet) 교환기	0	0
85176233	IP 전화 신호 변환기	0	0
85176234	모뎀	0	0
85176235	네트워크 집신기(集信機)	0	0
85176236	네트워크 선로 제어장치	0	0
85176237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0	0
85176239	서모그래프(thermograph) 기록헤드	0	0
85176292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0	0
85176293	고정 무선접속통신용 단말기	0	0
85176294	무선 헤드세트	0	0
85176299	기타	0	0
85176910	그 밖의 무선망내 통신용 장치	9	5
85176990	그 밖의 유선망내 통신용 장치	0	0
85177010	디지털 프로그램 제어 교환기의 것	0	0
85177020	제 8517.6221 호의 기기의 것	0	0
85177030	무선전화기 핸드세트(안테나를 제외한다)	0	0
85177040	워키토키의 것(안테나를 제외한다)	8	10
85177060	레이저통신기기의 레이저 송수신 장치	0	0
85177070	제 8517 호의 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나 그 부분품	2	5
85177090	기타	0	0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10	5
851821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51822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5182900	기타	0	0
8518300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0	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12	10
85185000	음향증폭세트	10	20
85189000	부분품	10.5	PR-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9200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20	15
85193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30	E
85195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1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카세트 플레이어(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은 제외한다)	17	10
85198112	카세트형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음성 재생용 기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30	20
85198119	기타	20	15
85198121	씨디(CD)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20
85198129	기타	20	15
85198131	플래시 메모리 녹음기(음성 재생용 기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0	20
85198139	기타	20	15
85198910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20
85198990	기타	20	15
85211011	방송품질용	세트당가격이 2 천불이하인 경우 30%, 가격이 2 천불초과시 3%+세트당 4,374 위안	20
85211019	기타	세트당가격이 2 천불이하인 경우 30%, 가격이 2 천불초과시 3%+세트당 4,374 위안	20
85211020	비디오테이프 재생기	세트당가격이 2 천불이하인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경우 30%, 가격이 2 천 불초과시 3%+세트당 4,374 위안	
85219011	비디오 씨디(CD) 플레이어	20	15
85219012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플레이어	20	20
85219019	기타	20	15
85219090	기타	20	20
85221000	픽업 카트리지	35	E
8522901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이나 레코드 플레이어의 것	25	15
85229021	전송 메커니즘(자기헤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5	15
85229022	자기헤드	25	PR-35
85229023	자기헤드의 부분품	20	15
85229029	기타	30	PR-35
85229031	레이저 비디오 씨디(CD) 플레이어용 무브먼트	30	PR-35
85229039	기타	30	PR-35
85229091	자동차 가청주파수 계전(繼電)기기나 FM 자동차 송신기	20	15
85229099	기타	20	15
85232110	기록이 안 된 것	17.5	10
85232120	기록된 것	15	10
85232911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2919	기타	0	0
85232921	기록이 안 된 것(폭이 4 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2	기록이 안 된 것(폭이 4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3	기록이 안 된 것(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8	음성이나 영상 재생용	10	15
85232929	기타(기록된 것)	0	0
85232990	기타	0	0
85234100	기록이 안 된 것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3491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기록된 것에 한정한다)	10	10
85234920	제 8471 호의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기계용(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90	기타	0	0
8523511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5120	기록된 것	0	0
8523521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5290	기타	0	0
8523591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5920	기록된 것	0	0
85238011	기록된 것	15	10
85238019	기타	0	0
85238021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8029	기타	0	0
85238091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8099	기타	0	0
85255000	송신기기	0	0
85256010	위성지구국	0	0
85256090	기타	0	0
85258011	특수목적용	10	E
85258012	기타(방송품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세트당가격이 5 천불이하인 경우 35%, 가격이 5 천불초과시 3%+세트당 12,960 위안	E
85258013	기타	세트당가격이 5 천불이하인 경우 35%, 가격이 5 천불초과시 3%+세트당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960 위안	
85258021	특수목적용	0	0
85258022	기타[싱글렌즈리플렉스(SLR)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58025	기타(렌즈교환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58029	기타	0	0
85258031	특수목적용	0	0
85258032	기타(방송품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58033	기타(가정용)	0	0
85258039	기타	0	0
85261010	항행용	2	15
85261090	기타	5	15
85269110	자동차용	2	0
85269190	기타	2	10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5	10
852712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20	15
85271300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85271900	기타	15	15
85272100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15	15
85272900	기타	15	15
85279100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15	10
852792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15	10
85279900	기타	27	20
85284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10	천연색	30	20
85284990	단색	19	10
85285110	액정모니터(LCD)	0	0
85285190	기타	0	0
85285910	천연색	30	PR-35
85285990	단색	19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286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10	천연색	30	PR-35
85286990	단색	15	E
85287110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	30	E
85287180	기타(천연색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5287190	단색	15	10
85287211	아날로그 텔레비전	30	E
85287212	디지털 텔레비전	30	E
85287219	기타	30	E
85287221	아날로그 텔레비전	30	E
85287222	디지털 텔레비전	30	PR-30
85287229	기타	30	E
85287231	아날로그 텔레비전	30	E
85287232	디지털 텔레비전	30	E
85287239	기타	30	PR-30
85287291	아날로그 텔레비전	30	E
85287292	디지털 텔레비전	30	E
85287299	기타	30	E
85287300	기타(단색)	15	10
85291010	레이더기기 및 항행용 무선기기의 것	1.5	10
85291020	라디오방송수신기와 이들의 컴비네이션, 텔레비전 수신기용	0	0
85291090	기타	2	0
85299010	텔레비전 송신기 또는 변환기, 위성텔레비전 지상수신 및 중계기기	0	0
85299041	특수목적의 것	8	PR-35
85299042	카메라모듈(특수목적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85299049	기타	12	15
85299050	레이더기기 및 항행용 무선기기의 것	1.5	10
85299060	라디오방송수신기와 이들의 컴비네이션의 것	15	10
85299081	컬러텔레비전 수신기의 것(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이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1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29908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과 이들의 부분품	15	PR-20
85299089	기타	0	0
85299090	기타	0	0
85301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10	10
85308000	그 밖의 기기	8	10
85309000	부분품	8	10
8531100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10	10
85312000	액정 디바이스(LCD)나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	버저	15	PR-50
85318090	기타	10	10
853190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것	0	0
85319090	기타	0	0
85321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10	적층한 것	0	0
85322190	기타	0	0
85322210	적층한 것	0	0
85322290	기타	0	0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10	적층한 것	0	0
85322490	기타	0	0
85322510	적층한 것	0	0
85322590	기타	0	0
85322900	기타	0	0
8532300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0
85329010	제 8532.1000 호의 축전기의 것	0	0
85329090	기타	0	0
85331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10	적층한 것	0	0
85332190	기타	0	0
85332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3331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	기타	0	0
8533400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 (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0	0
85339000	부분품	0	0
85340010	4 층을 초과하는 것	0	0
85340090	기타	0	0
85351000	퓨즈	14	10
85352100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14	10
85352910	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이고 220 킬로볼트 이하인 것	14	10
85352920	전압이 220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 이하인 것	14	10
85352990	기타	10	10
85353010	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이고 220 킬로볼트 이하인 것	10	10
85353020	전압이 220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 이하인 것	10	10
85353090	기타	10	10
85354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18	10
85359000	기타	10	20
85361000	퓨즈	10	E
85362000	자동차단기	9	5
85363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9	15
85364110	전압이 36 볼트 이하인 것	10	15
85364190	기타	10	20
85364900	기타	10	15
85365000	그 밖의 개폐기	0	0
85366100	램프홀더	10	15
85366900	기타	0	0
8536700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	E
85369000	그 밖의 기기	0	0
85371011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programmable controller)	5	PR-50
85371019	기타	5	PR-50
85371090	기타	8.4	15
85372010	가스절연 개폐장치(전압이 500 킬로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	8.4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한다)		
85372090	기타	8.4	15
85381010	제 8537.2010 호의 물품용	8.4	10
85381090	기타	7	PR-50
85389000	기타	7	0
85391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10	10
85392110	과학용 또는 의료용에만 사용되는 것	8	5
85392120	기관차 및 철도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용	8	10
85392130	자동차용	10	20
85392190	기타	10.5	10
85392210	과학용 또는 의료용에만 사용되는 것	10.5	E
85392290	기타	5	5
85392910	과학용 또는 의료용에만 사용되는 것	5	5
85392920	기관차 및 철도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용	10.5	10
85392930	자동차용	5	15
85392991	전압이 12 볼트이하인 것	12	10
85392999	기타	12	10
85393110	과학용 또는 의료용에만 사용되는 것	8	E
85393120	기관차 및 철도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용	8	E
85393191	콤팩트 형광램프	8	5
85393199	기타	8	5
85393230	나트륨 증기 램프	8	10
85393240	수은 증기 램프	8	10
85393290	기타	8	5
85393910	과학용 또는 의료용에만 사용되는 것	8	E
85393920	기관차 및 철도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용	8	E
85393990	기타	8	15
85394100	아크램프	8	E
85394900	기타	8	E
85399000	부분품	8	E
85401100	천연색	12	15
85401200	단색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40201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12	10
85402090	기타	8	5
8540401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
8540402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	8	5
85406010	레이더 직시관(display tube)	6	5
85406090	기타	8	5
85407100	자전관(magnetron)	8	15
85407910	속도변조관(klystron)	8	5
85407990	기타	8	5
854081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E
85408900	기타	8	5
85409110	텔레비전 수상관(受像管)의 것	6	5
85409120	레이더 직시관(display tube)의 것	5	5
85409190	기타	8	E
8540991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의 것	8	5
85409990	기타	8	E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85412100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	0
85412900	기타	0	0
8541300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및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0
85414010	발광다이오드	0	0
85414020	태양전지	0	0
85414090	기타	0	0
8541500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	0
8541600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0
85419000	부분품	0	0
8542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 또는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423200	메모리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423300	증폭기	0	0
85423900	기타	0	0
85429000	부분품	0	0
85431000	입자가속기	5	10
85432010	주파수 대역이 1,500 메가헤르츠 미만인 유니버설 신호발생기(universal signal generator)	15	E
85432090	기타	8	5
8543300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0
85437091	금속이나 지뢰 탐지기	0	0
85437092	고주파나 중간주파 증폭기	0	0
85437093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10	10
85437099	기타	0	0
85439010	입자가속기의 것	0	0
85439021	제 8543.2010 호의 발생기의 것	0	0
85439029	기타	0	0
85439030	금속이나 지뢰 탐지기의 것	0	0
85439040	고주파나 중간주파 증폭기의 것	0	0
85439090	기타	0	0
85441100	구리로 만든 것	10	15
85441900	기타	20	20
85442000	동축케이블 및 그 밖의 동축 도체	10	10
85443020	자동차용	10	15
85443090	기타	5	15
85444211	전기 케이블	0	0
85444219	기타	0	0
85444221	전기 케이블	0	0
85444229	기타	0	0
85444911	전기 케이블	0	0
85444919	기타	0	0
85444921	전기 케이블	6	PR-35
85444929	기타	12	5
85446012	전압이 35 킬로볼트 이하인 것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5446013	전압이 35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1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4	10
85446014	전압이 110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22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4	5
85446019	기타	8.4	PR-35
85446090	기타	21	20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	노(爐)용	8	10
85451900	기타	10.5	10
85452000	브러시	10.5	10
85459000	기타	10.5	10
85461000	유리로 만든 것	10.5	10
85462010	송전용과 변전용 도자제의 부싱(bushing)	6	10
85462090	기타	12	10
85469000	기타	10	10
85471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15
8547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15
854790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85479090	기타	8	5
8548100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	5
85489000	기타	12	20
86011011	마이크로프로세싱(Microprocessing)에 의해 제어되는 것	3	0
86011019	기타	3	0
86011020	교류 전동기로 주행되는 것	3	0
86011090	기타	3	0
86012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3	0
86021010	마이크로프로세싱(Microprocessing)에 의해 제어되는 것	3	0
86021090	기타	3	0
86029000	기타	3	0
86031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3	0
86039000	기타	3	0
86040011	터널정리(tunnel clearance)용 검사차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6040012	온라인레일(on-line rail)용 샌딩(sanding)차량	3	0
86040019	기타	5	5
86040091	트롤리선의 서스펜션용 설치차량[레일(rail) 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5
86040099	기타	7	5
86050010	철도용 객차	5	5
86050090	기타	5	5
86061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5	5
86063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860691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	5
860692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86069900	기타	5	5
86071100	구동식 보기(bogie) 및 비셀보기(bissel-bogie)	3	0
86071200	그 밖의 구동식 보기(bogie) 및 비셀보기(bissel-bogie)	3	0
86071910	차축	3	0
86071990	기타	3	0
860721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3	0
86072900	기타	3	0
86073000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3	0
86079100	기관차용	3	5
86079900	기타	3	0
86080010	레일자동차축계산장비(rail automatic axle counting equipment)	3	0
86080090	기타	4	0
86090011	단열 처리가 된 것	10.5	10
86090012	탱크	10.5	10
86090019	기타	10.5	10
86090021	단열 처리가 된 것	10.5	10
86090022	탱크	10.5	10
86090029	기타	10.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6090030	45, 48, 53 피트(feet)의 것	10.5	10
86090090	기타	10.5	10
87011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9	10
8701200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6	15
87013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6	5
87019011	바퀴가 달린 것	8	5
87019019	기타	8	5
87019090	기타	8	5
87021020	공항 승객수송용 버스	4	15
87021091	좌석이 30 개 이상인 것	25	20
87021092	좌석이 20 개 이상이고 29 개 이하인 것	25	20
87021093	좌석이 10 개 이상이고 19 개 이하인 것	25	20
87029010	좌석이 30 개 이상인 것	25	20
87029020	좌석이 20 개 이상이고 29 개 이하인 것	25	20
87029030	좌석이 10 개 이상이고 19 개 이하인 것	25	20
87031011	전 지형 만능차(ATV)	25	20
87031019	기타	25	E
87031090	기타	25	E
87032130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2140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2150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2190	기타	25	E
87032230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240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2250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2290	기타	25	E
8703234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34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PR-10
8703234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PR-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32349	기타	25	E
8703235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35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PR-10
8703235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PR-10
87032359	기타	25	E
8703236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36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236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PR-10
87032369	기타	25	E
8703241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41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PR-10
8703241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2419	기타	25	E
8703242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PR-10
8703242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242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2429	기타	25	E
8703311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119	기타	25	E
8703312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12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312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3129	기타	25	E
8703321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21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PR-10
8703321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PR-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33219	기타	25	E
8703322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22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322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PR-10
87033229	기타	25	E
8703331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31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PR-10
8703331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3319	기타	25	E
8703332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32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332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3329	기타	25	E
87033361	세단(sedan)형 자동차	25	E
8703336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25	E
8703336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E
87033369	기타	25	E
87039000	기타	25	PR-10
87041030	화물용 전동휠덤프차	6	5
87041090	기타	6	5
87042100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25	20
87042230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4 톤 이하인 것	20	15
87042240	총중량이 14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20	15
87042300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15	15
87043100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25	20
87043230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8 톤 이하인 것	20	15
87043240	총중량이 8 톤을 초과하는 것	20	15
87049000	기타	25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51021	최대기중력이 50 톤이하인 것	15	15
87051022	최대기중력이 50 톤을 초과하고 100 톤 이하인 것	10	15
87051023	최대기중력이 100 톤을 초과하는 것	10	15
87051091	최대기중력이 50 톤이하인 것	15	15
87051092	최대기중력이 50 톤을 초과하고 100 톤 이하인 것	10	15
87051093	최대기중력이 100 톤을 초과하는 것	10	15
87052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12	15
87053010	소방용 사다리가 장착된 것	3	15
87053090	기타	3	15
87054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15	15
87059010	무선통신차	9	15
87059020	이동식 방사능 장치차량	9	15
87059030	이동식 환경 모니터링 장치차량	12	15
87059040	이동진료차	12	20
87059051	항공기충전차(주파수가 400 헤르츠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15
87059059	기타	12	15
87059060	항공기 급유용·공기조절용 또는 제설용 이동식 차량	12	15
87059070	도로나 활주로 청소용 제설차	12	15
87059080	유정 로깅 트럭·프랙쳐링 유닛 트럭 및 믹싱 샌드 트럭	12	15
87059090	기타	12	15
87060010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	8	15
87060021	총중량이 14 톤 이상인 차량용	10	15
87060022	총중량이 14 톤 미만인 차량용	10	15
87060030	좌석이 30 개이상인 승객수송차량용	20	15
87060040	기중기 트럭용	20	15
87060090	기타	10	15
87071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10	15
87079010	제 8702.1092 호, 제 8702.1093 호, 제 8702.9020 호 또는 제 8702.9030 호의 차량용	10	15
87079090	기타	10	15
87081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10	20
87082100	안전벨트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82930	창유리 올리는장치	10	15
87082941	전기식	10	PR-10
87082942	수동식	10	15
87082951	사이드 패널(side panel)	10	20
87082952	차문(Car door)	10	20
87082953	엔진 후드	10	20
87082954	프론트 월(front wall)	10	20
87082955	화물칸이나 뒷문 덮개	10	20
87082956	리어 월(rear wall)	10	20
87082957	펜더(fender)	10	20
87082959	기타	10	20
87082990	기타	10	PR-10
87083010	브레이크 라이닝이 장착된 것	10	10
87083021	제 8701 호, 제 8704.1030 호 또는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3029	기타	10	PR-10
87083091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3092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3093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3094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3095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0
87083096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3099	기타	10	20
87084010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E
87084020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0	E
87084030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PR-20
87084040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의 차량용의 것	10	E
87084050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84060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E
87084091	세단(sedan)형 자동차와 이들의 부분품용 자동변속기	10	PR-20
87084099	기타	10	E
87085071	제 8701 호의 차량의 것	6	15
87085072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의 것	10	PR-10
87085073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의 것	6	15
87085074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호의 차량의 것	10	20
87085075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5076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5079	기타	10	PR-10
87085081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5082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5	20
87085083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5084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5085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5086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5089	기타	10	E
87087010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7020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7030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7040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의 차량용의 것	10	10
87087050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7060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7090	기타	10	E
87088010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10	10
87088090	기타	10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89110	방열기	10	15
87089120	오일 냉각기	10	15
87089190	기타	10	15
87089200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그 부분품	10	E
87089310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9320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9330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9340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9350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9360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20
87089390	기타	10	E
87089410	제 8701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9420	제 8702.1091 호나 제 8702.901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9430	제 8704.1030 호나 제 8704.1090 호의 차량용의 것	6	15
87089440	제 8704.2100 호, 제 8704.2230 호, 제 8704.3100 호 또는 제 8704.3230 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9450	제 8704.2240 호, 제 8704.2300 호 또는 제 8704.3240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9460	제 8705 호의 차량용의 것	10	15
87089490	기타	10	E
87089500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그 부분품	10	PR-10
87089910	제 8701 호의 차량의 것	6	10
87089921	프레임(Frame)	25	20
87089929	기타	25	20
87089931	프레임(Frame)	6	15
87089939	기타	6	15
87089941	프레임(Frame)	25	20
87089949	기타	25	20
87089951	프레임(Frame)	10	15
87089959	기타	1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089960	제 8705 호의 차량의 것	15	10
87089991	프레임(Frame)	10	15
87089992	구동축	10	15
87089999	기타	10	15
87091110	트렉터	10	10
87091190	기타	10	10
87091910	트렉터	10.5	15
87091990	기타	10.5	15
87099000	부분품	8.4	10
87100010	조립된 것	15	10
87100090	부분품과 부속품	15	10
871110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5	20
871120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10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2020	실린더용량이 100 시시를 초과하고 125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2030	실린더용량이 125 시시를 초과하고 15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2040	실린더용량이 150 시시를 초과하고 20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2050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301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40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3020	실린더용량이 400 시시를 초과하고 500 시시 이하인 것	45	20
8711400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0	20
8711500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30	20
87119010	전기식과 전기식 보조기계	45	E
87119090	기타	45	E
87120020	경주용 자전거	13	10
87120030	산악용 자전거	13	10
87120041	16 인치, 18 인치 또는 20 인치	13	10
87120049	기타	13	10
87120081	16 인치 이하인 것	13	10
87120089	기타	13	10
87120090	기타	23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7131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6	5
87139000	기타	4	10
8714100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30	20
87142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5	5
87149100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12	10
87149210	휠 림(wheel rim)	12	10
87149290	스포크(spoke)	12	10
87149310	허브(hub)	12	10
87149320	프리휠(free wheel)	12	10
87149390	기타	12	10
87149400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12	10
87149500	안장	12	10
87149610	페달과 이들의 부분품	12	10
87149620	크랭크기어(crankgear)와 이들의 부분품	12	10
87149900	기타	12	10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20	15
87161000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10	15
87162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0	15
87163110	오일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 및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10	15
87163190	기타	10	10
87163910	밴 트레일러(van trailer) 및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10	10
87163990	기타	10	10
87164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0	10
87168000	그 밖의 차량	10	10
87169000	부분품	10	10
88010010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	3	0
88010090	기타	3	0
880211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2	0
8802121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000 킬로그램 이하	2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인 것		
88021220	자체 중량이 7,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0
880220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5	10
880230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0
8802401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4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0
88024020	자체 중량이 4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	0
88026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2	0
88031000	프로펠러 및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1	0
88032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1	0
8803300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	0
88039000	기타	0	0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	0
8805100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및 그 부분품	1.5	0
88052100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1.5	0
88052900	기타	1.5	0
89011010	내연 기선(內燃汽船)	5	15
89011090	기타	8	15
89012011	적재중량이 10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2012	적재중량이 100,000 톤을 초과하고 30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2013	적재중량이 300,000 톤을 초과하는 것	6	15
89012021	적재중량이 15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2022	적재중량이 150,000 톤을 초과하고 30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2023	적재중량이 300,000 톤을 초과하는 것	6	15
89012031	용량이 20,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9	15
89012032	용량이 20,000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15
89012041	용량이 20,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9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9012042	용량이 20,000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15
89012090	기타	9	15
89013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9	15
89019021	적재가능한 표준컨테이너가 6,000 개 이하인 것	9	15
89019022	적재가능한 표준컨테이너가 6,000 개를 초과하는 것	6	15
89019031	적재중량이 2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9032	적재중량이 20,000 톤을 초과하는 것	6	15
89019041	적재중량이 15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9042	적재중량이 150,000 톤을 초과하고 300,000 톤 이하인 것	9	15
89019043	적재중량이 300,000 톤을 초과하는 것	9	15
89019050	다목적 내연 기선(內燃汽船)	9	15
89019080	그 밖의 내연 기선(內燃汽船)	9	15
89019090	그 밖의 내연 기선(內燃汽船)이 아닌 것	8	15
89020010	내연 기선(內燃汽船)	7	15
89020090	기타	8	15
89031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10	15
890391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15
890392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10.5	15
89039900	기타	10	E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9	15
89051000	준설선	3	15
8905200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15
89059010	부선거(艀船渠)	8	15
89059090	기타	3	15
89061000	군함	5	15
89069010	내연 기선(內燃汽船)	5	E
89069020	내연 기선(內燃汽船)이 아닌 것	8	15
8906903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선박(선박의 부분을 포함한다)	8	15
89071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8	15
89079000	기타	8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3	15
90011000	광섬유·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	5	PR-10
90012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8	10
90013000	콘택트렌즈	10	20
90014010	포토크로믹(Photochromic)	20	15
90014091	선글라스용	20	15
90014099	기타	20	15
90015010	포토크로믹(Photochromic)	20	15
90015091	선글라스용	20	15
90015099	기타	20	10
90019010	여광판(Color filter)	8	15
90019090	기타	8	10
90021110	제 9006.1010 호부터 제 9006.3000 호까지의 사진기용	8	5
900211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 또는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용	8	5
90021131	싱글렌즈리플렉스(SLR) 카메라용	15	E
90021139	기타	15	10
90021190	기타	15	15
90021910	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	15	10
90021990	기타	15	15
90022010	카메라용	15	15
90022090	기타	15	15
90029010	카메라용	15	15
90029090	기타	15	15
900311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8	10
90031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0	10
90039000	부분품	10	10
90041000	선글라스	20	15
90049010	포토크로믹(Photochromic) 안경	16	10
90049090	기타	20	10
90051000	쌍안경	15	10
90058010	천체망원경 및 그 밖의 천체기기	3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058090	기타	12	10
90059010	제 9005.8010 호의 기기의 것	2	0
90059090	기타	8	5
90061010	전기식 컬러 스캐너	12	10
90061090	기타	10	10
9006300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9	E
90064000	즉석인화 사진기	5	10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25	20
900652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9	5
90065290	기타	25	20
90065300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20	15
90065910	레이저 포토 타이프세팅(Laser photo typesetting) 기기	9	15
90065990	기타	25	20
900661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90066910	섬광전구	18	20
90066990	기타	18	10
90069110	제 9006.1010 호부터 제 9006.3000 호까지의 사진기용	8	10
90069120	즉석인화 사진기용	5	5
90069191	자동초점세팅장치	10	10
90069192	셔터 장치	10	10
90069199	기타	10	10
90069900	기타	12	10
90071010	고속 카메라	14	10
90071090	기타	14	10
90072010	디지털	14	10
90072090	기타	14	10
90079100	촬영기용	8.4	10
90079200	영사기용	8.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085010	슬라이드 영사기	14	10
900850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10	10
90085031	정투영(正投影)식 영사기	18	E
90085039	기타	18	E
9008504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9008901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의 것	8	5
9008902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의 것	14	10
90089090	기타	14	10
90101010	영화필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4	10
90101020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 필름이나 감광지의 것	8.4	5
90101091	롤 모양의 천연색 사진필름용	25	20
90101099	기타	15	20
90105010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14	10
90105021	영화필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4	10
90105022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 필름이나 감광지의 것	8.4	10
90105029	기타	17	10
90106000	영사용 스크린	14	10
90109010	영화필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90109020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 필름이나 감광지의 것	0	0
90109090	기타	0	0
90111000	입체현미경	0	0
9011200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90118000	그 밖의 현미경	7	10
90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2100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90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31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8	5
90132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138010	돋보기	12	10
90138020	도어 아이	12	10
90138030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5	10-A*
90138090	기타	5	E
90139010	제 9013.1000 호나 제 9013.2000 호용의 것	6	10
90139020	제 9013.8030 호용의 것	8	15
90139090	기타	8	15-A
9014100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2	15
90142010	자동 조정장치	2	15
90142090	기타	2	0
90148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2	5
90149010	자동 조정장치용	1.5	0
90149090	기타	1.5	0
90151000	거리측정기	9	10
90152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태코미터(tacheometers)]	9	5
90153000	수준기(水準器)	9	10
90154000	사진측량기기	9	5
90158000	그 밖의 기기	5	10
90159000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0160010	감량(感量) 0.1 밀리그램 이상인 것	9	10
90160090	기타	10.5	10
9017100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	10
9017200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0	0
9017300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 및 게이지류	8	10
90178000	그 밖의 기기	8	5
9017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1100	심전계	5	5
90181210	B-초음파 진단기	7	15
90181291	크로모스코프 초음파 진단기	5	PR-10
90181299	기타	5	PR-10
90181310	기기들의 완전한 세트	4	15
90181390	부분품	4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1814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5	15
90181930	환자 감시 장치	4	5
90181941	청력검사용기구	4	0
90181949	기타	4	E
90181990	기타	4	0
90182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5
901831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10
90183210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	8	10
90183220	봉합용 바늘	4	0
90183900	기타	4	5
90184100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0
90184910	치과용 장비가 결합되어 있는 치과의자	4	10
90184990	기타	4	5
9018500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PR-35
90189010	청진기	4	0
90189020	혈압계	4	0
90189030	내시경	4	0
90189040	인공신장기	4	0
90189050	투열 요법 기기	4	0
90189060	수혈 기기	4	0
90189070	마취 기기와 장치	4	5
90189080	자궁내피임기구	4	0
90189090	기타	4	5
90191010	마사지용 기기	15	10
90191090	기타	4	5
9019200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 또는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15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8	10
90211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15
90212100	의치	4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212900	기타	4	5
90213100	인조관절	4	0
90213900	기타	4	10
90214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0
90215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0
90219011	혈관내 스텐츠(stents)	4	0
90219019	기타	4	10
90219090	기타	4	5
902212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	15
902213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	5
90221400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	5
90221910	저량 엑스선 보장 검사장비	4	15
90221920	엑스선 비파괴 시험장비	4	E
90221990	기타	4	E
9022210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4	0
90222910	감마선 비파괴 시험장비	6	5
90222990	기타	6	5
90223000	엑스선관	2	10
90229010	엑스선 증강기	6	15
90229090	기타	6	15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	5
90241010	전기식 만능 시험기	7	10
90241020	경도계	7	10
90241090	기타	7	PR-35
90248000	그 밖의 기기	5	15
90249000	부분품과 부속품	6	E
90251100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	0
90251910	공업용	8.4	5
90251990	기타	8.4	5
90258000	그 밖의 기기	11	20
9025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26100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0	0
90262010	증압기(增壓機) 및 차압변환기(差壓變換機)	0	0
90262090	기타	0	0
90268000	그 밖의 기기	0	0
9026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71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7	15
9027201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기기	0	0
90272012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기기	0	0
90272019	기타	0	0
90272020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00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27500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278011	집적회로 헬륨스펙트라 누설검출기	0	0
90278012	질량분석기에 이용되는 결합장치나 기기	0	0
90278019	기타	0	0
90278091	노출계	14	10
90278099	기타	0	0
90279000	마이크로톰(microtome),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81010	석탄 가스 미터	10	10
90281090	기타	10	10
90282010	수량계	10	10
90282090	기타	10	E
90283011	단상유도전동기	10	10
90283012	삼상유도전동기	10	10
90283013	단상유도정전기	10	10
90283014	삼상유도정전기	10	10
90283019	기타	10	20
90283090	기타	10	10
90289010	공업용	8.4	10
90289090	기타	8.4	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291010	적산(積算)회전계	15	10
90291020	택시미터 및 주행거리계	15	E
90291090	기타	15	E
90292010	자동차용 속도계	10	20
90292090	기타	10	10
90299000	부분품과 부속품	6	E
90301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5	E
90302010	시험주파수가 300 메가헤르츠 미만인 범용성의 것	8	10
90302090	기타	5	10
90303110	디지털(측정범위가 5.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90303190	기타	5	15
903032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10
90303310	디지털 전류계나 전압계(측정범위가 5.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10
90303320	저항 측정 기기	14	E
90303390	기타	9	E
903039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E
90304010	디지털 주파수계(시험주파수가 12.4 기가헤르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304090	기타	0	0
903082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0	0
90308410	유도용량이나 정전(靜電) 용량 측정용	10	E
90308490	기타	8	15
90308910	유도용량이나 정전(靜電) 용량 측정용	14	E
90308990	기타	8	E
90309000	부분품과 부속품	7	10
90311000	균형시험기	7	5
90312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7	15
903141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0
90314910	윤곽투영기	10	15
90314920	회절(回折) 격자 측정 기기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314990	기타	0	0
90318010	광통신과 광섬유 성능시험기기	5	15
90318020	좌표 측정 장치	5	15
90318031	초음파 검사 기기	5	PR-35
90318032	자분 탐상 시험(磁粉探査試驗)용 검사기기	5	PR-35
90318033	와전류탐상시험(渦電流探傷試驗)용 검사기기	5	PR-35
90318039	기타	5	E
90318090	기타	5	10
903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2100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7	5
90322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7	10
90328100	액압식이나 공기식	7	PR-35
90328911	자동 열차 제동용 차상장치(ATP)	7	15
90328912	자동 열차 운전용 차상장치(ATO)	7	15
90328919	기타	7	15
90328990	기타	7	15
90329000	부분품과 부속품	5	15
9033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나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5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1	10
9101191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6	10
91011990	기타	15	10
91012100	자동권(自動捲)식	11	10
91012900	기타	15	10
91019100	전기구동식	15	10
91019900	기타	20	15
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2.5	10
9102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23	20
91021900	기타	15	10
91022100	자동권(自動捲)식	11	10
91022900	기타	15	10
91029100	전기구동식	15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1029900	기타	20	15
91031000	전기구동식	23	20
91039000	기타	20	15
910400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10	10
91051100	전기구동식	23	20
91051900	기타	20	15
91052100	전기구동식	23	20
91052900	기타	20	15
91059110	천문학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	3	0
91059190	기타	23	20
91059900	기타	16	10
91061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16	10
91069000	기타	16	1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2	10
9108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16	10
9108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6	10
91081900	기타	16	10
91082000	자동권(自動捲)식	16	10
91089010	지름이 33.8 밀리미터이하인 것	16	10
91089090	기타	16	10
91091000	전기구동식	16	10
91099000	기타	16	10
9110110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한 것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16	10
91101200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911019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16	10
9110901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한 것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10
91109090	기타	16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111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14	10
9111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4	10
91118000	그 밖의 케이스	14	10
91119000	부분품	14	10
91122000	케이스	14	10
91129000	부분품	12	10
9113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20	15
9113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4	10
91139000	기타	14	10
91141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14	10
91143000	문자판	14	10
91144000	지판 및 브리지(bridge)	14	10
91149010	보석 베어링	14	10
91149090	기타	14	10
92011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17.5	10
92012000	그랜드 피아노	17.5	10
92019000	기타	17.5	10
92021000	활을 사용하는 것	17.5	5
92029000	기타	17.5	10
92051000	금관악기	17.5	5
92059010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 건반악기	20	15
92059020	아코디언 및 이와 유사한 악기	21	15
92059030	마우스 오르간	21	15
92059090	기타	17.5	5
920600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17.5	10
9207100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30	E
92079000	기타	30	E
92081000	뮤지컬박스	22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2089000	기타	22	20
92093000	악기용 현	17.5	10
920991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17.5	10
920992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7.5	10
920994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7.5	15
92099910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및 조율관(調律管)	17.5	10
92099920	뮤지컬박스용 메커니즘	17.5	10
92099990	기타	17.5	10
93011010	자주식(自走式)	13	10
93011090	기타	13	10
93012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13	10
93019000	기타	13	10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	10
93031000	총구장전 화기	13	10
9303200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이나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13	10
9303300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이나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13	10
93039000	기타	13	10
930400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pistol)・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	10
9305100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13	10
93052000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10
93059100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13	10
93059900	기타	13	10
93062100	탄약	13	10
93062900	기타	13	10
9306308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 탄약 및 이들의 부분품	13	10
9306309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13	1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3069000	기타	13	10
9307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13	10
94011000	항공기용 의자	0	0
94012010	외부표면이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것	10	20
94012090	기타	10	15
9401300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4014010	외부표면이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것	0	0
94014090	기타	0	0
940151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00	기타	0	0
94016110	외부표면이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것	0	0
94016190	기타	0	0
94016900	기타	0	0
94017110	외부표면이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것	0	0
94017190	기타	0	0
94017900	기타	0	0
94018010	돌로 만든 것	0	0
94018090	기타	0	0
94019011	의자각도조절장치	10	E
94019019	기타	0	0
94019090	기타	0	0
94021010	이발소 의자와 그 부분품	0	0
94021090	기타	0	0
94029000	기타	0	0
94031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940320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0	0
94033000	사무실용 목제가구	0	0
94034000	주방용 목제가구	0	0
94035010	자단으로 만든 것	0	0
94035091	칠기로 만든 것	0	0
94035099	기타	0	0
94036010	자단으로 만든 것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4036091	칠기로 만든 것	0	0
94036099	기타	0	0
94037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0	0
940381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910	버드나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만든 것	0	0
94038920	돌로 만든 것	0	0
94038990	기타	0	0
94039000	부분품	0	0
94041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20	15
940421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0	15
94042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20	15
94043010	깃털이나 새의 솜털로 채워진 것	20	15
94043090	기타	20	15
94049010	깃털이나 새의 솜털로 채워진 것	20	15
94049020	동물의 털로 채워진 것	20	15
94049030	실크 워딩(wadding)으로 채워진 것	20	15
94049040	인조 섬유로 채워진 것	20	15
94049090	기타	20	15
94051000	샹들리에(chandelier) 및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0	10
94052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20	20
94053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16	10
94054010	서치라이트(searchlight)	17.5	10
94054020	스포트라이트(spotlight)	17.5	10
94054090	기타	10	5
94055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20	20
9405600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	15
94059100	유리로 만든 것	20	20
940592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4059900	기타	20	15
94060000	조립식 건축물	10	10
95030010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바퀴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 인형용 차	0	0
95030021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0	0
95030029	기타	0	0
95030031	전기기차	0	0
95030039	기타	0	0
9503004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50	완구용 악기류	0	0
95030060	퍼즐	0	0
95030081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것	0	0
95030082	그 밖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5030089	기타	0	0
9503009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4200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0	0
95043010	비디오게임	0	0
95043090	기타	0	0
95044000	오락용 카드	0	0
95045010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하는 것	0	0
95045090	기타	0	0
95049010	그 밖의 비디오 게임	0	0
95049021	자동 볼링핀 공급기	0	0
95049022	볼링공	0	0
95049023	볼링핀	0	0
95049029	기타	0	0
95049030	체스와 그 밖의 보드게임(차이니스 체스, 국제체스, 차이니스 체커와 체커 게임을 포함한다)	0	0
95049040	마작과 이와 유사한 테이블 게임	0	0
95049090	기타	0	0
95051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5059000	기타	0	0
95061100	스키	14	10
950612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14	10
95061900	기타	14	10
95062100	세일보드(sailboard)	12	10
95062900	기타	14	10
950631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14	10
95063200	골프공	12	10
95063900	기타	14	10
95064010	탁구공	12	10
95064090	기타	14	10
950651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14	10
95065900	기타	14	10
950661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12	10
95066210	농구공·축구공 또는 배구공	12	10
95066290	기타	12	10
95066900	기타	12	10
95067010	아이스 스케이트	14	10
95067020	롤러 스케이트	14	10
95069111	트레드밀(Treadmill)	12	10
95069119	기타	12	10
95069120	스케이트보드	12	10
95069190	기타	12	10
95069900	기타	12	10
95071000	낚싯대	21	E
95072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1	20
95073000	낚시 릴	21	20
95079000	기타	21	20
95081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15	10
95089000	기타	15	10
96011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20	15
96019000	기타	20	15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6020010	약용 캡슐	10.5	10
96020090	기타	25	20
96031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5	20
960321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5	20
96032900	기타	15	10
96033010	회화용 붓	25	20
96033020	필기용 붓	20	15
96033090	기타	25	20
96034011	돼지털 또는 멧돼지털의 것	20	15
96034019	기타	23	20
96034020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23	20
96035011	기계나 기구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	14	10
96035019	기타	14	10
96035091	기계나 기구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	14	10
96035099	기타	14	10
96039010	긴 먼지떨이	21	15
96039090	기타	15	10
96040000	수동식 체 및 어레미	21	20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15	10
96061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및 이들의 부분품	21	20
960621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1	20
960622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15	10
96062900	기타	15	10
96063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15	10
960711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21	20
96071900	기타	21	20
96072000	부분품	21	20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6081000	볼펜	15	10
96082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21	20
96083010	먹물 드로잉 펜	21	15
96083020	만년필	21	20
96083090	기타	21	20
9608400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또는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21	20
96085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21	20
96086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20
96089100	펜촉 및 닙포인트(nib point)	12	10
96089910	기계나 기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7.5	10
96089920	복사용 철필(鐵筆),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21	20
96089990	기타	21	20
96091010	연필	21	20
96091020	크레용	21	20
96092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20
96099000	기타	15	10
961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5	10
961100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21	20
96121000	리본	10.5	15
96122000	잉크 패드	25	20
96131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20
96132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20
96138000	그 밖의 라이터	25	20
96139000	부분품	25	20
96140010	파이프 및 파이프 볼(pipe bowl)	25	E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6140090	기타	25	E
96151100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8	10
96151900	기타	18	10
96159000	기타	18	10
96161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18	10
96162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18	10
96170011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	24	20
96170019	기타	24	20
96170090	기타	18	10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21	20
96190010	기저귀 및 냅킨	7.5	E
96190020	위생타올[패드(pad)] 및 탐폰	10	10
96190090	기타	14	10
97011010	오리지널	12	10
97011020	복제	14	10
97019000	기타	14	10
9702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12	10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12	10
97040010	우표	8	5
97040090	기타	14	10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 2012 년 HS 코드 90138030 하에 분류된 LCD 모듈의 관세는이행 1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 기준세율(5%)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9 년차 1 월 1 일을 시작으로 2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 연체동물 · 갑각류 ·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 치어 ·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란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체가능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순히 시각적인 검사만으로는 구별하기 불가능한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인정된 회계기준 또는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그러한 기준은 세부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 해석 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의 대상이 되는 원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 및/또는 상품을 말한다.

중립재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나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하며,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포함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소매를 위하여 사용된 용기 또는 포장재료 외에 그 운송 중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영농, 덫사냥, 수렵, 포획, 채집, 수집, 번식, 추출, 제조 또는 조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1](이하 "역외가공지역"이라 한다)에서, 부속서 3-나에 열거되고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2.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이 조의 제1항의 이행점검

[1] 이 항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상품이 가공되는 지역이 이 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한반도에 위치하고 한반도에서 운영되는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나. 공동위원회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필요시 공동위원회에 권고사항 제공

다. 기존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와 추가 역외가공지역[2] 검토 및 지정,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논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관련 조들은 이 조의 제1항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위의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다.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위의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자.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그리고

[2] 이 호의 목적상, 역외가공지역은 한반도에 있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과 기존의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에 대한 관련 규칙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한다.

차. 당사국에서 위의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목적상,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재료가치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수입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에서 획득된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 그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이다.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그리고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이 그 당사국에서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데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른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의 비원산지 요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1.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는 다음의 공정 또는 가공은 그 자체만으로 또는 조합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라. 세척 · 세탁, 먼지 · 녹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마.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러. 동물의 도살, 또는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양 당사국은 그 밖의 공정을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3.8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가.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3.9조
대체가능재료

1.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한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모든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그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3.10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중립재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1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12조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수입 시에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을 조건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일 것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4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에서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그리고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대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1.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가.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한다.

   나. 이 장의 목적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한다.

   다. 서명 및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합치한다.

   라.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마. 인쇄본이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원산지 증명서로 양해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4.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함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진정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진정등본은 “~일에 발급된 ~번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제3.16조
권한 있는 기관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권한 있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연락처를 통보하고, 권한 있는 각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장 견본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2. 위에서 제공된 정보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신속하게 통보되며 그러한 변경은 통보일부터 7근무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적시된 더 늦은 날 발효된다.

제3.17조
특혜관세대우의 청구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청구하는 수입자는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수입세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한다. 그리고

   다. 각각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본 원산지 증명서 및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3]

2. 수입자가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상품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신청에 대한 사전조건으로서 수입 시 관세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

[3] 원산지 증명서상의 모든 정보가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각주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제3.20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가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발급된 날부터 3년간 원산지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문서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수입자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4.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3.21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3조를 저해함이 없이, 판독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 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관세당국의 요청일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제3.22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3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차례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요청, 또는

라.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

2.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1) 그러한 검증을 요청하는 이유

2)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또는 서류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검증결과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의 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3.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동의 하에,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동행 하에 수행할 수 있다.

가. 방문검증을 수행하기 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방문검증일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그러한 방문검증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의 서면요청을 전달한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방문검증 요청에 동의하나, 제안된 방문검증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방문검증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를 통보받는다. 그러한 연기는 제안된 방문검증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러한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세관직원의 동행 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라. 방문검증을 개시하기 전에, 검증과 관련된 사안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상호 논의된다. 방문검증 과정에서,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모든 요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과 방문검증 결과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 및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에 관한 의견 또는 서류를 서면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3항바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의견 또는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관한 최종판정을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 실제 방문에서부터 제3항사호에 따른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수행된다.

자. 방문검증의 상세사항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공동으로 미리 결정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혐의가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자가 제1항가호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검증결과를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된 검증결과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마.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3항가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3.24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취급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관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원산지 증명서가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라. 제3.23조제5항에 따른 경우

제3.26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제3.14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이 협정의 이행 전에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28조
원산지규정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서 정의된 관세위원회에 보고하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1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의 접수를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그 요청에 회신한다. 이러한 목적상, 각 관세당국에 의하여 접촉선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때에 회합한다.

4.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에 기초하여 부속서 3-가를 갱신하는 것

   나. 이 장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다.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등과 같이 이 장 및 부속서 3-가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4년 후에 제3.4조와 제3.5조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는 것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가 설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문안에 규정된 품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후자에 명시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2. 특정 소호(6단위)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특정 기준은 그 소호 바로 옆에 기재된다.

3.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선택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결합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8. 이 부속서 5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5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2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상품 목록

1. 각 당사국은 제3.3조를 이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적용한다. 동 상품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로 된 3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상품 목록을 매년 개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230690, 321310, 321390, 340700, 350610, 391740, 391990, 392010, 392190, 392310, 392329, 392350, 392390, 392610, 392640, 392690, 401699, 420212, 420219, 420222, 420229, 420232, 420291, 420292, 420299, 420310, 420321, 420329, 430230, 430310, 441239, 482390*, 490300, 490900, 500400, 520839, 521039, 540110, 550932, 550961, 550969, 551519, 560311, 560410, 560741, 560750, 560811, 580421, 581092, 610130, 610230, 610310, 610331, 610342, 610343, 610433, 610442, 610452, 610453,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610, 610620, 610711, 610712, 610722, 610791, 610811, 610819, 610821, 610822, 610831, 610832, 610891, 610892, 610910, 610990, 611011, 611020, 611030, 611120, 611130, 611211, 611212, 611521, 611594, 611595, 611596, 611599, 611710, 611790, 620111, 620112, 620113, 620191, 620192, 620193,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311, 620312, 62031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12, 620413, 62041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91, 620799, 620811, 620822,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1040, 621111, 621112, 621132, 621133, 621139, 621142, 621143, 621210, 621220, 621290, 621320, 621430, 621440, 621600, 621790, 630130, 630140, 630231, 630391, 630492, 630493, 630532, 630533, 630539, 630612, 630710, 630790, 640291, 640299, 640340, 640359, 640391, 640399, 640419, 640610, 640620, 640690, 650500, 680530, 681280, 691200, 691490, 701400, 701590, 701919, 711311, 720720, 730890, 732290, 732393, 732599, 732690, 761699, 821300, 821520, 830140, 830890, 831000, 840390, 841231, 841330, 841391, 841480, 841490, 841510, 841590, 841899, 842091, 842121, 842123, 842131, 842139*, 842199, 842240, 843120, 843141, 844319, 844399*, 846694, 847330, 847989, 848079, 848490, 850110, 850300*, 850410, 850431, 850440, 850490, 850511, 850519, 850790, 851290, 851610*, 851631, 851632, 851660, 851690, 851770, 852910, 852990*, 853190 853340, 853400, 853590, 853620, 853669, 853690, 853890, 853931*, 853939*, 854140, 854232, 854370, 854390, 854430, 854442, 854470, 854720, 854890, 870829*, 870894*, 870899, 871410, 871680, 880400, 900190, 900211*, 900219, 900290, 901720, 902121, 903190, 910211, 911120, 911320, 940190*, 940330, 940490, 940510, 940540, 940560, 940592, 940599, 950300, 950510, 950669, 960810, 960820, 960910, 960990, 961511, 961900*

* 별표가 표시된 6단위 수준의 세번의 경우,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철폐의 대상이 되는 8단위 세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중국 관세양허표의 단계별 양허유형 “0, 5, 10, 15,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세번을 말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

<table>
<tr><td colspan="3">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td><td colspan="4" rowspan="3">증명서 번호: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국 _____
(뒤쪽 설명을 참조합니다)</td></tr>
<tr><td colspan="3">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td></tr>
<tr><td colspan="3">3.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국가:</td></tr>
<tr><td colspan="3">4. 운송 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td><td colspan="4">5. 비고:</td></tr>
<tr><td>6. 물품의 연번 (최대 20)</td><td>7. 포장의 표장 및 번호</td><td>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td><td>9. HS 번호(6단위)</td><td>10. 원산지 기준</td><td>11. 총중량, 수량(수량단위) 또는 그 밖의 단위(리터, m^3 등)</td><td>12. 송장 번호 및 일자</td></tr>
<tr><td colspan="3">13.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_____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td><td colspan="4">14. 증명:

수행한 검사에 기초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및 관인)</td></tr>
</table>

뒤쪽 설명

증명서 번호 :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이 란에 기재된다. 증명서의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번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6란 :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7란 : 포장에 운송표장 및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운송표장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 "이미지 또는 기호(I/S)"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표장이나 숫자 없음(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제9란 :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그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명시된다.

제13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4란: 이 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주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은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되거나 기재될 수 있다.

제 2 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말	
		0101.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축우(畜牛)	
		0102.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버팔로	
		0102.3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와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와 에뮤(emus) [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1.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2.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2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4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50	산양의 고기	완전생산기준
	02.05	0205.00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혀	완전생산기준
		0206.22	간	완전생산기준
		0206.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3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간	완전생산기준
		02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8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3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6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7.4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거위의 것	
		0207.5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60	기니아새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 한다)**	
		0208.10	토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30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40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8.6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 [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돼지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1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20	쇠고기	완전생산기준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2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관상용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1.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시리누스(Cirrhinus)종과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 [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1.95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와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와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 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와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 (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 (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Sp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완전생산기준
		0303.12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와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26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와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4.3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4.4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44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52	연어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53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6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6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4.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7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4.8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Katsuwonus) pelamis)]	완전생산기준
		0304.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1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5.39	기타	완전생산기준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5.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5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와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69	기타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위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꼬리와 위	완전생산기준
		0305.7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 (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1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냉동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2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2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굴	
		0307.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0307.31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0307.41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 [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와 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0307.81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 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대(Holothurioidea)과]	
		0308.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10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4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2.9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40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 또는 과실·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요구르트	완전생산기준
		04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완전생산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완전생산기준
		04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완전생산기준
		0406.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의 노른자위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	0409.00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04.10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05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4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이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이나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과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기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06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Lilium)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2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상추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치커리(chicory)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5.21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 [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 (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기타	
		0709.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 스쿼시 및 박류 [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감자	완전생산기준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양파	완전생산기준
			버섯, 목이버섯 [오리쿨라리아 (Auricularia)종], 젤리균류 [트레멜라(Tremella)종]와 송로(松露)	
		0712.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콩[비그나(Vigna)종과 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와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와 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라질너트	
		0801.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아몬드	
		0802.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2.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호두	
		0802.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와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망고(mango)와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와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와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체리	
		0809.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9.3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와 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 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와 향신료**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완전생산기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0903.00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후추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09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7		**정향(丁香)(과실·꽃과 꽃대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7.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와 소두구(小荳蔻)**	
			육두구(肉荳蔻)	
		0908.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메이스(mace)	
		0908.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소두구(小荳蔻)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이나 캐러웨이(caraway)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커민(cumin)의 씨	
		0909.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나 회향(茴香)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생강	
		0910.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듀럼종 밀(Durum wheat)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밀리트(millet)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Fonio) [디지타리아(Digitaria)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quinoa) [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3.20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 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빻은 것 (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이나 잘게 부순 것**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빻은 것)	
		1104.2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이나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	
		1105.10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	완전생산기준
		1105.20	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 (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6.20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 (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완전생산기준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볶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7.20	볶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전분	
		1108.11	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3	감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4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9	그 밖의 전분	완전생산기준
		1108.20	이눌린(inulin)	완전생산기준
	11.09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12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목화씨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		**파종용 종자·과실과 포자(胞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9.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 (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2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			**제 13 류 락(lac),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완전생산기준
		13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아편	완전생산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302.13	홉(hop)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완전생산기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한천	완전생산기준
		1302.32		완전생산기준
		1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14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이나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다른 곳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완전생산기준
		1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식물성 납(蠟)				
15			**제 15 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lard)	완전생산기준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완전생산기준
		15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2		**소·면양이나 산양의 지방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탤로우(tallow)	완전생산기준
		1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3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oil)·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올레오유(oleo-oil)와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간유(肝油)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05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5.06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완전생산기준
		15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0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나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해바라기씨유나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5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3		**야자[코프라(copra)]유·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나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이나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4.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514.9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6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이나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6.2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7		**마가린,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51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8	1518.00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완전생산기준
	15.20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와 글리세롤 폐액(廢液)	완전생산기준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및 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식물성 납(蠟)	완전생산기준
		152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22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완전생산기준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16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1	1601.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 (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칠면조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돼지로 만든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50	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1603.00	**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청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다랑어・가다랑어와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고등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멸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7	뱀장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32	캐비아 대용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게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30	바닷가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40	그 밖의 갑각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연체동물	
		1605.51	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3	홍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5	문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6	클램(clam)·새조개와 피조개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7	전복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2	성게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3	해파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7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사탕무당	완전생산기준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완전생산기준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완전생산기준
			기타	
		1701.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17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완전생산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완전생산기준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완전생산기준
		17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8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껍질 그리고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8.05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이나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이나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9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4 류는 제외한다)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쿠스쿠스(cousco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불거 밀(bulgur whe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5.2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2005.91	죽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7.91	감귤류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땅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파인애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8.40	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살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체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palm hear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3	크랜베리(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바치나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7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9.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50	토마토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9.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1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그리고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1.2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그리고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4.1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			**제 22 류 음료·주류와 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3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6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9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이나 설육(屑肉)·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1.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1.20	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밀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4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7	2307.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와 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와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 (essence)**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완전생산기준
		24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완전생산기준
		2403.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25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25.02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과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 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과 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 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30	내화(耐火)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5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과 규선석(硅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8.70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9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2	2512.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 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화강암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 (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 (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과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7.1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2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과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2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519.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 [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20	플라스터(plas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1	2521.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		**생석회(生石灰)·소석회(消石灰)과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청(靑)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	2528.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형석(螢石)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30.10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와 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12	응결시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2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4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5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6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7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8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9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0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1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배소(焙燒)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4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이나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8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9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26.20		**슬래그(slag), 회(灰)와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완전생산기준
		262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완전생산기준
		262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완전생산기준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완전생산기준
		262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27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3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4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 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5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6	2706.00	석탄·갈탄이나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30	크실롤(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과 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스 상태인 것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 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 갈탄왁스·토탄왁스와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하소(煆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석유역청(瀝青)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4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이나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이나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	2715.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천연 역청(瀝青)·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나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과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플루오르와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	2802.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3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희가스(rare gas)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붕소와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20	클로로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7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8	2808.00	**질산과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0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그 밖의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11.22	이산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고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7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1		**산화철과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2	2822.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3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		**산화납,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80	산화안티모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氷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20	염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5	니켈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7.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 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황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황산염	
		2833.21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2	황산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4	황산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5	황산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7	황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30	명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질산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4.21	질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과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4	인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6.40	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50	탄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60	탄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836.91	탄산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20	시안착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무수물(無水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840.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284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840.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840.20	그 밖의 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 (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30	금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9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40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제 2844.20 호나 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나 유기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7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8	2848.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탄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20	탄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0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3	2853.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			제 29 류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과 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20	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30	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3	파라-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50	스티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60	에틸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70	큐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나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8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2	앨드린(ISO)・클로르덴(ISO)과 헵타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4	그 밖의 부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과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3	만니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D-글루시톨(소르비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글리세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2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과 디메틸시클로헥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2906.21	벤질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1	2911.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3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아세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0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4	무수(無水)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2	초산비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6	초산디노셉(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이나 트리클로로 아세트산·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6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7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5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6.16	비나파크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와 이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3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7.20	포화지환식이나 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이나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4	시트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18.91	2,4,5-티(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이나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이나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와 펜터민(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그리고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그리고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모노크로토포스(ISO)와 포스파미돈(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7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이나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8	2928.00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나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40	메티오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50	캡타폴(ISO)과 메타미도포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칠납과 테트라에칠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0	락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3	피페로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4	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3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9	그 밖의 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2933.91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 (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 (INN)・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 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 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 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 고리 화합물**	
		2934.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4.91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5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2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3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5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6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6.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폴리펩타이드 호르몬・프로테인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리고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리고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과 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39.91	코카인·에크코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40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제 2937 호·제 2938 호나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2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			**제 30 류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1.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 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 (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5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 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와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폐(廢)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			**제 31 류 비료**	
	31.01	3101.00	**동물성이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6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8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과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 (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20	질소·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			**제 32 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3	3203.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9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 유기생산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5	3205.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나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와 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요업·에나멜공업이나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2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0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래커(lacquer)와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1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와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 ・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오렌지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레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박하유[멘타피페리타(Mentha piperi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		**구강이나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 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 (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3401.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3	비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나 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이나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6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7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카세인(case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알의 흰자위(egg albumi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2.11	건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3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4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505.20	글루(glu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과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나 액화가스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와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 (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2.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		**사진 인화지·판지와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4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와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감광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	3803.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4	3804.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나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나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로진(rosin)과 수지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20	로진염·수지산염·로진(rosin)이나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7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 수지산 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 ·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와 파리잡이 끈끈이) 으로 한정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와 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이나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 ·제지산업·가죽산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이나 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나 바니시(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와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 2707 호나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8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9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2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스테아린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올레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이나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메탄·에탄이나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78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옥시란(산화에틸렌)·폴리브롬화 비페닐(PBBs)·폴리염소화 비페닐(PCBs)·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완전생산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완전생산기준
		3825.30	감염성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폐유기용제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5.49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5.50	금속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과 부동액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3825.69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 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905.91	공중합체(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와 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30	그 밖의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석유수지·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와 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와 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경질(硬質)의 관·파이프와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관·파이프와 호스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와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나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셀룰러	
		3921.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과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이나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3.4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2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 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3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완전생산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완전생산기준
		40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4001.3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와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와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3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4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완전생산기준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2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05.9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과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와 링)**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7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와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와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6	엔드리스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11.61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2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3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11.92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3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4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이나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타이어 트레드(tread)와 타이어 플랩(flap)**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버스용이나 화물자동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3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이나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장갑, 벙어리장갑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16.91	바닥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 (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7	4017.00	**경질(硬質)고무[예: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털을 제거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돼지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3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산양의 원피	
		4106.2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돼지의 원피	
		4106.3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4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6.9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전신 가죽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2	4112.00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13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 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돼지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파충류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		**샤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 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샤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완전생산기준
42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202.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장갑류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5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6	4206.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			**제 43 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나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6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9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 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2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4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10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침엽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2	활엽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31	목재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5	4405.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		**궤도용 받침목**	
		4406.1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7.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7.22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와 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7	사펠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과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목재로 한정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나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활엽수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9.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 (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목재로 만든 것	
		4410.11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 (OSB: oriented strand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와 배튼보드(batte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4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2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 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6	4416.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7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20	문·문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60	기둥과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9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이나 칼붙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나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2	4502.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블록·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 (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 (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 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 (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 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2	등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601.92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3	등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02.1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7.01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2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5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2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3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4707.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완전생산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48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48.01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 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와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2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이나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40	벽지용 원지(原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3	4803.00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올록볼록한 (embossed) 것 ・구멍을 뚫은 (perforated) 것・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이나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4.4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4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7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 (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4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 (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나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4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와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나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이나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2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올록볼록한 (embossed)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손수건·클렌징티슈이나 안면용 화장지·타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 커버**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인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용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과 다이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와 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901.91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잡지와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	4903.00	**아동용 그림책이나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6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와 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이나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9	4909.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4911.91	서화・디자인과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제 50 류 견**	
	50.01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	5002.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50.04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5006.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004 호 또는 제 50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견 노일(noil)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007.90	기타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 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완전생산기준
		51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완전생산기준
		5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완전생산기준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완전생산기준
		51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5102.20	동물의 거친 털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완전생산기준
		5103.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51.04	5104.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 제 5107 호 또는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 제 5107 호 또는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0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나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나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3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			**제 52 류 면**	
	52.01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 [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기타	
		5202.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완전생산기준
		520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52.03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5 호 또는 제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5 호 또는 제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 (綾織物) [파사문직(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		**그 밖의 면직물**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 (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 (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 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 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	5305.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나 무사 텍스틸리스 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과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 (paper yarn)**	
		5308.10	코이어(coir)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1.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3.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5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 (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非)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1.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2	5502.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aramid)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실의 웨이스트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완전생산기준
		5505.2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완전생산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 (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7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5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 (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2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3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90	그 밖의 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 (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 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부터,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워딩(wadding),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30	섬유의 플록(flock)·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2.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2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5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이나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6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이나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이나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 으로 만든 어망과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9	5609.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1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2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5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 (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7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7	경(經)파일(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 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	표백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2.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3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계로 만든 레이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5	5805.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 (petit point)·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 직물(볼덕)**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과 셔닐(chenil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806.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6.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9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수천	
		5810.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1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1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나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5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6.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7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8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나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9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0	591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이나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001.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1.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것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 (shorts)	
		61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1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61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5.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7.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 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트랙슈트	
		6112.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3	6113.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5.95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6.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7.10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 (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1.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2.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3.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4.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4.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드레스	
		62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6.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3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와 수영복, 그 밖의 의류**	
			수영복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3		**손수건**	
		621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6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 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 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2.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과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3.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 및 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 또는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방수포(tarpaulin)·천막 및 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	6308.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나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선별한 것	완전생산기준
		63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힐쿠션(heel cushi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2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4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506.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7	6507.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과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2	6602.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603.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			**제 67 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 꽃·잎과 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68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6801.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 및 가루**	
		6802.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 및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802.9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 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4.1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이나 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이나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나 제 6812 호 또는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 [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	6808.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나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812.91	의류·의류 부속품·신발과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2	종이·표지용 판지와 펠트(fel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과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 또는 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6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7.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2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1.00	**깨진 유리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완전생산기준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관(管)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2.31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4.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8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이나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3.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4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 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이나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및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이나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과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직물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 (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양식진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공업용	
		7102.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 (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10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0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반가공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화폐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9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티늄(platinum)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팔라듐(palladium)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로듐(rhodium)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 및 루테늄(ruthenium)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완전생산기준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71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		**합금철(ferro-alloy)**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완전생산기준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완전생산기준
		7204.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7204.49	기타	완전생산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완전생산기준
	72.05		**알갱이와 가루 [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루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 (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 (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쾌삭강(快削鋼)의 것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6.10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1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6.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철강으로 만든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 ·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3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과 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심(open seam) 또는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3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 또는 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9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 및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체인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7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 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 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25.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7401.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4.05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구리의 선**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0.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0.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2.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 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8.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419.91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 및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3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4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선(線)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관(管)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9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 (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3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2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804.11	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6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塊)**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2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 및 플레이크(flake)**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4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5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7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0.02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0.03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1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01.94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02.94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2.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마그네슘의 괴(塊)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비스무트와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망간과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 및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베릴륨	
		8112.12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크로뮴	
		8112.2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탈륨	
		8112.5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비금속(卑金屬)의 괴와 가루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서멧과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2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곡괭이・픽스(picks)・괭이 및 쇠스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1.4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 [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3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5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4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9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0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4	칼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3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열쇠식・다이얼식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카스터(casto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3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 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4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 (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 및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0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 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그리고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2.2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액체엘리베이터**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4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팬	
		8414.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415.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3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7.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 (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정형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18.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장치 [전기가열식인지에 상관없고 (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60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2.30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나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 저울 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9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24.81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윈치(winch), 캡스턴(capsta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 (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 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계	
		8426.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 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moving walkway)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그 밖의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앵글도저(angledozer)· 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 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 (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excavator)· 셔블로더(shovel loader)·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불도저(bulldozer)와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무한 궤도식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9.30	스크래퍼(scrap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excavator)와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 지균(地均)용・스크레핑(scraping)용 ・굴착용・탬핑(tamping)용・ 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자주식(自走式)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0.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자주식(自走式)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 (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30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4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수확기,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6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20	낙농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36.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나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20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30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40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40	위의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5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 (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 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4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 또는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및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 기계**	
			원형 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20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 (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 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과 스핀들 플라이어・ 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도비(dobby)기 및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 또는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3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42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9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및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2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기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40	세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5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재봉기	
		8452.21	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나 가공기계 또는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또는 수선용 기계 (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나 가공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압연기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22	냉간(冷間)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30	압연기용 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보링(boring)· 밀링(milling)·나선가공 또는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 [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4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 (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 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그 밖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 (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 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 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1.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 교정용· 펼침용·전단용·펀칭용 또는 낫칭 (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 (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10	단조기(鍛造機) 또는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 (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기타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3.10	드로우벤치(draw－bench) [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나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나 광택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스테이플용・접착용 또는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5.91	톱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5.92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 또는 몰딩머신(moulding machine) (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 또는 광택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 (tool holder)**	
		8466.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 (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9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 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 천공기 또는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나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 또는 실링기 그리고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계	
		8476.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4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9.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60	증발식 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40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8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82.91	볼·니들 및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전기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또는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교류 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 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입식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5.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40	니켈-철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80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8		**진공청소기**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 및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4.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 (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땜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와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 보일링링・그릴러 및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 (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기기	
		8519.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도체 매체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 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7.9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모니터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프로젝터(projector)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 또는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 또는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 (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권선(捲線)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4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계전기(繼電器)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6.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예: 진공관 또는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0.11	천연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12	단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 (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마이크로웨이브관 [예: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관	
		8540.81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 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과 트라이액(triac) (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 ·클록(clock)과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3.3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 (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극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6.10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완전생산기준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8601.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炭水車)**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4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5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 및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7.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30	혹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8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를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기계 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및 이들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 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1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		**그 밖의 항공기(예: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헬리콥터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rotor)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4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tank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품				
90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대물렌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필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 (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촬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20	영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 (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1		**복합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그 밖의 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그 밖의 기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 [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태코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수준기(水準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6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9.2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0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와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30	엑스선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3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6.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20	압력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8.20	액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잡음전압계(psophome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9030.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20	테스트벤치(Test ben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3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 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4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5		**그 밖의 클록(clock)**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벽시계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기기[예: 타임 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 (time-recorder)]**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6.1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7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구동식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9.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 (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1.80	그 밖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 및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 (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6	9206.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 및 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및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 및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과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경찰봉) (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 (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과 그 밖의 총포탄 및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부 잡품				
94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1.10	항공기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20	차량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그 밖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 및 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매트리스	
		9404.21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5		**램프 및 조명기구 [서치라이트(searchlight) 및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9405.91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및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 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 (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 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골프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506.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 (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7.10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2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30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2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 [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와 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으며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4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4	9604.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5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단추	
		9606.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0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1	9611.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 (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20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 (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그 밖의 라이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4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7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8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9	9619.00	**위생 타월(패드) 및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및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2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3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4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7.05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6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행정 및 집행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 그리고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세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를 말한다.

통관 절차란 각 관세당국이 관세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그리고

운송수단이란 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제4.2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의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나. 양 당사국 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다.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 증진

제4.3조
원활화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무역을 원활화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할 것을 보장한다.

2. 가능한 경우 그리고 각국의 관세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교토협약으로 알려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문서들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체약당사자인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관련 합의문서와 합치한다.

3. 관세당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업자들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위하여 요구

되는 모든 규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식의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4조
일관성

양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관세에 관한 법과 규정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지역 세관 간에 법과 규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관성 문제를 억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 규정,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각 관세당국은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모든 행정절차를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2. 각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고,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인 웹사이트 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관세당국은 자신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모든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각 관세당국은 다른 쪽 관세당국에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이동 및 운송수단을 규율하는 관세 법 또는 절차에 관한 중요한 수정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통지한다.

제4.6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7조
품목분류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제4.8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상품의 적법한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

2. 자국 국내법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관세당국은 다음에 관하여 상호 지원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사안

제4.9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자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그 밖의 모든 인에게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자국의 관세당국의 결정에 관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그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제4.10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당사국[1]의 영역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신청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사전심사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상세설명을 포함하여 신청자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 및 상황을 기반으로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사전심사서는 다음 사안에 대하여 발급될 수 있다.

가. 품목분류

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관세당국은, 신청자가 국내 법과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사전심사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효력이 발생한 사전심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

[1] 중국의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자는 중국 세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가. 사전심사 결정이 기반하는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점이 사실 또는 상황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 경우, 관세당국은 신청자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에 따른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당국에 의한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원래의 사전심사와 동일한 사실과 상황 하에서 관세당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이 경우, 개정 또는 철회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적용된다. 또는

다. 그 행정적 결정이 그 기반이 되는 법, 규정 및 규칙의 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그 사전심사는 그러한 개정이 공표된 날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중단된다.

다호에 언급된 사안의 경우, 관세당국은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당사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규칙의 기밀유지 요건에 따라 자국의 사전심사를 공표한다.

5.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4.11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적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2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관세당국은 세계관세기구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제4.13조
위험관리

1. 관세당국은 통관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통제 조치를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원활히 한다.

2. 양 당사국은 국제무역 상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피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제4.14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반출을 위한 자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특정 조건이나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가능한 한 도착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수입자가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조사, 물리적 검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모든 수입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수입자에게 상품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다. 자국 관세법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절차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그리고

   라.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을 보세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세관 감시구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4.15조
특송화물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이러한 절차는

   가.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나.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다. 자국 국내 법, 규정 및 규칙에서 달리 규제되지 아니하는 한,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4.16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국은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7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취급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4.18조
협의

1.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합리적인 근거 또는 사실이 제공되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달리 상호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0근무일 내에 그러한 요청의 접수를 확인한 경우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9조에서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장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제4.19조
관세위원회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효율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 및 원산지규정소위원회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위원회 아래 설립된다.

2.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장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

   나. 이 장의 해석과 이행 및 적절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검토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이 장과 관련된 분야의 확인, 그리고

라. 위원회에 보고

3.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 및 시간에 회합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재확인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양 당사국 간에 적용하고,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5.4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하

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나.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병해충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그리고 국내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협력 강화

다.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라.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1) 동물 및 식물 질병/병해충 조사

2) 동물 및 식물 질병/병해충 예방 및 관리

3)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방법, 그리고

4) 유해 물질과 농화학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의 조사 및 관리와 그 밖의 식품 안전 문제

제5.5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그리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 양자 간의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비준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소통한다.

마.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적절하다면, 다룰 목적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기술 협의회 설치를 고려한다. 기술 협의회는 요청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최된다.

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 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사안,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조율한다.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 그리고

아.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사안에 관련된 양자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5.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회의 장소 또한 상호 합의되며, 의장은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7. 특히 위원회 회의 등 이 장의 이행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중국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5.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며 양 당사국 간 양자 무역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제6.2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또는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장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4.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6.3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4조
표준

1.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표준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이 다른 쪽 당사국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표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써 사용한다.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에서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한다. 그러한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통신연합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6.5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납득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의 접근방식과 그 밖의 적절한 접근방식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하여 양 당사국 간에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 채택 및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처리기간과 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6.7조
투명성

1.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기술능력 개선 및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나.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것

다.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을 이용하는 것

라. 관련 국제표준, 권고 및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및 인정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마.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업무에서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바. 세계무역기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와 그 밖의 관련 국제 또는 지역 포럼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IECEE-CB scheme'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IECEE-CB' 시험 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

제6.9조
소비자 제품 안전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제 체계, 사고 분석, 유해 경보, 제품 금지, 제품 리콜 그리고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모범규제관행, 제품안전감시를 포함한 위험 관리 원칙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규제집행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6.10조
이행 약정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 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추가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11조
표시 및 라벨링

1.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따라,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이 제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가. 그 당사국은 그 제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나.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 그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급한다.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의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1)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2)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제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마. 그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6.12조
국경 조치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6.13조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및 장려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라. 제6.8조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의 제고

마.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아. 세계무역기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하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차. 이 장을 이행하는 데 양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카.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이 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 중국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규제 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 조율하고 그러한 기관 및 인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 우편,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제6.14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1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일자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전에 적용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후속 조사에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다는 판정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은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적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수출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하여져 왔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제7.6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7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양 당사국은 최종 판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고 답변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대체 가격 또는 대체 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 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 간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 양 당사국은 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양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1]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 내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할

[1]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 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 개시 전 양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7.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10조
실사

1.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현지 실사 전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사의 결과는 실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된다.

제7.11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7.12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신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7.13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7.14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반덤핑협정 제9.5조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덤핑 마진이 반덤핑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5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통상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8장
서비스 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파트너십, 합작투자, 1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1)목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바. 법인은,

1)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2)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

하여 **지배된다**. 또는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사.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또는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양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급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3)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당사국의 인의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주재

자.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다.

차.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중국에 대하여, 중국법에 따른 중국의 국민이며,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2)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한국의 국민

카.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타.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부속서 8-가의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 또는

2) 그 밖에,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

파.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그 안에서,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의 운영 또는 선박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사용을 통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너.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더.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1]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러.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머. **서비스 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1)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2)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4)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버. **운수권**이란 운항 지점, 취항 항로, 운송의 형태, 운송 능력, 부과 운임 및 그 조건, 그리고 개수, 소유권 및 통제 등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 또는 사용료를 위하여 운영 및/또는 승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기 위한 정기 및 비정기 서비스를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제8.2조
적용범위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 이 장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8.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나.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라.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예약시스템 서비스

마. 제9.14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2], 그리고

바.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 및 약속된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3]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8.3조 및 제8.4조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정부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구매되는 서비스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다.

[3]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3조
시장접근

1. 제8.1조에 정의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8-가[4]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5]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 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6]

---

[4] 당사국이 제8.1조머호1)목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머호3)목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5] 이 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8.5조
추가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2. 제8.3조 및 제8.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하여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하여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7]

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항은 이 장에 따라 부속서 8-가에만 적용 가능하다.

제8.7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당사국의 헌법 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그 결과를 이 협정에 통합하기 위하여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규율에 관한 협상의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들이 특히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제4항에 언급된 규율의 통합이 진행중인 때에는 그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2) 그러한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제5항가호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적 표준이 고려된다.[8]

6.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8.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한다.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국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8.14조에 언급된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도입 또는 기존의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대한 모든 변경에 관하여 즉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통보 요건에 따른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 내에 설치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한 어떠한 조치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는 경우 제8.14조에 언급된 서비스무역위원회에 그러한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8.9조
인정

[8]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의 관련 기구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권한 있는 관련 기관 간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부터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조치를 알리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그리고

다. 새로운 인정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조치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알리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6.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 무역과 직업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지불 및 송금

1. 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에 상정된 상황 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이하 "협정 조문"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교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 조문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1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을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때

나. 혜택 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때, 또는

다.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 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때

제8.12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의 의무 및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으며 또한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는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8.13조
보조금

1. 양 당사국은 GATS 제15조에 따라 합의된 모든 규율에 비추어 그러한 규율의 이 협정에의 통합을 위하여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규율의 문제를 검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자국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8.14조
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서비스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나. 서비스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그리고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8.15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2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써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제거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8.16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부속서 8-가-1

중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중화인민공화국-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1]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 자본 기업(또한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지칭되는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을 포함하며 다음 두 종류의 합작 투자 기업이 있음: 지분 합작 투자 기업 및 계약 합작 투자 기업.[2] 지분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등록된 자본의 25퍼센트 이상 이어야 함. 한국 기업의 지점 설립은 특정 하위분야에서 달리 적시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 기업의 지점에 관한 법 및 규정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약속 안함.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용되나,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CPC 861, 862, 863, 865 상의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함. 각 계약 약정 또는 주주 약정 또는 기존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나 운영에 대한 설립 면허 또는 승인 면허에 규	(3) 시청각, 항공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든 현행 보조금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허된 새로운 분야와 하위 분야에서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	

[1] 이 양허표의 목적상,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그 밖의 상업적 주재 형태의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외국인" 참여를 언급하는 제한 또는 약속은("완전 외국인 소유",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외국인 투자", "외국인 소유권", "외국인 소수 지분 소유"이거나 또는 중국 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외국인 참여이든 상관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참여를 포함하되 배타적이지 아니한, 그 출처와 소유주를 불문한 비중국 자본의 총 참여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된 외국인 참여의 형태는 종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중국의 WTO 약속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중국 법,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국-중국 FTA의 더 특혜적인 약속은 제외한다.

[2] 중국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계약의 조건은 그 합작 투자 당사자의 투자 또는 그 밖의 기여뿐만 아니라 그 합작투자 기업의 운영 및 관리의 방법과 같은 문제를 규율한다. 계약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에 의한 지분 참여는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 양허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외 지분 합작투자 기업에 관한 법률(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 계약 합작 투자 기업에 관한 법률(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 기업에 관한 법률(外资企业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말한다.

	정된 소유권, 운영 및 활동의 범위에 대한 조건은 중국의 WTO 가입일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아니할 것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허된 새로운 분야와 하위 분야는 앞의 문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임. 기업과 개인의 토지 사용은 다음의 최대 기간 제한의 적용 대상임. (a) 거주 목적은 70년 (b) 산업 목적은 50년 (c) 교육, 과학, 문화, 공중 보건 및 체육 목적은 50년 (d) 상업,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은 40년 (e) 포괄적 이용 또는 그 밖의 목적은 50년 (4) 자연인의 이동 장의 약속 외에는 약속 안함.	(4) 시장접근란에 언급된 분류상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들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중국법 실무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는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공동 운영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이며, 그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민사책임을 짐. 공동 운영의 고객은 상해로 한정되지 아니함. 공동 운영하에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에게 법률 자문가로서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음. 한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는 다만 다음과 같음. (a)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 (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대표자는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하여야 함.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사무의 취급 (c) 외국인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법무회사에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 (d) 법률 사무를 위하여 중국 법무회사와 장기 위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e)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위탁은 한국 대표사무소가 위탁된 중국 법무회사의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허용함. 한국 법무회사의 대표는 WTO 회원국내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이어야 함. 수석대표는 한국 법무회사의 파트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예, 유한법무회사의 구성원)로 중국 외 지역에서 3년이상 실무를 한 자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트너십 또는 유한회계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CPAs)에 한정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한국 회계법인은 중국 법인과 제휴하는 것과 다른 WTO 회원국내에 있는 그들의 제휴된 법인과 계약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됨. -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한국인에 대한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우가 부여됨. - 신청자는 그 신청이 제출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받음. - CPC 862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계법인은 세무와 경영 자문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음. 그 회계법인은 CPC 865와 8630의 설립의 형태에 관한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님.
(c) 세무 서비스 (CPC 863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기업은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계획 설계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중국에 설립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기업의 중국 내 지역과 중국 외 지역에서의 계약 이행은 중국 내에서 그 기업의 자격 평가 시 산정됨.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계획 설계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 계획 서비스(일반 도시 계획 제외) (CPC 8674)	(1) 계획 설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의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소유도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와 다음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본국에서 발급된 전문 자격증이 있는 한국 의사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중국에서 단기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며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와 의료인력 과반수는 중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공급의 수단으로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 *입력 준비 서비스 (CPC 8431)* - *데이터 처리와 도표 작성 서비스 (CPC 8432)* - *시분할 서비스 (CPC 84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D. 부동산 서비스 (a) 자산 소유 또는 자산 임대를 포함하는 부동산 서비스 (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 서비스 (CPC 8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1) 외국 광고서비스의 공급 권리를 가진 중국에 등록된 광고 대행업자를 통하여서만 가능 (2) 외국 광고서비스의 공급 권리를 가진 중국에 등록된 광고 대행업자를 통하여서만 가능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내 광고기업 설립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01, 시장에서 조직의 제품의 전망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사 서비스에만 한정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 요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다음의 하위 분야에만 한정됨.) -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와 CPC 749의 적용대상인 화물 조사. 다만, 화물 조사 서비스에 대한 법정 조사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본국에서 3년을 초과하여 조사 서비스에 종사한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350,000달러 이상의 등록된 자본으로 기술적 검사, 분석 및 화물 조사 합작 투자 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임업, 사냥 및 어업 부수 서비스 (CPC 881,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 (CPC 872, CPC 87209는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관련 과학 기술 자문 서비스 (CPC 8675) –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다만, 지구 중력 및 자력 예측 서비스 제외함)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 하에 석유 시추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서비스 (CPC 86751) – 지표 및 조사 서비스 (CPC 86752)			
- 육상 유전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중국국가석유회사(CNPC)와의 협력 하에 중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석유 시추의 형태로만 허용됨. 석유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며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진행함. 그 사무소의 주소는 CNPC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됨. 그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영역 내에서 외국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은행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CNPC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석유 작업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CNPC에 석유 작업과정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회계적 그리고 행정적인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와 샘플을 제출함. CNPC는 그 석유 작업과정의 시행중에 취득된 그 데이터 기록, 샘플, 바우처와 그 밖의 원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는 미화나 그 밖의 경화로 이루어짐.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수수료나 계약 기초의 포장 재료 인쇄(포장 재료의 인쇄에만 한정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기업형태만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번역 또는 통역의 실무 경험 3년과 실무 언어의 뛰어난 구사 능력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유지 및 보수 서비스 (CPC 63, 6112 및 6122)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장비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 및 886) - 임대 및 리스 서비스 (CPC 831, 832 다만, CPC 83202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임대 및 리스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500만달러의 세계적 자산을 보유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다만,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시의 관련 법에 의하여 중국 우편 당국에 특별히 유보된 것은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통신 서비스[3] 다음을 포함하는 부가 서비스 (h) 전자 메일 (i) 음성 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1) 공급형태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부가 통신 기업 설립이 허용되며,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중국의 약속은 다음에 따라 양허됨 : 여기에 첨부되는 기본 통신 서비스 약속 양허의 주석(S/GBT/W/2/REV/1)과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S/GBT/W/3). 모든 국제 통신 서비스는 참조 문서 제5항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규제 당국으로 활동하게 될 중국 통신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관문을 통하여야 함. 허용되는 지분 참여의 수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의 추가 자유화는 무역 협의의 차기 회기 동안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될 것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본 통신 서비스 - 페이징 서비스	(1) 공급형태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중국은 여기에 첨부되는 부속서 1의 참조 문서에 포함된 의무를 약속함.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아날로그/디지털/셀룰러 서비스 - 개인 통신 서비스	(1) 공급형태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기업만 설립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국내 서비스 (a) 음성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국내 전용 회선 서비스	(1) 공급형태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기업만 설립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국제 서비스 (a) 음성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국제 비공개 사용자 그룹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전용 회선 서비스 사용이 허용됨)			
D. 시청각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 웨어 및 CPC 83202를 포함하는 비디오 배급 서비스 - 녹음물 배급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계약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각주1 참조)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영화의 행정에 관한 중국의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 편수는 연간 20편이어야 함.
- 영화관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건축 및/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512, 513[4], 514, 515, 516, 517, 518[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5가지 형태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만 가능함. 1. 외국 투자 및/또는 원조로 전액 출자된 건설 프로젝트 2. 국제 금융 기관의 융자로 출자되고 융자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입찰을 통하여 낙찰되는 건설 프로젝트 3. 외국인 투자가 50퍼센트 이상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와 중국 건설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50퍼센트 미만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 4. 중국 건설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국인 투자 건설 프로젝트는 성(省)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과 외국 건설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5.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설립된 건설 기업으로서 상해에서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중국에 설립된 건설 기업의 중국 내 지역과 중국 외 지역에서의 계약 이행은 중국 내 그 건설기업의 자격 평가 시에 산정됨.

[4]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준설 서비스를 포함함.

[5] CPC 518의 적용범위는 외국 건설 기업의 서비스 공급시 외국 건설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운전자 포함 건설 및/또는 철거 기계 임대 및 리스 서비스에만 한정됨.

*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자 지분에 대한 요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유통 서비스 (부속서 2의 정의에 따름)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소금, 담배는 제외) B. 도매 서비스[6] (소금, 담배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접근이나 분야 또는 하위분야란에 기재된 상품을 포함하여 중국 내에서 제조된 그 기업의 상품의 유통과 부속서 2에 정의된 하위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됨.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그들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에 정의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관련된 하위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6] 공급형태 1에 대한 제한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5장에 규정된 무역에 대한 권리에 관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약화시키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소매 서비스 (담배 제외)	(1) 우편 주문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 다수 공급자로부터의 여러 종류와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는 3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체인점. 3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그러한 체인점은 다음의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되지 아니함 :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화학 비료와 중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 2a에 열거된 상품. 한국 체인점 사업자들은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어떠한 파트너도 택할 자유가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우편 주문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접근이나 분야 또는 하위분야란에 열거된 대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중국 내에서 제조된 그 기업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고 부속서 2에 정의된 하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그들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에 정의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관련된 하위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D. 프랜차이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E. 고정장소 외에서의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7]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 당사자 보고서의 제310항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 (군대, 경찰, 정치적 및 정당 학교 교육 등과 같은 특별 교육은 제외)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다만 CPC 92190 내의 국가의무교육은 제외)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다만 CPC 92210 내의 국가의무교육은 제외) C. 고등교육 서비스 (CPC 923)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CPC 929, 영어언어교육 포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한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국 학교들과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들에 의하여 초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보유, - 그리고 적합한 전문직 직함 또는 자격증, 2년 전문직 경력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는 제외) A. 폐수 서비스 (CPC 9401) B.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C. 배기 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D.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G. 위생 서비스 (CPC 9403)	(1) 환경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 다만, 자연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의 조성 및 운영은 제외함) F.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CPC 9409)	(1) 환경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 서비스에 종사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기업 형태로만 서비스 공급이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 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생명, 건강 및 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 (b) 손해 보험 (c) 재보험 (d) 보험 부수 서비스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a) 재보험 (b)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 (c) 대규모 상업적 위험,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보험중개는 약속 안함. 그 외에는 제한 없음. (3) A. <u>설립형태</u>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지점이나 완전 소유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즉, 설립형태에 제한 없음) 한국의 생명보험업자는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와의 50퍼센트 외국인 소유 합작투자 기업이 허용됨. 합작투자의 파트너는 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제한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음.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 :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그 밖의 보험중개 서비스 : 약속 안함. 합작투자 보험회사 및 완전 소유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한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 중국에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한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한국 보험기관은 의무 보험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함.	

	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에 대해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 B. 사업 범위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부속서3 참고)보험/지리적 제한이 없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내국민 대우에 따라, 한국의 보험 중개인은 더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중국의 중개인보다 늦지 아니하게 “일괄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허용됨.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 고객 모두에게 완전한 범위의 손해보험의 제공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및 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발급되는 허가의 수에 대하여 지리적 또는 수량적 제한 없이, 지점, 합작투자 기업 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C. 허가 허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이 발급될 것임. 한국의 보험기관설립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투자자는 WTO 회원국에서 30년을 초과하는 설립 경험이 있는 한국 보험회사여야 함. - 그 보험회사는 중국에 2년 연속 대표사무소가		

	있어야 함. - 그 보험회사는 신청 전년도의 말 미화 50억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해야 함. 다만 보험 중개인은 제외. 보험 중개인은 미화 2억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 및 증권 제외) 아래 기재된 은행 서비스 :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c) 금융 리스; (d)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수출입 결제 포함)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2) 제한 없음. (3) A. <u>지리적 적용범위</u> 외화와 현지통화 영업의 경우, 지리적 제한 없음. B. <u>고객</u> 외화 영업의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제한 없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다만 건전성 조치는 제외.[8]	금융 리스서비스의 경우, 한국 금융 리스회사는 중국 회사와 동시에 금융 리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8] 그러한 건전성 조치는 금융 서비스 장의 제9.5조에 따름.

(e) 보증 및 약정 (f)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외국환	현지통화 영업의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중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금융기관이 모든 중국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중국의 한 지역에서 현지통화 영업 허가를 받은 한국 금융기관은 그 밖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음. C. 허가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 (즉, 경제적 수요 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아니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국의 은행의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총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국 은행의 지점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중외 합작 은행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총자산 현지통화 영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신청 전에 중국에서 3년동안 사업운영을 하며 2년 연속 수익이 있을 것, 그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 파이낸싱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아래 기재된 그 밖의 금융서비스 (k)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l)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즉, 경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아니함). 한국 금융기관의 지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 증권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a) 한국의 증권기관은 B 지분 사업에 직접적으로(중국 중개인 없이) 관여할 수 있음. (b)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인 적격기관투자자(QDII)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 QDII의 계좌 거래 - 증권거래자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제공 - QDII의 해외 자산의 보관 제공 (2) 제한 없음. (3) (a)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가진 한국 증권기관은 모든 중국의 증권거래소의 특별 회원이 될 수 있음.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증권투자펀드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 퍼센트까지인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증권기관은 A 지분에 대한 인수와 B 및 H 지분과 정부 및 회사채의 인수와 거래, 펀드 출시를 수행(중국 중개인 없이)하는 외국 소수 지분이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규제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합작투자 증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회사는, 승인 시, 증권중개, 자기자본거래 및 자산관리에 대한 점진적 수행이 허용됨. (b) 중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즉, 경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 제한이 포함되지 않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아파트 포함) 및 레스토랑 (CPC 641-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호텔 및 레스토랑 설립체를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음.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의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중국 내의 합작 투자 호텔 및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서명한 한국 매니저, 요리사를 포함한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대행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다만 합작 투자 또는 완전 지분 소유 여행 알선 대행 업체는 중국인의 해외 여행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제외)			
A.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96192에 한정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합작 투자 기업 또는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형태로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퍼센트 이하일 것.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중국 당사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짐.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위탁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적 공연업에 종사할 수 있음. 공연장 사업체는 자신의 장소에서 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11, 96412, 96413에 한정됨, 골프와 e-스포츠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 국제 운송(화물 및 여객) (CPC 7211 및 7212, 연안 운송 제외)	(1) (a) 정기선 해운(여객 운송 포함) :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여객 운송 포함) :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해운 회사 설립이 허용됨. - 외국 투자는 그 합작 투자 회사의 등록된 총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 그 합작 투자 회사의 이사회의 의장 및 일반 관리자는 중국측에 의하여 지정됨. (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약속 안함. (4) (a) 선박승무원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공급형태 3(b)에 정의된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고용된 핵심인력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약속 안함. (4) (a)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부수 서비스			
(a)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c) 해상 운송을 위한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해운 중개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지분 49퍼센트 이하의 합작 투자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내륙 수로 운송 (b) 화물 운송 (CPC 7222)	(1) 외국 선박들에게 개방된 항만 내에서의 국제 해운만 허용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제한.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d)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내에 항공기 보수 및 유지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중국측이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지배주를 소유 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그 합작 투자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를 가짐.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1) (a)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중국항공기업 및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합의가 있는 경우,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중국 항공 기업 및 중국 항공 중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b)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양자 간 항공 합의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국 항공 기업에 의하여 중국의 목적지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 및 영업 사무소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c) 중국 항공 기업 및 한국 항공 기업의 중개인에 의한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근 및 사용은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CRS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중국 CRS 공급자와의 중국 내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중국측은 합작 투자기업의 지배주를 소유 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 합작투자 기업 설립을 위한 허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F. 도로 운송 서비스 - 철로를 통한 화물 운송 (CPC 7112) - 트럭이나 자동차를 통한 도로 화물 운송 (CPC 71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철도 운송은 완전 외국인 소유의 자회사가 허용됨. 도로 운송은 완전 외국인 소유의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여객 운송 (CPC 71213)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투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 투자 기업 형태만 허용됨.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 창고업 서비스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CPC 748 및 749, 화물 조사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최소 3년 연속의 경험이 있는 한국 화물 주선 업체는 중국 내에서 화물 주선업 합작투자 설립이 허용되며,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합작 투자 기업의 운영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중국 내에서의 운영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합작투자기업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한국 화물 운송 주선 업체는 첫 번째 합작투자 기업의 2년의 운영 기간이 지나면 두 번째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속서 1

참조 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 통신서비스의 규제적 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이다.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앞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부분은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의 연결에 적용된다.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가.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 이외의 지점에서 제공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약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2.5 상호접속: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든지, 또는
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인 기간 후에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 규제기관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회원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회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에 대한 공개적 이용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은 공개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5. 독립적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S/GBT/W/2/Rev.1
1997년 1월 16일
(97-0173)

기본 통신 그룹

의장에 의한 주석

개정

기본 통신의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 가능한 가정에 관한 간략하고 단순한 주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대표단들이 제안하여온 바이다. 첨부 주석은 양허의 투명성 보장과 양허의 의미에 관한 이해 증진에 있어 대표단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확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기본 통신 서비스 양허표에 관한 주석

1.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분야란에 기재된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는

가. 공중 및 비 공중 사용에 대한 지역, 장거리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설비에 기반하여 또는 재판매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다. 모든 기술 수단(예, 케이블[1], 무선, 위성)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

2. 하위분야(g)-전용회선 서비스-는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밖의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 하위 분야에 기재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망 용량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이는 케이블, 무선 및 위성 망을 통한 용량을 포함할 것이다.

3. 상기 1과 2를 고려하여, 휴대 또는 이동 서비스를 별도의 하위 분야에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은 그러하게 기재하고 있고, 다수의 제안은 이러한 하위분야만 양허하고 있다. 따라서 양허표의 광범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하위분야에 별도의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1] 모든 종류의 케이블을 포함함.

세계무역기구

S/GBT/W/3
1997년 2월 3일

(97-0415)

정본: 영어

기본 통신 그룹

의장 주석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

다수의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의 시장 접근란에 그 약속이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한다. 전파의 물리적 성질이나 그 사용에 내재한 제한의 관점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정당한 전파 관리 정책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구에 의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은 양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의 양허표의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는 그러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전파/주파수 관리 그 자체로는 제16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GATS에 따라 각 회원국은, GATS 제6조와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주파수 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규제적 원칙에 관한 참조 문서에 따라 추가적인 약속을 한 회원국은 참조 문서 제6조에 의하여 구속된다.

그러므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와 같은 문구는 불필요하며 회원국의 양허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속서 2

유통서비스

유통 무역서비스는 네 가지 주요 하위분야로 구성된다.

- 위탁중개인 서비스
- 도매업
- 소매업, 그리고
- 프랜차이즈

각 하위분야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상품 재판매와, 재고관리, 조립, 분류 및 큰 용적의 등급 책정, 큰 용적의 해체 및 작은 용적으로의 재분배, 배달 서비스, 냉장, 보관, 창고 및 차고 서비스, 판매 촉진, 마케팅 및 광고, 설치, 그리고 유지 및 보수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련 하위서비스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유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CPC 61, 62, 63 및 8929의 적용대상이다.

위탁중개인 서비스는, 대리인, 중개인 또는 경매인이나 그 밖의 도매업자에 의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하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도매업은 소매업자, 산업, 상업, 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 사업 사용자 또는 그 밖의 도매업자에 대한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소매업서비스는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를 위하여, 고정장소(예, 상점, 매점 등) 또는 고정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프랜차이즈서비스는 수수료 및 로열티의 대가로 상품, 상표 또는 특정 사업구조 시스템에 관한 사용의 판매로 구성된다. 상품 및 상표의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및 로열티를 대가로 상표의 사용을 포함하고 상표 상품의 배타적인 판매를 위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사업구조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및 로열티를 대가로 전체 사업 컨셉트의 사용을 포함하고 상표, 사업계획 및 교육자료의 사용 및 관련 하위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3

보험: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의 정의

일괄보험증권은 다른 장소에 위치한 동일한 법인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이다. 일괄보험증권은 보험업자의 본사 영업부 또는 그의 권한을 받은 지방 단위 지점의 영업부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 그 밖의 지점들은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대상이 국가중대건설사업인 일괄보험증권사업

국가중대건설사업(즉,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발표하는 사업)의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들은 투자자들의 법인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업자로부터 일괄보험증권을 구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국으로부터 나오고(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한다.

투자는 부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중국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체 국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한다.

외국으로부터 모든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모든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형태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법인의 다른 보험 가입 대상에 적용되는 일괄보험증권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동일한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그러한 보험 가입 대상(금융, 철도 및 우편 그리고 통신 산업과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괄보험증권은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를 기초로 발급될 수 있다.

보험료세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위치한 곳에 설립된 보험회사들은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된다.

대도시 또는 중도시로부터의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보험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보험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도시에 있는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고용자책임보험, 의무보험 및 CIRC에 의하여 제외된 그 밖의 보험사업은 보험 가입 대상이 위치한 장소 외에 위치한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되거나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일괄보험증권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

부속서 8-가-2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유엔 잠정 중앙상품분류 :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중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롭게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4) 자연인의 이동 장의 약속 외에는 약속 안함.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 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회사에 제한될 수 있음. 연구 및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 4) 토지의 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른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대우를 부여 받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정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아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일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 (ii)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 주석

아래 정보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됨.

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

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중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중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회계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정보교환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 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 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 주재[1]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자격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1]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부동산 서비스			
중개서비스(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83105* :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임업 및 벌목 부수 서비스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 서비스는 제외함(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86761 :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밑 조사 서비스 (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88442 :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5]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에 따라서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6]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7]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 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 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6]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총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 운항 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아니함.			
C. 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PCS(개인 통신 서비스) TRS(주파수 공용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 접속 서비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 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8]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통신서비스 WTO 참조문서에 포함된 대로

[8]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퍼센트(그 최대 주주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인 경우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 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9]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10] :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서비스[12] 공급이 허용됨.

[9]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함)를 말함.

[10] "부가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11]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전용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유통 서비스[13]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함)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홍삼 도매업 및 62229 중 곡분 및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함)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3]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 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함), 631*(63108, 쌀, 인삼 및 홍삼 제외함),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 (CPC 8929*)[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 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14]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15]			
C. 고등 교육 서비스[16]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서비스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국내외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3) –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그 학교법인[17]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함). – 첨부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기술 대학 및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지역[18]에서 제한될 수 있음.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15]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16]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17]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18]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로 제한됨. – 국내외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의학, 약학, 수의학, 전통 한방 의학, 의학 기술 및 유아, 초등 및 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 교육분야의 연간 학생 정원과 수도권 지역[19]에 소재한 고등 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첨부 1(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19]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성인 교육 서비스[20] (CPC 924*) 사립 성인 교육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 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 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 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 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최소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여야 함.	

[20]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첨부 2(성인 교육 서비스)

성인 교육 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됨.
   (a)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과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와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과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 및 안전관리
   (b)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c)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 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d) 간호 조무 : 간호 조무
   (e) 문화 및 관광 : 출판, 영상과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및 관광
   (f) 경영 및 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g) 국제 : 성인 대상 외국어, 통역 및 번역
   (h) 인문사회 : 대학 편입, 공공 경영, 사업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시험
   (i)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 기예와 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 및 웅변

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 및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1] 9401 :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22] 9402 :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환경 시험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3] 9406*, 9409* : CPC 9406 및 9409 중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금융서비스에 대한 주해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장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상의 하위 분야와 다름. 2. 하위분야의 기재사항은 오직 현존하는 국내 금융서비스에만 적용됨.			
7. 금융 서비스 두주(頭註) :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24]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 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함. 4. 금융서비스 장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따라 규제되는 다른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이, 중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중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이 그러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			

[24]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됨.

7. 한국은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중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중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한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하여 온 금융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

8.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음.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9.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본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10.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11.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2.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3.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보험중개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부수 서비스 : 하위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25]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 다음의 하위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26] (ii) 대출[27]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함)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5]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26]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

[27]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i) 외환 서비스[28] (vii) 결제 및 청산[29]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30]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 중 큰 금액임.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28]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29]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30]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 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 하는 것 : 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 자산(금괴 포함)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신탁[31] (투자일임업 포함함)			
(xi)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 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투자 자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신용 평가 및 분석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1]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CPC 641, 642, 6431*)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32] 국제 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 제외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 해운 :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 함.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32] 해상 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3]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CPC 741*)[3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3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3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3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4]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35]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36] 748*, 749* :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37]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3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3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8] 서비스 무역의 장 제8.1조라호의 정의에 따름.

[39] 「항공법」 제2조제39항(일반 항공 운송 대리점)에 정의된 서비스. "일반 항공 운송 대리점 서비스"란 보수를 받으며 항공 운송 회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통한 여객 또는 화물 국제 운송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함(타인을 위하여 비자나 여권 획득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제외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도로 운송 서비스 카보타지를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다만 LPG 운송을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H.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b. 항만 구역외의 창고업 (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그 밖의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4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0] "철도 화물 주선"은 철로 운송의 끝지점에서 수행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 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의 체결, 화물 선적/하역 및 배달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해상 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감시하는 활동

7. 검수 · 검량 및 감정 서비스

- 검수서비스 : 선적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 및 인수를 증명 하는 활동
- 검량서비스 : 선적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활동
- 감정서비스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활동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 8-나-1에 그러하게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나. **공동제작자**란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한국 또는 중국 국민, 또는 제5조(제3자와의 공동제작)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제3국/지역의 국민을 말한다.

다. **공동제작영화**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사업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과 협력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하고, 제5조가 적용되는 영화를 포함한다. 공동제작영화가 이 부속서에 따라 승인되기 위하여 그 영화는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과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영화**란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의 연속물 또는 영상과 소리의 연속물을 말한다.

마. **국민**[1]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중국의 경우,
   -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또는
   -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2) 한국의 경우,
   -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 대한민국 법인

제2조
자국 영화로의 인정과 혜택의 부여

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영화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미래에 시행될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영화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완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한국 또는 중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한국 또는 중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사업 승인

1. 공동제작영화는 제작 착수 전에 양 당사국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제작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제작영화는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예비 승인의 조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제작이 완료되는 경우, 공동제작자는 완성된 공동제작영화와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예비 및 최종 승인을 결정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영화에 대하여 부록 8-나-1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사업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부여할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자국의 정책과 지침을 적용한다.

6.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영화에 "계획수립"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영화에 "영화 공공상영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7.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그러한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4조
기여도

1. 영화의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및 기능적 기여 비율(이하 통칭하여 "창의적 기여도"라 한다)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2. 영화의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 최종 제작비용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재정적 기여도 산출에는 현물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제3자와의 공동제작

1. 한국 또는 중국이 제3자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자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영화를 이 부속서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에 대한 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승인은 제3자의 공동제작자 기여도가 한국과 중국의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낮은 것보다 더 높지 아니한 제안으로 제한된다.

제6조
영화 제작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승인할 경우 이 규칙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동제작영화에 포함되는 촬영분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영화를 위하여 특별히 촬영된다.

제7조
입국 편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과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제3자의 공동제작자인 국민이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또는 홍보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 또는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8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및 무세금으로 공동제작영화 제작을 위한 기술 장비 및 촬영 자재의 일시적 반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영화 배급

1.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최종 승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그 당사국에서 그 영화의 공공상영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2. 양 당사국은 세계 시장에서 공동제작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세계 배급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영화와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및/또는 디지털 시네마 기술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부록의 지위

부록 8-나-1은 이 부속서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12조
국제법에 따른 의무

이 부속서의 규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른 양 당사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주의가 요구되는 모든 사안은 양 당사국 간 상호 논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4조
종료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이 부속서의 종료 시점에 완성되지 아니한 공동제작영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공동제작의 완료시까지 유효하다.

제15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종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부록 8-나-1
이행 약정

1. 이 부속서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KOFIC)이고, 중국의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전영국이다.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는 공동제작영화의 공동제작 지위를 사정하는 중국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다.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주관 기관은 이 부속서의 운영을 감독 및 검토하며 공동제작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한다.

2. 이 부속서는 한국과 중국 본토만의 공동제작자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적용된다.

3. 신청 절차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제작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다.

가.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소유 관련 서류 사본

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영화의 줄거리 및 영화의 완성 대본

다. 해당국 또는 해당 지역의 각 국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 목록. 이 목록은 그들의 국적과 작품 경력, 그리고 배우의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과 그들이 연기할 역할의 유형 및 분량을 포함한 역할을 나타낸다.

라.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에 관한 주요 촬영 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

마. 투자자의 약정서와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안

바. 공동제작자가 영화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해외시장 수익을 포함하여 영화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수익의 분배율을 규정하는 제작자 간 작성된 공동제작 계약서,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추가 정보

부속서 8-다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1.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공동제작을 장려한다.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이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됨을 확인한다.[1]

2.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의 각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다.

[1] 이 항의 목적상, 법과 규정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국의 경우,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에 의하여 2004.9.21. 명령 제41호로 공포된 중-외 합작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규정(애니메이션에도 적용),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방송법(법률 제12743호, 2014.6.3.) 및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6호, 2014.6.5.)

제9장
금융서비스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다.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3.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2조
내국민 대우

1.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1]

2.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1]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1.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이행된 분야에서,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2]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9.4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인 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5조
건전성 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12장(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2] 이 호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투입 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9.6조
투명성[3]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8.1조(공표)의 제2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질의를 접수하기 위한 적절한 채널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6.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7.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국내 법적 요건을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에서 약속된 투명성 조의 약속을 인정한다.

8.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9.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9.7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4]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9.8조
건전성 조치의 인정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9.9조
구체적 약속[5]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고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고, 소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중국의 경우, 고액지급제도 및 일괄전자지급제도는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제공된다.

[5] 이 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 및 제9.3조와 관련된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다.

부속서 9-가는 각 당사국에 의한 특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9.10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속서 9-가의 제2항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9.11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9-가 제2항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9.12조
분쟁해결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다.

제9.13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 협의

금융기관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9.5조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 협의하고 청구가 제기된 후 18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제9.14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의 규정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1)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2)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4)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란 정부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으로,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9-가
구체적 약속

1.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자 간 협의, 또는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중국의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중국인민은행(PBOC)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정부 지원 정책 이행 기관

양 당사국은 정부 지원 정책 이행 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호혜적 대우

가. 양 당사국은, 건전성 요건을 조건으로 그리고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운영이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규정한 관련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양 당사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장
통신

제10.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8장(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약속 외의 추가적인 약속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0.3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 신호 ·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 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자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 그리고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2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호접속에 관한 의무

제10.4조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그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

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선택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나.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상호접속 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제3항가호에 따라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요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10.5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그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1]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3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0.6조
경쟁보장장치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2)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라.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0.7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어떠한 공급자에 대하여도 지분을 소유[2]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3]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10.8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모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제10.9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의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10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특히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와 관련되어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장(서비스 무역)과 제12장(투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비면허 사용 또는 입찰초청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한다.

제10.11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0.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13조
투명성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

나.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되도록 할 것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4) 면허요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치가 있으면, 그러한 조치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그리고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0.4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4]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5]

제10.15조
업계와의 협의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2)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각 당사국은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

제10.16조
국제로밍요금

양 당사국은 국제모바일로밍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각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양 당사국 간 국제모바일로밍의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

제10.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5절
정의

제10.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 또는 이용자들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하여 전송된 것으로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8조 및 「전신업분류목록」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 및 출국, 체류 및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제8장(서비스 무역)에 정의된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각 사업목적과 분명하게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1-가에 따라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일반 의무

1. 한쪽 당사국은 제11.2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고 특히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1]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1.4조
비자원활화

1. 양 당사국은 비자의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절차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11-나에 규정된다.

제11.5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들은 부속서 11-가에 기술된다.

2. 한쪽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약속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모든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자연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한한다.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투명성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한 통합 문서 형태의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 공표하고 자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출입국 조치의 수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7조
자연인의이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련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나. 양 당사국 간 자연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다.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사안의 고려, 그리고

라.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검토

제11.8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20장(분쟁해결)이 그 사안에 적용된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9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및 제22장(최종규정)과 제18.1조(공표)부터 제18.3조(행정절차)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1-가
구체적 약속

제1절
중국의 구체적 약속

1. 중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상용 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

2. 한국의 상용 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3.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 판매 협상의 목적으로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자로서 그러한 대리인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한국의 투자자 또는 한국의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투자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을 위하여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다.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중국 영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한국의 서비스 판매자**란 중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중국 내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그 공급자의 대리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러한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판매자가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한국 기업의 고위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 관리자, 임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중국 영역에 있는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되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한국 기업의 고위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 관리자, 임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국 영역의 외국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앞에서 언급된 입국 및 일시 체류는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7. **기업 내 전근자**란 중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나 하부 조직을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다른 인사 조치(승진 또는 휴직 승인과 같은 것을 말한다)를 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나.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투자의 운영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기술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8. 부록 11-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업이든지 상관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자신의 고용주와 중국 내에 있는 서비스 소비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중국 내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한국의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는 자

다. 그 고용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그리고

라. 공급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적절한 교육적 및 전문적인 자격을 보유한 자

10.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2]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상용 방문자

3. 중국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 방문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4. **중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하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

[2] **노동 분쟁**이란 고용 조건에 관련된 조합과 고용인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

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중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7. 부록 11-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중국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한다.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9.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11-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한국의 경우,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중국에 위치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것

2.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 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3. 회원 계약을 통하여 한국 회계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서비스,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

4.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6.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나.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다. 데이터 관리 서비스

   라.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마.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중국의 경우,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의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다.

(1) 건축설계 서비스

(2) 엔지니어링 서비스

(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4) 도시계획 서비스(일반 도시계획은 제외한다)

(5)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6)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 교육서비스 :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적절한 전문 직함 또는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최소 2년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보유한다. 계약에 관련된 중국 당사자는 법인이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그리고

(8) 관광 서비스

부속서 11-나
비자 원활화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 내 전근자[3]와 투자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국에서 고용된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한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중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등록제도에 따른 최초 체류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한다.

한국은 자국의 외국인등록제도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중국에서 고용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중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한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최초 체류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한다.

중국은 자국의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한다.

2. 1998년 11월 12일 베이징에서 서명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절차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기본 틀에 따라,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가능한 개정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상용방문자에 대한 복수입국비자 발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약속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은 자격 있는 신청인에게 1년 동안 유효하고 매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한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한국은 자국의 관행은 이전의 경우에 불법적인 기록 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귀국한 그 인력의 두 번째 신청부터 상기의 복수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자격 있는 신청인에게 1년 동안 유효하고 매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한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중국은 자국의 관행은 이전의 경우에 불법

[3] **기업 내 전근자**란:

1) 중국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의 제2절제7항에 정의된 기업 내 전근자를 말한다. 그리고

2) 한국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의 제1절제6항에 정의된 기업 내 전근자를 말한다.

적인 기록 없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귀국한 그 인력의 두 번째 신청부터 상기의 복수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부속서 11-다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혜 약정

각 당사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특혜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서로의 각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국내 노동시장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투자 및 인력 이동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의 범위는 상용 방문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기업 내 전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각 정부부처는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약정에 관여하고 작업한다.

제12장
투자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1]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2]이란 기업, 회사, 신탁, 파트너십, 1인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정의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 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 활동이란 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투자[3]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과 기업의 지점

2)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3)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4)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

[1] 지방정부에 의하여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로 양해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와 같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금전청구권 및 이행 청구권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7)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그리고

8) 그 밖의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모든 관련 재산권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에 개정된 또는 이후에 당사국 간 합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12.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한다.

2. 각 당사국은 외국인 소유와 통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한다.

제12.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이 장의 발효일에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그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이나 수정이 개정이나 수정 직전에 그 조치가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적용대상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하여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4조
최혜국 대우[4]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 활동과 제12.2조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모든 특혜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

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 협정이나 약정, 또는

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

3. 제1항에 언급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대우의 최소기준[5]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

[4]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의미에서의 어떠한 독자적 관세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부속서 12-가에 따라 해석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6]를 제공할 의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12.9조를 따른다.

6. 제4항은 제12.3조에 불합치하게 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6조
법원에의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추구 및 방어함에 있어서 모든 관할단계의 법원과 행정법원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그리고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2.7조
이행요건 금지

1.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고 이 장의 모든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판단은 적절한 증명에 기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적용대상 투자에 대하여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의 정부는 그러한 법,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판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공표 시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 또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후자의 당사국과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의 당사국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공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나.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 또는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12.9조
수용 및 보상[7]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어떠한 조치(이하 이 장에서 "수용"이라 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일 것

다.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를 것, 그리고

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상할 것

2. 보상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을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당사국의 통화 및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4. 제12.1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10조
송금[8]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9]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

[7] 이 조는 부속서 12-가 및 12-나에 따라 해석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외환관리와 관련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관련 형식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2.5조제4항, 제12.5조제5항 및 제12.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일하는 당사국 국민의 소득 및 보수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12.11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어떠한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을 하는 경우 후자의 당사국은

가. 그러한 지불의 기초를 구성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전자의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 전자의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와 동등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권리가 개시되었다면, 투자자는 지불을 하는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

여,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 되지 아니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3. 권리 또는 청구의 그러한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급될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12.9조 그리고 제12.10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2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한쪽 당사국과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의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이다.

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국"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에 제출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을 명시한다.[10]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장에 따른 의무

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

라. 청구하는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

3. 투자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11]

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중재

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

[10]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

[11] 가호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마. 분쟁 당사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

다만, 나호부터 마호까지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적용 가능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일단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당사국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7.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그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그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검토를 위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12]

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범위 외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

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 “판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와 그의 적용대상투자에 관하여 분쟁 당사국이 이 장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

[12] 국내행정검토절차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10. 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 중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제12.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2.3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가 전자의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특별형식요건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장과 합치하여야 하며, 이 장에 따른 후자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전자의 당사국이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2.3조와 제12.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의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의 당사국은 후자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어떠한 공개로부터도 그러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14조
안보 예외

1. 제12.5조제4항의 규정을 제외한 이 장의 어떠한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

1) 전시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의 그 당사국 내에서 또는 국제 관계에서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조치

나.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2.5조제4항의 규정을 제외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15조
혜택의 부인[13]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비당사국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그 기업이 후자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2.16조
환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12.17조
투자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13]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의미에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나. 제12.3조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현행 비합치조치의 범위를 포함한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그리고

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로부터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그리고 매각 또는 그 밖의 투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장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의 정부 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련 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5. 양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제12.18조
서비스-투자 연계[14]

1. 이 협정의 제12.5조(대우의 최소기준), 제12.9조(수용 및 보상), 제12.10조(송금), 제12.11조(대위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수용)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제12.5조(대우의 최소기준), 제12.9조(수용 및 보상), 제12.10조(송금), 제12.11조(대위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 제12.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12.15조(혜택의 부인),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수용)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9장(금융서비스)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9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12조는, 그러한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오로지 이 조에 언급된 조들에 대해서만 의무에 대한 주장된 위반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1. 투자 환경 개선 및 그 영역 내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정부 행정 행위와 관련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가능한 한 최대한 설립, 청산, 투자 증진 활동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접촉선은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

3.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접촉선에 더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불만 및 애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 지방정부[15]의 수준에서 지방 접촉선을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 그리고 제12.12조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중국의 지방정부**란 중앙정부 하에 있는 성(省) 정부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2.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2.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2-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2.9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러한 행위가 그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 및 목적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다
송금

1.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양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바.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몰수적이지 아니하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제12.3조 및 제8.4조(내국민 대우) 그리고 제12.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사국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3.1조
일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 그 이용 및 개발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들이 우선한다.

제13.3조
관세[1]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미부과 관행[2]을 유지할 것이다.[3]

제13.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국내 법규를 유지한다.

   가.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4][5], 그리고

---

[1]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현재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 발리 각료회의 결정(WT/MIN(13)/32-WT/L/907)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제5항과 합치되게 유지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의 어떠한 변경과도 합치되게, 관행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인증의 방법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한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자거래에 대한 자신의 전자 인증이 전자 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 인증 기관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3.5조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제13.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3.7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법과 규정, 규칙 및 기준, 그리고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교류, 협력 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제13.8조

---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국의 경우, 전자거래의 전자서명이 제3당사자에 의하여 증명되기 위하여, 인증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증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급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빙성과 신뢰성 검증을 제공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발생,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3.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4장
경쟁

제14.1조
목적

각 당사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금지,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양해한다.

제14.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련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3조
법 집행 원칙

1. 각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투명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되게 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당사국의 인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의 인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가 명하여져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나.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각국 법에 따라 행정 재심 및/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그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재심을 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4.4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조사 절차 규칙을 포함하여 경쟁 정책과 관련된 자국 법과 규정을, 인터넷상에서의 공개를 포함하여, 공개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행정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을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경쟁법의 적용

1. 이 장은 각 당사국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1]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14.2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제14.13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

제14.6조
법 집행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 분야에서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양 당사국은 통보, 협의,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양국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양 당사국은 더 나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다.

제14.7조
통보

[1]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한정할 때,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집행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도록 초기 단계에 그리고 상세히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행정 자원을 고려하여, 위에 규정된 상황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4.8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 시, 그 당사국은 관련되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3. 협의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4.9조
정보의 교환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규율하는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그 당사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적용 예외 및 면제와 관련된 공공 정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그러한 요청은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 그리고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예외나 면제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표를 포함한다.

제14.10조
기술협력

양 당사국은 경쟁정책 및 법 집행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험의 교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구축, 워크샵 및 연구협력을 포함한 기술적 협

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제14.11조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

이 장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 시 각 당사국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14.12조
분쟁해결

1. 이 장의 의미에서 어떠한 행위가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쪽 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4.1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영업행위란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이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국의 경우, 「반독점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4장제3절, 제9장 및 제10장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사업자란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5.1조
목적

1.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아이디어, 기술 및 창의적인 작업의 확산을 통한 국제 무역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의 원활화

   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확실성 제공, 그리고

   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원활화

2.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대중 간에 균형을 달성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제15.2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적절하고, 유효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이 장의 규정과 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침해,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1]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2]에게 그 당사국이 보호[3]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의 실체적 규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제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

[1]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특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및 미공개 정보로 구성된다.

[2] 제2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제15.3조에 열거된 협정에서 규정된 보호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을 포함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보호는 1) 이 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용성, 취득, 적용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2) 제15.8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금지, 그리고 3) 제15.9조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과 자국의 국제적인 의무와 합치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제 협정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창설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나.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다.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라. 1979년에 개정되고 1984년과 2001년에 수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마.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77년)

바. 1979년에 개정된 「표장의 등록 목적의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니스 조약」(1957년)

사.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자.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차.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년)

카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78년), 그리고

타.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제15.4조
더 광범위한 보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5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고 이 장의 규정이 이 선언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장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로 한 자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자국의 법과 규정 및 이 장[4]에 따라,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방식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제15.7조

[4] 이 조의 목적상, 이 장은 이 장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를 말한다.

방송 및 공중전달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5]

2.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6]

제15.8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네트워크에서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규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와 제15.3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15.9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장 또는 베른협약,「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및「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5] 이 항은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각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된다.
[6] 상기 언급된 권리의 행사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보호되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나.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실연,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나 그 밖의 어떠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5.10조
제한 및 예외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상표

제15.11조
상표 보호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기만의 속성을 가진 표지는 상표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제15.12조

상표권의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13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하고, 그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그 등록 상표권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그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제15.14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제4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제15.15조
특허 보호

1.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나.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이거나 미생물학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4.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제15.16조
실용신안

1. 양 당사국이 실용신안 제도를 설립했음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권리자와 대중의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고 권리자와 대중 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실용신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양 당사국의 실용신안의 법적 체계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2.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모든 분쟁에 있어, 당사국이 실질적 심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실용신안 침해 심사의 증거로서 권한 있는 당국이 선행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원고가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15.17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요건을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국내 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협력한다.

제6절
식물품종 보호

제15.18조
식물품종 보호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며 식물신품종의 육종가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양 당사국은 식물신품종 시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험에 관한 협력을 제고할 것이다.

3. 보호되는 품종의 번식재료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육종가의 허락이 요구된다.

가. 상업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또는 재생산(증식)

나. 상업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다. 판매를 위한 제공

라. 판매 또는 그 밖의 마케팅, 그리고

마. 수입 또는 수출

제7절
미공개 정보

제15.19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미공개 정보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라 보호한다.

제8절
산업디자인

제15.20조
산업디자인

1. 양 당사국은 자국 법에서 최소한 1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권리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하여 제공, 판매, 수입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최소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3.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5.2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지식재산권의 취득이, 부여되거나 등록되는 권리에 따르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여 또는 등록의 절차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62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5.22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은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결정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가 포함된다.[7]

제15.23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8]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홍보하는 정보의 공표 형태, 형식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9]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법 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10]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및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물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적절한 상황에서 폐기된다.

나. 그 사법 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

[8]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도 포함한다.

[9] 특허 침해의 경우,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적지 아니하다.

[10] 어떠한 당사국도 제3항을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 행동하는 제3자에 대한 침해 소송에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폐기되거나,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침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사법 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영업비밀을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그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25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그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11]의 수입, 수출,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 및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11]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한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른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관세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수입, 수출, 환적 및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는 보세지역으로의 장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줄 것을, 의심되는 침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 침해 의심 물품의 식별 방법과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시와 함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한다. 관세당국은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 요청 권리와 관련 있는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한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름, 수입자의 주소, 제품 기술서, 수량 및 신고 가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사인(私人)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청구 없이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6.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물품보관수수료 또는 폐기 비용이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가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 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 또는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제작된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다. 세관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특허, 식물품종권, 등록 디자인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상품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나. 그 사법 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다. 그 사법 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또는 폐기, 그리고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제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제15.29조
침해 혐의자에 대한 정보 요청

각 당사국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관계 당국 또는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11절
그 밖의 규정

제15.30조
협력

이 협정의 확립된 구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 협력의 형태에 추가하여,

가. 각각의 행정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다. 자국의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 및 발전을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고,

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1) 국경 간 지식재산 범죄에 대처할 때 증거 수집,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협업 제공

2) 온라인 저작권 집행에 관한 교환과 협력

3) 에너지 절약과 녹색기술에 관한 기술 이전

4)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분야

마. 기업과 산업이 제기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을 고려한다.

제15.31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 규정된 대로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토의한다.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16장
환경과 무역

제16.1조
배경 및 목적

1.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2년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그리고 「2012년 리우+20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기하며, 양 당사국은 경제 발전,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지지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2.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증진할 것이며,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환경 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 동의한다.

제16.2조
적용범위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조치에 적용된다.

제16.3조
보호 수준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각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4조
다자 간 환경협정

1. 양 당사국은 다자 간 환경협정(이하 "다자환경협정"이라 한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이 그러한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16.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그러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6조
환경영향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적절한 시기에 각국의 참여적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기법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

제16.7조
양자 협력

1.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정 또는 약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 환경친화제품을 포함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보급 촉진

나.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증진에 관한 협력

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라.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환경 두뇌집단 협력 메커니즘 구축

마. 환경분야의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역량 구축

바.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3. 양 당사국은 2014년 7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같은 기존 양자 합의에서 약속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분야를 포함한 환경분야에서 양 당사국 모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4. 양 당사국은 양국 간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6.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환경과무역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 행정부 내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자원은 이용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제16.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장
경제협력

제1절
일반 규정

제17.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이 장의 협력은 다음의 목적을 추구한다.

   가. 양 당사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것

제17.2조
방법 및 수단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 및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 간 기존 양자 협력의 그 밖의 형태와의 상승효과를 발전시킨다.

2.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관계의 수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4조
경제협력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업 이행의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나.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 장의 운영과 그 목적의 적용 및 달성을 검토하는 것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다른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농수산 협력

제17.5조
식량 안보

1. 쌍방무역과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과 식품에 대한 생산적이며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G20, APEC, FAO 및 ASEAN 10+3와 같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제17.6조
수산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수산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1] 강화 및 증대, 그리고

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접근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어류 및 수산물의 건전한 교역 촉진[2]

[1]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2]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기존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촉진

나. 더 많은 대화 및 정보교환 증진

다. 양 당사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라. 각 당사국 내 수산물 소비 촉진

제17.7조
임업

1. 양 당사국은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건전한 무역이 양자 간 전략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을 다음을 통하여 증진시킨다.

가.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

나.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임산물에 대하여 수출제한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다. 합법적인 출처로부터의 임산물의 무역 촉진, 그리고

라. 조림과 목재 가공산업을 포함하여 임업분야의 상호 투자의 증진과 촉진

2. 양 당사국은 임업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나.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복원에 대한 협력

다. 불법 벌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공통의 이해 촉진

라. 산림유전자원 저장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마. 관상용 식물, 나무 종자와 종자산업의 발전 증진, 그리고

바. 양 당사국에 의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임업 분야

3.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 경험공유와 정보교환

나. 공동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의 증진

다. 연구원, 기술자, 전문가 및 관리자의 교류, 그리고

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절
산업 협력

제17.8조
철강 협력

1. 양 당사국은, 철강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증진한다.

2. 철강 산업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철강 시장에서의 국내 규제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

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국내 철강 시장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 그리고

다. 철강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증진을 위한 협력

제17.9조
중소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련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의 양자 중소기업 정책교류위원회 메커니즘의 활용을 포함하여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3. 중소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것

나. 무역 절차, 무역 진흥 네트워크, 공동 비즈니스 포럼, 사업 협력 수단 및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간 협력에 적합한 유망 분야를 모색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특히 중점을 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민간 및 정부기관의 협력 및 영세기업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것

제17.10조
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정보 및 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의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ICT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력 증진

   나. ICT 관련 국제 전시 및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다.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 그리고

   라. 국제 기준 관련 국제 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지원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 및 기술 협력

   나. 정보기술단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다.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라.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 그리고

   마.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자동차 전자장치, 휴대 지능 단말기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의 주요 재료 및 장비와 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17.11조
섬유 협력

1. 양 당사국은 섬유 산업 사슬에 있어서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다음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섬유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산업용 섬유, 기능성 섬유 직물, 세섬직물 및 편직물의 개발 및 적용

   나. 의류 및 패션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의 협력 및 교환

   다. 표준화된 품질 시스템 인증 및 선진 관리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교환

라. 기술, 정보,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가. 섬유 산업 사슬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 산업단체 및 기업을 통하여 섬유 협력을 증진한다. 그리고

나. 공동 포럼, 세미나,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의 개최를 촉진한다.

제17.12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 협력 관련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중국의 경우, 공업화신식화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4절
정부조달

제17.13조
목적

양 당사국은 각국의 경제에서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7.14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법을 공표하거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과 양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달리 공개하도록 한다.

제17.15조
정보교환

1. 양 당사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관련 각국의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제1항의 정보교환은 다음의 정부 당국을 통하여 촉진된다.

가. 중국의 경우, 재정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제17.16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중국의 경우, 재정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제17.17조
추가 교섭

양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가입 교섭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조달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5절
다른 협력 분야

제17.18조
에너지 및 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포함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다. 협정 및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그리고

라. 고위급 세미나 및 그 밖의 형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이용에 관한 정책 대화를 증진하고, 프로젝트, 워크샵, 훈련, 현장방문 및 그 밖의 적절한 형태를 통한 환경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고, 또한 공동 포럼,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

제17.19조
과학 및 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 경제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경우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를 포함한 공동 연구개발

나. 과학자, 연구원, 연구장비기사,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 및 그 밖의 과학 및 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주최

라.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마. 공동의 과학 및 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제17.20조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가.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나.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적 협력 마련, 그리고

다.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마련

제17.21조
관광 협력

양 당사국은 관광이 양국의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하여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 모색

나.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다.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샵 및 세미나를 통하여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

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마.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바.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

제17.22조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

1.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현 시범 사업 계획 하에서 아웃바운드 관광 운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3]

2.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3.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을 설립할 것이다.

제17.23조
문화 협력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규와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주변 환경과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 하에서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현 시범 사업 계획이란 중국 상무부 및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공표된 법령 제33호에 따라 2010년부터 중국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광회사 네 곳이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허가를 받았다.

제17.24조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협력

1. 양 당사국은 공중보건 증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관한 정보교환

1) 입법 진전 및 집행을 포함한 정책, 그리고

2)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나. 다음에 관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1)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2)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이들의 상업화

3)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연계, 기술 교류 등, 그리고

4) 상호 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

제17.25조
지방 경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정부에 의하여 논의된다.

2. 시범 협력 사업은 이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경제 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제17.26조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1.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7.27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7.22조의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을 제외하고, 그 밖의 협력 분야 관련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18장
투명성

제18.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8.2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정당한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 당사국이 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는 그 정보가 세계무역기구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져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해당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조에 따른 모든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제19.5조(접촉선)에서 언급된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18.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8.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모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18.4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9장
제도 규정

제19.1조
공동위원회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장관급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1.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이 협정상 약속의 수정에 관한 제안을 검토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3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1. 공동위원회는 제19.2조에 규정된 그 기능 내에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

2. 공동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기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때에 회합한다.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그 밖의 회기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고, 그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이 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 승계자 그리고 중국 상무부장 또는 그 승계자나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4.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대한 자국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5. 공동위원회 회기의 의장인 당사국은 그 회기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논의를 기록하며, 그 사본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될 것이다.

6.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19.2조제2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19.4조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

1.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와 기구가 설치된다.

가. 상품무역위원회

나. 서비스무역위원회

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라. 자연인의이동위원회

마. 투자위원회

바. 관세위원회

1) 원산지규정소위원회

2)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

사.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아. 무역구제위원회

자.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차.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카. 지식재산권위원회

타. 환경과무역위원회, 그리고

파. 경제협력위원회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5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한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협력

양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제20.3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1.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포럼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포럼은 다른 포럼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20.4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다른 협의 규정상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분쟁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서면통보로 제시한다. 협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3.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개최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히 한쪽 당사국이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되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믿는 때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

5.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 또는 지명하는 중개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방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야 할 것이다.

6.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는 이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제20.6조
패널의 설치

1.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패널을 설치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그 요청서에 협의가 열렸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제20.7조
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15일 내에 각각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다. 양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의 어느 쪽 당사국이든 그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의장을 지명할 것이 기대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된다.

2. 패널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에도 고용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

격으로도 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원래의 패널위원 선정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패널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4. 모든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5. 어느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그 패널위원을 교체한다.

제20.8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의 기능은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해당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2. 패널이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피소 당사국에게 그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제20.9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규정된 절차 규칙을 준수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0.6조에 따라 패널 설치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3.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와 패널의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0.10조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관련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20.11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후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12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패널이 그 120일의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에 성문화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4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패널은 다수결로 결정을 취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모든 의견은 익명이다.

7.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그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20.12조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즉시 또는 이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서 판정된 불일치를 제거한다.

제20.13조
합리적인 기간

1.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로부터 30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원래 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2.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4.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30일 전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준수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제20.14조
이행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자신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나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래 패널에 회부되는 것을 포함하여 패널 절차에 회부된다.

3.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패널 절차에 관한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의 절차에 적용된다.

제20.15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된 조치를 정하여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권고에 맞추어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20.14조의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피소 당사국이 서면으로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국이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30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한다.

2.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와 결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권고의 완전한 이행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보상은 이 협정에 합치한다.

3. 정지할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파생된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래 패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래 패널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정지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제4항에 따른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 제20.6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6. 패널은 요청의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7. 제소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허나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

제20.16조
정지 이후의 절차

1. 제20.15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불합치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통보 접수 후 60일 내에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2. 패널은 그 사안이 회부된 후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3.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제20.17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부속서 20-가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 절차 규칙은 제20.9조(절차 규칙)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전달하다란 전자적 전송에 의하거나 지면 형태의 전달 매체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란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패널 절차 진행 중 제출된 모든 서면 자료를 포함한다.

패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소당사국이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3.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행정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과 각 패널위원에게 모든 서면 입장의 각각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전달된다.

8.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 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9.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10.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한국 또는 중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 개시

1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15일 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한다.

최초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2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 전달일 후 2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의 운영

13.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에 그 심의에 보조인,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출석하는 어떠한 인도 양 당사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논의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16. 보고서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심리

18.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 후에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한다. 의장은 그 결정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0.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1.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2.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인력, 통역사 및 번역사,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문인만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3.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4.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양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보충적 서면 입장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 후 2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비밀 유지

26.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제출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쟁에 대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27.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패널위원이든 접촉할 수 없다.

28.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할 수 없다.

기한 계산

29. 특정 일자 또는 사건의 전이나 후 수일 내에 이 협정 또는 이 부속서에 따라 어떤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어떤 일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 이 부속서 제10항의 적용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작업 언어

3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절차의 작업 언어는 영어이다.

부속서 20-나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 구성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중개인이란 제20.5조(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따라 중개절차를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구성원에 관하여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패널위원은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4.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만 전달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5.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평성

9.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10. 패널위원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한다.

비밀유지

12.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개인

15. 부속서 20-나에 기술된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

제21장
예외

제21.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부터 제7장(무역구제)까지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제10장(통신) 및 제13장(전자상거래)[1]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1.2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1조와 GATS 제14조의2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1.3조
과세

1.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 협약**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또는

      2) 제1.6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정의의 나호부터 마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조치

2.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조세 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1] 제21.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나. 양 당사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 또는 의무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부여 또는 부과되는 경우에만 과세조치에 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5. 가.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12.9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2.9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2.9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12.12조제2항(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른 피청구국에 대한 서면 협의 요청을 제출하는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제12.12조제2항(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른 피청구국에 대한 서면 협의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2.12조제3항(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국의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제21.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5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여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 그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그리고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2장
최종규정

제22.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2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관련 장과 그에 상응하는 부속서를 부속서 22-가에 구체화된 일반 원칙 및 협상 지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개시되는 후속 협상(이하 "후속 협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정한다.

2. 후속 협상의 결과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해당 장을 대체한다. 새로 개정된 장의 발효는 제22.4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른다.

3. 앞서 언급한 개정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하게 합의되어 제22.4조에 따라 발효된 때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을 그에 따라 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제22.5조
가입

어떠한 국가 또는 관세영역도, 그 국가나 관세영역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 또는 관세영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6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작성된다. 그 세 가지 협정문은 동등하게 유효하며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부속서 22-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

가. *일반 원칙*

1.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후속 협상은 각각의 부속서와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특히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및 제12장(투자)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다.

3. 후속 협상은 투자의 설립 전 단계 및 공급형태 3의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제8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및 제12장(투자)과 연관된 통합 유보 목록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였다. 부속서 I(기존의 비합치 조치 목록), 부속서 II(당사국이 관련 장에 의한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목록), 그리고 부속서 III(금융서비스)과 같은 새로 만드는 통합 유보 목록은 이 협정에 첨부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성된 특정 분야의 자유화 약속의 수준을 후속 협상에서 낮추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6. 후속 협상에서 양 당사국은 관련 장의 어떠한 조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1]

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후속 협상에서 새로운 문안 제안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기간*

8.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 협정이 발효된 날 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9.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이 개시된 날부터 2년 내에 그 협상을 마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지침*

10. 후속 협상을 통하여 구성될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은 공급형태 1과 2에 해당하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속 협상은 이 협정의 조가 아닌, 양 당사국의 각각의 문안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대한 후속 협상의 결과에 특히 미래 최혜국 대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2.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대한 후속 협상의 결과에 특히 미래 최혜국 대우, 정보 이전 및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3. 기존의 비합치 조치 목록과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의한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목록은 이 협정의 부속서 III으로 첨부된다.

라. *투자 협상을 위한 지침*

14. 양 당사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포괄하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를 포함할 목적으로 제12장(투자)의 모든 조를 다시 논의한다.

15. 후속 협상은 정의, 적용범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송금,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 조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그리고 그 밖의 규정을 다루는 조를 포함한다.

16. 양 당사국은 설립 전 및 설립 후 단계의 투자 모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통합할 목적으로 후속 협상의 결과에 이행요건에 관한 조를 포함한다.

17.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간접 수용에 대한 관련된 고려 및 그에 대한 예외와 같은 쟁점들에 관하여 협상한다.

마.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한 협상 지침*

18.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에 관하여 협상한다.

바. *부속서와 관련 조의 종료 및 변경*

19. 이 부속서와 제22.2조(개정)의 제1항 및 제2항은 후속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때에 종료된다.

20. 제22.2조(개정)의 제3항은 후속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때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하게 합의되어 제22.4조(발효 및 종료)에 따라 발효된 때,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당사국은 1부를 보관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